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

연구보고 2019-22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연구책임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정 은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22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22-7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올해 5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의하면,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아동에게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편적 비용지원만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해소되고, 나아가 이들 가구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의 결핍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강화 등으로 인해 아동빈곤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아동빈곤의 사각지대, 즉 법정 저소득층가구로 선정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가구의 아동 등 다차원적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하에서도 빈곤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영유아를 둔 총 1,606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의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여 비빈곤가구 대비 차별화된 지점을 포착하려 하였다. 또한 다차원적 결핍을 경험하는 빈곤 영유아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의 통합지원 프로그램,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사례, 지방정부의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빈곤가구의 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빈곤 아동 종합대책의 수립, 그리고 주거와 문화지원 등을 포괄한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모든 아동들이 결핍 없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 과정에 참여하여 고견을 주신 현장 관계자분들과 전문가들께 감사를 전하며,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5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16
II. 연구의 배경	29
1.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규모 및 추이	31
2.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과 양육실태의 분석 범위	50
III.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71
1. 근거 법률 및 주요 계획	73
2. 세부영역별 양육지원사업 및 제도 현황	80
IV. 사례분석: 국내외 빈곤아동 통합지원	119
1. 국내 사례	121
2. 해외 사례	152
3. 소결	173
V.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및 요구	177
1. 양육환경	179
2. 부모 효능감 및 양육 태도	206
3. 양육실태 및 애로사항	216
4. 육아지원의 도움 정도와 개선 요구	244
5. 소결	285

VI. 정책 방안	289
1. 종합: 빈곤가구 영유아의 결핍과 양육지원 수요 특성	291
2.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	294
3. 세부 영역별 양육지원 강화 방안	303
참고문헌	315
Abstract	325
부록	327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모용	327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346
부록 3. 사례조사 질문지	353
부록 4. 부표	355



표 목차

〈표 I-3- 1〉 설문조사 항목	20
〈표 I-3- 2〉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1: 전체	21
〈표 I-3- 3〉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2: 빈곤가구	22
〈표 I-3- 4〉 심층면담 문항	24
〈표 I-3- 5〉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징	25
〈표 II-1- 1〉 0~5세 수급자 수 및 비율(2006-2017)	32
〈표 II-1- 2〉 0~5세아 비율/0~5세아 수급자 비율(2006-2017)	33
〈표 II-1- 3〉 전체인구 대비 연령별 아동인구 비율(2006-2018)	34
〈표 II-1- 4〉 시장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36
〈표 II-1- 5〉 경상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37
〈표 II-1- 6〉 가처분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39
〈표 II-1- 7〉 시장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42
〈표 II-1- 8〉 경상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44
〈표 II-1- 9〉 가처분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45
〈표 II-1-10〉 0~5세 영유아 빈곤율과 기초보장수급율 추이(2006-2018)	49
〈표 II-2- 1〉 UNICEF 아동빈곤 국제비교연구에서 정의하는 다차원적 박탈지표와 기준선	51
〈표 II-2- 2〉 EU-SILC 아동박탈 진단 항목	52
〈표 II-2- 3〉 TÁRKI 사회조사연구소 아동빈곤 다차원적 지표	53
〈표 II-2- 4〉 영국정부의 아동빈곤 다차원적 영역과 측정치	54
〈표 II-2- 5〉 아동복지 및 아동빈곤 다차원적 지표	55
〈표 II-2- 6〉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분석 지표	58
〈표 II-2- 7〉 아동가구 계층별 다차원적 빈곤 실태	59
〈표 II-2- 8〉 다차원 박탈 지표	62
〈표 II-2- 9〉 다차원적 아동빈곤 지표	64
〈표 II-2-10〉 국내 아동빈곤의 다차원성 지표 비교표	67
〈표 III-1- 1〉 현행 법에 의한 빈곤아동 적용기준	74
〈표 III-1- 2〉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76

〈표 Ⅲ-2- 1〉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2019)	81
〈표 Ⅲ-2-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2019)	82
〈표 Ⅲ-2- 3〉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2019)	83
〈표 Ⅲ-2- 4〉 장애아동수당 지원 단가/월(2019)	83
〈표 Ⅲ-2- 5〉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내용(2019)	83
〈표 Ⅲ-2- 6〉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내용(2019)	84
〈표 Ⅲ-2- 7〉 만 0~5세 보육료 지원단가(2019)	85
〈표 Ⅲ-2- 8〉 시간제보육 이용 및 지원시간(2019)	87
〈표 Ⅲ-2- 9〉 시간연장보육료 지원단가(2019)	88
〈표 Ⅲ-2-10〉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지원대상 아동연령(2019)	89
〈표 Ⅲ-2-11〉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차등지원 금액(2019)	89
〈표 Ⅲ-2-1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2019)	90
〈표 Ⅲ-2-13〉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내용(2019)	91
〈표 Ⅲ-2-14〉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내용(2019)	92
〈표 Ⅲ-2-1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인당 지원단가(2019)	93
〈표 Ⅲ-2-1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2019)	93
〈표 Ⅲ-2-1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무상지원 대상(2019)	94
〈표 Ⅲ-2-1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유형 및 지원대상(2019)	94
〈표 Ⅲ-2-19〉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 및 내용(2019)	96
〈표 Ⅲ-2-2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2019)	98
〈표 Ⅲ-2-21〉 요양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2019)	98
〈표 Ⅲ-2-22〉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사업 1인당 지원 단가(2019)	99
〈표 Ⅲ-2-2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및 금액(2019)	102
〈표 Ⅲ-2-2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액(2019)	103
〈표 Ⅲ-2-25〉 드림스타트 대상자 필수서비스 내용(2019)	110
〈표 Ⅲ-2-26〉 영유아 양육지원의 영역 및 연령별 지원내용	113
〈표 Ⅲ-2-27〉 영유아기 양육지원제도 및 사업 현황 1: 선별적 지원	115
〈표 Ⅲ-2-28〉 영유아기 양육지원제도 및 사업 현황 2: 보편적 지원	116
〈표 Ⅳ-1- 1〉 드림스타트 사업 주요 연혁	122
〈표 Ⅳ-1- 2〉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현황(2015~2018)	123
〈표 Ⅳ-1- 3〉 드림스타트 수혜자 연령별 현황(2015~2018)	123
〈표 Ⅳ-1- 4〉 드림스타트 지원내용(2019)	124
〈표 Ⅳ-1- 5〉 드림스타트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126

〈표 IV-1- 6〉 수원시 드림스타트 사업내용	128
〈표 IV-1- 7〉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135
〈표 IV-1- 8〉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업내용	136
〈표 IV-1- 9〉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연혁	139
〈표 IV-1-10〉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이용 현황	147
〈표 IV-1-11〉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이용가구 특성	147
〈표 IV-1-12〉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의 사업 추진 방향	148
〈표 IV-1-13〉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세부내용	148
〈표 IV-1-14〉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주민조직사업 세부내용	150
〈표 IV-2- 1〉 2018년 연방 헤드 스타트 예산 구성	160
〈표 IV-2- 2〉 국외의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 비교	172
〈표 V-1- 1〉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전체	180
〈표 V-1- 2〉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1: 주거용 목돈 지출	180
〈표 V-1- 3〉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2: 전기세 등 정기적 지출	181
〈표 V-1- 4〉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3: 식료품비	182
〈표 V-1- 5〉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4: 보육교육비(전체가구)	183
〈표 V-1- 6〉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4: 보육교육비(빈곤가구)	184
〈표 V-1- 7〉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5: 교재교구/놀이감	185
〈표 V-1- 8〉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6: 자녀 의료비	186
〈표 V-1- 9〉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7: 여가/문화생활	187
〈표 V-1-10〉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전체	189
〈표 V-1-11〉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1: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89
〈표 V-1-12〉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2: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한다	190
〈표 V-1-13〉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한다	190
〈표 V-1-14〉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준다	190
〈표 V-1-15〉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5: 우리 가족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191
〈표 V-1-16〉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전체	192

〈표 V-1-17〉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1: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192
〈표 V-1-18〉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2: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192
〈표 V-1-19〉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3: 우리 부부는 전반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다	193
〈표 V-1-20〉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4: 우리 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	193
〈표 V-1-21〉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5: 우리 부부는 평상시에 다툼없이 잘 소통하는 편이다	193
〈표 V-1-22〉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전체	194
〈표 V-1-23〉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1: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	195
〈표 V-1-24〉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2: 대화 및 소통 등 정서적 도움	195
〈표 V-1-25〉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3: 긴급시 자녀 봐주기 등 돌봄지원	195
〈표 V-1-26〉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4: 육아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	196
〈표 V-1-27〉 주거환경: 전체	197
〈표 V-1-28〉 주거환경 1: 문화/체험시설의 접근성	197
〈표 V-1-29〉 주거환경 2: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의 접근성	198
〈표 V-1-30〉 주거환경 3: 의료기관의 접근성	198
〈표 V-1-31〉 주거환경 4: 놀이터/공원의 접근성: 도보 20분 이내 위치	199
〈표 V-1-32〉 주거환경 5: 보육시설의 접근성_기관 도보/차량 10분 이내 위치	199
〈표 V-1-33〉 자녀의 생활환경: 전체	200
〈표 V-1-34〉 자녀의 생활환경 1: 아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책 보유 ..	200
〈표 V-1-35〉 자녀의 생활환경 2: 실내 놀이 장난감/기구 보유	201
〈표 V-1-36〉 양육환경의 충족도 인식: 전체	201
〈표 V-1-37〉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1: 양육에 적절한 주거공간/위생적인 실내외 환경	202
〈표 V-1-38〉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2: 적절한 영양 섭취/건강관리(전체가구)	203

〈표 V-1-39〉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2:	
적절한 영양 섭취/건강관리(빈곤가구)	203
〈표 V-1-40〉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3: 아이와 보내는 시간	204
〈표 V-1-41〉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4: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204
〈표 V-1-42〉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5: 놀이체험/문화활동	205
〈표 V-2- 1〉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전체	207
〈표 V-2- 2〉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1: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함	207
〈표 V-2- 3〉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2:	
아이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함	209
〈표 V-2- 4〉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3:	
부모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	209
〈표 V-2- 5〉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4:	
좋은 부모로서 필요한 양육기술을 갖추고 있음	210
〈표 V-2- 6〉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5:	
아이에게 일관된 훈육을 할 수 있음	210
〈표 V-2- 7〉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6:	
아이 발달에 대해 잘 이해함	211
〈표 V-2- 8〉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 태도: 전체	211
〈표 V-2- 9〉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출산 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음	212
〈표 V-2-10〉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2:	
잘 지내고 싶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움	213
〈표 V-2-11〉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3: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음	213
〈표 V-2-12〉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4: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음	213
〈표 V-2-13〉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5: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짐	214
〈표 V-2-14〉 자녀에 대한 태도: 전체	214
〈표 V-2-15〉 자녀에 대한 태도 1: 자녀와 매우 가깝다 생각함	215
〈표 V-2-16〉 자녀에 대한 태도 2: 놀이나 활동에 참여함	215
〈표 V-2-17〉 자녀에 대한 태도 3: 책을 읽어줌	215

〈표 V-2-18〉 자녀에 대한 태도 4: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함	216
〈표 V-2-19〉 자녀에 대한 태도 5: 노래 불러주거나 함께 노래함	216
〈표 V-3- 1〉 어머니/아버지의 자녀와의 놀이 시간 비교: 빈곤가구	217
〈표 V-3- 2〉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218
〈표 V-3- 3〉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219
〈표 V-3- 4〉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219
〈표 V-3- 5〉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220
〈표 V-3- 6〉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아동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지낸 경우: 전체가구	220
〈표 V-3- 7〉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아동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지낸 경우: 빈곤가구	221
〈표 V-3- 8〉 주중 낮 시간 돌보는 기관 혹은 사람	222
〈표 V-3- 9〉 현재 이용 기관(반일제 이상)	223
〈표 V-3-10〉 최초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기: 전체가구	225
〈표 V-3-11〉 최초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기: 빈곤가구	225
〈표 V-3-12〉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최초 기관 이용 시기 늦춘 경험 여부: 전체가구	226
〈표 V-3-13〉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최초 기관 이용 시기 늦춘 경험 여부: 빈곤가구	226
〈표 V-3-14〉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주중 등원 시각	227
〈표 V-3-15〉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주중 하원 시각	228
〈표 V-3-16〉 정규 운영시간 초과 이용 경험	229
〈표 V-3-17〉 보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여부: 빈곤가구	230
〈표 V-3-18〉 보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만족도: 빈곤가구	231
〈표 V-3-19〉 보육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 빈곤가구	231
〈표 V-3-20〉 시간연장보육의 이용 경험/빈도	231
〈표 V-3-21〉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의 충족 여부	232
〈표 V-3-22〉 부모/기관 이외의 도움 여부	234
〈표 V-3-23〉 자녀 양육에 도움 주는 사람(중복응답)	235
〈표 V-3-24〉 자녀와의 여가활동: 전체(빈곤가구)	236
〈표 V-3-25〉 여가활동 1: 산책/놀이	236
〈표 V-3-26〉 여가활동 2: 여행(전체가구)	237
〈표 V-3-27〉 여가활동 2: 여행(빈곤가구)	237

〈표 V-3-28〉 여가활동 3: 영화/공연 관람	237
〈표 V-3-29〉 여가활동 4: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관람	238
〈표 V-3-30〉 자녀와의 여가활동 월평균 비용	238
〈표 V-3-31〉 자녀양육의 어려움: 전체	240
〈표 V-3-32〉 자녀양육의 어려움 1: 양육비용 많이 듦	240
〈표 V-3-33〉 자녀양육의 어려움 2: 아이를 맡길 시설 마땅치 않음	241
〈표 V-3-34〉 자녀양육의 어려움 3: 직접 돌볼 시간 없음	242
〈표 V-3-35〉 자녀양육의 어려움 4: 긴급할 때 아이 봐줄 사람 없음	242
〈표 V-3-36〉 자녀양육의 어려움 5: 의논/조언 구할 사람 없음	243
〈표 V-3-37〉 자녀양육의 어려움 6: 정부지원 잘 모름	244
〈표 V-4- 1〉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전체	245
〈표 V-4- 2〉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 가정양육수당	246
〈표 V-4- 3〉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2: 0~2세아 보육료 지원	247
〈표 V-4- 4〉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3: 3~5세아 보육/교육료 지원	247
〈표 V-4- 5〉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4: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248
〈표 V-4- 6〉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5: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249
〈표 V-4- 7〉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6: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249
〈표 V-4- 8〉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7: 육아종합지원센터	250
〈표 V-4- 9〉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8: 출산전후휴가	251
〈표 V-4-10〉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9: 배우자 출산휴가	252
〈표 V-4-11〉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0: 육아휴직제도	252
〈표 V-4-12〉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53

〈표 V-4-13〉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2:	
시차출근제	253
〈표 V-4-14〉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전체	254
〈표 V-4-15〉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	
영유아 건강검진	255
〈표 V-4-16〉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255
〈표 V-4-17〉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3: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255
〈표 V-4-18〉 건강 및 의료지원 경험의 수혜 및 도움 정도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56
〈표 V-4-19〉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256
〈표 V-4-20〉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6: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256
〈표 V-4-21〉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7: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	257
〈표 V-4-22〉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8: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257
〈표 V-4-23〉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9:	
의료급여	258
〈표 V-4-24〉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58
〈표 V-4-25〉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1:	
발달재활서비스	258
〈표 V-4-26〉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59
〈표 V-4-27〉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3: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259
〈표 V-4-28〉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4: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260
〈표 V-4-29〉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5:	
영양플러스 사업	260

〈표 V-4-30〉 건강 및 의료지원 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6: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260
〈표 V-4-31〉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전체	261
〈표 V-4-32〉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 국민임대주택 공급 ...	262
〈표 V-4-33〉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2: 영구임대주택	262
〈표 V-4-34〉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3: 장기전세주택	262
〈표 V-4-35〉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4: 에너지바우처	263
〈표 V-4-36〉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263
〈표 V-4-37〉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6: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264
〈표 V-4-38〉 놀이 및 여가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전체	265
〈표 V-4-39〉 놀이 및 여가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통합문화이용권	265
〈표 V-4-40〉 놀이 및 여가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66
〈표 V-4-41〉 놀이 및 여가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66
〈표 V-4-42〉 놀이 및 여가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6
〈표 V-4-43〉 자녀양육을 위한 희망 투자 부문	268
〈표 V-4-44〉 부모 모두 일할 경우 연령별 자녀 돌보기 적합한 사람:	
1순위	269
〈표 V-4-45〉 부모 모두 일할 경우 연령별 자녀 돌보기 적합한 사람:	
1+2순위	269
〈표 V-4-46〉 부모 모두 일할 경우 자녀 돌보기 적합한 사람(1, 1+2순위):	
만 0세	269
〈표 V-4-47〉 부모 모두 일할 경우 자녀 돌보기 적합한 사람(1, 1+2순위):	
만 5세	270
〈표 V-4-48〉 육아지원 필요도: 전체	271
〈표 V-4-49〉 육아지원 필요도 1: 양육비 지원	272
〈표 V-4-50〉 육아지원 필요도 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274
〈표 V-4-51〉 육아지원 필요도 3: 아이돌봄서비스	275

〈표 V-4-52〉 육아지원 필요도 4: 육아휴직제도	276
〈표 V-4-53〉육아지원 필요도 5:근로시간 조정/단축제도	276
〈표 V-4-54〉육아지원 필요도 6:주거공간	277
〈표 V-4-55〉육아지원 필요도 7:건강관리/의료비 지원	277
〈표 V-4-56〉육아지원 필요도 8:문화생활/놀이 지원	278
〈표 V-4-57〉육아지원 도움 정도:전체	279
〈표 V-4-58〉육아지원 도움 정도 1: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279
〈표 V-4-59〉육아지원 도움 정도 2: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279
〈표 V-4-60〉육아지원 도움 정도 3:유모차 대여	280
〈표 V-4-61〉육아지원 도움 정도 4:장난감 대여	281
〈표 V-4-62〉육아지원 도움 정도 5:영유아 학습비 지원	281
〈표 V-4-63〉육아지원 도움 정도 6:도서 대여/독서 프로그램	281
〈표 V-4-64〉육아지원 도움 정도 7:전문 건강센터 운영	282
〈표 V-4-65〉육아지원 도움 정도 8: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283
〈표 V-4-66〉육아지원 도움 여부 9:자녀 등하원서비스 제공	283
〈표 V-4-67〉육아정책 정보 제공 방법	284



그림 목차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분석틀	27
[그림 II-1-1] 영유아 수급자 수 비율 추이(2006-2017)	34
[그림 II-1-2] 0~5세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40
[그림 II-1-3] 6~11세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40
[그림 II-1-4] 12~14세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41
[그림 II-1-5] 15~17세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42
[그림 II-1-6] 0~5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	46
[그림 II-1-7] 6~11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47
[그림 II-1-8] 12~14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47
[그림 II-1-9] 15~17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48
[그림 II-2-1] 아동빈곤집단의 유형	64
[그림 II-2-2] 아동빈곤정책의 영역과 범위	65
[그림 III-1-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가능 시설	105
[그림 III-1-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체계	112
[그림 IV-1-1] 드림스타트 지원아동수 및 서비스 이용 건수(2007-2018)	123
[그림 IV-1-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125
[그림 IV-1-3] 수원시 드림스타트 조직도 및 주요업무	129
[그림 IV-1-4] 완주군 드림스타트 조직도 및 주요업무	134
[그림 IV-1-5] 청주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조직도	151
[그림 IV-1-6]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사업체계도	151
[그림 IV-2-1] 미국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형태별 비율	157
[그림 IV-2-2] 미국 아동가족국 사무소 체계도	158
[그림 IV-2-3] 호주 베스트 스타트 실행 단계	169
[그림 VI-2-1]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 양육지원 강화의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	303



부록 표 목차

〈부표 1〉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1: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55
〈부표 2〉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2: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한다	355
〈부표 3〉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한다	356
〈부표 4〉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4: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격려해준다	357
〈부표 5〉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5: 우리 가족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357
〈부표 6〉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1: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358
〈부표 7〉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2: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359
〈부표 8〉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3: 우리 부부는 전반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다	359
〈부표 9〉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4: 우리 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	360
〈부표 10〉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5: 우리 부부는 평상시에 다툼없이 잘 소통하는 편이다	361
〈부표 11〉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1: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	361
〈부표 12〉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2: 대화 및 소통 등 정서적 도움	362
〈부표 13〉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3: 긴급시 자녀 봐주기 등 돌봄지원	363
〈부표 14〉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4: 육아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	363
〈부표 15〉 자녀의 생활환경 1: 아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책 보유	364
〈부표 16〉 자녀의 생활환경 2: 실내 놀이 장난감/기구 보유	365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편적 비용지원만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나아가 저소득층가구의 복합적인 양육 시 어려움이 온전히 해소될지는 의문시됨.
 - 보편적 육아지원이 확대 하에서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 방향에 의하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아동에게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동빈곤의 사각지대 즉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가구의 아동과 다차원적 결핍이 아동 등이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를 조사하여 이들 아동의 결핍 수준을 진단한 후,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양육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함.

나. 연구내용

- 빈곤가구에 속한 영유아의 규모를 추정하되, 사각지대 규모를 포함하여 빈곤가구 영유아를 개념화함.
- 국제기준의 아동복지 지표와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토대로 빈곤가구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및 발달의 보장과 출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양육실태 조사의 영역을 도출함.
- 빈곤가구 및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빈곤가구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 현황을 조사한 후, 양육지원의 다차원적 영역과 대상별 중복 및 누락된 내용을

파악함.

- 빈곤가구 영유아의 양육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되, 비빈곤가구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주목함과 동시에 빈곤가구 내부의 차이 즉, 빈곤가구 및 아동특성별 차이를 분석함.
-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과 기반 조성, 그리고 세부영역별 양육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 방법 및 분석틀

□ 문헌연구

- OECD와 UNICEF의 아동복지 지표, 유럽연합의 다차원적 빈곤지표 등빈곤가구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의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 현황 등을 검토함.

□ 통계자료 분석/인터넷 자료 조사

- 0~5세 영유아 빈곤율 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18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영유아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규모는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통계를 활용함.
-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포털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의 생애주기상 영유아기, 가구 상황상 저소득층 분류 항목을 검색하여 해당 정보를 파악함.

□ 설문조사

- 빈곤가구는 법정 빈곤가구 이외에 비수급 저소득층을 포괄하므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를 절반 수준으로 할당하여 총 1,606명을 조사함.
- 조사내용은 자녀돌봄 실태 및 애로사항, 경제활동과 소득 및 지출, 주거 및 지역 내 환경, 놀이 및 문화생활, 양육지원제도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육아지원 필요도/도움 정도 등)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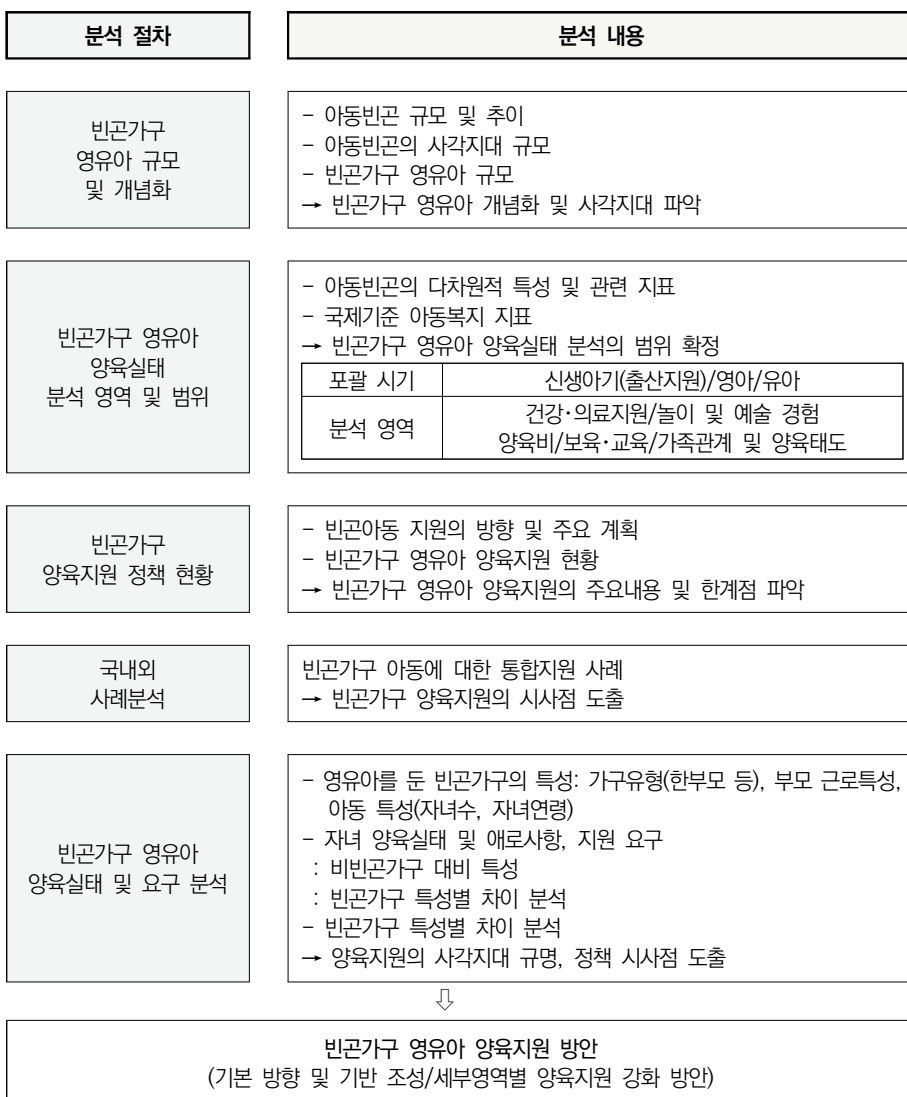
□ 심층면담

- 자녀연령과 가구유형을 고르게 배분하여 총 10회에 걸쳐(면담 참여자 총 11명)를 대상으로 실시함.

□ 사례조사: 빈곤아동에 대한 통합지원

- 국외 사례로는 1) 미국의 Head Start(Early Head Start), 2) 영국의 Sure Start, 3) 호주의 Best Start 사업을 다룸.
- 국내 사례로는 1)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모범 사례(경기 수원시, 전북 완주군)와 2) 지방정부의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서울 마포구, 충북 청주시) 운영 사례를 다룸.

□ 연구내용 및 방법에 따른 연구 절차 및 분석틀은 이하 그림과 같음.



2. 연구의 배경

가.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규모 및 추이

- 0~5세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42,000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6,000명으로 나타나며, 전체 수급자 대비 0~5세 수급자 비율도 2006년 2.9%에서 2017년 1.8%로 감소함.
- 아동빈곤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0~5세 아동 빈곤율이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2015년 기준 영유아 아동빈곤율은 약 7.3%인 반면, 기초수급 영유아 비율은 약 1.1%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 6.1%p는 빈곤가구에 속하나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비율을 나타냄.

나.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과 양육실태의 분석 범위

- 국외 지표에서는 가구소득, 부모의 고용상태, 부채 수준, 주택 여건, 건강 및 영양, 교육기회, 건강 등과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해나 안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거나, 부모의 양육이나 부모-자녀 관계를 가정환경으로 보기도 하고, 여가 및 문화생활을 포괄하는 아동의 놀 권리를 포괄하기도 함.
- 빈곤아동의 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포함한 가구의 경제활동 이외에도 주거비 부담 수준, 주거환경, 교육 및 보육 기회 및 교육 박탈(도서 등), 식생활을 포함한 의료/건강, 놀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놀이 및 문화 경험, 교육 및 양육, 가족관계 및 양육태도 등 가족생활 등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

3.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가. 근거 법률 및 주요 계획

-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근거 규정
 - 2011년 7월 14일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다음 해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지원의 근거 규정

-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명시되며, 「아동복지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에 필요 시 빈곤아동 등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주요 계획 및 세부과제

- 취약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 아동정책기본계획/포용국가 아동 정책
-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건강가정기본계획

나. 세부영역별 양육지원사업 및 제도 현황

-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사업 및 제도를 1) 보육 및 돌봄, 2)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3) 놀이 및 여가지원, 4) 주거지원, 5)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영유아에 대해서는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과 영유아 보육·교육비 등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며, 아동발달 검사와 실명 예방 등은 각각 건강보험부가금액 하위 30% 이하와 중위소득 80% 미만으로 일부 계층에만 지원됨.

4. 사례분석: 국내외 빈곤아동 통합지원

가. 국내 사례

-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국내의 통합지원 사례로서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과 지방정부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주로 도입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지원대상, 프로그램), 조직도 및 추진체계, 주요 성과를 살펴봄.
 -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는 2018년 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수원시와 전북 완주군 사례를 분석함.
 -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의 경우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질적인 빈곤에 처한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와 충북 청주시의 사례를 분석함.

나. 국외 사례

- 국외의 통합지원 사례로서 미국 헤드 스타트, 영국 슈어 스타트, 호주 베스트 스타트 사업의 도입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지원대상, 프로그램 내용), 전달체계 및 자원, 주요 성과를 살펴봄.

다. 소결

- 빈곤아동 대상 통합지원의 중점 대상으로 영유아 또는 영아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빈곤 아동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지역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지역적 특성과 대상아동 구성 비중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을 강화함.
-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중앙정부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은 지방정부에서 포함하여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의 성과는 다년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지원 기간에 제약을 두지 말고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주력하며 이때 가족관계를 포괄하여 양육환경 전반의 개선을 추구함.

5.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및 요구

가. 양육환경

- 경제적 여건에 따른 박탈 경험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심각하고, 교재교구 및 놀잇감과 여가 및 문화생활에 지출이 어려운 경험은 비빈곤가구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가족관계 등 이외 항목에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각 항목별 양육환경의 충족도는 빈곤가구와 전체 가구 모두에서 놀이체험 및 문화활동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모든 항목에 걸쳐 빈곤가구가 낮은 평가를 나타냄.

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태도

- 전반적으로 양육기술과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등에서는 빈곤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빈곤가구는 양육스트레스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높고, 최상의 양육을 제공한다는 항목을 낮게 평가함.

다.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자녀양육 시의 어려움은 양육비용 부담이 평균 4.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음(평균 3.9점), 긴급할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음(평균 3.8점) 순으로 조사됨.
- 주요 변인별로 양육비용 부담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크고, 근로시간에 자녀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아 자녀, 특히 0~1세 아를 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자녀돌봄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맞벌이 가구와 전일제근로(전일제+전일제)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
- 긴급할 시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는 한부모가족(한부모+자녀)에서 평균 4.0점(5점 만점)으로 평균에 비해 높음.

라. 육아지원의 도움 정도와 개선 요구

- 보육 및 돌봄지원 분야에서는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교육보육비 지원의 수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출산전후휴가 30.3%, 배우자 출산휴가 24.9%, 육아휴직제도 24.6% 순으로 나타남.
 - 각 제도별 도움 정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공히 평균 4.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5세 보육교육비 지원 4.0점, 공동육아나눔터 3.4점, 시간제보육과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공히 3.5점 순으로 조사됨.

마. 육아지원 수요

-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문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여가 및 문화생활이 48.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사 19.5%, 학원 및 특별활동 11.0%, 발달검사/전문상담서비스 9.3% 순으로 조사됨.

- 0~2세아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순위 기준으로 60%, 1, 2순위를 합하면 70%를 육박하며, 특히 0세아의 해당 응답율은 79.9%와 86.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법정 빈곤가구와 월 평균 가구소득이 15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어린이집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육아지원 필요도 및 도움 정도

-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평균 4.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조정 및 단축제도, 주거공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 공히 4.5점으로 조사됨.

□ 육아지원 도움 정도

-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전문상담센터 운영이 공히 평균 4.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체가구와 비교하여 빈곤가구는 유모차, 장난감, 도서 대여 등 현물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6. 정책 방안

가. 종합: 빈곤가구 영유아의 결핍과 양육지원 수요 특성

- 양육환경의 충족도(표 V-1-36 참조)는 전 부문에 걸쳐 법정 빈곤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특히 주거공간 및 실내외 환경과 놀이 체험 및 문화활동의 경우는 평균 각각 3.2점(5점 만점)과 3.0점에 그침.

□ 빈곤가구 영유아의 양육 및 수요 특성

- 빈곤가구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그 수요도 높음과 동시에 가정양육수당의 수급을 위해 어린이집의 입소 시기가 늦추고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영아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
-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긴급보육 시 돌봄지

원예의 요구도 높게 나타나며, 양육비 지원과 유모차 대여 등 현물지원에의 수요도 비빈곤가구 대비 높게 나타남.

나.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

□ 기본 방향

-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영역 확장 1: 주거지원과 문화지원의 포괄
-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영역 확장 2: 가족관계 등 양육환경 개선 포괄
-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대상: 빈곤요소별 대응을 위한 비수급 빈곤가구로의 확장
-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 수준: 다자녀가족 + 한부모가족 + 맞벌이가구 + 읍면지역 거주 가구 우선 또는 추가지원

□ 기반 조성

- 빈곤가구 양육실태 조사 실시와 양육지원 세부 계획의 수립
- 통합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협의기구의 내실화
- 민관의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강화
-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의 성과 진단 체계 구축

다. 세부 영역별 양육지원 강화 방안

□ 보육 및 돌봄서비스

- 영아보육의 접근성 제고: 어린이집 우선순위 배점 상향 조정
-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임대주택 단지내 시간연장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긴급돌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기관 미이용 아동의 양육실태 점검 및 육아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 영양 및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검진 가정방문서비스 확대

-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의 확대

□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지원대상을 현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에서 2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
- 개보수 비용과 주거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놀이 및 문화생활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은 지원대상 아동 연령을 만 3세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수준도(인당 8만원) 상향 조정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가능한 시설 확장

□ 드림스타트 사업의 영유아 중점지원과 지방정부 사업 연계 모색

- 지원대상의 영유아 비중 확대, 지역 및 아동 특성을 고려한 차등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사업과의 역할 분화 및 연계, 어린이집의 서비스 연계 기능 강화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I. 서론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 방법 및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의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빈곤아동의 결핍은 온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 시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되, 아동빈곤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비빈곤가구 대비 차별화된 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여년간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지원에 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부터 전(全)계층에 지원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자녀돌봄 분야 사업 중 0~5세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51.6%와 약 20.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유해미·최효미·강신혜, 2017: 99). 이에 더하여 올해부터는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7세 미만 전(全)계층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편적 비용지원만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나아가 저소득층 가구의 복합적인 양육 시 어려움이 온전히 해소될지는 의문시된다. 2009년 「아이사랑플랜」을 전후로 아동양육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보육료 지원 확대가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하위 계층의 경우 양육비 지출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된다(이상록·조은미, 2016: 160). 이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아동양육비 결정에 미치는 부모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영향을 일부 완화하였으나, 이외 부(父)의 직업 지위, 주거 자산, 거주지역 특성 등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이상록·조은미, 2016: 158). 또한 빈곤가정의 부모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오정윤, 2016: 100).

이 같은 논의들은 아동빈곤 실태는 단지 경제적 결핍에 한정되지 않고, 다차원적임을 상기시킨다.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은 2012년에 제정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동법 제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3. 9. 인출).

한편 빈곤은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효진, 2008: 36).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연속적인 장기빈곤을 경험할수록 또는 이른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보다 커질 수 있다(김효진, 2008: 37). 그런 측면에서 영유아기의 빈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영유아기는 짧은 시기에 커다란 변화와 발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련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한나·박혜원, 2013: 614).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에 투입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빈곤한 영유아에 대한 관심은 시급한 사안이다.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즉, 빈곤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공적서비스 비용의 증가와 국가 경제성장에 제한하는 비용은 절대빈곤율 기준으로 총 55조 3,009억원, 상대빈곤율 기준으로 총 99조 6,8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김수정·정익중, 2017: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여서 아동빈곤 문제는 노인빈곤이나 청년빈곤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로 인해 보편적 육아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은 미흡하였다. 2012년에 제정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많은 부분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그 형식과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된다(이미영, 2016: 19). 2015년에 수립된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기초로 종합대책이 필요한 대상에 빈곤아동이 포함되었으나,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추진은 미흡하고, 유형별 아동보호 체계간의 연계 협력 방안 및 단계적 통합을 위

한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되지 않았다(관계부처 합동, 2015: 69). 최근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중점 추진과제로서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와 더불어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이 명시되었으나, 영유아 대상의 추진과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40% 확대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21).

한편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 방향에 의하면,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아동에게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9b: 1). 이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출발선 평등과 차별 해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동빈곤의 사각지대 즉,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가구의 아동과¹⁾ 다차원적 결핍을 경험하는 아동이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빈곤가구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빈곤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직면하는 자녀양육 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이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영유아기는 빈곤 경험으로 인한 해악이 이후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상기하여(정익중·민성혜·박은미·신혜원·전혜정, 2013: 19) 빈곤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를 우선적으로 규명하였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가구 영유아의 규모 및 추이 및 가구특성을 분석한다. 빈곤가구에 속한 영유아의 규모를 추정하되, 사각지대 규모를 포함하여 빈곤가구 영유아를 개념화되고, 이들 대상을 법정 지원기준과 가구특성에 따라 세분화한다.

둘째, 국제기준의 아동복지 지표와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종합하여, 빈곤가구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및 발달의 보장과 출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양육실태 조사의 영역 및 세부항목을 도출한다.

1) 2011년 기준으로 해당 아동은 최소 39만에서 최대 68만명으로 추정된다(허선, 2016: 22).

셋째, 빈곤가구 및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통합적 지원은 빈곤가정의 다차원적 결핍과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 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외 사례로는 미국 Head Start(Early Head Start), 영국 Sure Start, 호주 Best Start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프로그램, 전달체계 등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국내 사례로는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운영 사례와 지방정부의 민간 위탁사업인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넷째,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빈곤가구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 현황을 조사한 후, 양육지원의 다차원적 영역과 대상별 중복 및 누락된 내용을 파악한다.

다섯째,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되,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주목함은 물론, 빈곤가구 내부의 차이 즉 빈곤가구 특성별 분석에 주력한다.

여섯째,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빈곤가구의 특성에 따른 세부 방안을 도출한다. 이때 지원범위는 빈곤아동 개별 지원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포괄한다.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이 연구의 주요 방법과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인터넷 자료 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 사례조사이다.

1) 문헌연구

가) 빈곤가구 양육실태 분석범위의 확정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OECD와 UNICEF의 아동복지 지

표, 유럽연합의 다차원적 빈곤지표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을 종합하여 자녀돌봄 및 양육실태 파악을 위한 영역과 세부항목을 도출한다. 또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에서 상대적으로 결핍이 두드러진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나) 빈곤가구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의 법적 근거와 지원정책 현황 조사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 내용과 관련 지침(2019년도 아동 분야 사업안내,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등), 그리고 유관 주요 계획(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의 빈곤가구 및 아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검토한다.

또한 「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한 출산서비스 사전안내 목록을 통해 출산지원사업과 지원수준, 그리고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통해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내용 및 관련 예산을 파악한다.

2) 통계자료 분석/인터넷 자료 조사

가) 통계자료 분석: 빈곤가구 영유아의 규모 추정 및 다차원적 특성 파악

0~5세 영유아 빈곤율 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18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영유아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규모는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통계를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 데이터 중 소득관련 변수가 풍부하므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²⁾

본 연구에서는 빈곤 기준³⁾으로 중위소득 50% 적용하였다. 가구소득은 OECD

2) 그러나 일반에게 공개되는 데이터는 농어촌 가구를 제외하고 있어, 엄밀하게는 전국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빈곤율 계산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데이터이다. 국제비교 시 사용되는 우리나라 빈곤율은 농어가 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빈곤선은 국가마다 정책적 빈곤선이 있고, 국가비교를 위해 해당국가의 중위소득의 특정비율을 사용한다.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격 기준을 정책적 빈곤선으로 본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빈곤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며, 기준중위의 30%와 50%는 각각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OECD에서 사용하는 빈곤선은 각 국가의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빈곤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에서 사용하는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균등화하였으며,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 수 중 빈곤한 아동 수 비율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위해 가구 가중치에 아동수를 곱한 아동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통계는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로 발표되지만, 아동의 경우, 가구 단위로는 공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개인 단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는 발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통계를 활용하였다.

나) 인터넷 자료 조사 1: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포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의 생애주기상 영유아기, 가구상황상 저소득층 분류 항목을 검색하여 해당 정보를 파악하였다.

다) 인터넷 자료 조사 2: 외국의 빈곤아동 통합지원

미국의 Head Start(Early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호주의 Best Start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제도 도입 배경 및 주요 경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주요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빈곤가구에 속한 아동이 비빈곤가구와 비교하여 고유하게 또는 보다 심각하게 경험하는 자녀양육 시의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빈곤가구 특성 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때 특히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보육서비스와 현금급여의 만족도 및 효과성에 주목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확대, 추가지원 항목, 보편적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는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법정 저소득층 가구 즉 기초생활수급가구

와 차상위계층 가구와 비빈곤가구(비수급 빈곤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빈곤가구는 법정 빈곤가구 이외에 비수급 저소득층을 포괄하므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를 절반 수준으로 할당하여 총 1,606명을 조사하였다. 이때 빈곤가구의 할당 기준선은 2019년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였다. 중위소득은 소외계층이 정부로부터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09% 인상되어 3인 가구는 3,760,032원, 4인 가구는 4,613,536원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⁴⁾ 2019년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44%가 적용되므로 이를 토대로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40%의 평균을 적용하여 약 2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해당 가구를 50% 할당하였다.

조사 방법은 전문조사업체가 구축한 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나)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1) 가구(부모의 근로특성, 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계층 여부, 가족구조 등) 및 아동 특성(자녀 수, 막내자녀 연령 등), 2)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부모 자아 존중감,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인식, 타인의 도움 정도 등), 3) 자녀 돌봄 실태 및 애로사항(주양육자, 이용기관 및 서비스 실태, 자녀양육 어려움 정도 등), 4) 경제활동과 소득 및 지출(가정형편, 재화 부족으로 인한 결핍 등), 5) 주거 및 지역 내 환경(자녀 생활환경, 거주지역 인식), 6) 놀이 및 문화생활(여가활동 현황, 월평균 금액), 7)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개선 요구(적절한 환경, 투자희망 부문, 육아지원 제도 및 사업별 수혜 현황, 육아지원 필요도/도움 정도 등) 등이다.

4)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표 I-3-1〉 설문조사 항목

조사 영역	세부 항목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 부모의 자기 존중감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인식 •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 배우자 외 다른 가족/이웃 등으로부터의 도움 정도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 효능감	•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 효능감 • 부모교육 수강경험, 부모교육 장소 • 자녀와의 관계 인식 •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 돌봄 실태 및 애로사항	•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주중/주말) • 주양육자 • 현재 이용기관, 최초 기관이용 시기 • 양육수당 수혜를 위한 최초 기관 이용시기 지연 경험 • 기관이용시간, 필요도만큼 이용하는지 여부, 초과보육 경험 • 취약보육 서비스별 이용빈도, 만족도, 자녀양육 도움 정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사람 • 자녀양육 어려움 정도
경제활동과 소득 및 지출	• 가정형편에 대한 인식 • 지난 1년간 돈을 빌려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경험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재취업 여부
주거 및 지역 내 환경	•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놀이 및 문화생활	• 자녀동반 여가활동 여부 및 빈도 • 자녀동반 여가/문화생활 월평균 지출금액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개선 요구	• 양육에 적절한 환경평가 • 자녀양육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문 • 각 분야별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보육/돌봄, 건강/의료지원, 주거지원, 놀이/여가지원 등)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연령별 적합한 양육자 인식 • 영유아 자녀 육아지원 필요도 • 육아지원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 정부 육아정책정보의 희망 제공방식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 총 자녀 수, 막내자녀 연령 • 월가구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가족구조 • 취업 여부, 주당 근로시간, 근로유형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1,606명으로, 어머니 1,100명(68.5%), 아버지 506명(31.5%)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66.4%로 가장 많으며, 40대 이상 23.5%, 29세 이하 10.1%이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 43.6%, 고졸 이하 19.5%이다. 막내자녀의 평균 연령은 평균 연령은 만 2.6세이고, 영아가 51.2%를 차지한다. 평균 총 자녀수는 1.6명이며, 1명 48.1%를 차지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8.3%, 차상위계층 15.8%를 차지하며, 가구형태는 부부+자녀가 86.4%로 다수이고, 한부모가족(한부모+자녀)은 5.5%, 조부모+부부+자녀 가구가 6.2%를 차지한다. 맞벌이 가구는 38.6%이고 근로하지 않는 가구는 13.3%로이며, 월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가 50%를 차지하는 데, 이들 중 151~200만원이 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I-3-2〉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1: 전체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자녀연령(막내)	
남성	31.5 (506)	영아	51.2 (823)
여성	68.5 (1,100)	유아	48.8 (783)
연령		평균(세)	2.6
19~29세	10.1 (162)	총자녀수	
30~34세	25.5 (410)	1명	48.1 (772)
35~39세	40.9 (657)	2명	40.8 (656)
40세 이상	23.5 (377)	3명	9.9 (159)
평균(세)	36.0	4명 이상	1.2 (19)
최종학력		평균(명)	1.6
고졸 이하	19.5 (313)	월가구소득	
전문(2, 3년제) 대학 졸	28.5 (457)	100만원 이하	4.8 (77)
4년제 대학 이상	43.6 (701)	101~150만원	5.3 (85)
대학원 이상	8.4 (135)	151~200만원	39.9 (641)
법정 빈곤가구 여부		201~250만원	7.9 (127)
기초생활수급가구	8.3 (134)	251~300만원	6.2 (100)
차상위계층 가구	15.8 (254)	301~350만원	7.6 (122)
비빈곤가구	75.8 (1,218)	351~400만원	6.8 (110)
가구구조		401~500만원	8.7 (140)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부부+자녀	86.4 (1,388)	501~600만원	6.0 (97)
한부모+자녀	5.5 (89)	601~700만원	2.8 (45)
조부모+부부+자녀	6.2 (99)	701~800만원	1.4 (22)
조부모+한부모+자녀	1.9 (30)	801만원 이상	2.5 (40)
맞벌이 가구 여부		801만원 이상	2.5 (40)
맞벌이	38.6 (620)		
홀벌이	48.1 (772)		
모두 일 안함	13.3 (214)		
계(수)		100.0(1,606)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설문조사 대상 중 빈곤가구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빈곤가구는 법정 빈곤가구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이외에도 비수급자이면서 월평균가소득이 200만원 이하 가구를 일반 빈곤가구로 설정하였다. 이들 규모는 총 830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16.1%, 차상위계층 30.6%, 일반 빈곤가구가 53.3%를 차지한다.

전체가구와 비교하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평균 총 자녀 수는 1.6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전체가구와 비교하여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28.8%로 더 높고, 근로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 18.4%로 더 높으며, 한부모가족의 비율도 9.8%로 더 높게 나타난다.

〈표 Ⅰ-3-3〉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2: 빈곤가구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자녀연령(막내)	
남성	28.3 (235)	영아	54.5 (452)
여성	71.7 (595)	유아	45.5 (378)
연령		평균(세)	2.3
19~29세	14.3 (119)	총자녀수	
30~34세	27.6 (229)	1명	51.8 (430)
35~39세	37.0 (307)	2명	37.0 (307)
40세 이상	21.1 (175)	3명	10.0 (83)
평균(세)	35.2	4명 이상	1.2 (10)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최종학력		평균(명)	1.6
고졸 이하	28.8 (239)	가구구조	
전문(2, 3년제) 대학 졸	30.1 (250)	부부+자녀	82.3 (683)
4년제 대학 이상	35.8 (297)	한부모+자녀	9.8 (81)
대학원 이상	5.3 (44)	조부모+부부+자녀	5.9 (49)
빈곤가구 유형		조부모+한부모+자녀	2.0 (17)
기초생활수급가구	16.1 (134)	맞벌이 가구 여부	
차상위계층 가구	30.6 (254)	맞벌이	29.6 (246)
일반빈곤가구	53.3 (442)	홀벌이	51.9 (431)
		모두 일 안함	18.4 (153)
계(수)		100.0(830)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4) 심층면담

가) 조사대상 및 방법

비빈곤가구 대비 빈곤가구 양육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막내자녀 연령과 가구 유형을 고르게 배분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10회, 면담 참여자 총 11명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1) 아동 및 가구특성과 양육실태 전반, 2)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3) 부모 효능감/가족관계/자아존중감과 부모 역할간의 관계, 4) 양육지원제도의 인지/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인식/필요도, 5) 통합지원의 수혜 여부/도움 정도 인식, 개선 요구 등이다.

조사 방법은 빈곤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면담 방식을 취하였으나, 단, 6차 시에 한하여 주양육자인 외조모가 비동거 어머니와 함께 면담에 참여하였다.

5) 6차시의 면담대상은 조손가정으로, 주양육자인 외조모와 비동거 중인 어머니가 함께 참석함.

〈표 I-3-4〉 심층면담 문항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아동 및 가구특성 /양육실태 전반	1) 자녀 및 가구 특성 • 자녀특성: 총 자녀수, 자녀 연령, 장애아 여부, 기관 이용 현황 등 • 가구특성: 다양한 가족 여부(한부모 등), 취업 및 근로특성 등 2) 영유아 자녀의 양육실태 • 주양육자, 기관이용 및 미이용 관련, 지원인력 여부, 긴급돌봄 시 방안 3) 추가 출산 의향 • 추가출산 의향 여부, 포기 사유, 희망자녀수, 출산의 연기/포기 경험 사유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1) 자녀연령별 양육특성 및 애로사항 • 자녀연령별, 부문별, 양육 시기별 애로사항, 주된 어려움 2) 가구특성 및 근로특성에 따른 자녀 돌봄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가구소득/자녀 수, 다양한 가족형태, 근로특성 등 • 자녀 결핍우려 부분: 건강/의료, 영양, 주거, 교육, 화목함, 안전, 문화 등 • 경제적 여건 개선 시 자녀에게 보다 투자 희망부분/내용
부모효능감 /가족관계 /자아존중감과 부모 역할간의 관계	1)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 자녀 출산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 • 부모 역할 및 역량에 대한 인식 • 자녀와 보내는 시간,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한 이유 • 부모-자녀 관계 인식 및 양육 가치관, 아동권리 인식수준 등 • 양육스트레스 수준 2) 가족관계 인식 및 결혼만족도 • 가족관계 인식, 결혼만족도, 부부관계와 자녀양육간의 관계 인식 • 이웃/친인척과의 관계 및 자녀양육 시 도움정도, 단절 정도
양육지원제도 인지/수혜 여부 /도움 정도 인식 /필요도	1) 육아지원제도 인지 여부/수혜 경험/도움 정도 2) 양육지원제도 중 출산/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 제도 3) 현재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중 이용 경험 여부/향후 이용 의향 4) 자녀 양육 시 도움 정도 인식(신생아 안심보육료(상해보험료)지원 등) 5) 양육 시기별 반드시 혹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내용
통합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인식, 개선 요구	드림스타트/영유아통합지원센터 이용 경험/도움 정도/개선 요구
일반적 배경	•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업 • 취업 여부, 취업 상태, 주당 평균 근로시간 • 가구특성: 다문화, 한부모/조손, 장애부모, 장애아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맞벌이 등 해당사항 체크 • 자녀특성: 총 자녀수, 각 자녀별 (만)연령, 영유아기 자녀 기관이용여부 및 기관유형, 학령기자녀의 초/중/고/대 재학 여부 •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주: 상세문항 부록 참조

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심층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어머니의 연령은 만 25세~46세였으며,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많았다. 취업 중인 어머니는 5명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은 52시간 1명, 15~20시간 2명, 9시간 2명이었다. 가구특성은 한부모가정 3가구, 조손가정 1가구, 맞벌이 가구 1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5가구, 차상위계층 4가구이다. 자녀 수는 1명부터 4명까지 다양하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149만원 이하 2가구, 150~199만원 1가구, 200~249만원 5가구, 300~349만원 1가구이다.

〈표 I-3-5〉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징

면담 차수	일자	면담 대상	연령	최종학력	취업 여부	주당 평균 근로시간	가구 특성	자녀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1차	7.15	1	만33세	대졸	예	20시간	수급, 한부모(미혼)	2세/1명	149만원 이하
2차	7.17	2	만36세	미표기	아니오		수급	24개월/4명	200~249만원
3차	7.29	3	만25세	고졸이하	예	9시간	차상위계층, 한부모	3세/1명	149만원 이하
4차	8.7	4	만40세	고졸이하	예	15시간	차상위계층	5세/4명	200~249만원
5차	8.9	5	만42세	대학원이상	아니오		차상위계층	5세/4명	200~249만원
6차	8.16	6	만49세 (외조모)	고졸이하	미표기	미표기	수급, 조손, 외조모 주양육자	(외손자녀) 2세/3명	미표기
		7	만27세 (모)	미표기	미표기	미표기	수급(비동거)	2세/3명	
7차	8.17	8	만44세	미표기	예	52시간	한부모	7세/3명	300~349만원
8차	8.22	9	만46세	고졸이하	아니오		수급	4세/2명	200~249만원
9차	8.23	10	만34세	고졸이하	미표기	미표기	차상위계층	3세/3명	200~249만원
10차	8.30	11	만40세	고졸이하	예	9시간	맞벌이	7세/3명	150~199만원

주: 1) 자녀 특성은 막내자녀 연령/총 자녀수를 표기함.

2) 7차시 가구의 경우 성인 자녀가 최근 취업하여 유소득가구원이 2명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음.

5) 사례조사

국내외의 저소득층 가구 아동의 통합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빈곤은 가정의 역기능(부정적 가족관계)과 다양한 측면의 자원 부족 내지는 박탈을 통해 누적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어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 높은 문제행동, 사회·정서적 문제 등을 야기한다. 이에 아동빈곤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아동기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즉 빈곤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투자, 주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부모의 심리·정서지원이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통합지원사업의 대표적 예인 국외의 다양한 스타트⁶⁾ 사업이 아동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강

조된다(김효진, 2008: 41-42). 따라서 국외 사례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Head Start(Early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호주의 Best Start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및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조사한다.

또한 국내 사례로는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모범 운영 사례를 조사한다. 동 사업은 0~12세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보건, 복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2015년 이후로 사업지역은 229개 시·군·구로 확장되었다(보건복지부, 2019e: 21). 조사대상으로는 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수원시와 전북 완주군을 선정하였다. 수원시의 경우는 민관협력 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한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분소 설치를 통한 접근성 제고, 전북 완주군의 경우는 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의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탁 운영되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조사한다. 서울 마포구와 충북 청주시의 운영 사례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질적인 빈곤에 처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측면의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6) 간담회 및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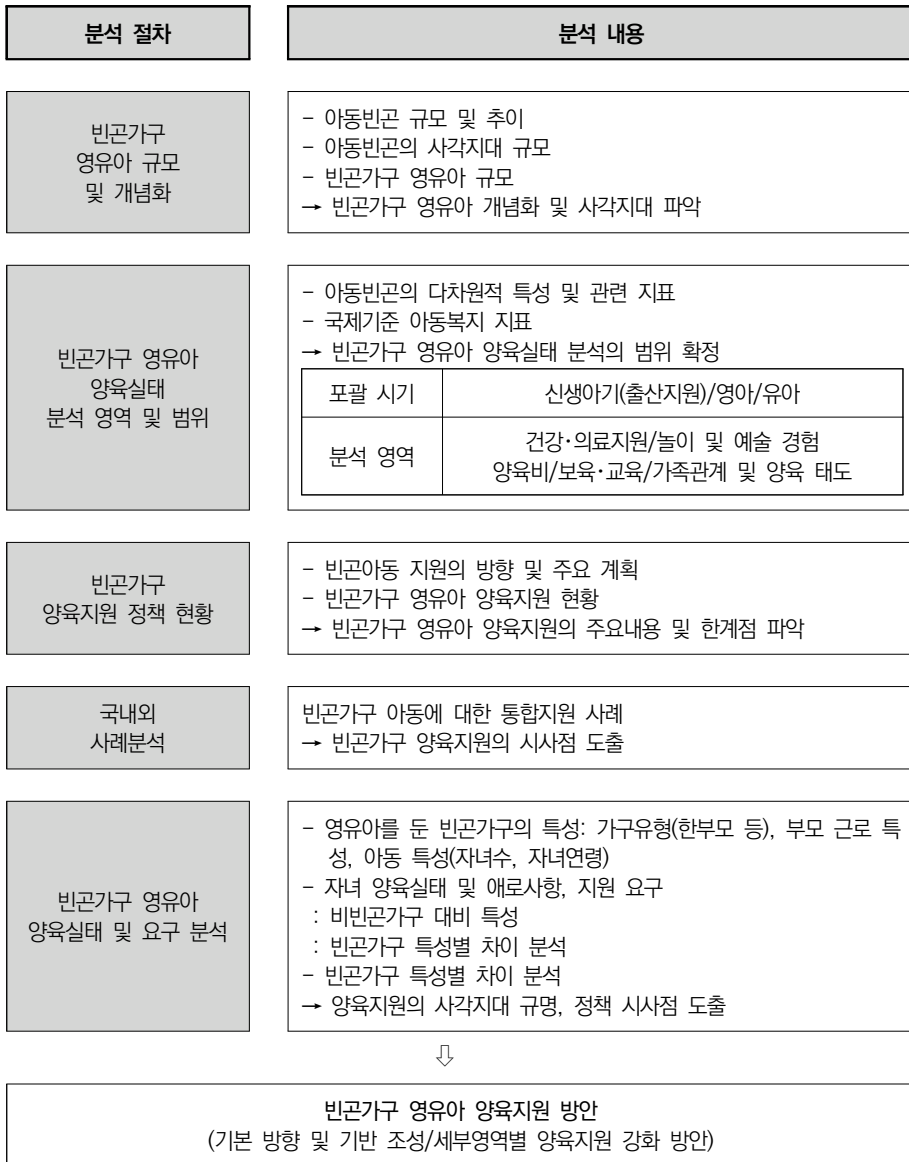
빈곤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나. 연구 절차 및 분석틀

이상의 연구내용 및 방법에 따른 연구 절차 및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I-3-1]과 같다.

6) 미국 헤드 스타트, 영국 슈어 스타트, 캐나다 페어스타트, 호주 베스트 스타트 등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분석틀



II

연구의 배경

01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규모 및 추이

02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과
양육실태의 분석 범위

II. 연구의 배경

제2장에서는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규모 및 추이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지표들을 검토하여 이 연구의 빈곤가구 자녀양육 실태의 분석 영역들을 도출하였다.

1.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규모 및 추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가정 영유아의 규모, 타 아동연령대 대비 영유아 아동빈곤율 추이 및 변화의 특성, 그리고 빈곤 사각지대 현황 등을 파악한 바는 이하와 같다.

가. 빈곤 영유아 규모 및 추이

우선 빈곤 영유아의 규모와 정부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영유아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영유아 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영유아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규모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0~5세 영유아 빈곤율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영유아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규모는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통계를 활용하였다.

〈표 II-1-1〉은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0~5세 수급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0~5세아를 둔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통계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개인 단위의 숫자와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06년 기준 145만명 수준이었다. 2014년까지는 수급자가 점차 감소하여 124만 정도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149만 명으로 나타난다. 0~5세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6년 4만 2천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만 6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수급자 대비

0~5세 수급자 비율도 2006년 2.9%에서 2017년 1.8%로 감소하였다.

영유아 수급자 수, 전체 수급자 대비 영유아 수급자 수의 감소는 영유아 빈곤률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 영유아 수급자 규모가 감소한 이유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개인 또는 부부는 자신들의 생계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다.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어렵다. 결혼 비용, 아동양육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취약한 계층의 개인과 가구에만 해당되지 않으나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이후 자녀양육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이들 가구는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가 아동을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표 II-1-1〉 0~5세 수급자 수 및 비율(2006~2017)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수급자수(천명)	0~5세 수급자수(천명)	0~5세 수급자 비율(%) ¹⁾
2006	1,450	42	2.93
2007	1,463	40	2.71
2008	1,444	36	2.51
2009	1,483	37	2.50
2010	1,458	35	2.39
2011	1,380	32	2.31
2012	1,300	29	2.24
2013	1,259	27	2.13
2014	1,237	26	2.08
2015	1,554	31	2.01
2016	1,540	29	1.88
2017	1,492	26	1.76

주: 전체수급자 수 대비 0~5세 영유아 수급자 수 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http://kosis.kr> (2019. 5. 10. 인출)

〈표 II-1-2〉는 전체인구, 0~5세 아동인구, 0~5세아 비율, 기초생활수급 영유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06년 4,889만명에서 2017년

5,12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0~5세 아동수는 297만명에서 262만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심화되어 온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 결과, 전체인구에서 0~5세아 비율은 2006년 6.1%에서 2017년 5.1%로 감소하였다. 영유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영유아 비율도 2006년 1.4%에서 1%로 감소하였다. 전체 영유아 중에서 수급영유아 비율이 감소한 것은 영유아 빈곤률이 감소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양육과 교육 부담 등으로 저소득층에서 출산을 꺼리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표 II-1-2〉 0~5세아 비율/0~5세아 수급자 비율(200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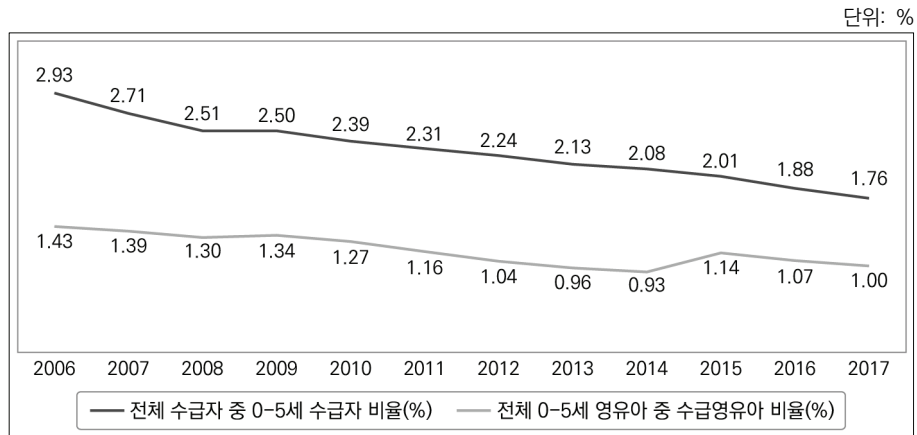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분	전체인구(천명)	0~5세아 수(천명)	0~5세 아동 비율	수급영유아 비율(%) ¹⁾
2006	48,887	2,973	6.08	1.43
2007	49,130	2,843	5.79	1.39
2008	49,405	2,797	5.66	1.30
2009	49,657	2,760	5.56	1.34
2010	49,880	2,735	5.48	1.27
2011	50,111	2,755	5.50	1.16
2012	50,345	2,796	5.55	1.04
2013	50,559	2,792	5.52	0.96
2014	50,763	2,755	5.43	0.93
2015	50,952	2,740	5.38	1.14
2016	51,113	2,709	5.30	1.07
2017	51,231	2,623	5.12	1.00

주: 전체 0~5세 아동 수 대비 0~5세 수급자 수 비율을 의미
 자료: 1) 전체 0~5세 아동 수는 “통계청. 연령별 주민등록인구(<http://kosis.kr>)를 활용 (2019. 5. 10. 인출)”,
 2) 0~5세 수급자 수는 “통계청.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http://kosis.kr> 활용 (2019. 5. 10. 인출)”

[그림 II-1-1]은 영유아 수급자 비율을 1) 전체 수급자 대비(왼쪽 라인), 2) 전체 영유아 대비 비율로 구분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영유아 수급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1-1] 영유아 수급자 수 비율 추이(2006-2017)



자료: 1) 전체 0-5세 아동 수는 "통계청. 연령별 주민등록인구(<http://kosis.kr>)를 활용 (2019. 5. 10. 인출)",
2) 0-5세 수급자 수는 "통계청.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http://kosis.kr> 활용 (2019. 5. 10. 인출)"

나. 연령대별 빈곤 영유아 규모 추이

〈표 II-1-3〉은 아동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아동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 아동 수의 감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표 II-1-3〉 전체인구 대비 연령별 아동인구 비율(2006-2018)

단위: 천명, %

구분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06	2,973	6.08	4,009	8.2	2,146	4.39	1,932	3.95
2007	2,843	5.79	3,895	7.97	2,143	4.38	2,018	4.13
2008	2,797	5.66	3,723	7.62	2,122	4.34	2,101	4.3
2009	2,760	5.56	3,537	7.23	2,088	4.27	2,142	4.38
2010	2,735	5.48	3,363	6.88	2,031	4.16	2,139	4.38
2011	2,755	5.5	3,187	6.52	1,963	4.02	2,117	4.33
2012	2,796	5.55	3,000	6.14	1,914	3.91	2,083	4.26
2013	2,792	5.52	2,873	5.88	1,857	3.8	2,028	4.15
2014	2,755	5.43	2,828	5.78	1,754	3.59	1,961	4.01
2015	2,740	5.38	2,792	5.71	1,619	3.31	1,912	3.91
2016	2,709	5.3	2,769	5.66	1,503	3.08	1,856	3.8
2017	2,623	5.12	2,789	5.71	1,431	2.93	1,753	3.59
2018	2,491	4.86	2,830	5.79	1,380	2.82	1,617	3.31

자료: 1) 전체 0-5세 아동 수는 "통계청. 연령별 주민등록인구(<http://kosis.kr>)를 활용 (2019. 5. 10. 인출)",
2) 0-5세 수급자 수는 "통계청.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http://kosis.kr> 활용 (2019. 5. 10. 인출)"

〈표 II-1-4〉는 아동의 연령대별로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의 각종 소득에 사적이전 수입을 합산한 소득이다. 아동빈곤율은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인다. 2016년 전체 빈곤율은 18.3%인 반면, 아동빈곤율은 7.6%에 불과하였다.

전체 빈곤율이 아동빈곤율에 비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노인빈곤율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시장소득 기준)은 50%를 넘어간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77). 아동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경향이 저소득층 부부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전체아동의 경우 빈곤율은 2006년에 12%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에 7.6%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2017년 이후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조사 방식과 표본이 변화됨(통계청, 2019)에 따라 빈곤율 변화 양상을 해석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변화가 표본 구성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실제 빈곤율이 높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또한 분기별 빈곤율은 계절 요인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연간 빈곤율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간 빈곤율과 분기별 빈곤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빈곤율을 비교할 수 있다. 시장소득 기준 0~5세 아동빈곤율은 2017년도 4/4분기 8.3%에서 2018년 같은 분기 9.8%로 다소 증가하였다.

2016년까지의 시장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의 감소는 긍정적인 성과이다. 표면적으로는 아동가구의 시장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과 관련된 아동가구의 특성이 변화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출산과 양육부담으로 인해 저소득 부부가구의 출산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이 많으며, 이러한 경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이다.

아동빈곤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0~5세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0~5세 영유아 아동의 경우

2006년 12.5%에 달했던 빈곤율이 2016년에 6.7%까지 감소했다. 2017년 1/1 분기에는 약 9%였으며, 2018년 동분기에는 9.1%를 나타냈다. 2017년 이후에 아동 빈곤율은 분기별로 변동성이 있으나, 단순히 비교하자면, 2016년까지의 감소 추세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0~5세 아동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다른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낮은 이유는 시장소득 증가로 인한 것이거나 시장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아동을 낳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표 II-1-4〉 시장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구분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전체아동	전체
2006	12.49	10.61	13.34	11.44	12.06	16.13
2007	11.76	11.59	12.03	13.07	12.27	16.68
2008	10.88	10.84	11.91	15.03	11.56	16.73
2009	10.57	11.87	11.17	12.18	11.65	17.31
2010	10.62	11.20	9.92	9.67	10.77	16.98
2011	10.30	10.72	9.48	14.32	10.61	17.00
2012	8.30	9.66	10.04	10.44	9.54	16.33
2013	8.28	7.68	9.15	9.71	8.35	16.65
2014	8.51	6.25	8.40	8.20	7.68	16.65
2015	8.66	7.09	6.98	12.80	8.14	17.34
2016	6.67	7.01	8.18	11.93	7.64	18.30
2017 1/4	8.99	7.57	11.49	13.77	9.13	19.9
2017 2/4	8.75	8.93	9.38	8.89	9.12	19.3
2017 3/4	7.52	8.22	11.60	6.21	8.81	19.7
2017 4/4	8.27	7.88	11.24	5.15	8.71	19.1
2018 1/4	9.14	7.71	10.70	12.70	9.20	20.9
2018 2/4	9.82	7.47	10.52	7.44	8.64	20.3
2018 3/4	9.86	8.25	11.24	13.42	9.62	21.4
2018 4/4	9.78	9.69	12.29	10.91	10.14	22.0

주: 1) 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함(가구원 수 균등화소득)을 사용하였음.

2) 아동빈곤율을 가구가중치에 아동수를 곱한 아동가중치를 적용하였음.

3)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을 의미

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도부터 샘플이 변경되었으며, 소득공표 또한 연간에서 분기별 자료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따라서 2017년 이후부터 빈곤율은 이전 년도와 비교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표 II-1-5〉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아동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공적이전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활용하여 추정된 결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경상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낮았다. 2016년 전체 빈곤율이 14.5%인 반면, 아동빈곤율은 6.9%를 차지했다. 전체아동 대상의 경상소득 빈곤율은 2006년 10.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 6.9%를 나타냈다. 이후 증가하여 최근 2018년 4/4분기에는 8.9%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0~5세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으며,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에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0~5세 아동의 경우, 아동빈곤율은 10.7%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 5.9%까지 낮아졌다.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8년 4/4분기에는 7.6%의 빈곤율을 보였다. 경상소득 기준 영유아 빈곤율의 감소는 정부의 공적이전이 이 연령대의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말해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와 가정양육수당의 보편화, 그리고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제도 도입 등이 영유아 빈곤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II-1-5〉 경상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구분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전체아동	전체
2006	10.66	9.73	11.69	9.22	10.49	13.82
2007	10.70	10.86	11.26	10.51	11.07	14.56
2008	8.77	10.25	9.95	14.41	10.25	14.54
2009	7.17	9.51	9.54	10.10	9.17	14.56
2010	7.77	9.42	8.58	8.77	8.86	14.02
2011	8.49	9.57	8.46	13.32	9.24	14.12
2012	6.89	9.11	10.79	10.07	9.00	14.27
2013	7.15	7.61	9.23	8.74	7.79	14.07
2014	7.33	5.96	7.68	7.79	7.01	13.79
2015	7.72	6.17	6.10	11.14	7.21	13.6
2016	5.90	6.89	7.74	9.75	6.90	14.5

구분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전체아동	전체
2017 1/4	8.89	9.06	9.22	14.69	9.18	16.3
2017 2/4	7.46	8.59	9.17	11.08	8.57	15.3
2017 3/4	6.85	8.12	10.84	5.67	8.08	16.0
2017 4/4	6.43	7.74	10.69	2.65	7.68	14.5
2018 1/4	9.42	7.98	8.49	12.85	8.95	17.3
2018 2/4	8.85	6.76	9.05	9.32	8.04	16.2
2018 3/4	8.25	7.02	9.76	13.07	8.22	17.0
2018 4/4	7.57	9.36	10.04	9.63	8.91	17.6

주: 1) 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함(가구원 수 균등 화소득)을 사용하였음.

2) 아동빈곤율을 가구가중치에 아동수를 곱한 아동가중치를 적용하였음.

3) 경상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합을 의미

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도부터 샘플이 변경되었으며, 소득공표 또한 년간에서 분기별 자료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따라서 2017년 이후부터 빈곤율은 이전 년도와 비교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표 II-1-6〉은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 사회보험 기여금, 세금 납부액 등을 차감한 실제 소비 지출이 가능한 소득이다.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사회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후에도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빈곤층 등 저소득층 가구는 다른 소득계층의 가구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경상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에 비해 낮았다. 2016년 전체 빈곤율은 13.8%인 반면, 전체 아동빈곤율은 6.7%에 불과했다.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아동의 빈곤율은 2006년 10.1%에서 2016년 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2018년 4/4분기에는 8.7%로 다소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0~5세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15-17세 아동의 빈곤율이 약 9.0%로 가장 높았다. 0~5세 아동빈곤율은 2006년 10.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6.10%까지 감소하였다. 그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18년 4/4 분기에는 7.0%로 나타났다.

〈표 II-1-6〉 가치분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구분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전체아동	전체
2006	10.60	9.43	10.97	9.05	10.07	13.37
2007	10.66	10.64	10.71	9.72	10.73	14.05
2008	8.69	10.13	9.40	12.62	9.87	14.15
2009	7.05	9.15	8.98	9.40	8.85	14.07
2010	7.49	9.01	8.31	8.21	8.54	13.84
2011	7.92	8.76	8.68	13.50	8.86	13.75
2012	6.18	9.09	10.58	8.30	8.58	13.67
2013	7.00	7.10	9.30	8.09	7.53	13.40
2014	6.82	6.05	7.90	7.82	6.97	13.28
2015	7.25	5.83	5.61	10.03	6.89	12.83
2016	6.01	6.90	7.02	8.98	6.71	13.82
2017 1/4	8.65	8.50	9.17	14.25	9.04	15.7
2017 2/4	7.45	8.86	9.10	11.08	8.66	14.9
2017 3/4	6.87	8.28	10.52	7.25	8.21	15.5
2017 4/4	6.57	8.66	10.51	4.43	8.12	14.0
2018 1/4	9.13	7.35	8.26	12.19	8.60	16.8
2018 2/4	8.28	7.52	9.07	10.69	8.23	15.7
2018 3/4	7.56	8.02	9.57	15.78	8.52	16.6
2018 4/4	6.99	9.33	10.08	9.88	8.66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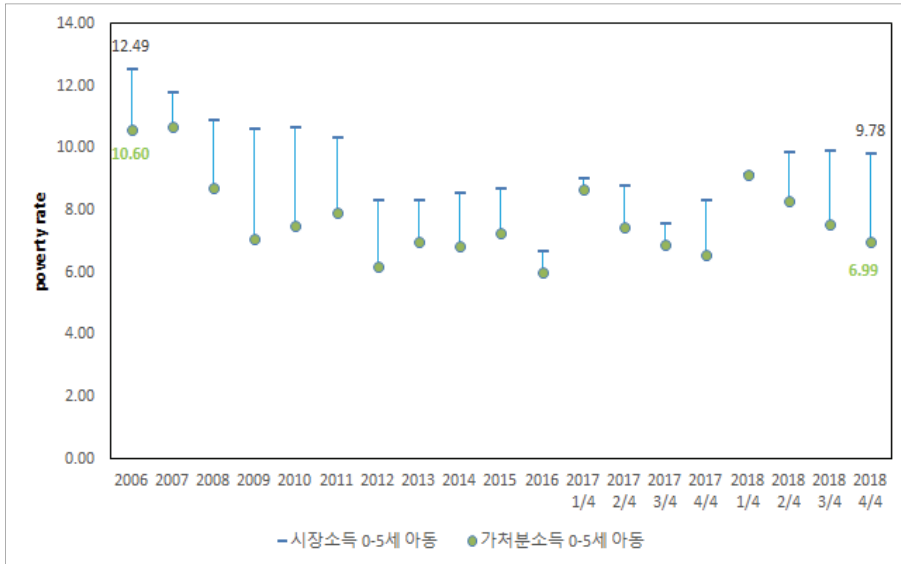
주: 1) 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함(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음.
 2) 아동빈곤율을 가구가중치에 아동수를 곱한 아동가중치를 적용하였음.
 3) 가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
 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도부터 샘플이 변경되었으며, 소득공표 또한 년간에서 분기별 자료로 변경되었됨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 빈곤율은 이전 년도와 비교 시 주의를 요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다음 그림은 연령대별로 시장소득과 가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시장소득과 가치분소득 빈곤율간의 차이는 공적이전과 조세제도가 아동빈곤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II-1-2]는 0-5세 아동빈곤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공적이전 소득과 조세지출은 0~5세 아동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큰 해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격차가 가장 큰 2009년이다. 2017년 이후부터, 4/4분기에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크다.

[그림 II-1-2] 0~5세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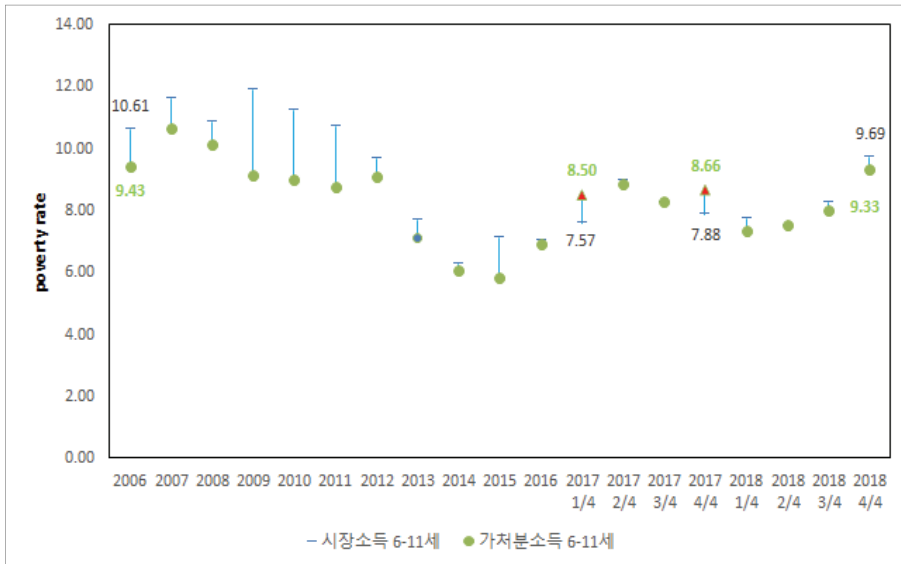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그림 II-1-3] 6~11세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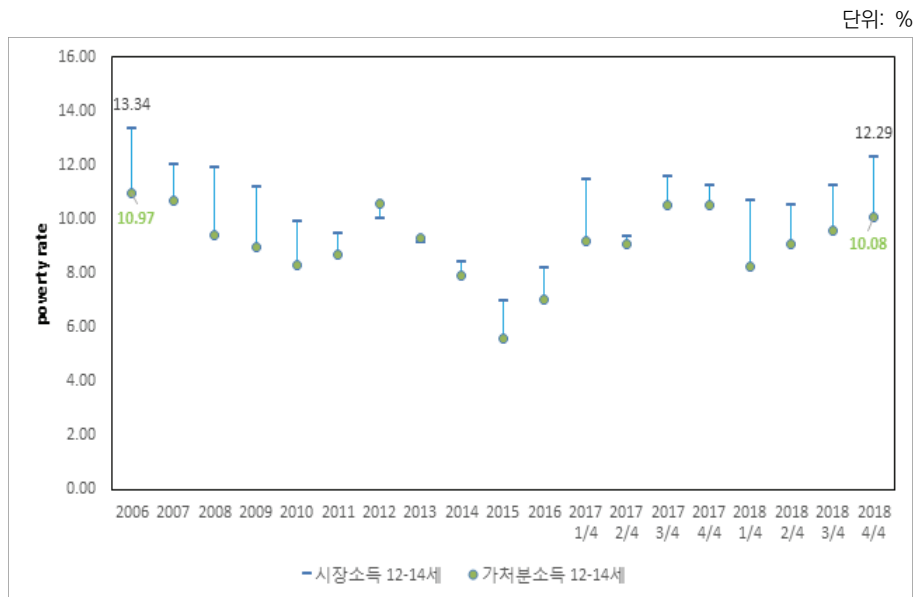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위의 [그림 II-1-3]은 6~11세 아동빈곤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6~11세 아동의 경우 공적이전 및 조세지출의 빈곤감소 효과는 0~5세 아동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양육수당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의 각종 공적이전이 0~5세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1-4]는 12~14세 아동빈곤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2~14세 아동의 경우 각종 공적이전 및 조세지출의 빈곤감소 효과는 2017년과 2018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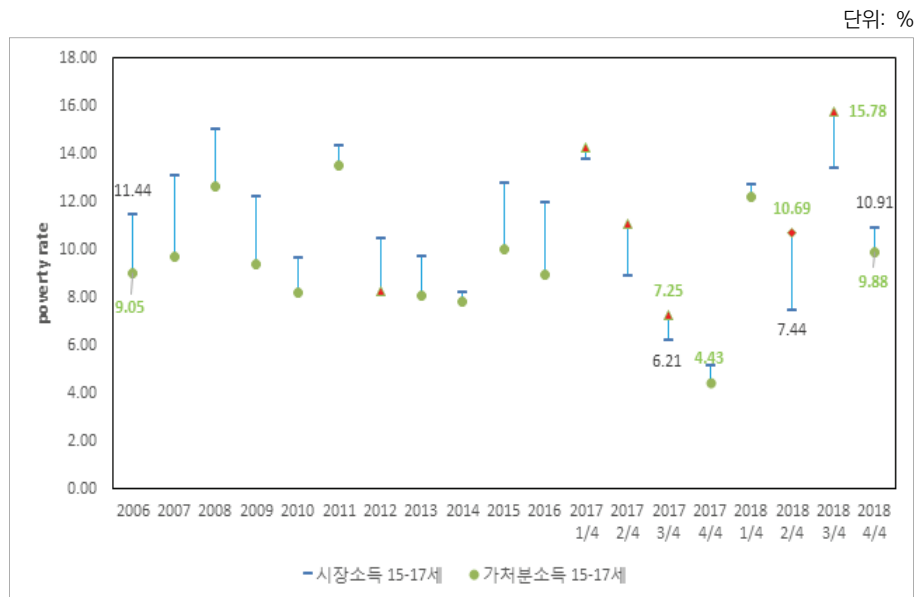
[그림 II-1-4] 12~14세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그림 II-1-5]는 15~17세 아동빈곤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5~17세 아동의 빈곤율 추이는 최근 들어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 1/4분기까지는 공적 소득이전과 조세지출이 큰 폭의 빈곤감소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가처분소득 기준의 빈곤율이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II-1-5] 15~17세 아동빈곤율 추이(2006-2018)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다. 연령대별 가구 단위 영유아 빈곤율

〈표 II-1-7〉은 시장소득 기준 아동가구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아동빈곤율은 개인 단위 아동빈곤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 전체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율은 2006년 10.2%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 6.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0~5세 아동가구가 5.3%로 가장 낮았다. 6~11세, 12~14세, 15~17세 순으로 빈곤율이 높았다.

아동가구 빈곤율은 최근 들어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4분기 기준으로 아동가구 빈곤율은 7.8%였다.

〈표 II-1-7〉 시장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구분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전체아동
2006	9.88	9.27	11.90	9.12	10.22
2007	10.24	9.66	11.11	11.81	10.59
2008	8.82	8.76	10.38	13.18	9.71

구분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전체아동
2009	7.78	9.07	9.60	11.09	9.52
2010	8.91	9.54	9.16	8.88	9.74
2011	8.39	9.29	8.68	13.36	9.26
2012	6.00	7.96	8.80	9.04	8.10
2013	6.37	6.21	7.74	8.16	6.97
2014	5.58	5.23	6.93	7.35	6.23
2015	6.23	5.17	6.26	11.00	6.42
2016	5.34	5.85	7.18	10.03	6.81
2017 1/4	5.59	5.50	9.06	8.95	6.66
2017 2/4	7.69	6.23	9.08	8.55	7.84
2017 3/4	6.13	6.68	10.54	6.29	7.57
2017 4/4	5.07	5.80	9.20	3.30	6.58
2018 1/4	6.77	5.24	7.99	9.22	7.30
2018 2/4	6.54	5.35	6.98	5.71	6.38
2018 3/4	6.13	6.12	8.48	8.97	7.24
2018 4/4	6.48	7.11	9.06	8.09	7.83

주: 1) 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을 이용, 소득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함(가구원 수 균등화소득).
 2) 아동가구 빈곤율은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음.
 3)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을 의미
 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도부터 샘플이 변경되었으며, 소득공표 또한 년간에서 분기별 자료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따라서 2017년 이후부터 빈곤율은 이전 년도와 비교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표 II-1-8〉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 아동빈곤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경상소득 기준, 가구 단위 아동빈곤율은 시장소득에 비해 낮았다. 2006년 아동가구 빈곤율은 8.7%에서 2016년 5.9%로 감소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4 분기에 아동가구 빈곤율은 6.7%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11세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6년 6~11세 아동빈곤율은 5.3%까지 감소하였다. 6~11세 아동가구 다음으로 0~5세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5.4%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1-8〉 경상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구분	0-5세 아동	6-11세	12-14세	15-17세	전체아동
2006	8.27	8.22	9.65	8.22	8.68
2007	9.24	9.38	10.14	9.64	9.50
2008	7.46	7.99	8.66	10.99	8.42
2009	6.04	7.69	7.09	8.82	7.91
2010	6.32	7.67	7.67	6.37	7.73
2011	6.82	7.91	7.75	12.65	7.91
2012	4.98	7.37	8.42	7.97	7.26
2013	6.04	5.87	7.06	7.20	6.45
2014	5.00	4.80	6.54	6.56	5.59
2015	5.46	4.62	5.33	9.75	5.77
2016	5.37	5.27	6.43	6.95	5.86
2017 1/4	5.93	5.90	8.39	8.50	6.36
2017 2/4	6.24	6.43	8.66	7.15	7.21
2017 3/4	5.40	6.18	9.29	4.84	6.46
2017 4/4	4.94	5.98	9.07	1.79	6.13
2018 1/4	6.59	4.87	6.49	9.01	6.48
2018 2/4	5.78	5.22	7.39	6.38	6.10
2018 3/4	5.09	5.50	7.74	11.52	6.55
2018 4/4	4.99	6.50	8.04	7.43	6.74

주: 1) 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이용, 소득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함(가구원 수 균등화소득).
 2) 아동가구 빈곤율은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음.
 3) 경상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합을 의미
 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도부터 샘플이 변경되었으며, 소득공표 또한 연간에서 분기별 자료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따라서 2017년 이후부터 빈곤율은 이전 년도와 비교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표 II-1-9〉는 가구단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가구 빈곤율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6년 8.4%에서 2016년 5.7%로 빈곤율이 감소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4분기에는 6.7%를 기록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처분소득의 경우 0~5세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0~5세 아동가구 빈곤율은 2016년 5.0%로 나타났다. 2018년 3/4분기에 0~5세 아동가구 빈곤율은 4.7%까지 감소하였다.

〈표 II-1-9〉 가처분소득 기준 연령별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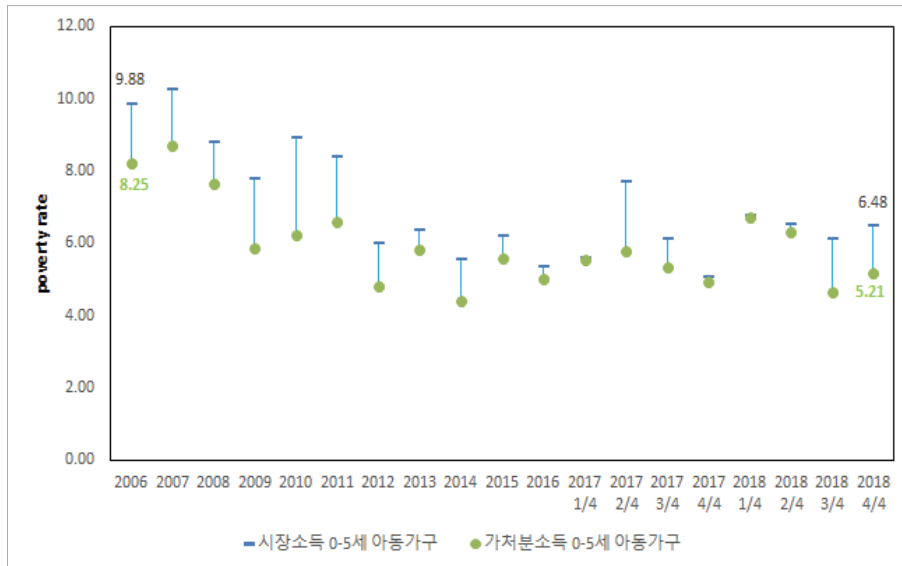
구분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전체아동
2006	8.25	8.04	9.15	7.67	8.36
2007	8.73	9.14	9.87	8.56	9.33
2008	7.65	8.15	8.67	10.91	8.47
2009	5.89	7.38	7.01	7.90	7.50
2010	6.25	7.23	7.35	6.64	7.54
2011	6.60	7.58	7.75	12.18	7.70
2012	4.82	7.34	8.69	7.77	7.31
2013	5.85	6.06	7.42	6.78	6.43
2014	4.41	4.74	6.63	6.09	5.37
2015	5.59	4.71	5.41	9.65	5.80
2016	5.02	5.40	6.14	7.27	5.74
2017 1/4	5.55	5.82	7.82	7.72	6.07
2017 2/4	5.82	6.59	8.09	5.38	6.82
2017 3/4	5.36	6.66	8.80	6.01	6.66
2017 4/4	4.95	6.08	7.92	1.79	5.87
2018 1/4	6.75	5.15	6.89	8.40	6.56
2018 2/4	6.35	6.04	7.60	7.41	6.49
2018 3/4	4.67	5.80	8.31	12.18	6.69
2018 4/4	5.21	6.47	7.49	7.40	6.73

주: 1) 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을 이용, 소득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함(가구원 수 균등화소득).
 2) 아동가구 빈곤율은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음.
 3)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
 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도부터 샘플이 변경되었으며, 소득공표 또한 년간에서 분기별 자료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따라서 2017년 이후부터 빈곤율은 이전 년도와 비교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그림 II-1-6]은 0~5세 아동가구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개인 단위보다 가구 단위에서 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0~5세 아동 가구 단위에서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6] 0~5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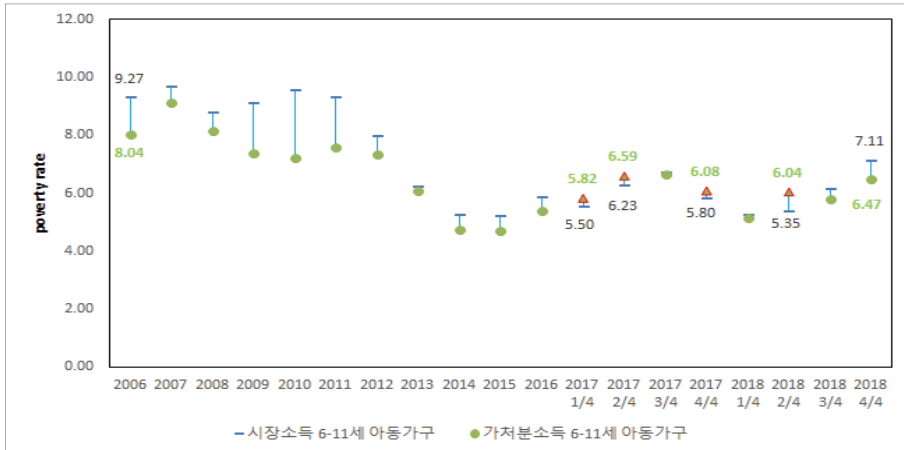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그림 II-1-7]은 6~11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6~11세 아동가구의 경우 2006~2016년 기간 동안 각종 정책의 빈곤감소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이후에는 일부 분기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의 빈곤율이 오히려 시장소득 기준에 비해 다소 높은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6~11세 아동가구의 경우는 0~5세 아동과는 달리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기준의 빈곤율이 시장소득 빈곤율에 비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II-1-7] 6~11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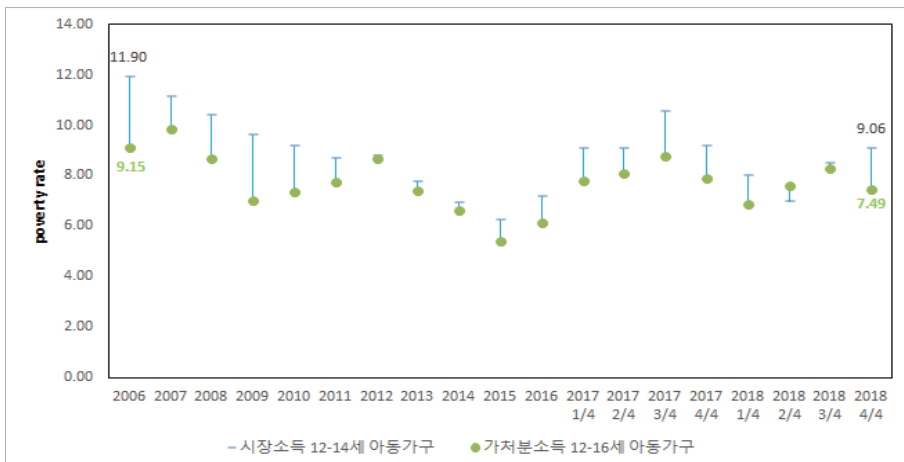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그림 II-1-8]은 12~14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2~14세 아동가구의 경우에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개인 단위보다 가구 단위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8] 12~14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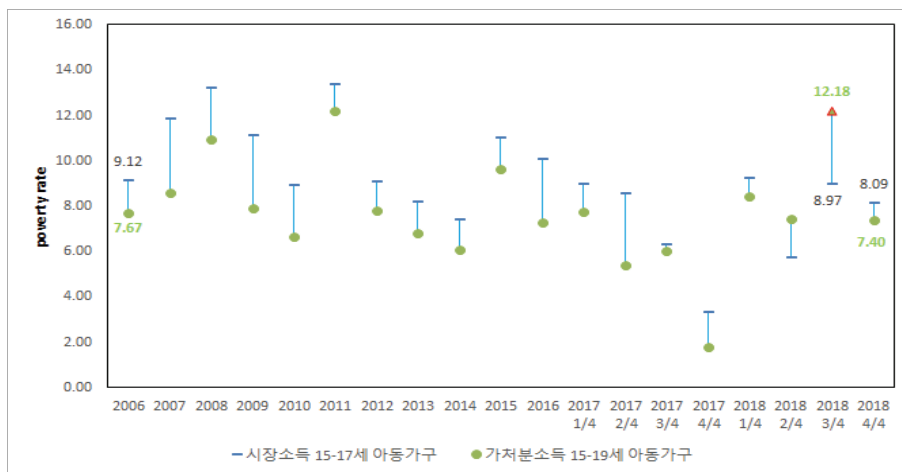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그림 II-1-9]는 15~17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5~17세 아동가구 빈곤율은 분석대상 기간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변화가 심한 양상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공적 이전과 조세지출은 15~17세 아동가구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효과를 보였다. 0~5세를 제외한 아동가구에 비해서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높은 편이다. 다만 2018년 3/4분기에는 오히려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시장소득에 비해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 II-1-9] 15~17세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전체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라. 비수급 빈곤 영유아 규모 추이

〈표 II-1-10〉은 영유아 아동빈곤율 아동가구 기초생활 수급율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비교가능한 가장 최근 시점인 2015년의 경우 영유아 아동 빈곤율은 7.3%인 반면, 기초수급 영유아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그 차이 6.1%p는 빈곤가구에 속하나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초보장제도가 소득만으로 수급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율과 수급율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자격기준이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30% 이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기

도 하다. 따라서 6.1%p 차이는 비수급 영유아 비율을 과대추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수치라고 본다.

2006년에 비해 이러한 비수급 빈곤 영유아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영유아가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30~50%에 해당하는 아동가구는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⁷⁾

이와 같이 중위소득 기준 빈곤선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간의 격차가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서 빈곤층에 속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1-10〉 0~5세 영유아 빈곤율과 기초보장수급율 추이(2006~2018)

단위: %

연도	가처분소득 기준 영유아(0~5세) 빈곤율	기초보장수급 영유아 비율	영유아 빈곤율과 기초보장수급율 차이 ¹⁾
2006	10.60	1.43	9.17
2007	10.66	1.39	9.27
2008	8.69	1.30	7.39
2009	7.05	1.34	5.71
2010	7.49	1.27	6.22
2011	7.92	1.16	6.76
2012	6.18	1.04	5.14
2013	7.00	0.96	6.04
2014	6.82	0.93	5.89
2015	7.25	1.14	6.11
2016	6.01	1.07	4.94
2017 1/4	8.65	1.00	7.65
2017 2/4	7.45		6.45
2017 3/4	6.87		5.87
2017 4/4	6.57		5.57

주: 영유아 기초보장수급율은 분기자료가 없음.

자료: 1) 전체 0~5세 아동 수는 “통계청. 연령별 주민등록인구(<http://kosis.kr>)를 활용 (2019. 5. 10. 인출)”,

2) 0~5세 수급자 수는 “통계청.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http://kosis.kr> 활용 (2019. 5. 10. 인출)”

7)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각종 공제를 차감한 순자산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비해 더 낮을 수 있다. 따라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중위소득 30%에 못 미치는 가구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0~5세아의 경우는 2006년 이후 본격화된 비용지원으로 이의 연령대에 비해 아동 빈곤율이 크게 감소한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감소 효과는 가구 단위에서 나타나므로 빈곤아동이 직면하는 다양한 결핍이 완화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초보장비 수급 빈곤 영유아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에 처한 영유아가 존재하므로 이들의 결핍도 우려된다. 2018년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에도 불구하고, 빈곤가구의 경우는 제한된 소득으로 지출을 배분할 때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를 제외하면 가용할 수 있는 소득규모는 매우 낮아지게 된다. 빈곤 아동가구는 주거비 과부담가구나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정은희, 2014: 6) 때문이다. 필수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배분해야 하는데, 부모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지출이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빈곤가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충분한 지출을 확보하는 것은 후순위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유아 가구에 필요한 지원은 일차적으로 주거관련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가정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영유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식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현금지원 방식은 가구내 지출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강제하기 어렵다. 충분한 현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을 위한 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2.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과 양육실태의 분석 범위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파악하여 양육실태 파악의 분석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 또는 박탈에 관한 국외 지표와 다차원적 아동빈곤과 박탈에 관한 국내지표를 살펴본 바는 이하와 같다.

가.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아동빈곤은 단지 경제적 결핍만 아니라, 영양과 신체 발육, 질병과 정서 장애,

주거 환경, 교육 투자와 학습 여건, 부모의 돌봄과 양육 태도, 문화적·사회적 자본 등 다차원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여유진, 2018: 29). 특히 소득 중심의 아동빈곤의 측정은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전반적 경험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장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므로 빈곤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류정희·함영진·전진아·이주연·김은지, 2017: 11).

1) 국외 지표⁸⁾

아동빈곤은 광의의 개념에서 아동복지(child well-being)과 연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OECD, EU, UNICEF 등 국제기구들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의 차원에서 아동빈곤의 다차원성을 논의해 왔으며, 국제기구의 아동빈곤 연구는 주로 물질적 박탈 정도에 기반하여 측정된다. 유니세프의 다차원적 아동빈곤 박탈지표에는 이하 <표 II-2-1>에서와 같이 주거, 위생 등 물리적 환경과 위생, 음식 및 영양과 보건 등 건강권 보장, 교육, 정보 접근성을 포괄하고 있다(김은주, 2015: 113).

<표 II-2-1> UNICEF 아동빈곤 국제비교연구에서 정의하는 다차원적 박탈지표와 기준선

박탈 (Deprivation)	덜 심각한 박탈의 기준선(less severe)	심각한 박탈의 기준선(severe)
주거 (Shelter)	방 1개당 4인 이상이 거주하는 집에 살거나, 바닥재나 지붕이 적절하지 못한 집에 사는 아동	방 1개당 5인 이상이 거주하는 집에 살거나, 바닥재가 없는 집에 사는 아동
위생 (Sanitation)	비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	화장실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아동
식수 (Water)	비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하는 아동 (예. 공동우물 혹은 물 길인데 30분 이상 걸리는 식수원을 이용하는 경우)	강, 연못, 호수 등 표층수를 사용하거나 물 길인데 30분 이상 걸리는 식수원을 이용하는 아동
음식/영양 (Food)	국제표준에 비해 발육(나이 대비 키), 체력저하(키 대비 몸무게), 저체중(나이 대비 몸무게) 상태가 -2 표준편차 이하인 아동	국제표준에 비해 발육(나이 대비 키), 체력저하(키 대비 몸무게), 저체중(나이 대비 몸무게) 상태가 -3 표준편차 이하인 아동
보건 (Health)	2세까지 여덟 가지 기본적인 백신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	백신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 또는 호흡기 감염/설사 같이 병에 의료처리를 받지 못한 아동

8) 국외 지표는 김은주(2015), 여유진 외(2016), 류정희 외(2017)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박탈 (Deprivation)	덜 심각한 박탈의 기준선(less severe)	심각한 박탈의 기준선(severe)
교육 (Education)	7~17세 아동 중에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	7~17세 아동 중 학교를 전혀 가본 적이 없거나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동
정보 (Information)	3~17세 아동 중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접 근할 수 없는 아동	3~17세 아동 중 라디오, 텔레비전, 전 화, 신문, 컴퓨터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아동

자료: 김은주(2015). 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아동빈곤. 한국사회정책, 22(3), p. 113.

(원자료: UNICEF(2007). Global study on child poverty and disparities 2007~2008 guide.)

EU의 아동의 물질적 박탈을 중심으로 한 다차원성 지표인 EU-SILC 아동박탈 진단 항목을 <표 II-2-2>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인 의식주 및 여가와 문화생활 그리고 건강과 관련한 박탈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최소한의 의복, 세끼 식사 및 과일 및 단백질 섭취, 연령에 적합한 도서, 게임 및 레저활동 보장, 특별한 날 및 휴가를 즐길 금전적/기회적 여유, 치과/의사 진료, 최소한의 실내 및 실외 공간 등이다(여유진 외, 2016: 73). 특히, 기본적인 의식주 및 건강생활뿐만 아니라 용품, 공간, 비용 등에서 아동의 놀 권리의 보장을 중요하게 다룸을 알 수 있다.

<표 II-2-2> EU-SILC 아동박탈 진단 항목

EU-SILC 아동박탈 진단 항목(2014년 모듈) ^{자료)}	비고
1. 약간의 새옷 2. 두 켤레의 잘 맞는 신발	기본생활
3.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 4. 하루 세 끼 5. 하루 한 끼 정도의 육류나 어류	식사/영양
6. 아동 연령에 맞는 도서 7. 야외 레저활동용 장비 8. 실내 게임 9. 숙제할 적절한 공간	양육환경, 문화생활, 주거환경(공간)
10. 필요할 경우 치과 진료 11. 필요할 경우 의사 진료	의료
12. 정기적 레저 활동(스포츠, 모임 등) 13. 특별한 날 축하 14. 때때로 놀거나 간식을 먹기 위해 친구 초대 15. 비용이 드는 소품이나 학교 행사에 참석	문화생활

EU-SILC 아동박탈 진단 항목(2014년 모듈) ^{자료)}	비고
16.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동네 실외 공간	주거환경(안전), 놀권리
17. 매년 1주일 정도 휴가	문화생활

주: 1) EU-SILC 모듈은 1~15세 아동의 물질적 박탈에 관한 것으로, 아동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에서 그 항목을 할 여력이 없다면 그 항목이 비자발적으로 결핍된 것으로 간주함.

2) 비고는 본 연구진이 분류한 것임.

자료: 여유진 외(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3. <표 2-4> (원자료: Eurostat March 2016)

TÁRKI 사회조사연구소에서는 유럽의회의 의뢰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아동복지의 차원을 다음의 아동빈곤 다차원적 지표(여유진 외, 2016: 74)로 정리하였다. A차원은 물질적 차원으로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접근가능한 물질적 복지의 차원이며, B차원은 비물질적 차원으로 구분되며(여유진 외, 2016: 75) 아동의 연령에 따라 0~5세, 6~11세, 12~17세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표 II-2-3> TÁRKI 사회조사연구소 아동빈곤 다차원적 지표

차원	0-5세 (0-2/3-5)	6-11세	12-17세
A1: 소득	- 빈곤율	- 빈곤율	- 빈곤율
	- 상대적 중위빈곤위험값 - 지속빈곤위험율 - 빈곤선 주위의 분포(분산)		
A2: 물질적 박탈	- 일차적 지표	- 일차적 지표 - 교육 지표	- 일차적 지표 - 교육지표
A3: 주택	- 주거비 - 과밀	- 주거비 - 과밀	- 주거비 - 과밀
A4: 노동시장결착	- 저노동활동참여 (무직 포함) - 아동 케어	- 저노동활동 참여 (무직 포함) - 아동 케어	- 저노동활동 참여 (무직 포함) - 아동 케어
B1: 교육	- 유치원 참여	- 10세 학생의 (낮은) 독해 능력	- 10세 학생의 (낮은) 독해 능력 - 조기 자퇴(퇴학) (18-24세)
B2: 건강	- 영아사망률 - 분만전후 사망률 - 예방접종 - 저체중 - 모유 수유	- 비만 - 매일 과일섭취 - 주중 아침식사	- 주관적 건강 - 신체 활동
	- 출생 시 기대수명(by SES)		

차원	0-5세 (0-2/3-5)	6-11세	12-17세
B3: 위험노출과 위험행동			- 10대 출산 - 흡연 - 음주 - 약물
B4: 학교생활과 관계, 가족환경	- 한부모가구 비율	- 한부모가구 비율	- 한부모가구 비율
B5: 지역사회 환경	- 우범지역 - 공해나 불결한 지역		

주: B3 위험노출과 위험행동은 12~17세에만 해당 세부지표가 존재함
 자료: 여유진 외(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4. (원자료: TARKI, 2010, p. 21, Table 1)

영국정부의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영역과 측정치는 다음 <표 II-2-4>와 같다. EU의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물질적 박탈, 근로 및 부채,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고용능력 등 경제적 여건에 관한 영역과 더불어 열악한 주택 여건, 교육기회, 안정적인 가족환경을 포함하며, 특히 부모의 건강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2-4> 영국정부의 아동빈곤 다차원적 영역과 측정치

차원	빈곤영역	정의
1	소득과 물질적 박탈 (Income and material deprivation)	- 소득: 가구에 유입되는 금전. 봉급, 급여 혹은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이득일 수 있음. - 물질적 박탈: 아동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가 결핍된다면 물질적 박탈을 경험할 수 있음.
2	무직 (Worklessness)	- 일자리 없음: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구. 통계청 정의는 16세 이상인 가구원 중 아무도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는 가구. 이러한 가구원은 실업자 혹은 비경활일 수도 있음.
3	감당할 수 없는 부채 (Unmanageable debt)	-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부채, 현재의 재정상태로 갚을 수 없는 상태
4	빈한한 주택 (Poor housing)	- 춥고, 습하고, 과밀하며, 수리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고립된 지역에 있는 것
5	부모의 기술 수준 (Parental skill level)	- 아동 부모의 교육 수준과 고용능력(employability)
6	양질의 교육에의 접근 (Access to quality education)	- 양질의 조기교육에 접근하는 것과 성공적으로 학업에 참가하는 것

차원	빈곤영역	정의
7	가족 안정성 (Family stability)	- 아동이 가족해체의 경험 없는 안정적 가족환경에서 자라는 것
8	부모의 건강 (Parental health)	

자료: 1) 여유진 외(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6.

2) HM Government(2012). Measuring Child Poverty: A consultation on better measures of child poverty. p. 17.

빈곤아동 통계 개발을 위해 OECD, UNICEF, EU의 아동복지 및 빈곤지표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류정희 외(2017: 13-14)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2-5>를 보면, 크게 소득과 재산, 물질적 박탈, 일자리, 주거, 건강, 위험행동, 건강행동, 안전, 교육, 가족환경, 지역사회,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등의 13개로 구분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중점이 되는 대상인 영유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과 일자리, 물질적 박탈, 주거환경, 건강상태 및 영양, 교육기회, 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족환경, 지역사회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I-2-5〉 아동복지 및 아동빈곤 다차원적 지표

구분	OECD(2015) 아동복지지표	UNICEF 아동복지지표	EU(TARKI) 다차원적 아동빈곤 지표
소득과 재산	- 아동가구의 가처분소득 - 아동 소득빈곤	- 상대아동빈곤율 - 상대아동빈곤갭	- 빈곤율 - 상대적 중위빈곤위험갭 - 지속빈곤위험율 - 빈곤선 주위의 분포
물질적 박탈		- 아동박탈률 - 가족풍족률(family affluence rate)	- 물질적 박탈지수주1) - 교육박탈
일자리	- 무직가구아동 - 부모의 실업상태(장기적 실업여부)		- 무직 - 저노동활동참여 및 노동강도 - 아동돌봄
주거	- 아동당 평균 방수 - 기본시설 결여 주택 주거여부	- 1인당 방수 - 복합적 주택문제	- 과밀 - 주거비

구분	OECD(2015) 아동복지지표	UNICEF 아동복지지표	EU(TARKI) 다차원적 아동빈곤 지표
건강	- 영아사망률 - 저체중출산률	- 영아사망률 - 저체중출산률	- 출산시 기대수명 - 영아사망률, 분만전후사망률 - 저체중
		- 전체감염률 - 1~19세 사망률	- 예방접종 - 모유수유 - 주관적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위험 행동	- 과체중과 비만 - 청소년 자살률 - 청소년 출산율	- 비만 - 자살률 - 10대 출산율 - 흡연 - 음주 - 마약화나	- 비만 - 10대 출산 - 흡연 - 음주 - 약물
		- 아침식사하기 - 과일 섭취 - 규칙적 운동	- 아침식사하기 - 과일섭취 - 신체 활동
안전	- 아동 살해율 - 괴롭힘	- 괴롭힘 당함 - 싸움	
교육	- PISA 평균 읽기점수 - PISA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점수 - NEET 교육박탈	- NEET율(주2) - 읽기, 수학, 과학 PISA 평균점수 - 취학률: 조기교육 - 취학률: 15~19세 교육	- 독해능력(10세) - 유치원 - 조기자퇴(퇴학)
가족 환경	- 부모와의 대화 용이성 - 원만한 교우관계 - 학업으로부터의 압박감 - 학교를 좋아함 - PISA 소속감 -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 한부모가구 비율

구분	OECD(2015) 아동복지지표	UNICEF 아동복지지표	EU(TARKI) 다차원적 아동빈곤 지표
지역 사회		- 공해	- 우범지역 - 공해, 불결한 지역환경
시민 참여	- 투표의사 -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주: 1) “임대료, 공공금, 생필품 구매대금이나 기타 부채 상환금을 지불하는 것; 주택·난방을 유지하는 것; 기대치 못한 지출을 지불하는 것; 이들에 한 번 정도 육류, 생선 혹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 1주일 정도 휴가를 즐기는 것; 자동차, 세탁기, 컬러 TV, 전화 소유 등”의 9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
 2) NEET 비율은 15~19세 중 교육, 고용, 훈련 중이 아닌 아동의 비율
 3) 음영표시된 항목은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지표를 표시함.
 자료: 류정희 외(2017). 행정자료를 활용한 빈곤아동통계 개발방안 연구. pp. 13-14. <표 2-1> (원자료: OECD 2015, p. 146 Table 4.1; UNICEF 2013, p. 5 Box 1; TARKI 2010, p. 21 Table 1)

이상을 종합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동빈곤 지표에는 가구소득, 부모의 고용상태, 부채 수준, 주택 여건, 건강 및 영양, 교육기회, 건강 등에 관한 물질적 박탈에 관한 항목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해나 안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거나, 부모의 양육이나 부모-자녀 관계를 가정환경으로 보기도 하고, 여가 및 문화생활을 포괄하는 아동의 놀 권리를 포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동빈곤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주요 환경을 포괄하되, 특히 빈곤한 환경을 지속적·누적적으로 경험할 때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 국내 지표

우리나라에서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기존 아동빈곤율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매 5년 마다 시행해야 하는 아동실태조사와 아동빈곤실태조사가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성장 및 생활실태와 발달 환경을 파악하고, 특히 빈곤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와 특성을 분석하여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김은주, 2015: 113; 류정희 외, 2019). 여기서는 그간 아동빈곤과 박탈

에 관한 국내의 실태조사 지표 및 세부 항목들을 다루되, 특히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빈곤 관련 지표에서 다차원적 관점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자 한다.

여유진 외(2016)에서는 「2014년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여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 II-2-6>과 같이 경제활동과 경제수준, 주택 및 주거환경, 교육 및 양육, 건강, 문화 등 세부영역별 분석 지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경제활동, 주거환경, 교육뿐만 아니라 양육, 건강, 문화적 측면을 포함된다.

<표 II-2-6> 아동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분석 지표

영역	세부 영역	지표
경제활동과 경제수준	가구 내 성인의 경제활동	-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실업 및 비경활 비율) - 가구내 취업자 수
	가계수지 균형	- 적자가구 비율 - 비목별 소비지출 비율 - 부채보유 및 과부채가구 비율
	기초생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비율 - 미래대비의 결여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점유형태	- 월세거주 비율
	주거빈곤	-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 -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교육 및 양육	교육빈곤	-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 - 교육영역의 결핍가구 비율
	보육과 돌봄	- 돌봄 형태 - 방과 후 시간활용 실태 및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	- 부부싸움 횟수 - 아동양육의 어려움 - 아동양육 태도
건강	영양섭취	- 식생활영역에서의 결핍 비율 - 식사해결 방법(결식 비율)
	의료서비스 접근성	-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결핍 비율
문화	문화생활	- 1인당 문화생활비 - 문화생활영역에서의 결핍 비율

자료: 여유진 외(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8.

이들 중 자녀양육 관련하여 주목할 영역⁹⁾을 제시하면 <표 II-2-7> 과 같다. 앞서 다룬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보육 및 돌봄 이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생활에 대한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여유진, 2018: 30-31). 이들 중 저소득층 가구의 1인당 문화생활비의 경우, 기초보장수급 가구 월 10,000원, 비수급 빈곤가구 7,000원으로 중산층의 37,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아동의 예술경험과 놀이권 보장의 측면에서 주의를 요할 지점이라고 본다(여유진, 2018: 32).

<표 II-2-7> 아동가구 계층별 다차원적 빈곤 실태

영역	세부 영역	지표	기초보장 수급	중위소득 50%미만 비수급	중위소득 100~150 %
소득	소득빈곤	빈곤율	- 아동빈곤율: 6.3% - 모자가구의 16.5%, 부자가구의 5.6%가 수급가구, 모자가구의 28.4%, 부자가구의 22.1%가 비수급 빈곤가구(합해서, 모자가구의 44.9%, 부자가구의 27.7%가 빈곤가구)		
경제 활동 · 경제 수준	가구 내 성인의 경제활동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			
		- 실업	3.8%	8.5%	0.5%
		- 비경활	50.0%	26.2%	1.7%
		가구주 상용직 비율	8.0%	17.6%	73.7%
		가구내 취업자 수	0.61명	0.80명	1.42명
	가계수지 균형	적자가구 비율	25.9%	57.6%	5.1%
		부채 보유 및 과부채가구			
		- 부채보유가구	60.7%	52.9%	60.5%
		- 과부채(부채가 연간 소득 3배 이상)	9.6%	22.2%	7.6%
		- 과부채(부채가 총재산 75% 이상)	36.2%	24.9%	4.2%
	기초생활 박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3.0%	2.6%	0.3%
		- 공과금을 기한 내 미납한 경험이 있다.	24.0%	19.4%	0.8%
		-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 미납하여 끊긴 적이 있다.	5.4%	6.5%	0.1%
		-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5.8%	6.9%	0.3%

9) 표에서 파란색 음영 항목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영역	세부 영역	지표	기초보장 수급	중위소득 50%미만 비수급	중위소득 100~150 %
		-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3.6%	8.9%	0.4%
		- 집세가 밀렸거나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3.1%	5.9%	0.1%
		-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적이 있다.	2.3%	2.6%	0.5%
	미래대비 결여	미래 대비 결여			
		- 긴급 대비 저축	29.7%	42.3%	13.6%
		- 노후 대비 저축	32.1%	24.4%	2.4%
		- 사적보험 가입	11.1%	20.2%	1.7%
주택 및 주거 환경	주거점유 형태	월세 거주 비율	62.3%	41.5%	4.9%
	주거빈곤	임대료(월세) 과부담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20% 이상)	12.5%	20.2%	0.6%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	40.6%	31.7%	9.8%
		- 방 수 기준 미달	21.4%	14.7%	7.3%
		- 면적 기준 미달	15.8%	11.5%	1.7%
		- 시설 기준 미달	22.0%	9.7%	2.1%
	주거환경	10분 내 대중교통 이용시설	0.5%	1.5%	0.6%
교육	교육 과부담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			
		- 가처분소득 대비 20% 이상	13.0%	26.7%	17.4%
		- 가처분소득 대비 30% 이상	4.4%	16.5%	5.0%
		아동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4.8만원	10.2만원	23.9만원
	교육 접근성	교육영역의 결핍			
		- 자녀 고등교육	11.8%	10.3%	1.5%
		- 자녀 학원수강, 과외	21.7%	7.5%	2.4%
건강	영양섭취	- 자녀 도서 구입	2.8%	5.1%	0.2%
		식사 해결 방법(아동이 직접 챙겨 먹음)	26.3%	23.3%	8.2%
		식생활영역에서의 결핍 비율			
		- 주 1회 고기 생선 구입	16.1%	12.9%	0.4%
		- 주 1회 과일 구입	18.6%	11.8%	0.2%
		- 가끔 기호 식품 구입	2.9%	4.7%	0.0%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결핍 비율			
		- 만성질환의 경우 정기적 진료	5.2%	6.1%	4.6%
		- 가족 중 치과 치료	12.6%	15.9%	2.7%
		- 의약품 구입	0.0%	0.5%	0.2%

영역	세부 영역	지표	기초보장 수급	중위소득 50%미만 비수급	중위소득 100~150 %
문화 가족	문화생활	1인당 문화생활비	1.0만원	0.7만원	3.7만원
		문화생활 영역에서의 결핍 비율			
		- 연 1회 여행	19.3%	22.8%	11.1%
		- 가족생일 등 특별한 날 기념(외식 등)	11.3%	8.7%	1.9%
		- 취미, 여가활동	8.2%	7.9%	6.7%
	보육과 돌봄	돌봄 형태: 보육시설, 유치원	70.6%	70.6%	77.1%
		방과 후 혼자 지내는 시간 있음	27.8%	40.8%	25.9%
	부모의 양육태도	잡은 부부 싸움(일주일 3회 이상)	7.2%	4.5%	0.3%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아동양육의 어려움	68.4%	79.1%	30.6%
		현재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함(5점 척도)	2.7점	2.5점	3.0점

주: 1) 2014년 기준, 단, 빈곤율은 2015년 기준
 2) 중위소득 100~150% 가구를 빈곤가구(수급과 비수급 빈곤가구)의 비교 집단으로 설정
 3) 수치의 회색 음영표시는 해당 항목에서 박탈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계층을 표시한 것임.
 4) 지표의 파란색 음영표시는 본 연구진이 자녀양육 관련 주목할 영역으로 고려한 것임.
 자료: 여유진(2018).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5), pp. 30-31.

빈곤아동의 여가 및 문화활동 결핍에 대한 내용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아동의 발달권에 반영되어야 함을 인지하여 여가 및 문화 활동 영역에 대한 문항을 이전 조사에 비해 대폭 늘리거나 수정하였다(류정희 외, 2019: 69). 여가 및 문화 활동 영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일반아동이 61%이나 수급가구의 아동은 39.2%에 그쳐 20% 이상 격차를 보였다(류정희 외, 2019: 346). 또한 수급가구의 보호자가 아동의 매체 이용시간이나 종류를 제한하는 비율은 일반가구에 비해 낮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사용과 TV 시청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9: 320, 342). 이는 빈곤아동의 대다수가 문화 활동 참여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며, 여가활동의 질적 측면에서도 비빈곤 아동과 격차가 존재함을 말해준다.

김은주(2015)는 주거, 식생활, 건강, 교육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섯 가지 구성변수로 다차원 박탈지표를 구성(표 II-2-8 참조)하여 아동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소득기준으로만 측정했을 때와 달리 다음의 두 가지 새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표 Ⅱ-2-8〉 다차원 박탈 지표

차원	구성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주거	주거 박탈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 주거환경에 대한 설문 중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식생활/ 영양	식생활 박탈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아동 - 먹을 것이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충분한 양으로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
보건	의료서비스 박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아동 -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	교육자원 박탈	교과서 이외 책을 10권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아동(6~18세)
	방과후 교육활동 박탈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아동(6~18세) - 방과후에 민간 학원, 사교육, 방과후 학교, 사회복지관 등의 방과 후 교실, 친인척에 의한 방과후 활동 중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자료: 김은주(2015). 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아동빈곤. 한국사회정책, 22(3), p. 119.

첫째, 박탈정도와 소득기준을 결합하여 측정한 결과 아동빈곤율(6~18세아 기준)은 10.7%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응답이 4.1%임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아동들(6.6%)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6~18세 학령기 이후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식생활, 의료서비스, 교육에 대해 아동의 물질적 박탈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식생활과 기본적 교육자원, 방과 후 교육활동의 결핍이 주거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보다 높았다. 6~18세아 중 약 10.7%가 생활수준도 낮고, 소득도 낮은 아동빈곤에 처해있음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공식 통계와 비교해보면 단순히 소득기준만으로 계산했을 때 아동 빈곤율이 과소추정됨을 알 수 있다(김은주, 2015: 124-125).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아동빈곤율은 아동의 박탈감 및 복지를 고려한 빈곤 측정과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의식주생활 및 주거환경, 학습환경, 놀이 및 문화 활동, 사회적 자본 등의 다차원적 영역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결핍과 박탈 수준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에 의하면 수급가구 아동이 다차원적 영역에서 상당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주(2015)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소득기준만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을 측정할 경우 실제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 즉, 박탈과 결핍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류정희 외, 2019: 495-521).

둘째, 아동빈곤 원인과 관련이 높은 가구주 특성, 지역, 가구원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농촌지역, 한부모 가정, 여성가구주, 고령가구주, 다자녀가구 등의 아동빈곤율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은주, 2015: 130). 구체적으로 소득기준과 물질적 박탈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아동빈곤 가구를 정의했을 때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본 결과,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물질적 박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구특성별로 보았을 때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은 절반 이상이 박탈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아동의 박탈 정도가 달라지는데 가구주가 중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가구에서는 절반 가까이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가구주의 경제활동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동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아동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근소한 차이지만 남아보다 여아의 박탈 정도가 약간 더 높고,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절반 정도가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은주, 2015: 127).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한부모가정 중 특히 여성 가구주의 가정, 가구주의 근로형태가 불안정한 가정, 농어촌지역 조손가정의 아동들이 빈곤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보다 높으므로 이들을 정책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김은주, 2015: 128).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물질적 박탈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박탈지수에서도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9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박탈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가구의 점수는 1.58점으로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1.28점인데 비해 수급가구는 6.14배 높은 7.86점으로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9: 497). 또한 가구특성별 해당 점수는 비경제활동 가구의 6.4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5.1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9: 497). 따라서 가구특성에 따른 접근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정은희(2014)는 제7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 식생활, 교육, 의료 차원 이외에 고용, 근로능력, 금융 3가지 차원을 추가하여 총 7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아동빈곤을 측정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교육, 식생활, 건강/의료 영역 지표 이외에도 고용과 근로 및 금융 관련한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를 기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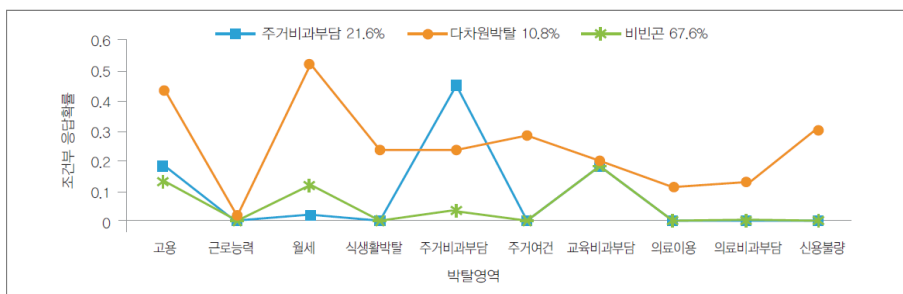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다차원적 아동빈곤 지표는 <표 II-2-9>이고, 아동빈곤 집단의 유형은 [그림 II-2-1]와 같다.

<표 II-2-9> 다차원적 아동빈곤 지표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주거	주거소유상태	1. 월세 2. 전세 3. 자가 4. 기타	
	주거비 과부담	1.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30% 이상	0. 30% 미만
	주거생활박탈	1. 쫓겨나거나, 난방비 못 냄	0. 그렇지 않음
식생활	식생활박탈	1.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함	0. 그렇지 않음
교육	교육비 과부담	1.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20% 이상	0. 20% 미만
	의료비 과부담	1.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20% 이상	0. 20% 미만
의료	의료박탈	1. 건강보험료 못 내거나 병원에 못감	0. 그렇지 않음
고용	경제활동 참여상태	1. 임시, 일용, 자활, 실업 2. 비경제활동 3.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근로 능력	근로능력	1. 근로불가능 2. 단순근로미약자, 단순근로가능 3. 근로가능	
금융	금융 신용불량	1.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된 적 있다	0. 없다

자료: 정은희(2014).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237, p. 3.

[그림 II-2-1] 아동빈곤집단의 유형



주: 잠재집단에 따라 영역별 박탈범주에 속하는 조건확률을 그림으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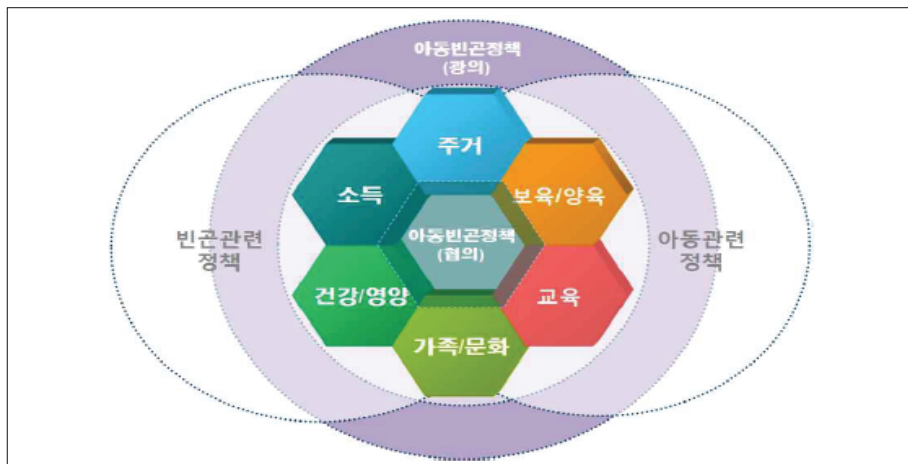
자료: 정은희(2014).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237, p. 7.

정은희(2014)의 보고에 따르면, 박탈 지표를 이용하여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다차원 박탈 집단과 주거비 과부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차원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

비율이 아동빈곤을 보다 높게 나타냈다. 특히, 다차원박탈 집단은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고용이 불안정하였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주거, 식생활, 의료, 금융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소득활동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집단이 존재함을 보여준다(정은희, 2014: 6, 8). 즉, 소득기준 정책대상자의 선정은 실제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빈곤집단의 일부를 빈곤집단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정책 수혜자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정은희, 2014: 7).¹⁰⁾ 또한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중간소득 계층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의 저축이나 자산은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 자원으로 활용될 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하여 주거비 지출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정은희, 2014: 7-8).

한편 아동빈곤정책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여유진 외, 2017: 85), 그 영역 및 범위로는 다음이 제시된다. 이하 [그림 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보장 이외에도 보육 및 양육과 교육, 그리고 건강과 영양, 주거, 가족 및 문화 등이 포함된다.

[그림 II-2-2] 아동빈곤정책의 영역과 범위



자료: 여유진 외(2017).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6.

10) 이는 한국복지패널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현주 외(2012: 39)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소득빈곤으로 빈곤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욕구영역별 빈곤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음을 확인함. 소득빈곤이면서 욕구영역별 빈곤상태를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가구는 전체의 0.15%인 반면, 소득빈곤이 아님에도 주거, 의료, 교육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전체의 4.19%에 이르고, 소득이나 욕구영역에서 하나라도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는 전체의 11.93%에 이른다(이현주·정은희·이병희·주영선, 2012: 79).

한편 빈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빈곤의 직·간접 영향들이 확인됨과 동시에 그 메커니즘 또한 상당히 복합적인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효진, 2008: 38).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이웃 환경 등의 통제변수를 넣었을 때 소득만을 변수로 하였을 때 보다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김효진, 2008: 38 재인용). 이는 앞서 빈곤의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빈곤아동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빈곤아동 양육지원 정책이 단지 빈곤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가구 내 성인의 소득부족의 보완뿐만 아니라 빈곤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부모, 가족관계, 교육기관, 이웃, 지역사회 등-속에서 조기개입 및 중재적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빈곤 영유아의 경우는 초기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양육자와 가족 환경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지발달, 언어발달, 활동성, 사회성 등 영유아기 발달에서 소득집단별 격차가 확인되며,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부모의 아동일수록 정신건강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과 부모의 우울 정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지닌 주양육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영유아기 부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류정희 외, 2019: 179-194). 게다가 영유아의 경우 다른 연령대 아동에 비해 신체적인 손상 경험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수칙 준수율을 보여 아동빈곤 정책에서 영유아기 안전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류정희 외, 2019: 382-396). 한편 부모의 정신건강과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 자본에서도 빈곤 계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가구는 가사, 육아, 간병 등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수급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류정희 외, 2019: 239-242). 이는 빈곤 영유아 가구의 경우는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결핍뿐만 아니라 가족 이외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국내 다차원적 아동빈곤 지표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II-2-10>과 같다. 크게 경제활동 및 수준, 주거환경, 교육 및 양육, 건강(식생활 포함), 문화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대분류에서는 비슷한 측면도 있으나, 특히 국내

보다는 국제지표에서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문화생활 및 놀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2-10〉 국내 아동빈곤의 다차원성 지표 비교표

영역	여유진 외(2016)		정은희(2014)		김은주(2015)	
경제 활동 및 수준	가구 내 성인의 경제활동	-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가구내 취업자 수	경제활동 참여상태	1. 임시, 일용, 자활, 실업 2. 비경제활동 3. 고용주, 자영업자 등 4. 상용직		
			근로 능력	1. 근로불가능 2. 단순근로가능 3. 근로가능		
	가계수지 균형	- 적자가구 비율 - 비목별 소비지출 비율 - 부채보유 및 과부채가구 비율	금융 신용불량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유경험		
	기초생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 비율 - 미래대비의 결여				
주거 환경	주거점유 형태	- 월세거주 비율	주거소유 상태	1. 월세 2. 전세 3. 자가 4. 기타		
	주거 빈곤	-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 -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거비 과부담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30% 이상		
			주거생활 박탈	쫓겨나거나, 난방비 못 냄	주거박탈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
교육 및 양육	교육 빈곤	-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 - 교육영역 결핍 비율	교육비 과부담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20% 이상		
	보육과 돌봄	- 돌봄 형태 - 방과 후 시간활동 실태 및 유형			방과후 교육활동 박탈	방과후 교육활동 전혀 없음 (6~18세)
					교육자원 박탈	교과서 외 책을 10권 이하 보유 (6~18세)

영역	여유진 외(2016)		정은희(2014)		김은주(2015)	
	부모의 양육태도	- 부부싸움 횟수 - 아동양육의 어려움 - 아동양육 태도				
건강	영양 섭취	- 식생활영역에서의 결핍 비율 - 결식 비율	식생활 박탈	균형 잡힌 식사 못함	식생활 박탈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의 어려움 겪음
			의료비 과부담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20% 이상		
	의료 서비스 접근성	- 의료서비스 결핍 비율	의료 박탈	건강보험료 못내거나 병원에 못감	의료 서비스 박탈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
문화	문화 생활	- 1인당 문화생활비 - 문화생활 결핍 비율				

자료: 1) 여유진 외(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8.

2) 정은희(2014).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237, p. 3.

3) 김은주(2015). 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아동빈곤. 한국사회정책, 22(3), p. 11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빈곤아동의 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포함한 가구의 경제활동 이외에도 부채 수준과 더불어 주거비 부담 수준, 주거환경, 교육 및 보육 기회 및 교육 박탈(도서 등), 식생활을 포함한 의료/건강, 놀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놀이 및 문화 경험, 교육 및 양육, 가족관계 및 양육태도 등 가족 생활을 포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구 영유아의 양육 실태를 분석하므로 주양육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유아기의 특성에 주목하여 가족 내 양육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포괄하고자 한다. 또한 빈곤의 지속적이고 누적적 경험이 성인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육지원의 범위는 돌봄에서 나아가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문화 부문으로 확장할 것이다.

III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01 근거 법률 및 주요 계획

02 세부영역별 양육지원사업 및 제도 현황

Ⅲ.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 현황

제3장에서는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근거 법률 및 주요 계획의 관련 내용, 그리고 세부사업 및 제도들을 살펴 보았다.

1. 근거 법률 및 주요 계획

빈곤가구 아동 및 취약계층 통합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 및 관련 주요 내용으로 명시된 바는 이하와 같다.

가. 근거 법률

1)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빈곤아동의 정의와 세부 적용기준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4일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다음 해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제정 이유로는 다음이 제시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즉 경기침체로 인한 부모의 가출, 이혼, 별거, 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하여 국가가 아동빈곤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제정 이유에 따라 동법 제3조에서는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로 정의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또한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빈곤아동의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규정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즉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이다.

〈표 III-1-1〉 현행 법에 의한 빈곤아동 적용기준

근거법률명	세부 기준
아동복지법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2019. 6. 14. 인출)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내용

동 법에서는 위에 명시된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제4조),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의 2, 6조, 7조),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8, 9, 10, 11조)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빈곤아동

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동법 제4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동법 제5조의 2부터 7조까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연계, 조정(調整)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어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부터 제10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한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경기도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은 물론, 특별히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동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즉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그것이다.

2)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지원의 근거 규정

빈곤아동의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아동복지법」 제37조에서 해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표 III-1-2>에서와 같이 세부적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I-1-2〉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6.> 1.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인력·시설 및 운영체계 2.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실시·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3. 지역 인프라의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위의 조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기관(드림스타트) 설치·운영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선제적 사회투자的重要举措에 주목하여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 관리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9e: 22). 2018년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부문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보건복지부, 2019c: 9).

한편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이때 조사에 포함될 항목은 1)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아동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아동의 언어·인지·정서·사회적 발달에 관한 사항, 3) 양육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나. 주요 계획 및 세부과제

빈곤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세부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정책 관련 주요 계획과 취약계층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포함하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1) 취약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 아동정책기본계획/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복지법」 제7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2015년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5~2019년)은 아동이 처한 환경으로 우선 아동의 가족과 양육환경의 측면에서 빈곤가정의 아동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관계부처 합동, 2015: 2), 또한 발달 환경의 측면에서 위해 요인을 적극 규제하고, 문화·체육·예술·여가 놀이활동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관계부처 합동, 2015: 3). 동 계획의 정책과제로서 “함께하는 삶”의 영역은 사회

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 및 이행관리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당 아동에 대한 종합 DB를 구축하여 유형별 아동보호 체계간 연계 협력 방안 및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69). 특히 빈곤아동에 대해서는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에 “빈곤아동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제시된 바 있으나, 해당 계획은 아직까지 미수립 되었다.

다음으로 2019년 2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 방향”에서는 아동의 삶의 현황에서 소득계층의 차이가 양육환경, 교육기회의 격차로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한다(보건복지부, 2019b: 2). 즉 양극화와 계층 이동 기회의 단절로 불만과 갈등 증폭,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아동세대는 사회적 기여의 주체에서 사회적 비용 요인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보건복지부, 2019b: 1). 게다가 동 자료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아동결핍 지수(아동기 각종 서비스 및 기회 충족, 소유상태 등 측정)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취약아동의 경우는 위기아동의 발생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전(全) 과정에 있어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성이 취약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인식한다(보건복지부, 2019b: 5). 이에 따라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7).

이를 토대로 올해 5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돌봄, 생애초기부터 촘촘한 아동의 건강,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등이 제시된다(관계부처합동, 2019b: 1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위기 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필요한 아동은 주로 학대 아동과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이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동에 대한 보호의 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과 수용자 가정아동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9b: 19-21).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별로 분산된 정보를 아동 개인을 중심으로 급여,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 모든 정보를 재구성하여 이력관리를 함으로써 복지지원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아동 및 원가정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지원을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 2019b: 22). 그 밖에도 생애초기부터의 아동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기 건강검진을 강화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19b: 27). 즉 신생아기는 영아 돌연사 예방과 고관절 탈구 등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추가하고, 유아기에는 언어 학습장애 등의 예방을 위한 난청검사, 안과검사 등을 추가로 추진한다.

2)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에 의거하여 취약 및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동 사업은 2011년에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되어, 2015년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통합(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2018년에는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은 2018년 61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70개소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계획(2016~2020년)에 의하면,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내용으로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으로 소외가족 및 아동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8: 32). 당초 발표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족지원이 포함되었으나(관계부처합동, 2016: 18), 보완계획에서는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과 더불어 소외가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즉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지원 이외에도 거주지원 강화를 추가로 포함하고,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보완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29-30). 또한 취약·위기가족 조기 발견 및 적시 대응을 위해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조기 발견하여 긴급돌봄과 가족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18: 32). 이를 토대로 2019년 시행계획에서는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북한이탈가족 긴급위기가족에게 전국 70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음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a: 141-142). 한부모·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가사, 부모교육·가족관계, 자녀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또한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심리 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세부영역별 양육지원사업 및 제도 현황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사업 및 제도를 1) 보육 및 돌봄, 2)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3) 놀이 및 여가지원, 4) 주거지원, 5) 취약아동 통합지원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돌봄지원

1) 아동관련 수당 지원

가)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2019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같은 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2018년 11월 기준으로 시행 3개월간 221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신청아동 92%에 지급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11. 22 기사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730&call_from=naver_news%C2%A0, 2019. 4. 8. 인출). 2019년 보편지원이 되면서 금년도 대상아 수는 약 247만명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9f: 22).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 7,096억원(4개월분)에서 2019년 2조 1,627억원(12개월분)으로 1조 4,531억원(204.8%)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22).

나)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全) 계층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19a: 351). 대상아 수는 2019년 71만 3천명 정도로 추산된다(보건복지부, 2019f: 77).

양육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은 10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19a: 351). 장애 아동과 농어촌 아동(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도 차등 지급되며,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에서 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월령별로 10~20만원을 지원한다(표 III-2-1 참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8년 1조 891억원에서 2019년 8,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1,968억원)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23).

한편 이들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시간연장형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표 III-2-1〉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2019)

단위: 개월, 천 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g). 2019년 보육사업안내. p. 351.

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대상이며, 세부지원 항목별 지원대상은 다음 〈표 III-2-2〉와 같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하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의 추가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

r, 2019. 4. 26. 인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간 54,100원이 지원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표 Ⅲ-2-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2019)

구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206,933백만원이며, 전년 대비 103.1%(105,041백만원)가 증감되었다(여성가족부, 2019a: 155). 아동양육비 204,558백만원, 추가아동양육비 1,080백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1,123백만원, 생활보조금 132백만원이다(여성가족부, 2019a: 156).

이들 지원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영구임대주택 공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양육 할인, 청소년 특별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장제 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라)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신청일 기준 장애등급이 1~6급 장애아동에게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은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이고, 경증장애인은 3~6급 장애인이다(보건복지부, 2019h: 220).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매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매월 15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매

월 7만원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또한 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1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10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2만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2019년 예산¹¹⁾은 2019년 기준으로 1,297억원이 소요되어 2018년 대비 0.1%(1억원)가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8).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표 III-2-3〉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2019)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월 10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원	월 2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h).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 221.

〈표 III-2-4〉 장애아동수당 지원 단가/월(2019)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기초(시설)
장애아동수당	경증 100천원	100천원	20천원
	중증 200천원	150천원	7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f).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요. p. 8.

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통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표 III-2-5〉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내용(2019)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i).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 25.

11) 예산은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성인)이 구분되지 않아 장애수당(기초+차상위등) 전체임.

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선정기준은 입양 당시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하며, 만 18세까지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장애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은 경증은 월 551,000원, 중증은 월 627,000원이 지원된다.

〈표 Ⅲ-2-6〉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내용(2019)

구분		지원내용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7천원 (경증) 월 55만1천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p. 27.

2) 보육·교육서비스

가) 만 0~5세 보육료 지원

맞춤형 보육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보육서비스(종일반, 맞춤반)를 이용할 수 있다.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종일반(일 12시간)은 취업, 구직,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등 장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경우 이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적정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0~2세 맞춤반은 1일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가능하다. 연령별 지원단가는 다음의 〈표 Ⅲ-2-7〉과 같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8년 3조 2,575억원에서 2019년 3조 4,053억원으로 1,478억원(4.5%)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22). 이중 0~2

세반 보육료는 3조 9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원이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22).

이들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만 3~5세 누리과정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표 III-2-7〉 만 0~5세 보육료 지원단가(2019)

단위: 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54,000	354,000	454,000	681,000
			만1세반	400,000	311,000	400,000	600,000
			만2세반	331,000	258,000	331,000	496,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자료: 보건복지부(2019g), 2019년 보육사업안내. p. 332.

나)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지원대상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2019년 누리과정 지원비 예산은 3조 8,153억이 편성되었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7625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201&oppType=N>, 2019. 4. 22. 인출).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만0~5세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보육료 지원은 중복지원되지 않는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다) 장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한다.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6만 2,000원을 지원하며,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동은 46만 2,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장애아동은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한다.

장애아보육료 예산은 2019년 기준 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억원 증가하였으며, 지원대상은 12천명이다(보건복지부, 2019f: 76).

이들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만 0~5세 보육료, 방과후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과 중복되지 않는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라)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받는 영유아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9g: 293). 지원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이다(보건복지부, 2019g: 293). 서비스는 월~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9g: 301). 사업 제공기관은 시·군·구가 지정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인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다(보건복지부, 2019g: 293).

지원내용은 지원시간은 월 80시간을 이용하며,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3,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1,000원은 학부모가 부담한다(보건복지부, 2019a: 301).

동 사업 예산은 2019년 기준 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79).

〈표 III-2-8〉 시간제보육 이용 및 지원시간(2019)

구 분		지원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 육 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 부담	시간당 1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g). 2019년 보육사업안내. p. 301.

마)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지원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대상은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및 취학 전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9g: 348).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2019년 대상아 수는 작년보다 8천명 감소하여 약 39천명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9f: 76).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야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야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시간연장보육료의 월별 지원한도액은 60시간이다(보건복지부, 2019g: 348). 시간연장보육료는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까지 월 6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은 차등지원 한다(표 III-2-9 참조). 야간보육료는 19:30에서 익일 7:

30까지 돌봄이 가능하며 주간 미이용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g: 348). 24시간보육료는 7:30에서 익일 7:30까지를 지원하며 야간에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g: 348).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시간연장보육료의 시간당 보육료는 다음 <표 III-2-9>와 같이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단,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출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표 III-2-9> 시간연장보육료 지원단가(2019)

단위: 원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100	186,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4,100	246,000	기준액×100%

자료: 보건복지부(2019g). 2019년 보육사업안내. p. 348.

동 사업 예산은 2019년 기준 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억원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76).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3) 가정내 양육지원

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2019b: 17).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

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표 III-2-10〉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지원대상 아동연령(2019)

구분	아동연령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및 종합형)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자료: 여성가족부(2019b).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p. 17.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시간당 기본요금은 영아종일제 9,650원, 시간제 일반형 9,650원, 시간제 종합형 12,550원, 질병감염아동 11,580원, 기관연계 서비스는 16,500원이다(여성가족부, 2019b: 17).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표 III-2-11〉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차등지원 금액(2019)

구분	지원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8,203원 지원, B형 7,23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5,308원 지원, B형 1,93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448원 지원, B형 1,448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7,72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5,79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448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3,460천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5,536천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6,920천원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구체적으로 〈표 III-2-12〉와 같다.

〈표 III-2-1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2019)

구분	지원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대상: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동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으로 총 3,404억원으로, 국비는 2,244억원, 지방비는 1,159억원이다(여성가족부, 2019b: 113).

본 사업은 가정양육수당, 만 0~5세 보육료, 유아학비,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장난감 및 도서대여, 교재교구 대여, 놀이 공간 제공 등 원스톱 육아지원을 위해 중앙(1개소)과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0%(29억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7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중앙센터의 경우는 1,347백만 원이 전액 국비 지원되며, 시·도 센터는 평균 317백만 원으로 국비(서울 20%, 지방 50%), 지방비(서울 80%, 지방 50%)가 지원되고, 시·군·구 센터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보건복지부, 2019g: 456).

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이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녀돌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이나 도서를 이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들이 서로 자녀양육 경험이나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 간에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이용시간은 월~금 10시~18시이다. 취업부모 등을 위한 평일 저녁 및 주말 연장 운영을 추진하며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8: 195).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4,431백만원이다(여성가족부, 2019a: 166).

4) 기타 서비스 지원

가)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소득별로 다음의 <표 III-2-13>과 같이 매월 16~22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차등지원한다.

<표 III-2-13>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내용(2019)

구분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대상은 550명으로 전년대비 200명이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10).

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해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및 보호자이다. 지원내용은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한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보건복지부, 2019j: 215). 정부바우처 지원액은 16만원이며,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이다(보건복지부, 2019j: 215).

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단,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는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19j: 413).

지원내용은 힐링캠프(가족 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상담 캠프) 및 테마 여행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의 <표 III-2-14>와 같다.

<표 III-2-14>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내용(2019)

구 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2박3일
휴식 지원	힐링 캠프	가족캠프(기본)	발달장애 가족	참여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 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인식개선캠프(선택)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참여	• 부모 프로그램 • 자녀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동료상담캠프(선택)	발달장애인 및 부모	선택	• 휴식 제공 프로그램 • 동료상담 프로그램
	테마여행(선택)		발달장애 가족	참여	•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2019j).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 420.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실비 부담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j, 419).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혜자는 11,597명으로 전년 대비 2,100명이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19f: 61).

〈표 III-2-1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인당 지원단가(2019)

구 분	당일	1박2일	2박3일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75,000원	150,000원	240,000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 419.

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 지원대상은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이 가능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중도입국 자녀는 해외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중 부모가 재혼하여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한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는 임신기, 신생아기, 유아·아동기 각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며,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은 다음의 〈표 III-2-16〉 과 같다.

〈표 III-2-1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2019)

구분	내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단,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수 없으며, 지역 내에서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도 불가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되나, 자녀생활 서비스는 무상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으로 부과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자녀생활 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표 III-2-17>과 같다.

<표 III-2-1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무상지원 대상(2019)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표 III-2-18>과 같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이들 대상에게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한국어교육서비스는 1:1로 방문지도사와 4단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가족관련 상담서비스,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또한 인지, 정서·사회, 문화역량 강화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한다. 단, 한국어 교육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는 동시에 제공받을 수 없으며,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와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표 III-2-1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유형 및 지원대상(2019)

서비스 유형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만 19세 미만)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각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마)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에 적합한 언어교육을 실시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시·군·구는 센터 추천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대상자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한다(여성가족부, 2019c: 220). 다문화 유치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에 언어발달지도사 파견으로 언어 교육 적극 연계를 실시한다(여성가족부, 2019c: 221).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국비 및 지방비로 언어치료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나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지원이 제외된다(여성가족부, 2019c: 22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여성가족부, 2019c: 221).

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지원

1)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은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을 추적하여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보건복지부, 2019k: 21).

지원내용은 대상 아동의 시각 이상, 청각 이상, 성장 이상, 비만, 발달 이상, 안전 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치아 우식증 등 목표 질환에 대해 각 월령별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등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9k: 22-23). 발달평가 및 상담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k: 22). 검진은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주기로 실시된다(보건복지부, 2019k: 24). 건강검진(7회)과 구강검진(3회) 비용을 전액 지급하여 본인부담이 없으며, 건강보험적용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 부담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보건복지부, 2019k: 24).

동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으로 8억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9f: 124).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보건복지부, 2019f: 124).

〈표 III-2-19〉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 및 내용(2019)

단위: 개월, 원

구 분	검진주기		검진비용(원)
	일 반	구 강	
1차	생후 4~6개월	-	25,560
2차	생후 9~12개월	-	33,480
3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46,070 (구강 13,890원 포함)
4차	생후 30~36개월	-	32,180
5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46,070 (구강 13,890원 포함)
6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46,070 (구강 13,890원 포함)
7차	생후 66~71개월	-	32,180

자료: 보건복지부(2019k). 2019년 건강검진사업안내. p. 24.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보건복지부, 2019k: 31). 즉,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등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의료비 및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보건복지부, 2019k: 31).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년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19k: 32).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하며(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보건복지부, 2019k: 32),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k: 33).

해당 사업에는 2019년 기준으로 전액 국고 304백만원이 소요된다(보건복지부, 2019k: 32).

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은 연령, 신규도입된 백신의 경우 비용지원 대상연령이 제한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백신 및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무료 지원하며,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2019년 지원대상 백신(17종)은 BCG(폐내염),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Flu(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 미대상 백신은 결핵 경피용 백신,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이며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무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국문 및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019년 기준으로 2,068억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f: 44).

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표 Ⅲ-2-2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2019)

구분	내용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부양의무자(부양 요건)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부양의무자 기준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내용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또한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의 〈표 Ⅲ-2-21〉과 같다.

〈표 Ⅲ-2-21〉 요양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2019)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3,0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272억원) 증액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49).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

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분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하며, 본인 부담차액 지원 2019년 2,775억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19년 229억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f: 49).

5)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가정의 취학 전 아동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가구 인원내 따라 중위소득 80% 기준의 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감안하여 다음의 <표 III-2-22>와 같이 선정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해당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6억원으로 정밀검진, 수술비 지원, 약시 등 재활 5억원, 교육·홍보 및 사업관리 1억원으로 전년대 동일하다(보건복지부, 2019f: 128).

<표 III-2-22>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사업 1인당 지원 단가(2019)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2,325,000원	3,008,000원	3,691,000원	4,374,000원	5,056,000원
직장가입자	75,606원	97,689원	120,060원	142,729원	163,883원
지역가입자	40,677원	82,348원	113,534원	142,335원	168,085원
혼합	76,457원	98,862원	121,528원	144,749원	166,543원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6)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대상자는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환아관리 대상자는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페닐케톤뇨증 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호모시스틴뇨증 환아, 단풍당뇨증 환아, 갈락토스혈증 환아, 기타 선천성 대사이상증 환아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비용은 2~4만원이며, 검사항목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이다. 또한 2차 정밀검사 비용인 7만원 한도를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28억원으로 선별검사비는 5억원, 환아관리비는 23억원이며, 전년 대비 24억 원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127).

7)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는 최대 연간 260만원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19i: 27).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9i: 27).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되는데,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한다(보건복지부, 2019i: 27).

8)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9a: 3).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하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는 제외)에게 급여항목에 한하여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해당 자격에는 18세 미만인자 등이 포함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6조 3,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1조 449억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54).

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선천성 이상아

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며,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단,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이거나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를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51억원으로 미숙아 41억원(저체중아: 3,782백만원, 조산아: 353백만원), 선천성이상아 10억원이다(보건복지부, 2019f: 127). 전년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127).

10)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한다. 6세 미만의 경우는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하며, 각 대상자별 지원 금액은 다음 <표 III-2-23>과 같다.

〈표 III-2-2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및 금액(2019)

대상자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 원(본인부담금 면제)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운동 재활 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원)	

자료: 복지포털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원 증가하였다. 지원대상은 57,094명이다(보건복지부, 2019f: 10).

1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n: 258).

선천성 난청검사는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신생아로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n: 261).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n: 261).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28일(신생아 기간) 이내 실시(주로 분만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n: 261). 출생 후 28일 이내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n: 261).

지원내용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5천원~25천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n: 264).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난청 확진 검사비(7만원 내)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n: 264).

난청 환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영유아가 지원 대상이다(보건복지부, 2019n: 265). 난청 확진아에게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를 지원(131만원)한다(보건복지부, 2019n: 266).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2019년 기준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24).

1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기저귀·조제분유가 지원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기저귀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¹²⁾,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의 <표 III-2-24>와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표 III-2-2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액(2019)

구분	지원금액
기저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월 8만6천원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해당사업의 예산은 2019년 기준 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억원)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9f: 82).

13)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4인 기준 369만 829원) 미만인 가구의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

12) 산모의 특정질병은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이 해당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이다(대한민국정부, 2019: 89).

지원내용은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의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대한민국정부, 2019: 89).

다. 놀이 및 여가 지원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3. 12. 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내용은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¹³⁾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8만원을 지원한다(<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이는 보조금 금액이 2018년 7만원에서 2019년 8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복권기금으로 추진된다(문화누리, <http://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 2019. 4. 22 인출). 통합문화이용권 2019년도 편성 예산은 915억원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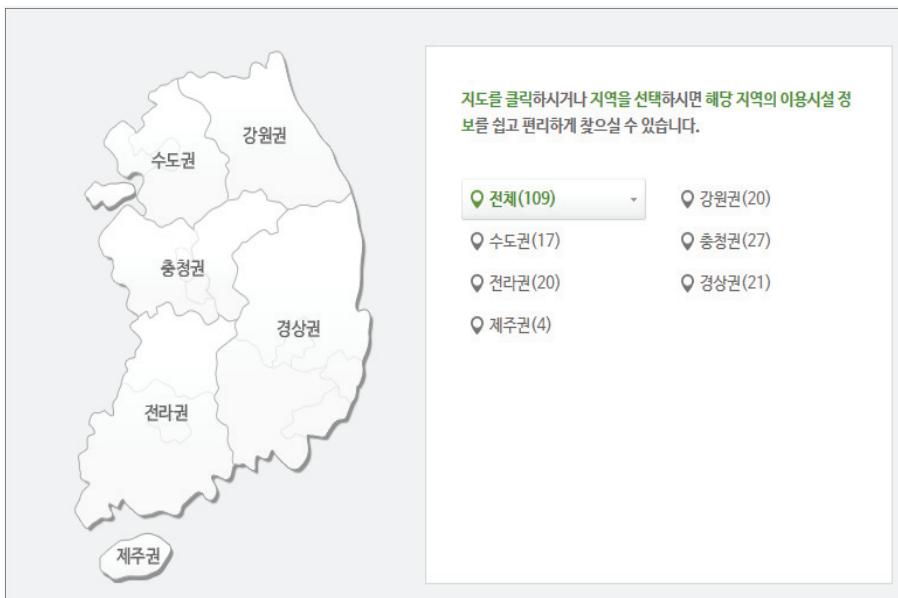
1)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대상은 산림복지 소외자이며,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선정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

13)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누리, <http://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 2019. 4. 22 인출)

19. 4. 26. 인출). 지원내용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지원한다(<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신청기간¹⁴⁾이 전년도 말부터 해당 년초로 정해져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카드 발급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전국 10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수도권 17개, 강원권 20개, 충청권 27개, 전라권 20개, 경상권 21개, 제주권 4개이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https://www.forestcard.or.kr/intro/useUtilize.do?menuId=1110100>, 2019. 4. 22. 인출).

[그림 III-1-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가능 시설



자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https://www.forestcard.or.kr/intro/useUtilize.do?menuId=1110100> (2019. 4. 22. 인출)

14) 2019년 기준, 신청 기간은 2018년 12월 19일~2019년 1월 31일, 사용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이다.

라. 주거지원

1) 국민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¹⁵⁾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하고, 사회보호 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사업지구 철거민,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우선 공급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내용은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 공급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2019년도 예산은 국민임대주택지원(용자) 795,20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952백만원(48.8%) 증가하였고, 국민임대주택(출자) 357,05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317백만원(127.8%)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019: 708-709).

2) 영구임대주택(생계/의료급여)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선정기준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하며, 지원내용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15)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019년 예산은 276,78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12,330백만원(329.4%)이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019: 710).

3) 장기전세주택(서울/국민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선정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지원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내용은 시세 80%수준의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4)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법」에 의거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41, 2019. 4. 22. 인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다음¹⁶⁾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41, 2019. 4. 22. 인출). 신청기간은 2018년 10월에서 2019년 1월말까지 총 4개월이며, 사용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말까지이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41, 2019. 4. 22. 인출).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6천원, 2인 가구 120천원, 3인 이상 가구 145천원이다(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18: 6).

16) 2018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2018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2019년 예산은 62,200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사업규모는 60만 가구 내외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128-130).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시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지자체 추천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가구 전체에서 선정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난방용품 보급, 가스·기름 보일러 지원을 뜻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69,76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900백만원(9.2%) 증가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137).

6)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대상은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상황¹⁷⁾에 처한 가구에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원, 4인 기준 346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이며,

17)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는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금융 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내용은 연체된 전기료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하며,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난방 및 취사를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사용 또는 구입비용으로 매월 9만 8천원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

1)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지원한다(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1_01.asp, 2019. 4. 30. 인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 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0세(임산부)에서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go.kr>, 2019. 4. 30. 인출).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기본 서비스를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아동 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표 III-2-25>와 같은 필수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물품

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의 기타 서비스도 지원한다.

〈표 III-2-25〉 드림스타트 대상자 필수서비스 내용(2019)

구분	서비스 지원내용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은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9e: 83). 사업의 고유 기능 및 아동발달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서비스 유형을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보건복지부, 2019e: 83).

기본서비스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고유한 기능인 아동통합사례관리의 기초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반드시 직접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9e: 83). 필수서비스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19e: 84). 주로 사례관리 대상의 발달 단계 영역에서 모든 필수서비스를 각 1회 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9e: 84).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활용을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서비스 기관에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서비스 기관의 강사를 특정 장소에 파견하여 실시한다(보건복지부, 2019e: 84). 지역자원 연계방식이 어려운 경우 직접방식 활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e: 84). 맞춤서비스의 경우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되며, 기본서비스 및 필수서비스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9e: 85).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의 지원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지역자원 연계방식과 직접방식이 그것이다(보건복지부, 2019e: 83). 지역자원 연계방식은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공공, 민간의 각종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하며, 직접방식은 지역사회 내 연계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된다(보건복지부, 2019e: 83).

한편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은 타 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9e: 100).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중복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보건복지부, 2019e: 100). 사례관리 협력체계는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아동보호전문기관, 타 공공사례관리 사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9e: 100).

2) 취약·위기가족 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취약·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지원대상은 형편이 어려운 취약·위기가족¹⁸⁾, 긴급위기가족, 이혼 신청 중인 가족이며,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손자나 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과 긴급위기가족,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이들 대상에게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피해를 입은 긴급위기 피해가족에게는 상담 및 의료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는 학습도우미 및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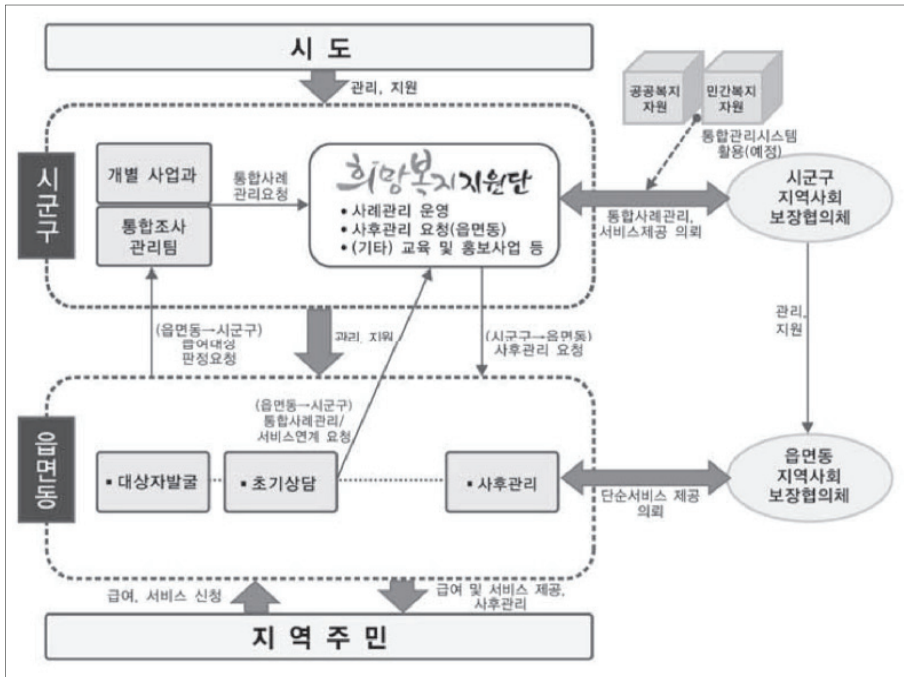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3,87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62백만원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9a: 134).

18) 취약·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긴급위기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3)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자활하고자하는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지지하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그림 III-1-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9m).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p. 20.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등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대상 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1가구 당 생활지원비, 의료비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최대 50만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서비스 부문은 대상가구의 욕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바. 종합 및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영유아기의 양육지원 현황을 빈곤의 다차원적 영역에 따라 연령과 소득기준으로 종합하면 이하의 <표 III-2-26>과 <표 III-2-27>과 같다.

우선 아동연령별로는 보육 및 돌봄지원 부문에서 현금지원, 기관보육, 가정내 양육을 위한 서비스가 지원되며, 이외에도 장애아 등 특수한 요구를 지닌 가구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최근 들어 강화된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은 신생아와 영아 대상 지원을 제외하면 영유아기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반면에 놀이 및 여가 지원은 6세아부터 지원되어 5세아 이하 지원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취약계층 통합지원은 학령기까지 포괄되나, 영유아 지원비중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소득기준별로는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과 기관보육, 이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국가 예방접종, 장애아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의 일부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조기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아동발달 검사와 실명 예방지원 등은 각각 건강보험 부가금액 하위 30% 이하와 중위소득 80% 미만으로 일부 계층에만 한정된다.

<표 III-2-26> 영유아 양육지원의 영역 및 연령별 지원내용

지원영역		만0세 (~12개월)	만1세 (~24개월)	만2세 (~36개월)	만3세 (~48개월)	만4세 (~60개월)	만5~6세 (~84개월)
보육·돌봄 지원	아동관련 수당 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장애아동수당(~만18세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만16세미만)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만18세 이하)					
	보육· 교육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야간, 24시간, 시간연장)					
		장애아 보육료 지원(~미취학 만12세이하)					
			시간제보육(3~36개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지원영역		만0세 (~12개월)	만1세 (~24개월)	만2세 (~36개월)	만3세 (~48개월)	만4세 (~60개월)	만5~6세 (~84개월)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가정내 양육지원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3개월~만12세이하)					
			영아종합일제 아이돌봄서비스(3~36개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기타 서비스 지원	비장애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사업 바우처(~만12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힐링캠프, 테마여행)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만19세미만, 부모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 자녀생활서비스(~12세이하)			
	현물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24개월)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만6세미만)						
	검진 및 예방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만6세미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취학전 만7세미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만12세이하)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취학전)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18세미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18세미만)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18세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6개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								
진단아동 임상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발달재활서비스(만 18세 미만)							
놀이 및 여가지원						통합문화이용권(6세이상)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연령제한없음)						
취약계층 통합지원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만12세 이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가구자활사업)						
주거지원	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생계/의료급여)						
		정기전세주택(서울 국민임대주택)						
	주거환경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생활비 경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자료: 복지포털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대한민국정부(2019); 보건복지부(2019e); 보건복지부(2019g); 보건복지부(2019h); 보건복지부(2019i); 보건복지부(2019k); 보건복지부(2019n); 여성가족부(2019b) 토대로 작성

〈표 III-2-27〉 영유아기 양육지원제도 및 사업 현황 1: 선별적 지원

소득기준	신청아 0개월	만0세 6개월 미만	만0세 12개월 미만	만1세 24개월 미만	만1세 36개월 미만	만2세 48개월 미만	만3세 60개월 미만	만4세 72개월 미만	만5세 84개월 미만
의료급여, 국민기초보장 시설 수급	의료급여 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드림스타트(-만 13세 미만) 장애아동수련(-만 18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련(-만 18세 미만)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6세+)
기초생활/장애아동/장애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연령 제한없음)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언어발달 지원사업(-만12세미만)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만6세)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추가아동 양육비								
중위소득 52%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만 13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가'형/생후3개월~만12세) 아이돌봄서비스(영아 중일제 '가'형/생후 3~36개월)								
중위소득 80% 미만	영양플러스 사업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만6세)								
중위소득 120%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나'형/생후3개월~만12세) 아이돌봄 서비스(영아 중일제 '나'형/생후 3~36개월)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다'형/생후3개월~만12세) 아이돌봄 서비스(영아 중일제 '다'형/생후 3~36개월)								
	선정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선정성 대사이상 환자관리 지원(-만 19세 미만)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선정성 이 성아 의료비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만18세미만)								
	선정성 난청검사 및 보 청기 지원								
소득기준 있음	만 6세 미만 아동 임원전보려 지원 (-만6세미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만13세미만)

자료: 복지포털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대한민국정부(2019); 보건복지부(2019g); 보건복지부(2019h); 보건복지부(2019i); 보건복지부(2019k); 보건복지부(2019n); 여성가족부(2019b) 토대로 작성

〈표 III-2-28〉 영유아기 양육지원제도 및 사업 현황 2: 보편적 지원

소득기준	신생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미취학)
	0개월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72개월 미만	84개월 미만
소득기준 없음 (보편복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임양아동 양육수당(<만 17세 미만)								
	장애아동임양 양육보조금(<만 19세 미만)								
	만 0-5세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만 12세)								
		시간제보육 지원(생후 3-36개월)							
소득기준 있음 (보편복지)	시간연장형 보육료-종일반								
						시간연장형 보육료-누리과정, 다문화, 장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만 18세미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서비스(<만 19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만 13세 미만)								
	장애아양육 의료비 지원(<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대상 : 발달장애 가족구성원								

자료: 복지포털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대한민국정부(2019); 보건복지부(2019e); 보건복지부(2019g); 보건복지부(2019h); 보건복지부(2019i); 보건복지부(2019k); 보건복지부(2019n); 여성가족부(2019b) 토대로 작성

IV

사례분석: 국내외 빈곤아동 통합지원

01 국내 사례

02 국외 사례

03 소결

IV. 사례분석: 국내외 빈곤아동 통합지원

제4장에서는 국내외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국내 사례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방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을 각각 다루었다.

1. 국내 사례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국내의 통합지원 사례로서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사례와 지방정부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도입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지원대상, 프로그램 내용), 조직도 및 추진체계, 주요 성과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사례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려는 사업이다(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1_01.asp, 2019. 4. 30. 인출). 지원대상은 0세(임산부)에서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첫해인 2007년에는 지원아동이 3,769명이었으나, 「아동복지법」상 추진 근거 마련('12), 사업지역의 전국적 확대('15), 사례관리사의 정규직화('18) 등 제도가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9d: 3).

〈표 IV-1-1〉 드림스타트 사업 주요 연혁

연 도	주요 내용
2018	• 실무자 1인당 담당 권장 사례관리 케이스 조정(60~80명 → 50~70명) •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2017	• 취약계층 아동 수 및 수행인력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 지원 • 민간 전문인력 명칭 변경(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
2016	• 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 사업운영 점검 대상기간 확대(1년 → 2년)
2015	• 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14년 219개 → '15년 229개) •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 추진 • 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 운영
2014	• 사업지역 확대('13년 211개 → '14년 219개) •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지역유형별 격년제 점검, 멘토-멘티 지원체계 개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시스템 통합
2013	• 사업지역 확대('12년 181개 → '13년 211개) • 위기도 검사도구 개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통합 추진('14. 1. 2. 통합 운영)
2012	• 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11	• 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 → '11년 131개) • 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 •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 사업 근거 신설('11.8.4., '12.8.5. 시행)
2010	• 사업지역 확대('09년 75개 → '10년 101개) • 대상아동별, 서비스 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2009	• 사업지역 확대('08년 32개 → '09년 75개) • 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고도화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
2008	• 사업 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 • 사업지역 확대('07년 16개 → '08년 32개) • 국정핵심과제 선정 : 2012년까지 사업지역 전국 확대 추진
2007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16개 시·군·구
2006	•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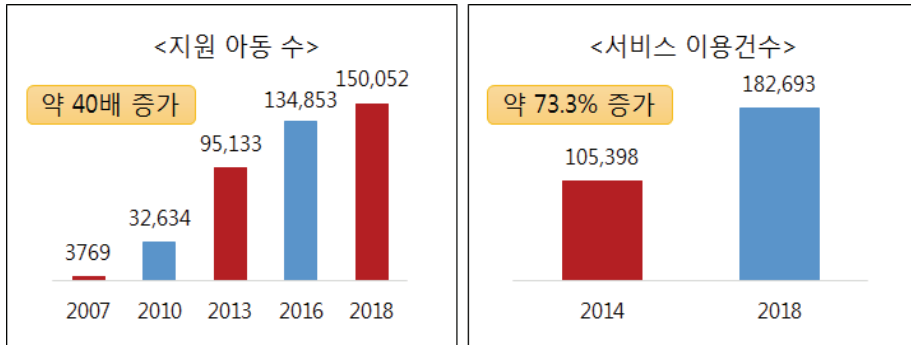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9e).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 23.

그 결과 지난해 지원아동은 15만여 명으로 11년간 40배가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건수도 최근 5년간 73%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d: 3) (그림 IV-1-1 참조). 또한 아동연령별 수혜자 현황에 의하면, 0~2세아는 전체의 2.2%, 유아는 14.9%에 그쳐 학령기 아동의 비중이 높고, 2015년 이후 영유아 대상 지원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보건복지부, 2019d: 13)(표 IV-1-3 참

조). 사례관리는 2018년 기준으로 총 79,777명이며, 이들 중 위기개입과 집중사례는 각각 595건과 5,994건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9d: 13).

한편 아동통합 사례관리사는 2013년 751명에서 2018년 1,040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d: 13).

[그림 IV-1-1] 드림스타트 지원아동수 및 서비스 이용 건수(2007-2018)



자료: 보건복지부(2019d). 보도자료: 아이들의 차별없는 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한다. p. 3.

〈표 IV-1-2〉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현황(2015-2018)

연도	사업지역 (개소)	취약계층 (0~12세) 아동 수(A)	계 (B+C)	초기상담 (B, 사례관리 아동 제외)	사례관리	
					아동 수(C)	사례 관리율 (C/A)
'15년	229	267,946명	125,562	39,161명	86,401명	32.2%
'16년	229	247,959명	134,853	49,166명	85,687명	34.6%
'17년	229	226,991명	144,289	59,618명	84,671명	37.3%
'18년	229	219,851명	150,052	70,275명	79,777명	36.3%

자료: 보건복지부(2019d). 보도자료: 아이들의 차별없는 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한다. p. 13.

〈표 IV-1-3〉 드림스타트 수혜자 연령별 현황(2015-2018)

단위: %(명)

연도	계(명)	아 동				임산부
		영아 (0~2세)	유아 (3~6세)	취학대상 (7~12세)	13세 이상	
'15년	100.0(125,562)	4.0 (5,062)	21.0 (26,409)	54.8 (68,807)	19.1 (23,922)	1.1 (1,362)
'16년	100.0(134,853)	3.2 (4,379)	19.6 (26,373)	54.1 (72,998)	21.9 (29,490)	1.2 (1,613)
'17년	100.0(144,289)	2.8 (4,060)	17.5 (25,204)	53.7 (77,487)	24.8 (35,723)	1.3 (1,815)
'18년	100.0(150,052)	2.2 (3,375)	14.9 (22,352)	53.4 (80,143)	28.1 (42,234)	1.3 (1,948)

자료: 보건복지부(2019d). 보도자료: 아이들의 차별없는 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한다. p. 13. 재구성

서비스 제공은 주로 양육 환경 및 아동발달 영역별로 제공되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표 IV-1-4>와 같다.

<표 IV-1-4>에 따르면 첫째, 신체 및 건강 영역에서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병원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인지 및 언어 영역에서는 아동의 의사소통과 기초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인지/언어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강점을 개발한다. 이때 방과후 돌봄기관과 지역 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정서 및 행동 영역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해 정서발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넷째, 부모의 양육 영역으로는 부모 역량 강화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과 적합한 교육환경을 도모하고, 임신부의 출산과 양육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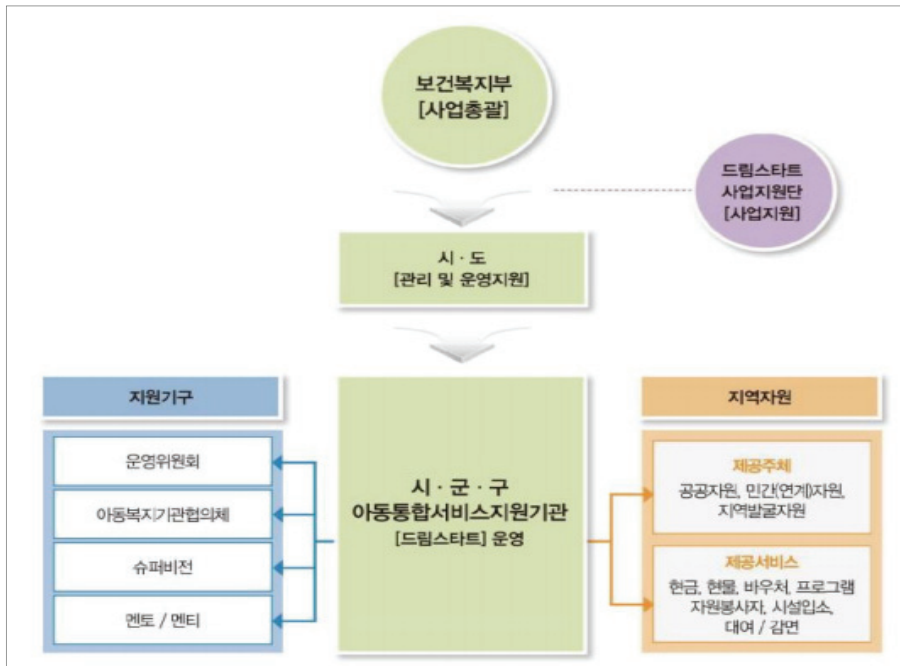
<표 IV-1-4> 드림스타트 지원내용(2019)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예시)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 기관 연계 등
부모·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자료: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3_01.asp (2019. 5. 1. 인출)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그림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이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시·도에서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고, 시·군·구 센터가 사업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원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등이 운영된다.

[그림 IV-1-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9e).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 25.

또한 드림스타트는 중앙후원과 지역후원, 자원봉사 형태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IV-1-5 참조). 중앙후원은 전국 단위의 MOU를 체결하여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자에게 사업 및 프로그램 무상지원,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의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다(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5_05.asp, 2019. 10. 13. 인출). 지역후원의 경우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자원을 확보한 뒤 후원협약을 체결하여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5_05.asp, 2019. 10. 13. 인출). 그 밖에도 자원봉사는 각 시·군·구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발적인 참여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업무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주로 수행한다(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5_05.asp, 2019. 10. 13. 인출).

〈표 IV-1-5〉 드림스타트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구분	후원		자원봉사
	중앙후원	시군구 개별 후원	
형태	중앙에서 전국 단위의 MOU 체결 (중앙: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 에서 지역자원을 확보한 뒤, 후원협약 체결	각 시·군·구별 자원봉사 자 모집 및 자발적 참여
지원대상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자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
지원내용	- 사업 및 프로그램 무상지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 개별아동 및 프로그램 연계 지원 - 각종 물품 지원	업무지원, 프로그램 수행 지원 등의 활동 수행

자료: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5_05.asp (2019. 10. 13. 인출)

이하에서 수원시와 완주군 드림스타트 사업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운영 현황 및 개선 요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기 수원시¹⁹⁾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2009년 세류동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수원시 44개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suwon/contents/sub01_01_01.asp, 2019. 10. 13. 인출).

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분소 설치와 전문사례사 증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약을 통해 가정 행복치유 프로그램, 찾아가는 동화 구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d: 2).

가) 대상 발굴 및 사업내용

(1) 대상 발굴

우선 대상 발굴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동 주민센터 베이스로 운영되므로 동 단위의 아동 정보를 드림스타트 지원대상으로 연계하며, 동 단위에서 기초상담을

19) 본 절은 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센터 면담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 담당 공무원의 서면검토를 받았음.

거쳐 통합사례관리팀에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그 밖에도 지원 대상 아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정되는데, 특히 영유아의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나, 전반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수원시의 저소득층 아동은 약 2,500명인데 사례관리사는 12명에 불과하여 약 1,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한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찾아가는 서비스가 대부분여서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또한 효과성 측면에서도 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우려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이를테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영유아의 심리검사 자체가 어렵고, 부모들의 조기발견이 힘들며,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도 아동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사례관리에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그러므로 영유아로 그 대상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동 특성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지원과 영유아보육·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지원체계의 효율화 등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관련 연계 시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면, 해당 기관의 인력들의 동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관련 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2) 지원내용

수원시의 맞춤형 서비스는 대상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를 포괄하며, 이를테면 해당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 연계하고, 조손가정의 경우는

도시락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을 취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이를 위한 지역내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사례관리사가 변경되어도 일관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표 IV-1-6〉 수원시 드림스타트 사업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인지/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올바른 사회 인식 및 이해를 도와 성숙한 사회시민으로 성장을 도모
부모의 양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자료: 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suwon/contents/sub01_01_03.asp
(2019. 10. 13. 인출)

이들 지원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욕구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일반아동의 경우는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센터, 2019. 8. 13). 매년 재조사에 따라 욕구 수준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2세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이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특성상 지원대상 규모를 그 성과 평가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아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지원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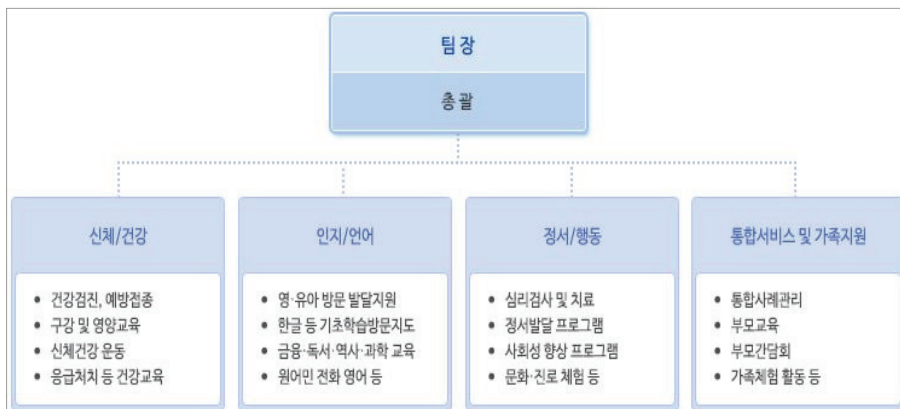
나) 조직도 및 추진체계

우선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크게 4명의 공무원과 13명의 아동통합 사례관리사로 구분하여 조직을 이루고 있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팀장 공무원 1인, 보건/보육 담당 공무원 1인, 복지/보육 담당 공무원 2명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아동통합사례 관리사는 드림스타트 영화 센터에 4인, 우만 센터에 4인, 세류 센터에 5명(육아휴직자 포함)이 함께 일하고 있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조직도는 이하 [그림 IV-1-3] 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례 관리사를 보육, 복지, 간호 부문으로 구분하여 전문화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1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나, 수원시의 경우는 관할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1개의 주사무소(세류)와 2개의 분소(우만, 영화)를 운영하고 있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이 경우 각 분소별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해당 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이와 같이 분소를 운영할 시에는 각 분소별 특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는 점도 언급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수원시의 경우는 해당 권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발달장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심리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매주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그림 IV-1-3] 수원시 드림스타트 조직도 및 주요업무



자료: 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suwon/contents/sub01_02_01.asp) (2019. 10. 13. 인출)

지역후원의 경우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자원을 확보한 뒤 후원협약과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원내용은 개별아동 및 프로그램 연계와 각종 물품

지원 등이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수원시는 현재 총 44개의 기관과 후원협약을 체결하여 수원시 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내용을 확장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협력기관과의 연계가 강조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즉 협력기관의 자원을 행복e음에 있는 자원으로 등록을 하고, 직접 서비스의 경우도 자체 운영 비율이 50% 선이며, 이들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약 50%를 차지한다고 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이 같은 서비스 연계는 아동복지기관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즉, 해당 기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위 분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만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고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협력 즉 역할 분화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여기에는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부모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요 서비스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센터, 2019. 8. 13). 실무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이들 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현재는 중앙정부의 추천으로 1년에 1회 사업보고 시에 표창을 제공하는 등이 유일하며, 수원시에서는 감사 편지 전달 등에 그치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 2019. 8. 13). 해당 인센티브는 연초에 협약 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북 완주군²⁰⁾

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

20) 본 절은 '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센터(2019. 9. 16). 사업담당자 면담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사업 담당자의 서면검토를 받았다.

01_01.asp, 2019. 10. 10. 인출). 이를 위해 2008년 5월 삼례 지역을 시범으로 시작하여 2014년부터는 완주군 전(全)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1_01.asp, 2019. 10. 10. 인출). 연간 평균 420명의 아동들이 건강, 보육,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1_01.asp, 2019. 10. 10. 인출).

동 센터의 사업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전체 취약계층 아동(1,361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 지원을 추구한다(보건복지부, 2019d: 10). 또한 이 같은 발굴 과정을 거쳐 방문상담, 1:1 방문 기초학습지도 등 1,329명의 아동에게 촘촘한 맞춤형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d: 10).

가) 대상 발굴 및 사업내용

(1) 대상 발굴

대상아동의 발굴은 일차적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센터 실무자에 의하면, 이러한 전수조사 방식은 해당 담당자가 변경될 시에 새롭게 대상으로 선정되는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기대효과를 지닌다고 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또한 대상아동을 영유아로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지적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즉, 어린이집을 통한 대상 발굴 이외에도 기관 이용시간에 추가적으로 투입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에 대한 육구 진단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그 밖에도 센터 실무자들은 장애아는 현실적으로 통합지원의 대상으로 포괄하기 어려우나, 경계선상의 아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 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2) 사업내용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기본서비스로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아동을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한다. 또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양육 환경 및 아동발달을 사정하며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2_01.asp, 2019. 10. 10. 인출). 다음으로 필수서비스는 아동과 부모, 임산부 대상별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2_01.asp, 2019. 10. 10. 인출). 아동 대상 필수서비스로는 건강검진, 영유아발달 스크리닝검사, 예방접종,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예방 교육을 제공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2_01.asp, 2019. 10. 10. 인출). 부모에게는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서비스를, 임산부에게는 산전 및 산후 검진과 예비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2_01.asp, 2019. 10. 10. 인출). 맞춤서비스는 아동과 부모 및 가족 대상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2_01.asp, 2019. 10. 10. 인출). 아동 대상 맞춤서비스로는 치료지원, 방역서비스, 기초학습지원, 경제교육, 예체능학습, 사회성발달 프로그램·정서발달 프로그램·진로지도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서비스,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부모 및 가족에게는 가족캠프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2_01.asp, 2019. 10. 10. 인출).

센터 담당자에 의하면, 읍면지역으로 구성된 완주군 센터의 사업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자원을 연계할 서비스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또한 사교육 기관과의 연계도 용이하지 않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특히 학습지원 등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유아 대상의 사업은 지역 내 서비스 연계가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고 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센터, 2019. 9. 16). 따라서 영유아 규모가 매우 적은 산간지역 등에서는 찾

아가는 서비스 방식이 매우 주요하며, 차량운행을 통해 서비스 기관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는 질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과 모니터링 실시 등도 운영되고 있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대표적으로 각종 찾아가는 방식의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만족도 등은 통합사례관리사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매칭 또는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가 추가되는데(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고 본다.

나) 조직도 및 추진체계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크게 3명의 공무원과 6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구성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센터, 2019. 9. 16). 총괄 1인, 간호 1인, 행정 부문에 공무원 각 1명이 배치되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보건 1명, 보육 2명, 복지 3명으로 구성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그림 IV-1-4 참조).

전북 완주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13개 읍면지역 중 규모가 큰 4개 지역에 절반 이상의 아동이 밀집되어 있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따라서 아동이 밀집된 지역에는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이외 지역은 지역아동센터 등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완주군은 현재 총 61개의 기관과 후원협약을 체결하여 완주군 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3_03.asp, 2019. 10. 10. 인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여 년 이상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해당 인력들이 함께 포함되어 공동사업의 기획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용이한 상황이라고 한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또한 동 지구에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도 포함되어 학교와의 연계도 원활한 편이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센터, 2019. 9. 16).

[그림 IV-1-4] 완주군 드림스타트 조직도 및 주요업무



자료: 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1_02.asp
(2019. 10. 10. 인출)

한편 동 센터에서는 개선 요구로서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적정 담당 아동수인 50~70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과다하므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상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센터, 2019. 9. 16).

나. 지방정부의 빈곤영유아 통합지원 사업 운영 사례

서울시 마포구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청주시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영유아 대상 통합지원의 추진 배경 및 경과와 주요사업 내용 및 성과 등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이에 앞서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의 배경 및 경과를 우선적으로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동 사업은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해, 아동이 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 노인과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1991년 아동복지법 제정 후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까지 국가의 보육책임 강화 과정은 반가운 일이나 한편으로 영유아 단순 보육만 있고 복지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뒤따른다(이봉주, 2013). 이는 시설중심의 공보육 체계 하에서 아동의 정서·심리

에 대한 섬세한 보살핌을 간과하기 쉽고 아동·가족·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밀어주고 끌어주어’ 신체·인지·정서적으로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이봉주·홍현미라·장혜림, 2010: 6).

사업 출범 시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가 센터당 연간 6억원씩을 3년간 지원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11개소²¹⁾가 운영되었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로는 중앙정부 사업(드림스타트 등)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현재는 서울 마포구, 인천 연수구, 충북 청주시 3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표 IV-1-7〉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센터	주소
① 서울마포센터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4길 53
② 인천연수구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학동 494-6 2층
③ 충북청주시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31 태화빌딩 2층

주: 서울마포센터 주소는 센터담당자 확인 통해 최신주소로 수정함.

자료: 여성가족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양육 분야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43.do (2019. 6. 5. 인출)

1)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²²⁾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1) 사업 개요

서울 마포구의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이하 마포센터)는 0~7세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유아·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중재 프로그램, 부모교육, 지역사회 성과평가, 공동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양육 분야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43.do, 2019. 6. 5. 인출).

21) 2008년 5개: 서울 마포구, 대전 중구, 경북 구미시, 전북 군산시, 경기 의정부시

2009년 6개: 서울 강북구, 관악구, 중랑구, 인천 연수구, 충북 청주시, 부산 영도구

22) 본 절은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2019. 5. 27) 사업담당자 면담자료 및 대표블로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담당자의 서면검토를 받았음.

사례관리는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며 나아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성장을 위한 사업들과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이러한 사업은 대표적으로 ‘희망브릿지’라는 사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이 사업은 영유아의 마음건강 문제를 가족과 주민부터 민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계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조기 개입하는 사업이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동 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지역사회내에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표 IV-1-8〉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통합 사례관리	- 대상: 마포구 거주 영유아 가족 중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으로 마포센터와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가족 - 내용: 영유아 및 가족중심의 당사자 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와 조정 및 지역사회 협력기반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
가정 내 양육지원	- 대상: 마포구 거주 영유아와 그 양육자 - 내용: 모-아 상호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중재 활동, 연령에 맞는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한 조기개입으로의 발달치료서비스 지원과 양육 코칭
지역사회 기반 양육지원	- 양육자 교육: - 마포구 내 양육자교육을 담당하는 유관기관 실무자와 찾.동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양육자 교육 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해 찾.동과 연계하여 마포구 어디에서든 동별 지근거리 중심의 양육자교육 실시 - 양육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양육자 간 이웃 관계망 형성을 촉진하고 지지하고자 커뮤니티 맞춤형 활동 지원 - 영유아가족합창단 ‘말랑말랑합창단’ 활동 지원: 2018년 창단 이래, 영유아 가족 간 관계증진과 합창단의 자생성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지원체계 구축	- 희망브릿지-영유아 발달 지원체계구축 - 보편적 접근으로의 영유아 발달스크리닝 진행, 고위험군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전문-심층검사 진행 및 개별-맞춤형 치료서비스 연계지원, 발달지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에 대한 양육코칭, 관련 유관기관단체네트워크와의 연대 활동 진행 - 지역자산화프로젝트: 공간기반 마을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공유공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과 기금마련 활동
지역사회 연계	- 연계 활동: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 마포구 내 기관단체주민네트워크와의 연계활동 - 홍보 활동: 센터 방향과 역할 공유, 영유아 관련 사업 홍보

구 분	세 부 내 용
나눔문화 확산	• 나눔플랫폼: 양육자의 나눔활동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센터 공간 기반 영유아 용품 나눔플랫폼 구축 • 자원개발관리: 취약계층 영유아가정 맞춤형 자원연계 및 센터의 영유아복지 활성화 위한 재원기반 마련
교육연구	• 성과연구: 센터 사업과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공유 • 교육연계 활동: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생들, 유관기관단체 대상 센터 사업과 가치 공유

자료: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2019).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앞으로 살펴볼 기획사업 1호점인 마포센터는 마포구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와 가족에게 건강·복지·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친(親)영유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2월 개소 하였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마포센터는 지원대상 선정과 중점 추진사업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사업들과 차별화하여 운영 중이다. 사업상 차별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첫째는 사례가정의 역할을 서비스 수요자, 수혜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능동적 주체로 세워낸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다시 말해 사례당사자의 소속과 존중, 애정, 자기결정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둘째는 사례관리에 있어 행동체계와 지지체계 구축 등 영유아 가정의 환경에 대한 개입과 상호작용을 중시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마포센터의 주요한 성과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양한 파트너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총량을 확대시켜 사례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생력과 공생력을 증진·확대시켰고, 지역 내 다양한 영유아 관련 체계가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영유아 복지환경을 구축한 점을 들고 있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사례관리만 주력하지 않고 지역 네트워크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어떻게 영유아 관련해서 친영유아 복지환경을 갖추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네트워크사업이 강했던 거고. 초창기 자료들 중에 시소와그네 전후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있어요. 저희가 5년에 걸쳐서 희망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모금회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받아서 작년에 우수상도 선정이 되고 정부 지자체 최초로

영유아 발달 전 체계 구축 조례도 만들 예정이에요.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2) 주요 연혁

마포센터는 2008년 2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기간별로 크게 구분하면 공동모금회의 비용지원을 받은 최초 5년간은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면서, 센터 내 자조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돌봄과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영유아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나가는 시기였다. 이후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관리 측면에서 마포센터는 마포구 내 16개 전동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사례관리를 진행 중인데, 현재는 사례 수를 대폭 줄여서 꼭 필요한 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역과의 연대·연계 측면에서는 공유재 확대를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기금 조성, 영유아 가족 합창단 창단, 그리고 양육자 교육과 커뮤니티 등 영유아 영역의 콘텐츠를 찾·동²³⁾ 서비스에 탑재하기 등이 포함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2012년부터 출현하는 주요사업의 대부분은 양육 당사자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성과들이다. 2012년 돌봄 네트워크·부모 커뮤니티 시행, 2013년 부모 커뮤니티 활동에 기반한 ‘마포 아이키움 길라잡이’ 책자 발간과 주민 자조 공간으로서의 육아카페 개소, 2014년 마포 돌봄 네트워크와 주민 주도의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마.시.파 바자회) 개최, 2015년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한 ‘희망 브릿지’ 사업 시행, 2016년 찾·동 사례관리 협력기관으로의 선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마포센터는 개별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 형성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꾸준히 활동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구분한 활동내용은 이하와 같다(시소와 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대표 블로그. https://blog.naver.com/sb7c_, 2019. 6. 6. 인출).

2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이란, 기존 일반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한 것으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와 동 단위의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에서 2019. 6. 15. 인출)

〈표 IV-1-9〉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2019	4월 마포 영유아 양육자 커뮤니티 기획/활동 지원 6월 찾·동 연계 양육자교육 기획단 구성/활동 마포구 영유아.아동복지활동가 연수 기획/진행 6월 장난감 매개 육아경험 교류 '나눔플랫폼' 운영 7월 마포구 영유아 조기개입체계 구축과 지원 '마포 영유아, 골든타임을 지켜라' 사업 실시(마포구 거주 2015년생 전수 발달점검/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9월 찾·동 연계 양육자교육 '우리 동네 육아친구를 소개합니다' 실시
2018	1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 이루기 '2018 희망브릿지' 사업 실시(2018 나눔과꿈 우수사례 선정) 6월 말랑말랑 영유아가족합창단 창단 찾·동 연계 양육자교육 기획/진행 찾·동 연계 모아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실시 12월 마포구 사회복지 활동가 연계 '찾아가는 산타' 기획/진행(~현재)
2017	1월 아동 양육자의 내적지지 활동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 '영.양.제' 실시 7월 마포돌봄네트워크 1차 공동세미나 개최 12월 나눔과꿈 사회복지분야 사업 선정
2016	2월 마을중심 사회복지를 위한 마포일꾼교육(10회기) 기획 및 진행 마포돌봄네트워크 '돌봄 포럼' 공동개최 6월 마포구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례관리 협력기관 활동(~현재) 9월 [영유아의 정신건강,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포럼 개최 10월 지역사회 연대 부모교육 '부모도 날개를 달자' 실시 도화마을 주민주도의 마을활동 활성화와 나눔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축제 '서로서로도화' 실시
2015	1월 마포구 취약계층,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정에 대한 통합지원사업 실시 4월 마포구 영유아의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한 발달상태 실태조사와 통합지원을 통한 발달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희망브리지 V' 실시 5월 마포영유아통합서비스지원사업단 발족, 주민커뮤니티 '아띠맘스' 출판기념회
2014	5월 마.시.따 품나눔 바자회 진행 11월 마포돌봄네트워크 발대식
2013	1월 마포아이키움길라잡이 발간(주민커뮤니티 활동 기반) 2월 시소와 그네 육아카페 개소
2012	1월 서울시 서부교육청 지원사업(초등학교 입학준비) 실시 7월 사례당사자 주체적 참여 가족캠프 진행 9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부모커뮤니티) 실시 10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돌봄네트워크) 실시
2011	1월 국공립 어린이집 희망브릿지 협약(35개 보육시설) 4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형 C사업 선정
2010	6월 기관연합 마을축제 '기분좋은 축제' 실시
2009	4월 사례당사자 자조모임 '돌.다.리'
2008	3월 개소식

자료: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대표 블로그. https://blog.naver.com/sb7c_ (2019. 6. 6. 인출)

나) 주요 사업내용

(1) 통합사례관리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0~7세까지의 영유아로 이들의 발달적 욕구와 환경체계를 고려하여 영유아와 양육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을 동시에 포함한다(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재학 아동까지 사례관리 아동으로 선정 가능). 지원 대상자는 주로 양육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집, 복지관, 심리치료센터, 지역주민의 소개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이화진, 2013). 마포센터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2019)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발굴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 마포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옆집 아이가 계속 운다며 이웃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등 주민이 직접 의뢰하는 경우와 함께,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던 케이스가 더 이상 개입이 어려울 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나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례를 발굴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특히 마포센터는 마포구 16개 동별 통합사례회의,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네트워크 분과,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분과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위기 사례를 발굴한다. 이밖에도 지역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사례가 발굴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찾.동의 등 통합사례회의에서 고립감이 있는 어머니(양육자)를 발굴하고 저희 센터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고립감이 있는 어머니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심리적·물리적 고립을 함께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양육 당사자인 어머니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변화상을 함께 그리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부분(자생력, 주도성 향상)과 센터가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공동으로 사례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사례관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죠. 어떤 경우든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반드시 시행하되, 초기에는 주 1~2회 정도의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정방문 횟수는 촘촘해져요. 그리고 저희 사례관리 가정의 양육자는, 센터의 지역사회연계 사업 중 양육자 교육, 커뮤니티 활동, 교육중재 활동, 양육 코칭 등과도 연결됩니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이상 사업의 대상은 한때 드림스타트 사업과 중복서비스 논란이 있었으나 드림스타트가 학령기 아동에 집중하나 시소와그네 사업은 위기 영유아 가정이므로 대

상에 따른 중복서비스 논란에서 자유로워도 될 것으로 언급된다(시소와그네 마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특히 마포센터는 사례관리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례가정의 비공식적 지지망 구축 등의 체계구축에 집중하여 참여 영유아가정의 위기 상황을 극복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력을 갖게 하고, 사례관리에서도 지역사회 내 행동체계를 고려한다는 점이 강조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이러한 강조점은 지역사회 개발의 관점과도 맥락이 유사하다고 설명된다. 즉, 지역사회 개발은 생활공간인 지역사회가 물리적, 환경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인(生活空間) 주체의 변화와 그 주체와 지역사회와의 상호 의존성, 또는 상호작용이 변하는 것이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는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게 된다고 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지역사회 자원 지원은 제공이 아닌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으로 이들의 삶이 편입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phrase)이어야 하며, 지역사회개발은 주민당사자에게 내 안에 피어난 새로운 장소, '우리 동네'로서 인식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이러한 사례관리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당사자가 'You are not alone'을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 커뮤니티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사례관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2) 지역사회 연계 사업

앞서 언급했듯이 마포센터는 사례관리를 기본사업으로 운영하되,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커뮤니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지역사회 내 아무런 사회관계망이 없던 저소득빈곤 영유아 가정의 주민에게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시켜주는 사회사회의 변화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동네'에 스며들어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로 서게 한다고 설명된다.

희망브릿지는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조합된 대표사업이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시소와그네 기획’의 주요 관점으로 제시한 커뮤니티 임팩트의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 지역 내 구축한 ‘희망브릿지 네트워크’를 통해 마포구 영유아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인 보편적 영유아 복지서비스(발달 스크리닝)를 진행하고(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을 선별하여 맞춤형 서비스(치료서비스, 사례관리 사례로 선정 등)를 지원함으로써, 참여한 영유아 가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 구체적으로 마포구와 마포센터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만3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 스크리닝을 시행함으로써, 양육자가 아동의 발달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발달검사 스크리닝을 통해 발달이 지연된 발달지연 영유아가 발굴되어, 전문검사 및 맞춤형 서비스와 연계됨으로써 발달지수가 향상되는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겐 바우처를 비롯한 기존 제도들을 활용연결하여 지원하며,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마포구 내 16개 동주민센터,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사례가정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마포센터는 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치료센터와 어린이 집·유치원 등 다양한 영유아 관련 기관·단체를 조직하고 인프라를 재구성하여 실효적으로 움직이는 ‘희망브릿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이 매년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마포구 내 모든 영유아가 발달 스크리닝에 참여함으로써 발달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발달이 지연된 영유아가 조기에 발견되어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됨으로써 보다 빠르게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 하도록 2019년 현재, 마포센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영유아 발달지원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청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이 조례 제정 청원 활동을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영유아아동복지분과)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민·관이 함께 고민하여 제도화하고자 한다.

다) 운영관리 및 조직

(1) 운영관리 현황

마포센터는 지자체(서울시 마포구)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위탁의 형태

이다. 연간 예산은 7억 원 정도(2019년 기준)이며, 이 중 4억 원은 마포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에 각각 지출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구 보조금을 제외한 2.5억 원 정도의 예산은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통해 확보하는 사업 진행을 위한 지정사업후원금이며, 그 밖에 운영후원금과 위탁법인을 통한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한편 마포센터는 ‘시소와그네’로 기획된 시점부터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내 영유아와 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의 방식을 통해,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따라서 지역을 기반으로 영유아 복지활동을 폭넓게 진행함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조직도 및 네트워크 연계

마포센터는 ‘잘 노는 아이, 눈 맞춰주는 부모, 함께 사는 우리 마을’이라는 미션 하에서 관장 1인, 과장 2인, 5명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고 있다. 또한 마포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고 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일례로 희망브릿지 사업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심리치료 전문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내 양육자 카페, 마을 공동체라디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영유아·아동복지분과), 마포구청 및 16개 동주민센터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사례관리 가정을 보아도 아이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례가정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는 물론 아랫집/윗집(이웃),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가족자원), 교회, 슈퍼마켓 등과 연계되어 있다.

라) 주요 성과

시소와그네 마포센터는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위탁 영유아 전문 복지기관으로 자리 잡아 통합사례관리, 자조공간 기반 공동체 돌봄 사업, 주민주도의 마을기금 조성사업, 영유아 발달지원-조기개입 체계구축 사업, 나

농문화 확산 사업 등을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 통합지원센터, 2019. 5. 27). 10여년간 민간조직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슬기롭게 선택하여 민간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하되 공공부문과도 조화롭게 일하고자 하였다.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민간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을 대변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그에 따르면 공공은 하위 욕구(생리적, 안전의 욕구)를 책임져야 하는 반면, 민간은 보다 상위 욕구(소속감, 자아존중인정, 자아실현의 욕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이 주민과 주민의 관계를 잇고, 욕구를 점점하고 조직하며,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마포센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활동합니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민간 조직의 또 다른 강점으로는 주민 욕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점이 지적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이렇게 기획된 사업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활동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활동의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로 전환·확대하여 지속성과 보편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포센터가 2020년 ‘영유아 발달지원체계구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희망브릿지라는 사업을 통해 다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해 온 것을 들고 있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공공은 검증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사업으로 풀지 못해요. 공공재가 들어가는 부분이니 검증이 필요한거죠. 그리고 검증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화하는 거고…. 그렇게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이터를 쌓고, 성과를 입증해야죠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욕구가 공공서비스로 전환되는 경우, 민간은 확장되어 전환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혹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여 또 다른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된다(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마포센터 역시, 기획하여 진행한 사업 중 추후 공공서비스로 확대되

어 보편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된다.

초창기 영아에게 진행하던 서비스를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찾·동 서비스 안에 신생아 대상의 찾·동 간호사 가정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공이 확대하여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중복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육아사랑방, 육아방 등의 이름으로 보편화되어 많은 영유아 가족이 이용하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2008년 초 센터를 개소하면서 ‘육아카페’라는 이름으로 영유아와 그 양육자를 위한 주민 자조공간을 오픈한 것이 시초예요. 또 각 지자체에서 보육반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육아정보 책자도, 저희 양육자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동네 정보를 모아보자”에서 시작한 활동집을 보고, 시작된 것이구요. 후에 이 저작권 문제로 꽤나 시끄럽기도 했었죠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9. 5. 27).

2) 청주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²⁴⁾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이하 청주 센터)는 영유아에게 건강·복지·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평등한 기회보장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영유아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아동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내 양육능력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홈페이지 <http://www.cjssw.co.kr/toddler>, 2019. 6. 15. 인출). 이를 위해 영유아의 건강, 복지, 교육, 문화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청주시, 2019).

청주센터 사업담당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시소와그네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예산지원근거나 자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타 지자체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한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현재 시소와그네는 전국에 2개소(마포, 청주)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시소와그네 사업 담당자들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여 성과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구방안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점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는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한편 청주센터는 정부위탁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시 보

24) 본 절은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2019. 6. 5) 사업담당자 면담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센터장의 서면검토를 받았다.

조사업자로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구방안으로 2012년부터 지역사회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하 사회서비스)을 제공하여 부족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전액 자체부담하고 있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이렇듯 어려운 여건에서도 청주센터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구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 청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중점사업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과중심의 사업운영 방식과 지역사회와 공동사업을 수행한데 기인한다. 첫째,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사업 성과에 주력하여 초기부터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매번 이를 증명하면서 운영해 왔다고 한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매년 서비스 수혜자와 지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투입하여 이러한 변화를 얻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성공의 주요요인으로 꼽는다. 둘째, 지역사회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²⁵⁾ 2, 3, 4기(4기는 2019-2022)에 시소와그네 사업이 포함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시소와그네 협약기관이 지역 내에 100여개가 있고 매년 1회 개최하는 영유아박람회(2011년부터 9년째)를 협약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도 지역사회와 공동사업의 일례가 될 수 있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운영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청주센터는 0~7세 회원가정을 모집하여 자녀가 7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사례관리 담당자가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지원을 지속한 결과 지역 내 존재감이 크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된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청주시 영유아복지지원사업은 2009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한 사업으로 영유아지원사업 39개, 가족지원사업 47개, 지역연계 및 공동사업 153회, 사례관리 380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17년 청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8).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증진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비롯한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 및 연계, 협력기능을 담당한다(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http://www.cjwelfare.net/>에서 2019. 7. 4. 인출)

나) 주요 사업내용

(1) 지원대상

청주센터 사업담당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0~7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평균 회원 300여 가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영유아관련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한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대상자 모집은 신문 등에 홍보하거나, 회원들의 입소문으로 지역에 이미 알려져 상황여서 용이하였다고 한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대상자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영유아 가정 중 복합적 욕구를 지닌 영유아로, 2018년 9월 기준 청주시의 영유아 54,324명 중 380명이 이용 중이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8).

〈표 IV-1-10〉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이용 현황

계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저소득
380명	3명	377명

자료: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2018). 사업성과 보고서.

〈표 IV-1-11〉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이용가구 특성

계	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장애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380명	355명	7명	15명	-	3명

자료: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2018). 사업성과 보고서.

(2) 사업내용

청주센터는 이하와 같이 사업추진 6가지 방향성에 따라 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Mission(건강한 아이, 행복한 가정,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을 달성하고 Vision(영유아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8).

〈표 IV-1-12〉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의 사업 추진 방향

사업추진 방향성	내 용
① 예방적 서비스	영유아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 가급적 어린 나이부터 미리 예방하는 서비스
② 맞춤형 서비스	강점관점에서 영유아와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함께 협력하여 해결
③ 통합적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
④ 찾아가는 서비스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부모와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을 수행
⑤ 지역사회와의 변화	지역사회의 필요 자원이 상호 조달될 수 있도록 센터가 거점(Hub) 역할
⑥ 성과보고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고자 노력

자료: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2018). 사업성과 보고서.

청주시센터의 사업 방향성에 따라 주요 사업은 ‘영유아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지원사업’으로 구분되고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이하와 같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홈페이지, <http://www.cjssw.co.kr>, 2019. 6. 15. 인출).

〈표 IV-1-13〉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세부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	영아발달스크리닝 “건강한 우리아이”	영아들의 발달 상태 모니터링 • 신체계측, 가정방문 등	• 센터 회원가정의 36개월 이하 영아
	테마별 건강강좌	구강강좌, 아토피관리, 식습관(편식) 교육, 성교육 등 강좌 진행	• 청주시 지역사회 영유아 가정
	예방접종 지원	계절별 독감예방접종	• 본 센터 영유아 및 형제자매
	영유아 건강관리 캠페인	영유아 건강관리 중요성 인식 캠페인 진행	• 영유아 가정 및 청주시민
	의료지원서비스	의료시설 연계를 통한 접종지원	• 본 센터 영유아 및 형제자매
지역사회 지원사업	동네방네 사랑방 모임	영유아 부모들의 구역별 자발적 모임 구성, 비공식 자원 확대	• 본 센터 회원 및 청주시 거주 영유아 부모
	조사연구사업	영유아 복지포럼 개최(연1회)	• 지역사회 유관기관
	성과보고대회	사업성과발표 및 성과보고 자료 집 제작(연1회)	• 협약기관 및 지역사회 복지 기관, 지역주민
	지역사회 기관협약	• 분야 : 복지, 의료, 상담, 교육, 문화	•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공동사업	영유아기 인권보호사업,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사진전시회	• 협약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례관리	매뉴얼 중심의 사례관리	• 본 센터 회원 가정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치료지원 사업	발달검사	영아발달검사, 유아발달검사, 유아사회성검사, ADHD 검사	• 청주시 거주 영유아
	영유아 인지·정서·행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 청주시 거주 영유아
	가족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어머니집단 상담, 어머니개별상담	• 청주시 영유아기 유자녀 부모
	찾아가는 치료지원	지역사회에 전문 치료사 파견	• 청주시 내 영유아 이용기관
가족지원 사업	효과적인 부모역할 다지기	자녀기질에 맞는 양육법, 자녀 심리분석 이해, 아버지 부모교육	• 청주시 영유아기 유자녀 부모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 만들기	MBTI 성격 유형 검사, 한국형 애니어그램 검사	• 청주시 영유아기 유자녀 부모
	찾아가는 부모교육	어린이집 및 자치센터 방문교육	• 청주시 영유아기 유자녀 부모
	가족관계개선사업	한부모 가족사업, 1-3세대 공감 프로그램, 가족 힐링프로그램, 발달지연아동 어머니 모임	• 청주시 영유아기 유자녀 부모
	부모역량강화사업	그림책 연구회 모임, 재능개발 동아리 모임	• 청주시 영유아 가정
	가족여가문화체험활동	가족뮤지컬, 인형극, 요리체험, 애니메이션 관람, 가족나들이	• 본 센터 영유아가정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엄마랑 나랑 교육중재	주제별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활동 지원	• 5-7세 유아
	가정으로 찾아가는 멘토링	대학교 학생을 교육하여 영유아가정으로 1:1 파견	• 5-7세 유아
	신체발달 프로그램	오감자극 신체놀이, 즐거운 체육놀이 등	• 2-4세 영유아와 부모
	인지발달 프로그램	창의팡팡 탐구교실, 두뇌개발 보드게임, 그림책놀이 등	• 4-7세 유아와 부모
	언어발달 프로그램	이야기 마당 언어교실, 북아트 체험	• 6-7세 유아와 부모
	정서발달 프로그램	알록달록 미술놀이, 아빠와 함께 하는 놀이체험	• 5-7세 유아와 부모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인성교육, 형제자매를 위한 방학특강, 자연속으로 생태체험	• 5-7세 유아와 부모
	기본생활 프로그램	바른생활 예절교실, 보글보글 요리교실	• 5-7세 유아

자료: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홈페이지 <http://www.cjssw.co.kr> (2019. 6. 15. 인출)

한편, 청주센터는 운영비조달을 위하여 자체 매뉴얼 사업인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 SDI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장난감 도서관 사업은 영유아가정의 욕구로 사업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하고 있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9. 6. 5).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하와 같다.

〈표 IV-1-14〉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주민조직사업 세부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사회서비스사업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중재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0-6세 영유아 대상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형성을 지원하고 양육부담 감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중 만1~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문제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 중 만 18세 이하 아동
장난감도서관 사업 ^{주)}	영유아 장난감도서관사업	- 장난감 대여 및 소독, 수리 - 도서 대여	청주시 거주 7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

주: 지역 내 수요가 있어 지속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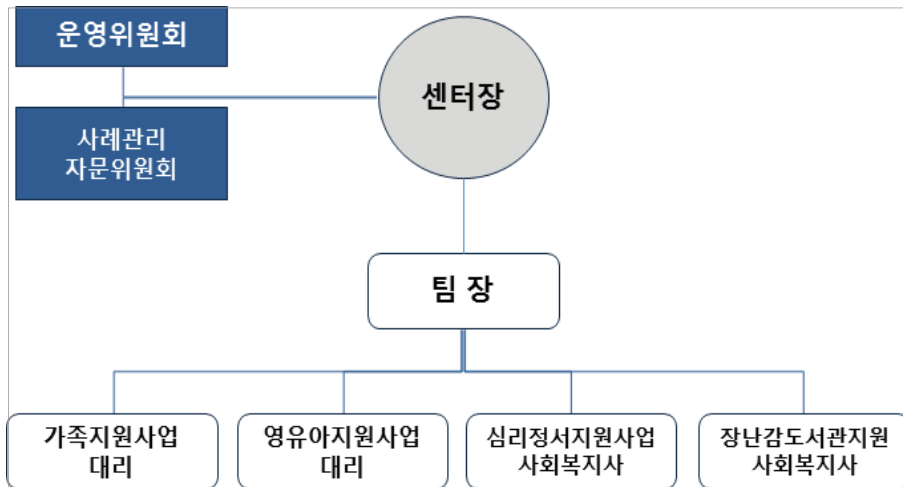
자료: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2019. 6. 5). 사업담당자 면담자료 재구성.

다) 조직 및 사업체계

(1) 조직

청주센터는 센터장 1인, 팀장 1인, 팀원 4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도와 별개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11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인 임신출산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고 있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8).

[그림 IV-1-5] 청주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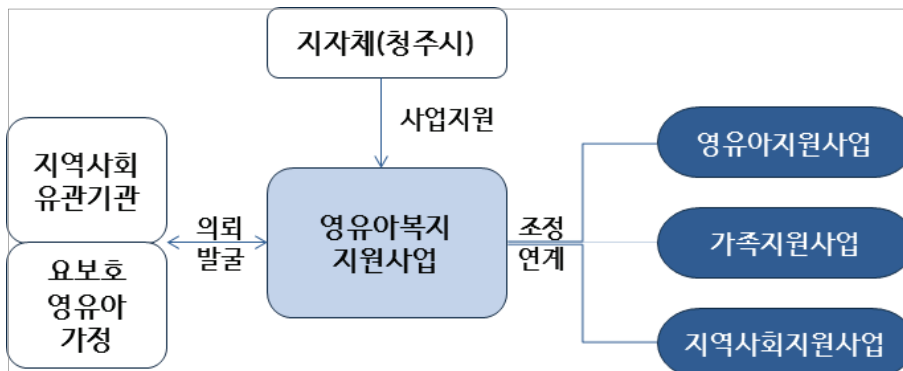


자료: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2018). 사업성과 보고서.

(2) 사업체계

청주센터는 민간조직으로서 차별성뿐 아니라 공공부문과의 협조체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업규모를 보면 청주시로부터 연간 2.2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사회서비스 2억, 그 이외에도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공모사업을 통해 연간 총 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청주시, 2019).

[그림 IV-1-6]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사업체계도



자료: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2018). 사업성과 보고서.

청주센터는 영유아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지원사업의 세 가지 사업 영역 중에서 특별히 한 영역에 치중하기보다는 각 사업담당자의 역량 하에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민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례회의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8). 청주센터의 사업체계는 위의 [그림 IV-1-6]과 같다.

라) 주요 성과²⁶⁾

청주센터의 사업 성과는 논리 모델에 근거하여 투입, 활동, 산출, 성과의 흐름도에 따라 제시된다.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과 각각의 활동목표대비 달성여부의 효과성에 주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청주센터의 자체 성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영유아놀이교육지원사업은 총 658명(연 3,245명)의 영유아와 부모에게 총 31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언어, 대근육, 소근육, 인지, 정서·사회성 영역이 전반적으로 약 11% 선이 향상되었으며, 부모-자녀관계 척도는 사전-사후 결과 10.3%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심리정서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사각지대 영유아를 위해 영유아발달선별검사와 찾아가는 심리정서지원서비스를 총262명(연간 1,267명)의 영유아와 부모에게 진행하여 심리정서 안정도는 5점 만점에 4.72점, 자녀 이해 도움 정도 4.84점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총233명(연756명)에게 12개 프로그램을 총77회 진행하였으며,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영유아 부모의 재능개발 및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총 57명(연 294명)에게 5개 프로그램을 총 33회 진행하였다. 이들 사업의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우울감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관계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2018).

2. 국외 사례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국외의 통합지원 사례로서 미국의 헤드 스타트, 영국의

26) 본 항은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2018). 사업성과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함.

슈어 스타트, 호주의 베스트 스타트 사업의 도입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지원대상, 프로그램 내용), 전달체계 및 자원, 주요 성과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헤드 스타트(Head Start)

1) 도입 배경 및 전개

미국의 헤드 스타트는 1964년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빈곤 아동의 학업 부진의 주요 원인이 빈곤에 의한 결핍에 있으며 학업 부진이 성장 이후 사회참여와 부의 획득과도 연결된다는 주장에 힘입어 출발하였다(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istory-of-head-start>, 2019. 6. 27. 인출). 헤드 스타트는 미국 아동빈곤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가정의 만 3~5세 아동의 전인적 필요 즉,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Bailey, Sun, & Timpe, 2018: 1). 다시 말해, 헤드 스타트는 학업 부진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상쇄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빈곤가정 미취학 아동의 취학 준비를 지원하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Bailey et al., 2018: 1; 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istory-of-head-start>, 2019. 6. 27. 인출).

헤드 스타트는 1964년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근거하여 처음 실시되었으며, 관련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김미숙·배화옥, 2006). 헤드 스타트에 독립적인 자유재량을 부여한 첫 법률은 1981년 제정된 「헤드 스타트법(Head Start Act)」이다(미국 아동 복지·다양성·기회 및 평등 상태 모니터링 통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diversitydatakids.org/~media/61/Head%20Start%20Legislative%20History%20Highlights.pdf>, 2019. 9. 30. 인출). 1994년에는 「헤드 스타트법」 개정을 통해 조기 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빈곤 가정의 만 3세 미만 아동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김미숙·배화옥, 2006: 130). 2007년에는 취학 준비를 위한 「헤드 스타트 개선법(The Improving Head Start for School Readiness Act)」이 통과되어 프

로그램 질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규정들이 도입되었으며, 2016년에는 규제 기준을 약 30% 줄이고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수행 기준이 개정되었다(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istory-of-head-start>, 2019. 6. 27. 인출).

2) 주요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헤드 스타트는 만 3~5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초기 헤드 스타트는 만 3세 미만 아동 및 가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e: 197). 대상자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빈곤선 이하²⁷⁾ 가정의 아동이나 공공부조 수급 가정, 노숙 가정 및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김미숙·배화옥, 2006: 130). 요보호가족 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이나 보충적 소득보장(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수급 가정은 빈곤가정으로 인정되어 소득조사 없이 헤드 스타트 이용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김미숙·배화옥, 2006: 130).

이외에도 「장애교육법(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근거하여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또는 조기개입 서비스 대상인지 등이 고려되며, 전체 등록 아동의 최소 10% 이상이 장애아동이어야 한다(헤드 스타트 ECLKC 홈페이지, <https://eclkc.ohs.acf.hhs.gov/policy/45-cfr-chap-xiii/1302-14-selection-process>, 2019. 9. 30. 인출). 또한 매년 초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헤드 스타트 ECLKC 홈페이지, <https://eclkc.ohs.acf.hhs.gov/policy/45-cfr-chap-xiii/1302-14-selection-process>, 2019. 9. 30. 인출). 2019년 2월 기준 약 1,700개 기관을 통해 헤드 스타트와 초기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서 제공되고 있다(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2019. 9. 30. 인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80% 이

27)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발표한 가구원수에 따른 2019년 미국의 빈곤선은 3인 가구 21,330달러, 4인 가구 25,750달러이다(미국 기획평가차관실 홈페이지, <https://aspe.hhs.gov/2019-poverty-guidelines>, 2019. 10. 6. 인출).

상이 만 3세와 만 4세이며, 조기 헤드 스타트에 참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는 20% 미만이다(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2019. 9. 30. 인출).

나) 프로그램 내용

헤드 스타트와 조기헤드 스타트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빈곤 가정 아동의 취학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요구도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 및 가족의 인종·문화·언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Office of Head Start, 2017)²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2019. 9. 30. 인출). 첫째, 조기학습 지원이다. 언어 발달, 문해력 증진, 개념 발달과 함께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안정 등 학습을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발달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2019. 9. 30. 인출). 둘째, 아동의 지각·운동·신체 발달을 지원한다(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2019. 9. 30. 인출). 헤드 스타트 지원을 받는 모든 아동은 건강 및 발달 검사, 영양식, 구강 건강 및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의료서비스, 치과 및 정신건강서비스도 연계된다(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2019. 9. 30. 인출). 셋째, 가족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이 성장하는 가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모 및 가족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평생 교육 및 재정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며, 부모-자녀 관계 개선 및 강화를 통해 아동의 학습 및 발달을 증진하기 위해 가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2019. 9. 30. 인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소는 대부분 센터와 학교이며,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실시되기도 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가정 방문을 통해 제공되

28) Office of Head Start (2017).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7.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hs-program-fact-sheet-2017_0.pdf (2019. 6. 27.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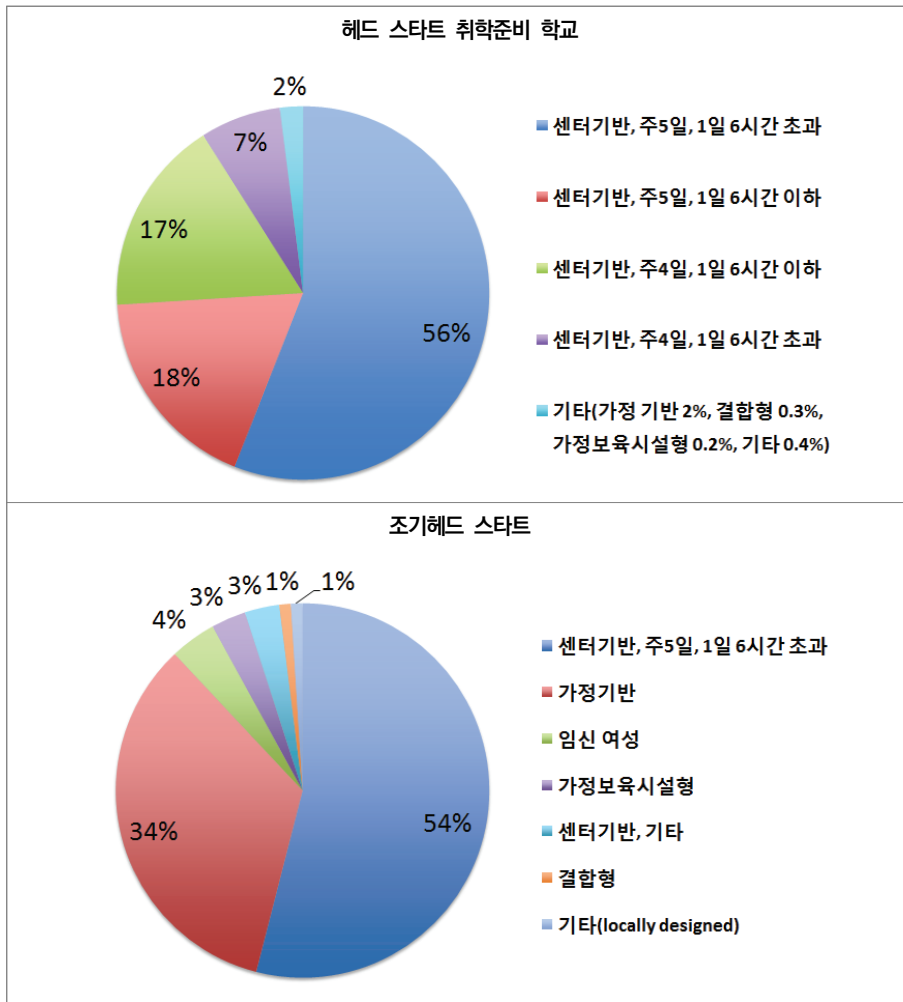
고 있다. 헤드 스타트 운영 방식은 센터기반형, 가정기반형, 가정보육시설형, 결합형으로 나뉜다(미국 아동 복지·다양성·기회 및 평등 상태 모니터링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diversitydatakids.org/files/Policy/Head%20Start/Logic/Head%20Start%20Basic%20Definitions.pdf>, 2019. 9. 30. 인출). 센터기반형은 센터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가정기반형은 해당 아동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가정보육시설형은 가정과 유사한 가정보육 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미국 아동 복지·다양성·기회 및 평등 상태 모니터링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diversitydatakids.org/files/Policy/Head%20Start/Logic/Head%20Start%20Basic%20Definitions.pdf>, 2019. 9. 30. 인출). 결합형은 센터와 가정에서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이다(미국 아동 복지·다양성·기회 및 평등 상태 모니터링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diversitydatakids.org/files/Policy/Head%20Start/Logic/Head%20Start%20Basic%20Definitions.pdf>, 2019. 9. 30. 인출).

지원금을 교부받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 형태를 살펴보면, 29%는 헤드 스타트 취학 준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27%는 조기헤드 스타트 프로그램만 실시하고 있으며, 43%는 헤드 스타트 및 조기헤드 스타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Office of Head Start, 2018: 4).²⁹⁾

헤드 스타트 사무소(Office of Head Start)에서 발표한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취학 준비 서비스의 98%는 센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주당 이용 일수와 1일 이용 시간은 선택할 수 있다(Office of Head Start, 2018: 4). 조기헤드 스타트에서는 가정기반 프로그램이 3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역시 절반 이상(54%)은 센터기반 프로그램이었다(Office of Head Start, 2018: 5).

29) Office of Head Start (2018).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8.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hs-program-fact-sheet-2018.pdf> (2019. 6. 27. 인출).

[그림 IV-2-1] 미국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형태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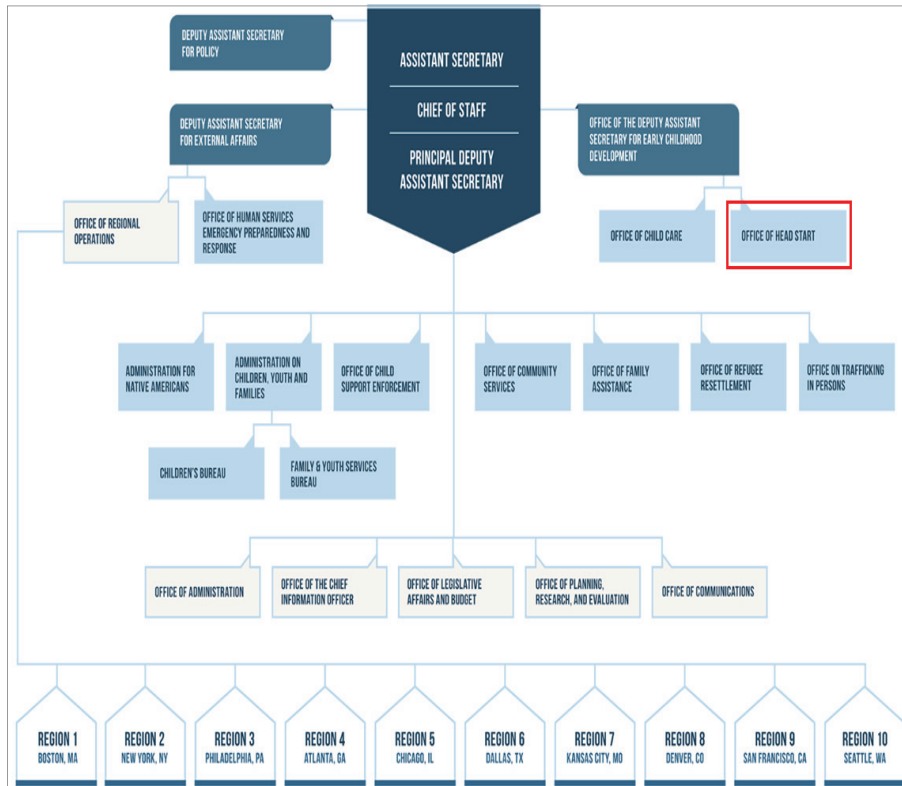
자료: Office of Head Start(2018).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9. p. 4~5를 바탕으로 재구성

3) 전달체계 및 자원

가) 전달체계

헤드 스타트는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내에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서 담당하고 있다(Office of Head Start, 2018: 1)³⁰⁾.

[그림 IV-2-2] 미국 아동가족국 사무소 체계도



자료: 미국 아동가족국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about/offices> (2019. 10. 4. 인출)

아동가족국은 전국 10개 지역 사무소를 대표하는 지역 운영 사무소를 포함하여 21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about/offices>, 2019. 10. 4. 인출). 아동가족국 사무소 중 하나가 헤드 스타트 사무소(Office of Head Start)이다. 각 지역 사무소들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공받은 예산을 지역 헤드 스타트 센터에 분배한다(헤드 스타트 ECLKC 홈페이지, <https://eclkc.ohs.acf.hhs.gov/about-us/article/about-office-head-start>, 2019. 10. 5. 인출). 즉, 헤드 스타트 사무소는 전국에 헤드 스타트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헤드 스타트 사무소는 헤드 스타트가 지원대상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서비스

30) Office of Head Start (2018).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8.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hs-program-fact-sheet-2018.pdf> (2019. 6. 27. 인출).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훈련 및 기술 지원(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T/TA)을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헤드 스타트 ECLKC 홈페이지, <https://eclkc.ohs.acf.hhs.gov/about-us/article/about-office-head-start>, 2019. 10. 5. 인출).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핵심 전달체계는 헤드 스타트 사무소가 관리하는 헤드 스타트 센터(Head Start Center)이다. 헤드 스타트 센터에서는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프로그램 진행, 연계 서비스까지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19e: 198).

나) 재원

헤드 스타트 재정의 약 80%는 연방정부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약 20%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 내에서 충당된다(Office of Head Start, 2017)³¹⁾. 2018년 회계 연도에 연방정부의 헤드 스타트 예산은 약 98억 3,870만 달러였다(Office of Head Start, 2018:1)³²⁾. 이 중 약 94억 7천만 달러가 지역 사회 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단체 및 영리단체, 원주민 부족 정부 및 학교 체계에 직접 투입되었다(Office of Head Start, 2018:1)³³⁾. 한편, 약 2억 3,540만 달러는 훈련 및 기술 지원(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T/TA)을 위해 투입되었다(Office of Head Start, 2018: 1).³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헤드 스타트 등록 인원은 약 94만 명 이상이었던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8년 등록 인원은 89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Office of Head Start, 2015³⁵⁾; Office of Head Start, 2018³⁶⁾).

헤드 스타트의 일부 기금은 주별로 구분되기 어렵다(Office of Head Start,

31) Office of Head Start (2017).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7.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hs-program-fact-sheet-2017_0.pdf (2019. 6. 27. 인출).

32) Office of Head Start (2018).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8.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hs-program-fact-sheet-2018.pdf> (2019. 6. 27. 인출).

33) Office of Head Start (2018).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8.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hs-program-fact-sheet-2018.pdf> (2019. 6. 27. 인출).

34) Office of Head Start (2018).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8.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hs-program-fact-sheet-2018.pdf> (2019. 6. 27. 인출).

35) Office of Head Start (2015).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5.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head-start-fact-sheet-fy-2015.pdf> (2019. 7. 27. 인출).

36) Office of Head Start (2018).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8.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hs-program-fact-sheet-2018.pdf> (2019. 6. 27. 인출).

2017: 2)³⁷⁾.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AIAN) 기금은 AIAN의 부족 정부에게 지급되고, 해당 프로그램은 26개 주에서 운영되지만 경우에 따라 주 경계를 넘어 실시되기도 한다(Office of Head Start, 2017: 2)³⁸⁾. 또한 이주민 및 시즌 헤드 스타트(Migrant and Seasonal Head Start, MSHS) 기금은 연중 여러 주에서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 주로 구분하지 않는다(Office of Head Start, 2017: 2)³⁹⁾.

〈표 IV-2-1〉 2018년 연방 헤드 스타트 예산 구성

단위: 달러(\$)

구분	예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조기 헤드 스타트- 보육 협력 관계 구축 포함)	9,472,946,340
훈련 및 기술 지원	235,385,242
연구, 시범사업, 평가	24,293,069
모니터링 지원	41,994,027
프로그램 지원	39,324,335
지정 갱신 체계(Designation Renewal System, DRS) 전환 지원	24,750,000
총합	9,838,693,013

자료: Office of Head Start(2018).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p.1.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hs-program-fact-sheet-2018.pdf>, 2019. 6. 27. 인출).

4) 주요 성과

헤드스타트의 효과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되어 왔으며,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이 밝혀진 바 있다. 헤드 스타트의 주요 효과로 언급되는 측면을 크게 아동의 인지 발달 및 학습능력 증진과 사회경제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의 인지 발달 및 학습능력 증진

헤드 스타트에 참여한 아동과 참여하지 않은 아동을 비교한 여러 연구들에서 참여한

37) Office of Head Start (2017).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7.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hs-program-fact-sheet-2017_0.pdf (2019. 6. 27. 인출).

38) Office of Head Start (2017).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7.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hs-program-fact-sheet-2017_0.pdf (2019. 6. 27. 인출).

39) Office of Head Start (2017).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7.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hs-program-fact-sheet-2017_0.pdf (2019. 6. 27. 인출).

아동의 인지 발달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보고되어 왔다. Barnett(1995)는 학업성취도나 특수 학급 배정 등을 고려한 인지력 비교 연구에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아동 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김미숙·조애저·배화옥·김효진·홍미, 2007: 166에서 재인용). 또한 미국 아동가족국에 의해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0),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4세 아동의 인지 발달, 특히 언어력과 문해력 요소 평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헤드 스타트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추정에는 측정 오류, 표본 크기의 과소로 인한 부정확성 등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목표 달성 여부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Bailey et al., 2018). 다만, 장기적 측면에서도 학업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도 있다. Reynolds, Temple, Robertson & Mann (2001) 연구에 의하면, 조기 헤드 스타트 교육을 1~2년 동안 받은 3~4세 아동들이 혜택을 받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중퇴율이 낮고, 고등학교 졸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학업이수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외, 2007: 166에서 재인용).

나) 사회경제적 효과

일부 연구에서는 헤드 스타트의 간접적 효과로 범죄율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Garcés, Thomas & Currie(2002)에 의하면, 흑인 아동의 경우 범죄로 인한 체포 또는 구금 비율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eynolds 외(2007) 연구에서는 조기 헤드 스타트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성장 후 범죄율 또는 폭력으로 인한 구금비율이 통제집단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외 2007: 167에서 재인용). Bailey 외(2018: 2-3) 연구에 의하면, 헤드 스타트는 대상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경제적 자립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 비율이 12%,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이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드 스타트는 직원의 35% 가량을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부모로 고용하여, 부모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Devaney, Ellwood, & Love, 1997: 104; 김미숙 외 2007: 168에서 재인용). 헤드 스타트의 부모 고용 지원은 아동의 탈빈곤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Devaney et al., 1997: 104 ; 김미숙 외 2007: 168에서 재인용).

나. 영국 슈어 스타트(Sure Start)

1) 도입 배경 및 전개

영국 신노동당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빈곤가정의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학업 부진 및 중단을 경험하고 성인이 된 이후 범죄자나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였고, 아동과 그 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조기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빈곤 가정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Prowse, 2008: 6)⁴⁰⁾. 정부의 이러한 판단 하에 1998년부터 빈곤 지역에 사는 만 4세 이하 영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여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슈어 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Prowse, 2008: 6). 슈어 스타트 지역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 SSLP)은 2003년까지 524개로 확대되었다(Audit Commission, 2010: 15).

영국의 슈어 스타트는 1998년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보편적인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Audit Commission, 2010: 16-17). 이후 급격히 확대된 슈어 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는 빈곤 아동 지원 통합 센터로서 조기 교육 및 돌봄, 아동 및 가족의 보건, 광범위한 가족 지원, 부모의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까지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로서 기능하고 있다(Audit Commission, 2010:18).

2009년~2010년은 슈어 스타트 사업이 가장 확대되었던 시기로, 슈어 스타트 아동센터가 3,600개소, 예산은 18억 파운드였다(The Guardian, 2019. 6. 4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un/04/sure-start-saved-nhs-millions>, 2019. 7. 29. 인출).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연립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슈어 스타트 사업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The Guardian, 2019. 6. 4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un/04/sure-start-saved-nhs-millions>, 2019. 7. 29. 인출). 2019년 현재 아동센터가 약 1,000개 이상 감소하였고, 예산도 3분의 1로 삭감되었다. 중앙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관련법에

40) Prowse, M. (2008). The Experience of Sure Start in England. <https://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4553.pdf> (2019. 7. 29. 인출).

규정된 최저 수준의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The Guardian, 2019. 6. 4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un/04/sure-start-saved-nhs-millions>, 2019. 7. 29. 인출).

그러나 이연정·반건호·이소영·김봉석·방수영·손석한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슈어 스타트는 재정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만 2세 이하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부모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16년 「아동보육법(Childcare Act)」에 근거하여 맞벌이 부모를 위해 만 3세와 4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려 무상 아동보육 시간을 확장한 것이다(Bate & Foster, 2017: 24).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중점 대상자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2) 주요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슈어 스타트는 지원대상을 아동 및 가족 단위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 지역을 선정한 후 그 지역 안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상균, 2017: 122). 지역 선택 기준은 아동영향소득박탈(Income Deprivation Affecting Children, IDAC) 지수에 근거한 하위 20% 지역이며, 2004년 이후에는 하위 30% 지역에서 돌봄 기능 강화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이상균, 2017: 122). 슈어 스타트 지역의 만 5세 미만 영유아 및 부모를 표적 대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의 만 14세 이하 모든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의 경우는 만 16세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이상균, 2017: 122).

나) 프로그램 내용

슈어 스타트는 해당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부는 프로그램 실행 결과만 평가한다. 하지만 모든 슈어 스타트 지역 프로그램들이 제공해야 하는 핵심적인 5가지 서비스가 있다(Bate & Foster, 2017: 5).

- 아웃 리치 및 가정방문
- 가족 및 부모 지원
- 양질의 놀이, 학습, 돌봄
- 아동 보건 및 발달에 대한 일차 지역 의료 및 상담
- 특수한 필요 지원

슈어 스타트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아동센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근거리 기관들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5). 의료 등 전문서비스는 주로 지역사회 내 전문가가 센터에 내방하여 실시하며, 슈어 스타트의 각 지역 서비스는 주로 방문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에 의해 서비스 제공 원칙에 따라 제공된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4-5). 서비스 제공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4-5).

- 부모참여를 통한 2세대 포괄서비스
- 모두의 개별적 욕구 인정
- 최대한 조기개입 시작
- 이용자 존중과 투명한 서비스 제공
- 전문가 협력 및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제공
- 성과 기반 서비스 제공

슈어 스타트는 이러한 핵심 서비스 내용과 제공 원칙에 따라 보육, 조기교육, 건강, 가족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과 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7).

3) 전달체계 및 재원

가) 전달체계

슈어 스타트는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기구, 자발적 사회참여 기관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추진체계가 상당히 상

이하다. 북아일랜드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슈어 스타트를 포함한 다양한 영유아 교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주요 정책을 관찰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할당하는 역할을 하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여기에 협력한다(The Education and Training Inspectorate, 2018: 27). 보건사회서비스국(The Health and Social Care Board, HSCB)은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지역에서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전략 개발과 실행을 지원 하하며, 예산을 관리·감독하고 추진체계 수립을 담당한다(The Education and Training Inspectorate, 2018: 27).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전달체계는 각 지역의 아동센터(Children's Centre)이다.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이 아동센터의 프로그램에 반영되며, 아동센터는 아동에게 필요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김미숙·배화옥, 2006: 136). 아동센터 중 다수는 신설한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지역 보육시설, 조기영재센터, 학교, 가족센터, 지역센터, 보건소 등의 지역 시설들을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김미숙·배화옥, 2006: 136).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지역의 아동센터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감소율이 30% 이상이고, 아동센터를 50% 이상 폐쇄하는 16개 관찰지역의 폐쇄 아동센터 수가 전국 폐쇄 수의 55%를 차지하며, 6개 지역(West Berkshire, Camden, Stockport, Bromley, Oxfordshire and Staffordshire)에서는 70% 이상의 아동센터를 폐쇄하였다(Smith, Sylva, Smith, Sammons & Omonigho, 2018: 4). 하지만 하위 30%인 취약 지역에 센터 비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센터의 수가 일부 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취약 지역에서의 집중 지원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et al., 2018: 4). 즉, 전 지역에서 보편적 아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은 축소되었지만, 빈곤지역에서 영유아를 지원하는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재원

슈어 스타트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2002년까지는 약 4억 5천 파운드가 투입되었고, 2004년까지는 12억 파

운드로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이연정 외, 2015:16). 2009년에는 슈어 스타트에 연간 약 18억 파운드로 최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직후인 2010년에 약 12억 파운드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현재 2019년에는 약 6억 파운드로 2009년 대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The Guardian, 2019. 6. 4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un/04/sure-start-saved-nhs-millions>, 2019. 7. 29. 인출).

4) 주요 성과

슈어 스타트의 효과를 아동발달 및 양육환경에 미친 영향, 아동의 건강증진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발달 및 양육환경

영국 정부는 슈어 스타트가 아동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슈어스타트 프로그램 전국 평가를 실시하였다(Bate & Foster, 2017: 26). 150개 지역 프로그램과 해당 지역 아동 5,000명 및 가족을 추적 조사하였는데, 아동이 9개월일 때 처음 실시하고, 3세, 5세, 7세 때 후속 조사를 시행하였다(Bate & Foster, 2017: 26). 먼저 2005년 아동이 만 3세가 된 시점에 평가에서는 슈어스타트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Bate & Foster, 2017: 26). 하지만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법 사용이 감소하였고, 아동의 긍정적 사회행동 및 독립성, 자기조절 수준 등 사회성 발달이 슈어 스타트 미 실시 지역 아동보다 다소 우수하게 나타났다(Bate & Foster, 2017: 26). 아동이 만 5세가 된 시점의 조사에서는 슈어스타트 실시 지역의 어머니들의 긍정적 양육 방법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Bate & Foster, 2017: 27). 즉,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보다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가정환경, 덜 혼란스러운 가정환경을 제공하였고, 덜 엄격한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te & Foster, 2017: 27-28). 아동이 만 7세가 된 시점에도 더 엄격한 훈육 방법과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가정환경 효과는 이어졌으나, 덜 혼란스러운 가정환경은 남아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ate & Foster, 2017: 28).

아동센터 평가(ECCE)에서는 아동센터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부모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ate & Foster, 2017: 32). 아동의 인지 능력과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표들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정신 건강 개선, 부모와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감소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 영유아의 가정 내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Bate & Foster, 2017: 32-33).

나) 아동의 건강증진

재정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의 슈어 스타트 이용 아동이 상해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감소하였고, 전체적인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The Guardian, 2019. 6. 4 기사⁴¹⁾). 또한 슈어스타트는 병원 방문 감소로 인해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 재정 절약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며, 아동기에 다치지 않아서 일생 동안 절약되는 금액은 슈어 스타트 예산의 6%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The Guardian, 2019. 6. 4 기사⁴²⁾). 즉, 슈어 스타트는 아동의 건강증진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슈어 스타트가 재정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다. 호주 베스트 스타트(Best Start)

1) 도입 배경 및 전개

호주의 베스트 스타트는 노동당 정부가 빅토리아주를 대표적인 교육의 주로 만들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0~8세 모든 아동의 건강, 발달, 학습,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3). 이 프로그램은 아동발달의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하였고,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41) The Guardian (2019. 6. 4 기사). Sure Start programme saved the NHS millions of pounds, study find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un/04/sure-start-saved-nhs-millions> (2019. 7. 29. 인출)

42) The Guardian (2019. 6. 4 기사). Sure Start programme saved the NHS millions of pounds, study find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un/04/sure-start-saved-nhs-millions> (2019. 7. 29. 인출)

아동발달 초기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성공적인 출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5).

베스트 스타트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여 빅토리아주 전역 3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 6개는 원주민 거주지역에 속해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3).

2) 주요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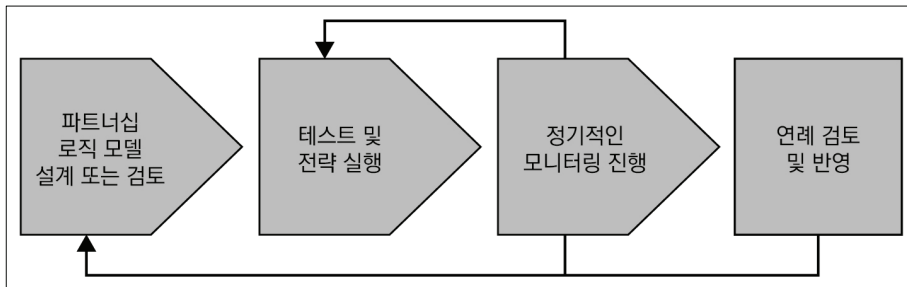
지원대상은 빅토리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를 포함하여 0~8세 아동 및 가족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3). 베스트 스타트는 예방의 가치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잠재적으로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경의 아동을 표적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 외 보호, 학대 또는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주 초기 단계의 이민자 또는 난민, 장애나 발달 지체가 있는 경우, 고립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유동적 거주지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등이 취약한 환경에 포함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5).

나) 프로그램 내용

베스트 스타트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실행된다. 1단계에서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집중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어떤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제공 대상자, 추가적인 협력기관 등 전략과 실행 방법을 설계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20). 2단계에서는 작은 규모의 시범 사업부터 실시하여 실제 개선으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24). 3단계에서 조력자(facilitator)가 주요 정보를 취합하여 개선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진행 상황을 평가하여 전략과 아이디어를 폐기, 채택 또는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28).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연례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파트너십 사업의 성취도, 협력관계의 작동 정도,

예산 지출 등을 검토, 평가하여 보고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29).

[그림 IV-2-3] 호주 베스트 스타트 실행 단계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2016), Best Start Policy and Guidelines, p. 20.

베스트 스타트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은 산전관리, 부모교육 및 지원, 0~8세 아동에게 교육 기회 제공, 조기 학습 및 아동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지원, 아동 및 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정보 제공, 허브로써 지역 내 학교를 활용한 아동 및 가족 통합 지원서비스,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가정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이다(보건복지부, 2019e: 205).

3) 전달체계 및 자원

가) 전달체계

베스트 스타트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다(보건복지부, 2019e: 204). 또한 프로그램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베스트 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베스트 스타트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 정부의 여러 사업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이며, 지역 내에서 아동 지원 사업들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력자(facilitator)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필수적인 협력기관에는 지자체, 보건인적서비스부 등 주 정부

관련 부처, 가족 및 여타 지역대표, 원주민 커뮤니티, 조기교육서비스 제공 기관, 언어치료, 소아과 전문의, 일반 가정의 등의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모자보건서비스(MCH), 보건서비스, 공립 및 사립학교, 가족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조직 등이 포함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12).

베스트 스타트에서 협력체계는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하고, 모든 협력기관이 주체로서 지역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보건복지부, 2019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전달체계에서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15).

- 원주민 및 주류 사회에서 서비스 기관의 효과적 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 데이터, 근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욕구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및 실행방안 개발
- 지역 데이터 수집 계획을 세우고, 베스트 스타트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전송
- 개선을 위한 학습과 기회 발굴
- 협력기관 모니터링 및 보고 지원

나) 재원

베스트 스타트의 재정은 80%가 조력자 인건비이며, 20%는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19). 베스트 스타트 프로그램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조력자를 통해서 협력 네트워크에 속한 기관에 정책 반영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비나 사업비는 베스트 스타트 개별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주요 성과

베스트 스타트는 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13개 지역에 대한 각 서비스 영역별 평가를 실시하는 별도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e: 206). 기본적으로 평가지표는 각 지역사회

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지만, 필수적인 핵심 영역 3가지 건강과 안녕, 학습과 발달, 안전 영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9e: 206). 평가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주 전역의 표준 데이터 베이스, 평가 개요, VicHealth 파트너십 분석 도구, 서비스 협력관계 도구, 아동 및 부모 대상 포괄 검사, 다양한 가족 전략, 조력자 인터뷰, 해당 지역 방문 등이 활용된다(보건복지부, 2019e: 206). 성과 평가에 따르면, 모유 수유율, 모자보건서비스 참여율, 부모의 도서지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2018: 8).

라. 종합 비교

앞서 살펴본 국외 Start 정책 사례의 핵심 내용인 지원 대상자, 대상자 선정기준, 재원, 전달체계, 제공 서비스를 비교하면 아래 <표 IV-2-2>와 같다.

우선 지원대상은 공통적으로 0세부터 적용하나 그 포괄범위는 최대 14세에 달한다. 그러나 중점 대상은 영유아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 보다 어린 아동에 집중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헤드 스타트의 경우는 3세 미만아에게 조기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별도 적용하며, 슈어 스타트의 경우도 4세 미만의 아동 및 가구를 중점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빈곤선 이하와 돌봄 취약 등 가구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는 각국 별로 소득 등에 의한 빈곤선 기준은 다르나, 가구특성에 의한 취약성을 동시에 포괄하여 대상을 선정하려는 노력을 암시한다. 한편 재원의 비중은 각국별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방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각국별로 달라, 별도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도 하고,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센터에서 추진되기도 하며, 전반적으로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므로, 이는 아동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아동 및 가족, 그리고 산전관리가 포괄되고, 아동 대상의 놀이 및 학습지원, 신체발달 지원, 보건 정보 제공, 의료지원, 돌봄지원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 및 역량 강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며, 협력체계 구축이나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핵심 사업에 포괄되기도 한다.

〈표 IV-2-2〉 국외의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 비교

구분	지원 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재원	전달체계	제공 서비스
헤드 스타트	• 헤드스타트: 만 3~5세 • 조기헤드 스타트: 3세 미만	• 미국 연방정부의 빈곤선 이하 가정 아동 • 공공부조 수급 가정, 노숙 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 아동	• 약 80% 연방 정부 예산, 약 20% 지자체 및 지역사회 자원 • 2018년 기준 연간 예산: 약 98억 3,870만 달러	• 미국 연방 보건인적서비스부(HHS) 내에 아동가족국(ACF) 담당 • 아동가족국 산하 헤드스타트 사무소(OHS) 운영: 헤드스타트 센터 관리·감독 • 헤드스타트 센터: 프로그램 수행	• 조기 학습 지원 • 아동의 지각·운동·신체 발달 지원 • 가족 복지서비스
슈어 스타트	• 중점대상: 만 4세 미만 아동 및 가족 • 만 14세 아동 및 가족 (장애아동 만 16세)	• 아동영향소득박탈(IDAC) 지수 근거 하위 20% • 2004년 이후 하위 30% 지역 내 돌봄 기능 강화 사업	• 중앙 정부의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 • 2009년까지 약 18억 파운드 증액되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 2019년 기준 약 6억 파운드	•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가 담당 • 지방정부별로 조직 구조 및 전달체계가 상이함. • 슈어스타트의 핵심 전달체계는 각 지역의 아동센터	• 해당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핵심 서비스: 이웃 리치 및 가정 방문, 가족 및 부모 지원, 양질의 놀이, 학습, 돌봄 지원, 아동 보건 및 발달에 대한 일차 지역 의료 및 상담, 특수한 필요 지원
베스트 스타트	•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포함하여 모든 0~8세 아동	• 취약성이 있는 환경에 있는 아동 우선 지원: 가정 외 보호, 학대 또는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주 초기 단계의 이민자 또는 난민, 장애나 발달 지체가 있는 경우, 고립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유동적 거주지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 빅토리아 주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 조력자 인건비 80%, 관리·운영비 20% •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수행되는 교육비나 사업비가 투입됨	• 빅토리아주의 교육부가 주도하며, 보건복지부 및 기타 주 정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실시 • 지역사회 내 주체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성 • 조력자(facilitator)가 네트워크 구축 및 실행, 모니터링 등의 역할 담당	•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사업 • 프로그램 내용: 안전관리, 부모교육 및 지원, 0~8세 아동 교육 기회 제공, 부모 역량 강화 지원, 보건 정보 제공,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가정 기반 서비스 등을 제공

자료: 본 보고서 IV장 2절(국외 사례)을 정리한 표임.

3. 소결

이상의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빈곤아동 통합지원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아동 대상 통합지원의 중점 대상으로 영유아 또는 영아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은 취학아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영유아는 점차 그 비중이 축소되어 2018년 기준으로 17.1%에 불과하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사업과의 중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반면에 국외의 스타트 정책들은 빈곤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에 따라 영유아에 보다 집중하는 추세이다. 즉 영유아기 초기 발달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때 빈곤으로 인한 발달 저해로 인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효과적 사회투자 전략으로서 빈곤 영유아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보다 초기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1994년에 조기 헤드 스타트가 등장하면서 영아기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으며, 최근 예산이 크게 축소된 영국의 슈어 스타트의 경우도 만 3~4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하여 스타트 사업의 중점 대상이 영유아 아동임을 명확히 하였다. 드림스타트의 경우 전체 서비스 대상자 중 영유아가 상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운영의 편의성에 의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장기적인 발달 측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유아 시기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빈곤 영유아에 대한 통합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 서비스 운영 방식의 차별화는 물론, 영유아 대상의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분소 설치 활성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둘째, 효율적인 빈곤 아동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지역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원시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기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위 분과로 구성하기 보다는 별도 운영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내 자원이 다양한 경우는 해

당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업무에 보다 주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포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드림스타트 사업과의 중복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례관리 보다는 지역 내 서비스 연계에 보다 중점을 두어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호주의 베스트 스타트는 직접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주정부 부처 간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주체들이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으며, 단편적 논의와 표면적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가 아니라 실제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적 특성과 대상아동 구성 비중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모색한다. 대표적으로 수원시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가 밀집된 지역에서 분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분소별로 추가 운영비를 책정하여 지리적 접근성 제고 노력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남 완주군의 경우와 같이 대상아동 규모가 적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로 운영하는 경우는 운영비를 추가로 책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읍면지역에서는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중앙정부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은 지방정부에서 포함하여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각 지역별 대상아동의 규모와 수요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별도 사업을 운영하여 포괄하되, 이때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체계 등을 공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청주시의 사례에 의하면, 드림스타트 사업과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아동의 연령을 구분하여 영유아를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일반가구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다섯째,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의 성과는 다년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지원 기간에 제약을 두지 말고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주력하며 이때 가족관계를 포괄하여 양육환경 전반의 개선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청주시의 사례에 의하면,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은 초등학교령기 전반을 포괄하여 이들에게 센

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복합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그 결과 가족관계의 개선과 부모 역량 강화 등을 포괄한 지속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도 그 방향성 측면에서 복합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기간의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아동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모색한다. 현재 드림스타트 센터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행정 전달체계인 취약가족 전반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지원팀과의 연계는 물론, 지역 내 유관 아동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아동의 발굴은 물론 가족을 포괄한 통합지원을 아동복지 전반을 총괄하는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앞서 다룬 스타트 사업의 경우는 핵심 전달체계로서 헤드 스타트 센터와 슈어 스타트의 아동센터가 아동 지원 통합 센터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드 스타트의 경우 미국 연방 보건인적 서비스부 아동가족국 산하에 헤드 스타트 사무소를 두어 헤드 스타트 센터가 빈곤 아동 정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슈어 스타트도 각 지역의 센터가 기존 아동서비스를 통합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다. 대상 아동 발굴을 통해 빈곤 아동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서비스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스타트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 센터가 통합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및 요구

- 01 양육환경
- 02 부모 효능감 및 양육 태도
- 03 양육실태 및 애로사항
- 04 육아지원의 도움 정도와 개선 요구
- 05 소결

V.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및 요구

제5장에서는 빈곤가구 및 비빈곤가구를 약 절반 수준으로 할당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와 빈곤가구 대상의 심층면담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1) 양육환경을 다 차원적으로 진단한 후, 그 다음으로 2) 양육실태 및 애로사항, 3) 육아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4) 육아지원 요구를 각각 파악하였다. 이때 특히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빈곤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비수급자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가구인 일반 빈곤가구) 내부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1. 양육환경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1)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박탈 경험, 2) 가족관계 전반 및 부부관계 인식, 3) 주거환경, 4) 가족이나 이웃 등의 도움, 5) 가정내 교육 환경, 그리고 각 항목별 충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에 따른 박탈 경험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심각하고, 교재 교구 및 놀잇감과 여가 및 문화생활에 지출이 어려운 경험은 일반가구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가족관계 등 이외 항목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일반빈곤가구에서 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경제적 여건과 박탈 경험

빈곤의 사각지대와 빈곤에 따른 차별화된 양육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서 지출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이하 각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 전세보증금 등 주거용 목돈 지출,

교재교구 순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고, 5점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한 바에 의하면, 빈곤가구의 고충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법정 빈곤가구와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 걸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파악된 보육교육비와 자녀 의료비 지출에도 비빈곤가구에 비해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재교구비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에서는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 대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므로 이들 지원의 소득기준 상향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그 고충이 두드러졌다.

그 밖에도 보편적 지원으로 관련 지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유아 보육·교육비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관련 지출의 어려움이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표 V-1-6 참조).

〈표 V-1-1〉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표준편차)	
							빈곤가구	전체가구
1. 주거용 목돈 지출	24.2	15.4	28.9	19.8	11.7	100.0 (830)	2.8(1.3)	2.6(1.4)
2. 정기적인 지출	31.3	21.7	27.8	15.1	4.1	100.0 (830)	2.4(1.2)	2.1(1.2)
3. 식료품비	24.0	19.6	34.7	16.4	5.3	100.0 (830)	2.6(1.2)	2.3(1.2)
4. 보육교육비	29.4	22.0	30.4	14.2	4.0	100.0 (830)	2.4(1.2)	2.1(1.2)
5. 교재교구/놀이감	21.2	18.8	33.1	20.1	6.7	100.0 (830)	2.7(1.2)	2.4(1.2)
6. 자녀 의료비	28.7	20.8	33.6	13.0	3.9	100.0 (830)	2.4(1.1)	2.1(1.1)
7. 여가/문화생활	19.2	14.7	29.9	22.0	14.2	100.0 (830)	3.0(1.3)	2.7(1.3)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1-2〉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1: 주거용 목돈 지출

단위: %(명), 점

구분	주거용 목돈 지출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0.4	16.4	24.1	18.9	10.1	100.0 (1,606)	2.6(1.4)
자녀수							
1명	28.5	17.7	25.3	19.3	9.2	100.0 (772)	2.6(1.3)

구분	주거용 목돈 지출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명	34.5	15.1	23.2	17.5	9.8	100.0 (656)	2.5(1.4)
3명	22.6	17.0	24.5	21.4	14.5	100.0 (159)	2.9(1.4)
4명 이상	31.6	5.3	5.3	31.6	26.3	100.0 (19)	3.2(1.7)
$\chi^2(df)/F$	25.543(12)*						4.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7.9	13.4	32.8	22.4	13.4	100.0 (134)	3.0(1.3)
차상위계층	22.4	16.1	31.9	19.7	9.8	100.0 (254)	2.8(1.3)
비수급가구	33.4	16.8	21.5	18.4	9.9	100.0 (1,218)	2.5(1.4)
$\chi^2(df)/F$	33.375(8)***						9.1***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6.9	15.6	33.8	19.5	14.3	100.0 (77)	3.0(1.3)
101~150만원	24.7	16.5	25.9	16.5	16.5	100.0 (85)	2.8(1.4)
151~200만원	25.4	15.6	28.2	20.1	10.6	100.0 (641)	2.7(1.3)
201~250만원	36.2	18.9	18.9	16.5	9.4	100.0 (127)	2.4(1.4)
251~300만원	26.0	16.0	21.0	27.0	10.0	100.0 (100)	2.8(1.4)
301~350만원	32.0	15.6	23.8	15.6	13.1	100.0 (122)	2.6(1.4)
351~400만원	30.0	20.0	25.5	16.4	8.2	100.0 (110)	2.5(1.3)
401~500만원	45.7	14.3	16.4	17.1	6.4	100.0 (140)	2.2(1.4)
501~600만원	41.2	16.5	17.5	19.6	5.2	100.0 (97)	2.3(1.3)
601~700만원	37.8	35.6	11.1	11.1	4.4	100.0 (45)	2.1(1.2)
701~800만원	36.4	9.1	13.6	31.8	9.1	100.0 (22)	2.7(1.5)
801만원 이상	45.0	7.5	20.0	15.0	12.5	100.0 (40)	2.4(1.5)
$\chi^2(df)/F$	87.208(44)***						3.9***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1-3〉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2: 전기세 등 정기적 지출

단위: %(명), 점

구분	정기적인 지출(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등)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3.9	20.4	21.8	10.9	3.1	100.0 (1,606)	2.1(1.2)
자녀수							
1명	44.6	21.9	19.9	10.8	2.8	100.0 (772)	2.1(1.2)
2명	46.0	18.4	23.0	9.8	2.7	100.0 (656)	2.0(1.2)
3명	32.7	20.8	27.0	14.5	5.0	100.0 (159)	2.4(1.2)
4명 이상	36.8	21.1	10.5	26.3	5.3	100.0 (19)	2.4(1.4)
$\chi^2(df)/F$	21.833(12)*						4.4**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구분	정기적인 지출(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등)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5.4	20.9	31.3	16.4	6.0	100.0 (134)	2.6(1.2)
차상위계층	28.0	21.3	31.1	17.3	2.4	100.0 (254)	2.4(1.1)
비수급가구	49.3	20.1	18.8	8.9	2.9	100.0 (1,218)	2.0(1.1)
$\chi^2(df)/F$	75.912(8)***						31.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3.0	24.7	33.8	14.3	14.3	100.0 (77)	2.9(1.2)
101~150만원	25.9	16.5	30.6	22.4	4.7	100.0 (85)	2.6(1.2)
151~200만원	35.1	21.7	26.4	13.9	3.0	100.0 (641)	2.3(1.2)
201~250만원	42.5	22.8	22.8	8.7	3.1	100.0 (127)	2.1(1.1)
251~300만원	45.0	18.0	25.0	8.0	4.0	100.0 (100)	2.1(1.2)
301~350만원	52.5	18.0	17.2	9.0	3.3	100.0 (122)	1.9(1.2)
351~400만원	46.4	25.5	21.8	5.5	0.9	100.0 (110)	1.9(1.0)
401~500만원	60.7	18.6	10.7	9.3	0.7	100.0 (140)	1.7(1.0)
501~600만원	68.0	18.6	10.3	3.1	0.0	100.0 (97)	1.5(0.8)
601~700만원	77.8	20.0	2.2	0.0	0.0	100.0 (45)	1.2(0.5)
701~800만원	72.7	13.6	4.5	9.1	0.0	100.0 (22)	1.5(1.0)
801만원 이상	80.0	5.0	7.5	5.0	2.5	100.0 (40)	1.5(1.0)
$\chi^2(df)/F$	215.645(44)***						16.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1-4〉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3: 식료품비

단위: %(명), 점

구분	식료품비(식비, 간식비) 총당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7.0	19.9	26.7	12.1	4.2	100.0 (1,606)	2.3(1.2)
자녀수							
1명	38.2	21.5	23.3	12.8	4.1	100.0 (772)	2.2(1.2)
2명	39.0	18.6	28.7	9.8	4.0	100.0 (656)	2.2(1.2)
3명	25.2	18.2	34.0	17.6	5.0	100.0 (159)	2.6(1.2)
4명 이상	21.1	15.8	36.8	15.8	10.5	100.0 (19)	2.8(1.3)
$\chi^2(df)/F$	28.082(12)**						5.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0.9	17.9	36.6	14.9	9.7	100.0 (134)	2.7(1.2)
차상위계층	22.0	18.1	37.8	18.5	3.5	100.0 (254)	2.6(1.1)
비수급가구	42.0	20.5	23.3	10.4	3.8	100.0 (1,218)	2.1(1.2)

구분	식료품비(식비, 간식비) 총당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chi^2(df)/F$	78.177(8)***						31.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3.0	20.8	35.1	16.9	14.3	100.0 (77)	3.0(1.2)
101~150만원	18.8	14.1	40.0	14.1	12.9	100.0 (85)	2.9(1.2)
151~200만원	26.4	20.4	33.4	16.5	3.3	100.0 (641)	2.5(1.1)
201~250만원	36.2	20.5	25.2	11.8	6.3	100.0 (127)	2.3(1.3)
251~300만원	35.0	22.0	24.0	14.0	5.0	100.0 (100)	2.3(1.2)
301~350만원	45.1	19.7	21.3	10.7	3.3	100.0 (122)	2.1(1.2)
351~400만원	41.8	29.1	21.8	6.4	0.9	100.0 (110)	2.0(1.0)
401~500만원	57.1	17.1	19.3	4.3	2.1	100.0 (140)	1.8(1.0)
501~600만원	60.8	18.6	13.4	7.2	0.0	100.0 (97)	1.7(1.0)
601~700만원	77.8	15.6	4.4	2.2	0.0	100.0 (45)	1.3(0.7)
701~800만원	59.1	22.7	13.6	0.0	4.5	100.0 (22)	1.7(1.0)
801만원 이상	77.5	7.5	7.5	0.0	7.5	100.0 (40)	1.5(1.2)
$\chi^2(df)/F$	253.261(44)***						18.7***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표 V-1-5〉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4: 보육교육비(전체가구)

단위: %(명), 점

구분	보육교육비(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0.7	21.6	23.8	10.6	3.2	100.0 (1,606)	2.1(1.2)
자녀수							
1명	41.6	22.9	23.2	9.7	2.6	100.0 (772)	2.1(1.1)
2명	43.0	21.2	22.0	10.7	3.2	100.0 (656)	2.1(1.2)
3명	28.9	17.0	33.3	15.1	5.7	100.0 (159)	2.5(1.2)
4명 이상	21.1	21.1	36.8	10.5	10.5	100.0 (19)	2.7(1.2)
$\chi^2(df)/F$	29.524(12)**						7.9***
가구특성							
부부+자녀	41.9	21.5	23.3	10.3	3.0	100.0 (1,388)	2.1(1.1)
한부모+자녀	21.3	27.0	34.8	10.1	6.7	100.0 (89)	2.5(1.1)
조부모+부부+자녀	40.4	19.2	19.2	16.2	5.1	100.0 (99)	2.3(1.3)
조부모+한부모+자녀	43.3	16.7	30.0	10.0	0.0	100.0 (30)	2.1(1.1)
$\chi^2(df)/F$	25.241(12)*						4.3**

법정 빈곤가구 여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구분	보육교육비(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초생활수급가구	20.9	20.9	35.1	16.4	6.7	100.0 (134)	2.7(1.2)
차상위계층	26.0	23.6	32.3	14.6	3.5	100.0 (254)	2.5(1.1)
비수급가구	45.9	21.3	20.9	9.2	2.8	100.0 (1,218)	2.0(1.1)
χ^2 (df)/F	70.449(8)***						31.8***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6.9	24.7	35.1	11.7	11.7	100.0 (77)	2.8(1.2)
101~150만원	21.2	18.8	34.1	15.3	10.6	100.0 (85)	2.8(1.3)
151~200만원	32.6	22.5	28.4	14.4	2.2	100.0 (641)	2.3(1.1)
201~250만원	40.9	17.3	28.3	9.4	3.9	100.0 (127)	2.2(1.2)
251~300만원	42.0	22.0	25.0	8.0	3.0	100.0 (100)	2.1(1.1)
301~350만원	45.9	19.7	21.3	9.0	4.1	100.0 (122)	2.1(1.2)
351~400만원	40.0	30.0	23.6	5.5	0.9	100.0 (110)	2.0(1.0)
401~500만원	57.9	19.3	11.4	9.3	2.1	100.0 (140)	1.8(1.1)
501~600만원	60.8	21.6	11.3	6.2	0.0	100.0 (97)	1.6(0.9)
601~700만원	75.6	22.2	2.2	0.0	0.0	100.0 (45)	1.3(0.5)
701~800만원	63.6	22.7	4.5	4.5	4.5	100.0 (22)	1.6(1.1)
801만원 이상	77.5	10.0	7.5	0.0	5.0	100.0 (40)	1.5(1.0)
χ^2 (df)/F	202.103(44)***						13.8***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1-6〉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4: 보육교육비(빈곤가구)

단위: %(명), 점

구분	보육교육비(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9.4	22.0	30.4	14.2	4.0	100.0 (830)	2.4(1.2)
빈곤가구 유형							
기초생활수급가구	20.9	20.9	35.1	16.4	6.7	100.0 (134)	2.7(1.2)
차상위계층	26.0	23.6	32.3	14.6	3.5	100.0 (254)	2.5(1.1)
일반빈곤가구	33.9	21.5	27.8	13.3	3.4	100.0 (442)	2.3(1.2)
χ^2 (df)/F	13.792(8)						5.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표 V-1-7〉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5: 교재교구/놀이감

단위: %(명), 점

구분	교재교구/놀이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1.1	21.2	27.3	15.4	5.0	100.0 (1,606)	2.4(1.2)
자녀수							
1명	32.4	22.3	27.8	13.0	4.5	100.0 (772)	2.3(1.2)
2명	33.1	20.7	26.5	15.1	4.6	100.0 (656)	2.4(1.2)
3명	18.2	19.5	28.9	25.8	7.5	100.0 (159)	2.8(1.2)
4명 이상	15.8	10.5	15.8	42.1	15.8	100.0 (19)	3.3(1.3)
$\chi^2(df)/F$			44.169(12)***				11.5***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3.4	20.9	34.3	20.1	11.2	100.0 (134)	2.9(1.2)
차상위계층	17.7	18.1	37.8	21.7	4.7	100.0 (254)	2.8(1.1)
비수급가구	35.8	21.9	24.3	13.6	4.4	100.0 (1,218)	2.3(1.2)
$\chi^2(df)/F$			77.143(8)***				31.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6.9	20.8	29.9	20.8	11.7	100.0 (77)	2.9(1.3)
101~150만원	15.3	11.8	41.2	17.6	14.1	100.0 (85)	3.0(1.2)
151~200만원	23.1	19.7	32.9	19.3	5.0	100.0 (641)	2.6(1.2)
201~250만원	26.0	22.0	25.2	17.3	9.4	100.0 (127)	2.6(1.3)
251~300만원	26.0	22.0	30.0	17.0	5.0	100.0 (100)	2.5(1.2)
301~350만원	28.7	33.6	21.3	13.1	3.3	100.0 (122)	2.3(1.1)
351~400만원	35.5	22.7	29.1	10.9	1.8	100.0 (110)	2.2(1.1)
401~500만원	50.0	25.7	12.9	10.0	1.4	100.0 (140)	1.9(1.1)
501~600만원	53.6	18.6	20.6	7.2	0.0	100.0 (97)	1.8(1.0)
601~700만원	71.1	20.0	6.7	2.2	0.0	100.0 (45)	1.4(0.7)
701~800만원	50.0	13.6	18.2	18.2	0.0	100.0 (22)	2.0(1.2)
801만원 이상	67.5	17.5	10.0	0.0	5.0	100.0 (40)	1.6(1.0)
$\chi^2(df)/F$			228.218(44)***				17.0***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1-8〉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6: 자녀 의료비

단위: %(명), 점

구분	자녀 의료비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9.9	21.4	25.9	10.1	2.7	100.0 (1,606)	2.1(1.1)
자녀수							
1명	41.3	22.4	24.1	9.7	2.5	100.0 (772)	2.1(1.1)
2명	41.3	21.0	26.2	9.0	2.4	100.0 (656)	2.1(1.1)
3명	27.7	19.5	31.4	17.0	4.4	100.0 (159)	2.5(1.2)
4명 이상	31.6	10.5	42.1	10.5	5.3	100.0 (19)	2.5(1.2)
$\chi^2(df)/F$			24.388(12)*				6.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5.4	20.9	37.3	10.4	6.0	100.0 (134)	2.5(1.2)
차상위계층	22.4	20.1	37.0	16.5	3.9	100.0 (254)	2.6(1.1)
비수급가구	45.1	21.8	22.3	8.8	2.1	100.0 (1,218)	2.0(1.1)
$\chi^2(df)/F$			80.985(8)***				37.1***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8.2	18.2	42.9	11.7	9.1	100.0 (77)	2.8(1.2)
101~150만원	22.4	20.0	34.1	15.3	8.2	100.0 (85)	2.7(1.2)
151~200만원	31.5	21.5	31.8	12.5	2.7	100.0 (641)	2.3(1.1)
201~250만원	36.2	24.4	26.0	10.2	3.1	100.0 (127)	2.2(1.1)
251~300만원	40.0	26.0	22.0	10.0	2.0	100.0 (100)	2.1(1.1)
301~350만원	45.1	18.0	26.2	8.2	2.5	100.0 (122)	2.0(1.1)
351~400만원	41.8	24.5	27.3	6.4	0.0	100.0 (110)	2.0(1.0)
401~500만원	56.4	20.7	12.1	10.0	0.7	100.0 (140)	1.8(1.1)
501~600만원	61.9	22.7	10.3	5.2	0.0	100.0 (97)	1.6(0.9)
601~700만원	73.3	24.4	2.2	0.0	0.0	100.0 (45)	1.3(0.5)
701~800만원	72.7	9.1	9.1	9.1	0.0	100.0 (22)	1.5(1.0)
801만원 이상	75.0	12.5	7.5	0.0	5.0	100.0 (40)	1.5(1.0)
$\chi^2(df)/F$			194.885(44)***				14.5***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1-9〉 지난 1년간의 경제적 어려움 7: 여가/문화생활

단위: %(명), 점

구분	여가/문화생활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6.4	18.7	27.2	16.9	10.8	100.0 (1,606)	2.7(1.3)
자녀수							
1명	26.9	21.1	26.6	15.3	10.1	100.0 (772)	2.6(1.3)
2명	27.9	16.9	28.7	17.2	9.3	100.0 (656)	2.6(1.3)
3명	18.9	15.7	26.4	20.8	18.2	100.0 (159)	3.0(1.4)
4명 이상	15.8	10.5	10.5	36.8	26.3	100.0 (19)	3.5(1.4)
$\chi^2(df)/F$			33.659(12)***				7.4***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5.7	19.4	28.4	20.9	15.7	100.0 (134)	3.0(1.3)
차상위계층	16.1	13.4	31.9	24.8	13.8	100.0 (254)	3.1(1.3)
비수급가구	29.7	19.8	26.1	14.8	9.6	100.0 (1,218)	2.5(1.3)
$\chi^2(df)/F$			48.909(8)***				21.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3.0	16.9	32.5	16.9	20.8	100.0 (77)	3.2(1.3)
101~150만원	17.6	9.4	32.9	23.5	16.5	100.0 (85)	3.1(1.3)
151~200만원	20.6	15.4	29.2	21.8	12.9	100.0 (641)	2.9(1.3)
201~250만원	21.3	18.9	26.8	20.5	12.6	100.0 (127)	2.8(1.3)
251~300만원	22.0	24.0	22.0	18.0	14.0	100.0 (100)	2.8(1.4)
301~350만원	25.4	25.4	25.4	13.1	10.7	100.0 (122)	2.6(1.3)
351~400만원	27.3	23.6	30.9	12.7	5.5	100.0 (110)	2.5(1.2)
401~500만원	39.3	24.3	23.6	10.0	2.9	100.0 (140)	2.1(1.1)
501~600만원	40.2	23.7	25.8	7.2	3.1	100.0 (97)	2.1(1.1)
601~700만원	60.0	22.2	15.6	2.2	0.0	100.0 (45)	1.6(0.8)
701~800만원	45.5	9.1	27.3	9.1	9.1	100.0 (22)	2.3(1.4)
801만원 이상	65.0	17.5	12.5	0.0	5.0	100.0 (40)	1.6(1.1)
$\chi^2(df)/F$			181.537(44)***				14.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이상에서 살펴본 경제적 박탈 경험은 빈곤가구의 불안정한 고용과 관련이 크다고 본다.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 대상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일시적이거나, 불안정한 소득 상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된다(부모 8, 9, 10). 이러한 상황은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부모 11과 같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자녀 수가 많은 경우는 불안정한 가구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아이가 세 살 때 부터 (일을) 갔으니까 가다가 중간에 일 없으면 놀고 그랬으니까 이 일이 옷 만드는 일이라 시기를 타니까 있으면 가고 없으면 놀고 그래요 (부모 8)

제가 40살에 아이들 아빠가 39살에 죽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취업을 할데가 없는거예요 나이가 걸려서 고민하다가 간간히 아르바이트 하다가 우울증 있는데 그거까지 하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거죠 제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더라구요 저도 모르게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수급자가 된거예요 제가 갖고 있었던 것도 별로 없고 빚도 없었고 전셋집은 있었으니까 큰 돈은 필요 없거든요. 생활을 하긴 했었는데 제일 힘든거는 학업이에요 (부모 9)

집에서 조그만 부업해요 자동차 부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현재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가서는 어려울 거 같아요 (중략) 둘째 때부터 부업을 했어요 둘째 낳고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계속 했어요 수입은 고정되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조금은 살 수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애들이 크면 나가서 일을 해야겠죠 (전일제 근로를 한다면) 큰 애가 혼자서 커버가 될 때 혼자서 동생들을 대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애 아빠랑 이야기가 끝난 거구요. 힘들죠 애들은 점점 크고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집에 있으면 힘든데 조금만 건디자 (부모 10)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일하다가 키우다가 다시 근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 아이는 3년 정도 쉬었고, 둘째 아이는 돌 지나서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어요. 데리고 가서. 첫째 아이는 그냥 어린이집에 맡기고요. 막내 낳고 나서 8개월 만에 데리고 근무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첫째 아이 때는 3인 가족이라서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이 가능했는데, 아이 한 명 더 낳고 하다보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남편도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 11)

나. 가족관계 인식

1) 가족관계 전반의 인식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평균 3.6~3.8점(5점 만점)을 나타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150만원 이하 가구에서 가족관계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부표 1~5 참조). 즉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고, 가족간에 상호 존중하고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격려하며,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과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가족을 반드시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가족관계의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빈곤가구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요구된다.

〈표 V-1-10〉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1.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다 생각한다	1.9	6.8	35.3	44.9	11.0	100.0 (1,606)	3.6(0.8)
2.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한다	1.4	7.8	33.8	43.1	13.9	100.0 (1,606)	3.6(0.9)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 표현한다	1.3	7.5	28.8	45.1	17.4	100.0 (1,606)	3.7(0.9)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준다	1.7	7.7	30.3	44.9	15.4	100.0 (1,606)	3.6(0.9)
5. 우리 가족은 힘든 일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1.4	4.2	26.3	49.4	18.7	100.0 (1,606)	3.8(0.8)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1-11〉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1: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다 생각한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9	6.8	35.3	44.9	11.0	100.0 (1,606)	3.6(0.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7	12.7	44.8	29.9	9.0	100.0 (134)	3.3(0.9)
차상위계층	3.1	6.7	36.6	42.5	11.0	100.0 (254)	3.5(0.9)
비수급가구	1.5	6.2	34.0	47.0	11.2	100.0 (1,218)	3.6(0.8)
$\chi^2(df)/F$			25.864(8)**				9.5***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표 V-1-12〉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2: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한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4	7.8	33.8	43.1	13.9	100.0 (1,606)	3.6(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7	13.4	35.8	31.3	15.7	100.0 (134)	3.4(1.0)
차상위계층	0.8	10.6	36.6	40.9	11.0	100.0 (254)	3.5(0.9)
비수급가구	1.2	6.7	33.0	44.8	14.3	100.0 (1,218)	3.6(0.9)
$\chi^2(df)/F$	24.661(8)**						5.9**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표 V-1-13〉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 표현한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3	7.5	28.8	45.1	17.4	100.0 (1,606)	3.7(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7	6.7	38.1	32.8	18.7	100.0 (134)	3.6(1.0)
차상위계층	1.2	9.4	31.5	44.1	13.8	100.0 (254)	3.6(0.9)
비수급가구	1.1	7.1	27.2	46.6	18.0	100.0 (1,218)	3.7(0.9)
$\chi^2(df)/F$	21.386(8)**						4.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표 V-1-14〉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준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준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7	7.7	30.3	44.9	15.4	100.0 (1,606)	3.6(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5	9.7	38.8	32.1	14.9	100.0 (134)	3.4(1.0)

구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준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차상위계층	2.0	8.3	33.1	41.7	15.0	100.0 (254)	3.6(0.9)
비수급가구	1.4	7.3	28.7	47.0	15.6	100.0 (1,218)	3.7(0.9)
$\chi^2(df)/F$	19.247(8)*						5.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표 V-1-15〉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5: 우리 가족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가족은 힘든 일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4	4.2	26.3	49.4	18.7	100.0 (1,606)	3.8(0.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0	4.5	38.8	38.1	15.7	100.0 (134)	3.6(0.9)
차상위계층	2.0	5.1	29.1	48.8	15.0	100.0 (254)	3.7(0.9)
비수급가구	1.1	3.9	24.4	50.8	19.8	100.0 (1,218)	3.8(0.8)
$\chi^2(df)/F$	22.517(8)**						7.9***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2)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평균 3.3~3.5점(5점 만점)을 나타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서 부부관계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부표 6~10 참조). 즉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결혼생활 및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이 낮고, 평등한 부부관계와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 그리고 부부간의 소통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부부가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고 응답한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 각각 45%와 22.2%에 불과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표 V-1-16〉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5.3	11.1	31.5	39.4	12.7	100.0 (1,487)	3.4(1.0)
2.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6.1	11.8	29.4	38.5	14.3	100.0 (1,487)	3.4(1.1)
3. 우리 부부는 전반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다	4.9	10.6	28.4	39.1	16.9	100.0 (1,487)	3.5(1.0)
4. 우리 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	4.2	14.3	28.5	35.8	17.2	100.0 (1,487)	3.5(1.1)
5. 우리 부부는 평상시에 다툼없이 잘 소통하는 편이다	6.1	14.5	33.2	33.8	12.4	100.0 (1,487)	3.3(1.1)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1-17〉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1: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단위: %(명), 점

구분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5.3	11.1	31.5	39.4	12.7	100.0 (1,487)	3.4(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0.0	18.0	28.0	33.0	11.0	100.0 (100)	3.2(1.2)
차상위계층	6.6	7.0	37.3	37.7	11.4	100.0 (228)	3.4(1.0)
비수급가구	4.7	11.3	30.6	40.3	13.1	100.0 (1,159)	3.5(1.0)
$\chi^2(df)/F$	94.269(10)***						3.8*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1-18〉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2: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단위: %(명), 점

구분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6.1	11.8	29.4	38.5	14.3	100.0 (1,487)	3.4(1.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0.0	20.0	24.0	36.0	10.0	100.0 (100)	3.2(1.2)
차상위계층	5.7	10.1	35.5	33.8	14.9	100.0 (228)	3.4(1.0)
비수급가구	5.8	11.5	28.6	39.6	14.5	100.0 (1,159)	3.5(1.1)
$\chi^2(df)/F$	91.962(10)***						3.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1-19〉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3: 우리 부부는 전반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부부는 전반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다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4.9	10.6	28.4	39.1	16.9	100.0 (1,487)	3.5(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0.0(0.0)
기초생활수급가구	5.0	15.0	39.0	30.0	11.0	100.0 (100)	3.3(1.0)
차상위계층	4.4	11.0	32.5	37.7	14.5	100.0 (228)	3.5(1.0)
비수급가구	5.0	10.2	26.7	40.2	17.9	100.0 (1,159)	3.6(1.1)
$\chi^2(df)/F$			90.614(10)***				3.9*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1-20〉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4: 우리 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4.2	14.3	28.5	35.8	17.2	100.0 (1,487)	3.5(1.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0.0	15.0	30.0	36.0	9.0	100.0 (100)	3.2(1.1)
차상위계층	4.8	11.8	32.5	32.5	18.4	100.0 (228)	3.5(1.1)
비수급가구	3.5	14.8	27.6	36.4	17.7	100.0 (1,159)	3.5(1.1)
$\chi^2(df)/F$			92.665(10)***				3.9*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1-21〉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5: 우리 부부는 평상시에 다툼없이 잘 소통하는 편이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부부는 평상시에 다툼없이 소통한다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6.1	14.5	33.2	33.8	12.4	100.0 (1,487)	3.3(1.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9.0	25.0	31.0	28.0	7.0	100.0 (100)	3.0(1.1)
차상위계층	6.6	11.8	37.3	32.9	11.4	100.0 (228)	3.3(1.0)
비수급가구	5.7	14.2	32.6	34.5	13.0	100.0 (1,159)	3.4(1.1)
$\chi^2(df)/F$			91.321(10)***				5.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부모 11이 지적인 바와 같이 불평등한 부부관계와 낮은 결혼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련 상담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육아를) 같이 해주지는 않아요. 권위적인 것도 심하고 저희는 위기가정이거든요. 남편이 술을 좀 먹고 말로 좀 하고. 남편이 집에 있어도 애들은 너 일, 아이들을 맡길 수 있으면 일을 하라고도 했었고. 남편과의 문제도 좀 많이 작용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남편하고 싸우면서 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 11)

다. 가족이나 이웃 등의 도움

영유아를 둔 가구에서 배우자 제외하고 다른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자녀돌봄 지원, 육아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 등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도움 정도가 낮은 가운데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은 평균 2.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고, 긴급 시의 자녀돌봄도 평균 2.9점에 그쳤다. 긴급 시 자녀 봐주기 등의 도움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여, 도움을 받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23.4%에 불과하며(부표 13 참조), 35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에 비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되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V-1-22〉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받지 못함	도움 받지 못하는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1.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	25.3	23.3	28.6	19.7	3.1	100.0 (1,606)	2.5(1.2)
2. 대화 및 소통 등 정서적 도움	5.3	15.4	41.0	32.4	5.9	100.0 (1,606)	3.2(0.9)
3. 긴급 시 자녀 봐주기 등 돌봄지원	16.7	19.8	26.1	27.6	9.8	100.0 (1,606)	2.9(1.2)
4. 육아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	8.1	19.1	41.8	26.4	4.5	100.0 (1,606)	3.0(1.0)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1-23〉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1: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

단위: %(명), 점

구분	경제적 도움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못함	도움 받지 못하는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계(수)	
전체	25.3	23.3	28.6	19.7	3.1	100.0 (1,606)	2.5(1.2)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2.4	20.9	32.8	20.9	3.0	100.0 (134)	2.6(1.1)
차상위계층	18.1	24.4	32.7	21.3	3.5	100.0 (254)	2.7(1.1)
비수급가구	27.2	23.4	27.3	19.2	3.0	100.0 (1,218)	2.5(1.2)
χ^2 (df)/F			11.673(8)				3.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1점 ~ '매우 도움을 받는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1-24〉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2: 대화 및 소통 등 정서적 도움

단위: %(명), 점

구분	정서적 도움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못함	도움 받지 못하는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계(수)	
전체	5.3	15.4	41.0	32.4	5.9	100.0 (1,606)	3.2(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9.7	12.7	38.1	36.6	3.0	100.0 (134)	3.1(1.0)
차상위계층	3.5	14.2	43.3	33.9	5.1	100.0 (254)	3.2(0.9)
비수급가구	5.2	16.0	40.8	31.7	6.3	100.0 (1,218)	3.2(1.0)
χ^2 (df)/F			11.871(8)				0.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1점 ~ '매우 도움을 받는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1-25〉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3: 긴급시 자녀 봐주기 등 돌봄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돌봄지원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못함	도움 받지 못하는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계(수)	
전체	16.7	19.8	26.1	27.6	9.8	100.0 (1,606)	2.9(1.2)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0.9	19.4	28.4	23.1	8.2	100.0 (134)	2.8(1.2)
차상위계층	14.6	24.8	29.5	24.4	6.7	100.0 (254)	2.8(1.1)
비수급가구	16.7	18.8	25.1	28.7	10.6	100.0 (1,218)	3.0(1.3)
χ^2 (df)/F			13.893(8)				2.4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6.0	19.5	31.2	19.5	3.9	100.0 (77)	2.6(1.2)

구분	돌봄지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않음	도움 받지 못함	도움 받지 못하는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101~150만원	20.0	14.1	34.1	21.2	10.6	100.0 (85)	2.9(1.3)
151~200만원	16.7	21.7	27.9	26.7	7.0	100.0 (641)	2.9(1.2)
201~250만원	16.5	22.0	22.8	31.5	7.1	100.0 (127)	2.9(1.2)
251~300만원	20.0	22.0	28.0	23.0	7.0	100.0 (100)	2.8(1.2)
301~350만원	19.7	20.5	25.4	24.6	9.8	100.0 (122)	2.8(1.3)
351~400만원	12.7	26.4	29.1	24.5	7.3	100.0 (110)	2.9(1.1)
401~500만원	17.1	12.1	20.0	35.7	15.0	100.0 (140)	3.2(1.3)
501~600만원	16.5	18.6	18.6	30.9	15.5	100.0 (97)	3.1(1.3)
601~700만원	6.7	13.3	22.2	42.2	15.6	100.0 (45)	3.5(1.1)
701~800만원	9.1	13.6	13.6	36.4	27.3	100.0 (22)	3.6(1.3)
801만원 이상	2.5	10.0	20.0	30.0	37.5	100.0 (40)	3.9(1.1)
$\chi^2(df)/F$	109.833(44)***						5.6***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1점 ~ '매우 도움을 받는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1-26〉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4: 육아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

단위: %(명), 점

구분	육아정보/양육기술 조언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않음	도움 받지 못함	도움 받지 못하는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전체	8.1	19.1	41.8	26.4	4.5	100.0 (1,606)	3.0(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9.7	14.9	44.8	27.6	3.0	100.0 (134)	3.0(1.0)
차상위계층	9.1	18.1	46.1	22.0	4.7	100.0 (254)	3.0(1.0)
비수급가구	7.7	19.8	40.6	27.2	4.7	100.0 (1,218)	3.0(1.0)
$\chi^2(df)/F$	7.319(8)						0.4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1점 ~ '매우 도움을 받는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라. 주거환경

영유아를 둔 가구의 거주지역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용이한 환경인지를 조사한 바로는 전반적으로 문화 및 체험시설, 놀이터 및 공원 등에 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접근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문화시설 및 체험시설과 의료시

설의 접근성은 읍면지역의 평가가 평균 각각 2.7점(5점 만점), 2.8점으로 3점을 밑돌았다. 따라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빈곤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 요구된다.

〈표 V-1-27〉 주거환경: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1. 문화/체험시설의 접근성	7.5	21.0	32.8	28.1	9.8	0.8	100.0 (1,606)	3.1(1.1)
2.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의 접근성	9.8	26.2	34.3	22.3	5.8	1.6	100.0 (1,606)	2.9(1.1)
3. 의료기관의 접근성	4.7	14.4	33.3	34.1	13.2	0.3	100.0 (1,606)	3.4(1.0)
4. 놀이터/공원 도보 20분 이내 위치	4.8	8.8	25.2	34.1	25.3	1.8	100.0 (1,606)	3.7(1.1)
5. 보육기관 도보/차량 10분 이 내 위치	2.5	7.0	22.6	35.4	30.6	1.9	100.0 (1,606)	3.9(1.0)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1-28〉 주거환경 1: 문화/체험시설의 접근성

단위: %(명), 점

구분	문화/체험시설의 접근성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전체	7.5	21.0	32.8	28.1	9.8	0.8	100.0 (1,606)	3.1(1.1)
지역규모								
대도시	5.6	17.5	35.0	29.7	11.4	0.8	100.0 (718)	3.2(1.1)
중소도시	8.5	23.1	30.9	28.6	8.2	0.7	100.0 (802)	3.1(1.1)
읍면지역	15.1	30.2	32.6	10.5	10.5	1.2	100.0 (86)	2.7(1.2)
$\chi^2(df)/F$			36.645(10)***					12.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1.2	23.1	27.6	27.6	9.7	0.7	100.0 (134)	3.0(1.2)
차상위계층	6.7	23.6	34.3	26.8	7.5	1.2	100.0 (254)	3.0(1.0)
비수급가구	7.3	20.2	33.1	28.4	10.3	0.7	100.0 (1,218)	3.1(1.1)
$\chi^2(df)/F$			7.886(10)					1.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1-29〉 주거환경 2: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의 접근성

단위: %(명), 점

구분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의 접근성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전체	9.8	26.2	34.3	22.3	5.8	1.6	100.0 (1,606)	2.9(1.1)
지역규모								
대도시	7.0	24.0	35.9	25.2	6.3	1.7	100.0 (718)	3.0(1.0)
중소도시	12.0	27.4	32.7	21.3	5.1	1.5	100.0 (802)	2.8(1.1)
읍면지역	14.0	33.7	36.0	7.0	8.1	1.2	100.0 (86)	2.6(1.1)
$\chi^2(df)/F$			30.204(10)***					9.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5.7	26.1	29.9	21.6	5.2	1.5	100.0 (134)	2.7(1.1)
차상위계층	9.4	24.0	41.3	17.7	7.1	0.4	100.0 (254)	2.9(1.0)
비수급가구	9.3	26.7	33.3	23.3	5.6	1.8	100.0 (1,218)	2.9(1.1)
$\chi^2(df)/F$			16.991(10)					1.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1-30〉 주거환경 3: 의료기관의 접근성

단위: %(명), 점

구분	의료기관의 접근성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전체	4.7	14.4	33.3	34.1	13.2	0.3	100.0 (1,606)	3.4(1.0)
지역규모								
대도시	2.8	11.8	31.9	37.2	15.6	0.7	100.0 (718)	3.5(1.0)
중소도시	5.9	15.1	34.2	33.3	11.6	0.0	100.0 (802)	3.3(1.0)
읍면지역	9.3	30.2	37.2	15.1	8.1	0.0	100.0 (86)	2.8(1.1)
$\chi^2(df)/F$			55.096(10)***					21.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7.5	20.9	32.1	29.1	9.0	1.5	100.0 (134)	3.1(1.1)
차상위계층	5.1	15.7	37.4	30.7	10.6	0.4	100.0 (254)	3.3(1.0)
비수급가구	4.3	13.5	32.6	35.3	14.2	0.2	100.0 (1,218)	3.4(1.0)
$\chi^2(df)/F$			22.552(10)*					6.8**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1-31〉 주거환경 4: 놀이터/공원의 접근성: 도보 20분 이내 위치

단위: %(명), 점

구분	놀이터/공원 의 접근성: 도보 20분 이내 위치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전체	4.8	8.8	25.2	34.1	25.3	1.8	100.0 (1,606)	3.7(1.1)
지역규모								
대도시	4.0	7.9	24.0	35.9	26.3	1.8	100.0 (718)	3.7(1.1)
중소도시	4.9	8.6	25.9	34.0	24.7	1.9	100.0 (802)	3.7(1.1)
읍면지역	10.5	18.6	29.1	18.6	22.1	1.2	100.0 (86)	3.2(1.3)
$\chi^2(df)/F$			25.490(10)**					8.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8.2	9.7	32.1	32.8	14.9	2.2	100.0 (134)	3.4(1.1)
차상위계층	4.3	9.4	29.1	33.1	22.0	2.0	100.0 (254)	3.6(1.1)
비수급가구	4.5	8.6	23.6	34.4	27.1	1.7	100.0 (1,218)	3.7(1.1)
$\chi^2(df)/F$			17.816(10)					6.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표 V-1-32〉 주거환경 5: 보육시설의 접근성_기관 도보/차량 10분 이내 위치

단위: %(명), 점

구분	보육시설의 접근성: 도보/차량 10분 이내 위치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전체	2.5	7.0	22.6	35.4	30.6	1.9	100.0 (1,606)	3.9(1.0)
지역규모								
대도시	2.2	6.5	20.9	37.5	30.9	1.9	100.0 (718)	3.9(1.0)
중소도시	2.2	7.6	23.7	34.2	30.4	1.9	100.0 (802)	3.8(1.0)
읍면지역	7.0	5.8	26.7	30.2	29.1	1.2	100.0 (86)	3.7(1.2)
$\chi^2(df)/F$			12.353(10)					1.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6.0	11.2	23.9	33.6	22.4	3.0	100.0 (134)	3.6(1.1)
차상위계층	2.4	7.5	24.8	35.4	28.7	1.2	100.0 (254)	3.8(1.0)
비수급가구	2.1	6.5	22.0	35.6	31.9	1.9	100.0 (1,218)	3.9(1.0)
$\chi^2(df)/F$			17.426(10)					6.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라. 가정내 (교육)환경

가정내 환경으로 교재교구 구비 수준에 대해 아이 연령 및 발달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항목은 평균 3.3점, 실내에서 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항목은 평균 3.6점으로 평가되었다. 법정 빈곤가구의 경우는 두 항목 모두에서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25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부표 15~16 참조).

〈표 V-1-33〉 자녀의 생활환경: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1. 아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책 보유	3.7	13.1	38.5	36.7	7.9	100.0 (1,606)	3.3(0.9)
2. 실내 놀이 장난감/기구 보유	1.3	7.7	33.2	44.0	13.8	100.0 (1,606)	3.6(0.9)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1-34〉 자녀의 생활환경 1: 아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책 보유

단위: %(명), 점

구분	아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책 보유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7	13.1	38.5	36.7	7.9	100.0 (1,606)	3.3(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9.7	11.9	44.0	26.9	7.5	100.0 (134)	3.1(1.0)
차상위계층	3.5	17.3	44.9	29.1	5.1	100.0 (254)	3.1(0.9)
비수급가구	3.0	12.4	36.6	39.4	8.5	100.0 (1,218)	3.4(0.9)
$\chi^2(df)/F$			36.577(8)***				10.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1-35〉 자녀의 생활환경 2: 실내 놀이 장난감/기구 보유

단위: %(명), 점

구분	실내 놀이 장난감/기구 보유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3	7.7	33.2	44.0	13.8	100.0 (1,606)	3.6(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0	11.9	38.1	39.6	7.5	100.0 (134)	3.4(0.9)
차상위계층	0.8	9.1	42.9	39.0	8.3	100.0 (254)	3.4(0.8)
비수급가구	1.2	7.0	30.6	45.6	15.6	100.0 (1,218)	3.7(0.9)
$\chi^2(df)/F$	33.779(8)***						13.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마. 종합 평가: 양육환경 충족도

각 항목별 양육환경의 충족도는 빈곤가구와 전체가구 모두에서 놀이체험 및 문화활동이 가장 낮게 점 만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는 등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모든 항목에 걸쳐 빈곤가구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표 V-1-36〉 양육환경의 충족도 인식: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표준편차)	
							빈곤가구	전체가구
1. 양육에 적절한 주거공간 /위생적인 실내외 환경	5.2	13.3	45.2	31.2	5.2	100.0 (830)	3.2(0.9)	3.4(0.9)
2. 적절한 영양 섭취/건강 관리	2.7	11.6	47.6	32.2	6.0	100.0 (830)	3.3(0.8)	3.4(0.8)
3. 아이와 보내는 시간	2.5	10.5	40.7	35.4	10.8	100.0 (830)	3.4(0.9)	3.5(0.9)
4.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3.6	13.0	45.7	31.3	6.4	100.0 (830)	3.2(0.9)	3.4(0.9)
5. 놀이체험/문화활동	5.3	21.6	44.1	24.6	4.5	100.0 (830)	3.0(0.9)	3.2(0.9)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법정 빈곤가구는 모든 항목에서 충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양육에 적절한 주거공간 및 위생적인 실내외환경과 놀이체험 및 문화활동 영역에서는 월

평균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 낮은 충족도를 나타나므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경우는 맞벌이 가구와 전일제 근로가구 그리고 한부모가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충족도를 보여, 이들의 자녀가 빈곤가구에 속하는 경우는 양육환경 전반에서 결핍이 우려된다.

그 밖에도 적절한 영양 섭취와 건강관리에서는 빈곤가구 내부의 차이를 보여,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결핍이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표 V-1-36 참조).

〈표 V-1-37〉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1: 양육에 적절한 주거공간/위생적인 실내외 환경

단위: %(명), 점

구분	양육에 적절한 주거공간/위생적인 실내외 환경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3.4	10.8	39.5	38.9	7.4	100.0 (1,606)	3.4(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9.0	16.4	46.3	26.1	2.2	100.0 (134)	3.0(0.9)
차상위계층	3.5	11.0	46.5	33.1	5.9	100.0 (254)	3.3(0.9)
비수급가구	2.7	10.2	37.3	41.5	8.3	100.0 (1,218)	3.4(0.9)
$\chi^2(df)/F$	41.498(8)***						18.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0.4	14.3	54.5	18.2	2.6	100.0 (77)	2.9(0.9)
101~150만원	14.1	8.2	36.5	36.5	4.7	100.0 (85)	3.1(1.1)
151~200만원	3.4	13.9	44.8	32.6	5.3	100.0 (641)	3.2(0.9)
201~250만원	2.4	15.0	37.8	39.4	5.5	100.0 (127)	3.3(0.9)
251~300만원	4.0	16.0	33.0	41.0	6.0	100.0 (100)	3.3(0.9)
301~350만원	0.0	9.0	37.7	48.4	4.9	100.0 (122)	3.5(0.7)
351~400만원	1.8	5.5	47.3	37.3	8.2	100.0 (110)	3.4(0.8)
401~500만원	0.7	5.0	30.7	47.9	15.7	100.0 (140)	3.7(0.8)
501~600만원	1.0	6.2	26.8	55.7	10.3	100.0 (97)	3.7(0.8)
601~700만원	2.2	0.0	31.1	51.1	15.6	100.0 (45)	3.8(0.8)
701~800만원	0.0	9.1	22.7	54.5	13.6	100.0 (22)	3.7(0.8)
801만원 이상	0.0	0.0	17.5	60.0	22.5	100.0 (40)	4.1(0.6)
$\chi^2(df)/F$	185.401(44)***						12.0***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1-38〉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2: 적절한 영양 섭취/건강관리(전체가구)

단위: %(명), 점

구분	적절한 영양 섭취/건강관리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	9.3	40.7	40.8	7.7	100.0 (1,606)	3.4(0.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6.0	10.4	53.7	27.6	2.2	100.0 (134)	3.1(0.8)
차상위계층	1.2	12.6	48.4	31.5	6.3	100.0 (254)	3.3(0.8)
비수급가구	1.1	8.5	37.7	44.2	8.5	100.0 (1,218)	3.5(0.8)
χ^2 (df)/F			57.029(8)***				20.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7.8	11.7	59.7	18.2	2.6	100.0 (77)	3.0(0.8)
101~150만원	8.2	14.1	41.2	30.6	5.9	100.0 (85)	3.1(1.0)
151~200만원	1.2	11.2	47.1	33.9	6.6	100.0 (641)	3.3(0.8)
201~250만원	0.0	9.4	43.3	44.9	2.4	100.0 (127)	3.4(0.7)
251~300만원	1.0	11.0	40.0	41.0	7.0	100.0 (100)	3.4(0.8)
301~350만원	0.0	6.6	40.2	47.5	5.7	100.0 (122)	3.5(0.7)
351~400만원	0.0	7.3	33.6	50.0	9.1	100.0 (110)	3.6(0.8)
401~500만원	0.7	5.7	24.3	55.0	14.3	100.0 (140)	3.8(0.8)
501~600만원	0.0	5.2	36.1	53.6	5.2	100.0 (97)	3.6(0.7)
601~700만원	2.2	4.4	24.4	57.8	11.1	100.0 (45)	3.7(0.8)
701~800만원	0.0	13.6	9.1	45.5	31.8	100.0 (22)	4.0(1.0)
801만원 이상	0.0	0.0	20.0	55.0	25.0	100.0 (40)	4.1(0.7)
χ^2 (df)/F			199.518(44)***				11.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1-39〉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2: 적절한 영양 섭취/건강관리(빈곤가구)

단위: %(명), 점

구분	적절한 영양 섭취/건강관리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7	11.6	47.6	32.2	6.0	100.0 (830)	3.3(0.8)
빈곤가구 유형							
기초생활수급가구	6.0	10.4	53.7	27.6	2.2	100.0 (134)	3.1(0.8)
차상위계층	1.2	12.6	48.4	31.5	6.3	100.0 (254)	3.3(0.8)
일반빈곤가구	2.5	11.3	45.2	33.9	7.0	100.0 (442)	3.3(0.9)
χ^2 (df)/F			14.963(8)				3.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1-40〉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3: 아이와 보내는 시간

단위: %(명), 점

구분	아이와 보내는 시간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2	10.5	38.0	38.8	10.5	100.0 (1,606)	3.5(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4	12.7	40.3	34.5	9.0	100.0 (620)	3.3(0.9)
홀벌이 가구	1.2	9.1	35.6	43.4	10.8	100.0 (772)	3.5(0.8)
모두 근로안함	2.3	8.9	40.2	34.6	14.0	100.0 (214)	3.5(0.9)
$\chi^2(df)/F$			27.085(8)***				9.3***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2.8	14.5	37.8	35.5	9.4	100.0 (352)	3.3(0.9)
전일제+시간제	1.2	7.0	43.0	37.8	11.0	100.0 (172)	3.5(0.8)
시간제+시간제	0.0	0.0	40.9	50.0	9.1	100.0 (22)	3.7(0.6)
해당사항 없음	2.2	9.9	37.3	39.8	10.8	100.0 (1,060)	3.5(0.9)
$\chi^2(df)/F$			16.068(12)				2.7*
가구특성							
부부+자녀	1.6	9.9	37.2	40.4	10.9	100.0 (1,388)	3.5(0.9)
한부모+자녀	7.9	18.0	40.4	28.1	5.6	100.0 (89)	3.1(1.0)
조부모+부부+자녀	2.0	10.1	42.4	34.3	11.1	100.0 (99)	3.4(0.9)
조부모+한부모+자녀	13.3	13.3	56.7	10.0	6.7	100.0 (30)	2.8(1.0)
$\chi^2(df)/F$			54.795(12)***				11.7***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2	13.4	46.3	30.6	7.5	100.0 (134)	3.3(0.9)
차상위계층	1.6	9.4	45.3	33.5	10.2	100.0 (254)	3.4(0.9)
비수급가구	2.3	10.3	35.6	40.8	10.9	100.0 (1,218)	3.5(0.9)
$\chi^2(df)/F$			16.484(8)*				3.3*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1-41〉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4: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단위: %(명), 점

구분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4	10.9	42.3	36.6	7.8	100.0 (1,606)	3.4(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6.0	13.4	48.5	26.1	6.0	100.0 (134)	3.1(0.9)

구분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차상위계층	2.8	11.8	48.0	29.5	7.9	100.0 (254)	3.3(0.9)
비수급가구	2.0	10.4	40.4	39.2	8.0	100.0 (1,218)	3.4(0.9)
$\chi^2(df)/F$	23.996(8)**						7.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9.1	10.4	57.1	19.5	3.9	100.0 (77)	3.0(0.9)
101~150만원	7.1	11.8	40.0	27.1	14.1	100.0 (85)	3.3(1.1)
151~200만원	2.7	13.3	45.1	33.2	5.8	100.0 (641)	3.3(0.9)
201~250만원	1.6	18.9	45.7	28.3	5.5	100.0 (127)	3.2(0.9)
251~300만원	3.0	9.0	42.0	38.0	8.0	100.0 (100)	3.4(0.9)
301~350만원	0.8	9.8	45.9	39.3	4.1	100.0 (122)	3.4(0.8)
351~400만원	0.9	5.5	41.8	44.5	7.3	100.0 (110)	3.5(0.8)
401~500만원	0.0	9.3	30.7	44.3	15.7	100.0 (140)	3.7(0.9)
501~600만원	1.0	5.2	35.1	51.5	7.2	100.0 (97)	3.6(0.7)
601~700만원	2.2	2.2	40.0	48.9	6.7	100.0 (45)	3.6(0.8)
701~800만원	0.0	4.5	18.2	59.1	18.2	100.0 (22)	3.9(0.8)
801만원 이상	0.0	2.5	27.5	47.5	22.5	100.0 (40)	3.9(0.8)
$\chi^2(df)/F$	138.175(44)***						7.9***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표 V-1-42〉 양육환경 충족도 인식 5: 놀이체험/문화활동

단위: %(명), 점

구분	놀이체험/문화활동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0	17.0	42.4	31.3	5.2	100.0 (1,606)	3.2(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7.5	26.9	40.3	23.1	2.2	100.0 (134)	2.9(0.9)
차상위계층	5.5	16.5	46.9	25.2	5.9	100.0 (254)	3.1(0.9)
비수급가구	3.4	16.0	41.7	33.5	5.4	100.0 (1,218)	3.2(0.9)
$\chi^2(df)/F$	26.823(8)***						10.4***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7	23.4	41.6	20.8	2.6	100.0 (77)	2.8(1.0)
101~150만원	9.4	15.3	42.4	27.1	5.9	100.0 (85)	3.0(1.0)
151~200만원	4.1	22.6	43.7	25.3	4.4	100.0 (641)	3.0(0.9)
201~250만원	3.9	17.3	50.4	24.4	3.9	100.0 (127)	3.1(0.9)

구분	놀이체험/문화활동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1~300만원	9.0	10.0	47.0	29.0	5.0	100.0 (100)	3.1(1.0)
301~350만원	0.8	14.8	45.9	35.2	3.3	100.0 (122)	3.3(0.8)
351~400만원	2.7	10.9	42.7	37.3	6.4	100.0 (110)	3.3(0.9)
401~500만원	0.7	15.0	35.0	40.7	8.6	100.0 (140)	3.4(0.9)
501~600만원	1.0	10.3	39.2	45.4	4.1	100.0 (97)	3.4(0.8)
601~700만원	2.2	8.9	24.4	62.2	2.2	100.0 (45)	3.5(0.8)
701~800만원	0.0	0.0	40.9	40.9	18.2	100.0 (22)	3.8(0.8)
801만원 이상	2.5	0.0	30.0	50.0	17.5	100.0 (40)	3.8(0.8)
$\chi^2(df)/F$	148.702(44)***						8.5***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2. 부모 효능감 및 양육 태도

영유아들 둔 빈곤가구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태도를 진단하기 위해 1)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역량, 2)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 태도, 3) 자녀와의 친밀감과 상호작용을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양육기술과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아이 발달에 대한 이해 등에서 빈곤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고, 최상의 양육을 제공한다는 항목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역량

영유아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일관된 훈육과 양육기술에 대한 평가가 낮아 평균 3.0점(5점 만점)에 그치고 있다.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고, 최상의 양육을 제공한다는 인식은 낮았으며, 이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801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고 응답한 비율(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이 높았다.

우 그렇다)이 47.5%였으나, 100만원 이하 가구의 해당 비율은 22.1%에 불과하였다. 또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한다는 평가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에 비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은 평가를 보여, 빈곤아동 지원의 전반적인 포괄범위를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까지 고려하고, 자녀 수를 반영한 지원수준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V-2-1〉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	3.4	23.0	39.7	30.3	3.6	100.0 (1,606)	3.1(0.9)
2. 나는 아이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고 있다	4.7	23.7	43.8	24.5	3.4	100.0 (1,606)	3.0(0.9)
3. 나는 부모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4.0	19.4	43.2	27.5	5.9	100.0 (1,606)	3.1(0.9)
4. 나는 좋은 부모로서 필요한 양육기술을 갖추고 있다	4.5	23.0	45.8	23.0	3.6	100.0 (1,606)	3.0(0.9)
5. 나는 아이를 일관되게 훈육할 수 있다	4.6	23.0	42.5	25.3	4.6	100.0 (1,606)	3.0(0.9)
6. 나는 아이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1.5	9.5	44.3	37.7	7.0	100.0 (1,606)	3.4(0.8)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2-2〉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1: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함

단위: %(명), 점

구분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함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4	23.0	39.7	30.3	3.6	100.0 (1,606)	3.1(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8.2	24.6	41.0	24.6	1.5	100.0 (134)	2.9(0.9)
차상위계층	4.3	18.9	45.7	27.2	3.9	100.0 (254)	3.1(0.9)
비수급가구	2.7	23.6	38.3	31.5	3.8	100.0 (1,218)	3.1(0.9)
$\chi^2(df)/F$	21.212(8)**						4.1*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0.4	22.1	45.5	20.8	1.3	100.0 (77)	2.8(0.9)
101~150만원	7.1	22.4	37.6	24.7	8.2	100.0 (85)	3.0(1.0)

구분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함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1~200만원	4.1	24.5	40.6	27.1	3.7	100.0 (641)	3.0(0.9)
201~250만원	2.4	28.3	32.3	32.3	4.7	100.0 (127)	3.1(0.9)
251~300만원	6.0	17.0	42.0	32.0	3.0	100.0 (100)	3.1(0.9)
301~350만원	0.0	18.9	46.7	32.8	1.6	100.0 (122)	3.2(0.7)
351~400만원	0.9	22.7	40.0	32.7	3.6	100.0 (110)	3.2(0.8)
401~500만원	2.1	21.4	35.7	38.6	2.1	100.0 (140)	3.2(0.9)
501~600만원	2.1	21.6	37.1	36.1	3.1	100.0 (97)	3.2(0.9)
601~700만원	0.0	24.4	37.8	33.3	4.4	100.0 (45)	3.2(0.9)
701~800만원	0.0	27.3	45.5	22.7	4.5	100.0 (22)	3.0(0.8)
801만원 이상	0.0	17.5	35.0	42.5	5.0	100.0 (40)	3.4(0.8)
$\chi^2(df)/F$	61.583(44)*						1.7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자녀양육시에 상대방 배우자는 물론 친인척 등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보다 크고, 자녀 출산 과정에 이르기 까지 겪은 상처 등으로 정신적 우울감도 지니고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번씩 그랬는데 그날 유독 심하게 그랬어요. 저도 예민하면 좋은 말이 안 나가고 화만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애기가 더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랑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좀 길지는 않더라도 (부모 3)

(병원을) 다시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한번도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기를 낳고 잠깐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다시 데려 온거거든요. 안 하던 생활을 하다보니까 하던걸 못하고 안 하던걸 해야 하니까. 시설에 있으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니까 그 관계 형성하는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화 표출을 아기에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서. 환영 이런게 보이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겹쳐서 약을 먹기 시작한거거든요 (부모 3)

애네 학교에서 설문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담 받고 싶다고 생각 들었어요. 스트레스가 자고 일어나면 풀리긴 하지만 쌓이는데 차곡차곡 집에 있으면 나를 잠재워야 하니까 최대한 괜찮다고 하는데 출산 후 조리도 못하고 육아에 시달려서 힘든 건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애들한테 풀 수 없고 가끔 나랑 비슷한 사람 있으면 얘기하고 위안을 삼아요. 다른 상담 기관에 가서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 10)

〈표 V-2-3〉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2: 아이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함

단위: %(명), 점

구분	최상의 양육 제공함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7	23.7	43.8	24.5	3.4	100.0 (1,606)	3.0(0.9)
자녀수							
1명	4.4	19.9	43.4	28.6	3.6	100.0 (772)	3.1(0.9)
2명	4.9	27.1	43.0	22.1	2.9	100.0 (656)	2.9(0.9)
3명	5.0	26.4	48.4	15.7	4.4	100.0 (159)	2.9(0.9)
4명 이상	5.3	31.6	47.4	15.8	0.0	100.0 (19)	2.7(0.8)
$\chi^2(df)/F$			24.262(12)*				5.2**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7.5	24.6	41.8	24.6	1.5	100.0 (134)	2.9(0.9)
차상위계층	5.1	26.4	40.2	24.8	3.5	100.0 (254)	3.0(0.9)
비수급가구	4.3	23.0	44.7	24.5	3.5	100.0 (1,218)	3.0(0.9)
$\chi^2(df)/F$			6.516(8)				1.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5	28.6	44.2	19.5	1.3	100.0 (77)	2.8(0.9)
101~150만원	11.8	22.4	37.6	25.9	2.4	100.0 (85)	2.8(1.0)
151~200만원	5.6	25.7	42.3	22.8	3.6	100.0 (641)	2.9(0.9)
201~250만원	3.9	30.7	42.5	20.5	2.4	100.0 (127)	2.9(0.9)
251~300만원	4.0	28.0	47.0	18.0	3.0	100.0 (100)	2.9(0.9)
301~350만원	2.5	24.6	46.7	24.6	1.6	100.0 (122)	3.0(0.8)
351~400만원	1.8	14.5	56.4	21.8	5.5	100.0 (110)	3.1(0.8)
401~500만원	5.0	18.6	38.6	32.9	5.0	100.0 (140)	3.1(0.9)
501~600만원	2.1	20.6	47.4	25.8	4.1	100.0 (97)	3.1(0.8)
601~700만원	2.2	13.3	44.4	37.8	2.2	100.0 (45)	3.2(0.8)
701~800만원	0.0	18.2	50.0	31.8	0.0	100.0 (22)	3.1(0.7)
801만원 이상	0.0	12.5	37.5	45.0	5.0	100.0 (40)	3.4(0.8)
$\chi^2(df)/F$			68.198(44)*				3.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2-4〉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3: 부모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

단위: %(명), 점

구분	부모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0	19.4	43.2	27.5	5.9	100.0 (1,606)	3.1(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6.7	17.9	47.0	23.1	5.2	100.0 (134)	3.0(0.9)

구분	부모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차상위계층	6.3	22.4	36.2	26.4	8.7	100.0 (254)	3.1(1.0)
비수급가구	3.2	19.0	44.3	28.2	5.4	100.0 (1,218)	3.1(0.9)
$\chi^2(df)/F$	17.997(8)*						1.1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2-5〉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4: 좋은 부모로서 필요한 양육기술을 갖추고 있음

단위: %(명), 점

구분	양육기술을 갖추고 있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5	23.0	45.8	23.0	3.6	100.0 (1,606)	3.0(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7.5	22.4	42.5	24.6	3.0	100.0 (134)	2.9(0.9)
차상위계층	5.5	22.8	44.5	22.8	4.3	100.0 (254)	3.0(0.9)
비수급가구	4.0	23.2	46.4	22.9	3.5	100.0 (1,218)	3.0(0.9)
$\chi^2(df)/F$	4.989(8)						0.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2-6〉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5: 아이에게 일관된 훈육을 할 수 있음

단위: %(명), 점

구분	일관되게 훈육할 수 있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6	23.0	42.5	25.3	4.6	100.0 (1,606)	3.0(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2	23.9	43.3	23.9	3.7	100.0 (134)	3.0(0.9)
차상위계층	5.5	19.7	43.3	26.4	5.1	100.0 (254)	3.1(0.9)
비수급가구	4.4	23.6	42.2	25.2	4.6	100.0 (1,218)	3.0(0.9)
$\chi^2(df)/F$	2.889(8)						0.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2-7〉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 6: 아이 발달에 대해 잘 이해함

단위: %(명), 점

구분	아이 발달에 대해 이해함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	9.5	44.3	37.7	7.0	100.0 (1,606)	3.4(0.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0	8.2	52.2	29.1	7.5	100.0 (134)	3.3(0.8)
차상위계층	2.4	11.8	44.5	33.5	7.9	100.0 (254)	3.3(0.9)
비수급가구	1.1	9.1	43.4	39.6	6.7	100.0 (1,218)	3.4(0.8)
χ^2 (df)/F			13.622(8)				2.3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나.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 태도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그 항목에 따라 동의 수준의 격차가 커서,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는 평균 3.7점(5점 만점)이나,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껴진다'는 평균 2.1점에 그쳤다.

'출산 이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수준은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가 0~1세인 경우에 경력단절이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고, 부모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며, 특히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고 응답한 비율(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17.2%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가구가 드림스타트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V-2-8〉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 태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1.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1.2	8.0	23.5	51.0	16.3	100.0 (1,606)	3.7(0.9)
2.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 로 되지 않아 괴롭다	8.2	29.1	35.7	20.7	6.3	100.0 (1,606)	2.9(1.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3. 자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인정 받지 못하는 것 같다	8.8	27.5	36.2	21.2	6.4	100.0 (1,606)	2.9(1.0)
4. 부모가 되는 것은 생각한 것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14.1	24.3	31.9	23.3	6.5	100.0 (1,606)	2.8(1.1)
5.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 겨진다	32.8	33.0	25.0	7.3	1.9	100.0 (1,606)	2.1(1.0)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2-9〉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출산 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음

단위: %(명), 점

구분	출산 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음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1.2	8.0	23.5	51.0	16.3	100.0 (1,606)	3.7(0.9)
영유아구분							
영아	1.3	5.7	22.7	50.4	19.8	100.0 (823)	3.8(0.9)
유아	1.0	10.5	24.4	51.6	12.5	100.0 (783)	3.6(0.9)
$\chi^2(df)/t$	25.367(4)***						4.1***
아동연령							
0세	1.4	2.8	24.9	52.6	18.3	100.0 (213)	3.8(0.8)
1세	1.4	4.3	19.4	49.5	25.4	100.0 (279)	3.9(0.9)
2세	1.2	8.8	24.2	49.8	16.0	100.0 (331)	3.7(0.9)
3세	0.4	8.3	22.4	57.5	11.4	100.0 (228)	3.7(0.8)
4세	2.2	11.4	25.4	46.3	14.7	100.0 (272)	3.6(0.9)
5세	0.4	11.3	25.1	51.9	11.3	100.0 (283)	3.6(0.8)
$\chi^2(df)/F$	54.810(20)***						5.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2	6.7	29.9	44.8	16.4	100.0 (134)	3.7(0.9)
차상위계층	1.6	6.7	24.8	46.9	20.1	100.0 (254)	3.8(0.9)
비수급가구	1.0	8.5	22.6	52.5	15.4	100.0 (1,218)	3.7(0.9)
$\chi^2(df)/F$	11.279(8)						0.7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2-10〉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2: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움

단위: %(명), 점

구분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움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8.2	29.1	35.7	20.7	6.3	100.0 (1,606)	2.9(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9.0	21.6	32.8	23.1	13.4	100.0 (134)	3.1(1.2)
차상위계층	7.9	26.8	36.6	22.4	6.3	100.0 (254)	2.9(1.0)
비수급가구	8.2	30.4	35.9	20.0	5.5	100.0 (1,218)	2.8(1.0)
$\chi^2(df)/F$	17.318(8)*						4.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2-11〉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3: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음

단위: %(명), 점

구분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8.8	27.5	36.2	21.2	6.4	100.0 (1,606)	2.9(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9.7	22.4	32.1	26.1	9.7	100.0 (134)	3.0(1.1)
차상위계층	9.8	26.4	35.4	20.5	7.9	100.0 (254)	2.9(1.1)
비수급가구	8.5	28.3	36.8	20.8	5.7	100.0 (1,218)	2.9(1.0)
$\chi^2(df)/F$	8.970(8)						1.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2-12〉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4: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음

단위: %(명), 점

구분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4.1	24.3	31.9	23.3	6.5	100.0 (1,606)	2.8(1.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3.4	23.9	32.1	20.1	10.4	100.0 (134)	2.9(1.2)
차상위계층	13.0	22.0	33.5	22.8	8.7	100.0 (254)	2.9(1.1)
비수급가구	14.4	24.8	31.5	23.7	5.6	100.0 (1,218)	2.8(1.1)
$\chi^2(df)/F$	8.566(8)						1.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2-13〉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5: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짐

단위: %(명), 점

구분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2.8	33.0	25.0	7.3	1.9	100.0 (1,606)	2.1(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9.1	26.9	26.9	11.2	6.0	100.0 (134)	2.4(1.2)
차상위계층	29.1	33.1	27.2	7.9	2.8	100.0 (254)	2.2(1.0)
비수급가구	34.0	33.7	24.4	6.7	1.2	100.0 (1,218)	2.1(1.0)
$\chi^2(df)/F$	23.886(8)**						6.9**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다. 자녀와의 관계: 친밀감과 상호작용

자녀와의 친밀감과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균 3.6점(5점 만점)에서 3.9점으로 이의 항목들에 비해 높게 평가된 가운데, 자녀와의 친밀감 전반에 비해 자녀와의 놀이와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자녀와의 친밀감은 법정 빈곤가구에서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놀이 관련 항목에서는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2-14〉 자녀에 대한 태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내 아이와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0.7	2.6	23.8	50.4	22.4	100.0 (1,606)	3.9(0.8)
2. 나는 아이가 하는 놀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0.6	6.0	30.8	48.4	14.1	100.0 (1,606)	3.7(0.8)
3.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1.6	10.8	32.9	38.2	16.4	100.0 (1,606)	3.6(0.9)
4. 나는 자녀와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한다	0.7	7.3	33.9	43.8	14.3	100.0 (1,606)	3.6(0.8)
5. 나는 자녀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른다	1.0	6.4	28.6	43.3	20.7	100.0 (1,606)	3.8(0.9)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2-15〉 자녀에 대한 태도 1: 자녀와 매우 가깝다 생각함

단위: %(명), 점

구분	자녀와 매우 가깝다 생각함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7	2.6	23.8	50.4	22.4	100.0 (1,606)	3.9(0.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7	3.7	33.6	39.6	22.4	100.0 (134)	3.8(0.9)
차상위계층	0.8	2.4	33.1	40.9	22.8	100.0 (254)	3.8(0.8)
비수급가구	0.7	2.5	20.9	53.6	22.3	100.0 (1,218)	3.9(0.8)
χ^2 (df)/F	29.917(8)***						4.0*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2-16〉 자녀에 대한 태도 2: 놀이나 활동에 참여함

단위: %(명), 점

구분	놀이나 활동에 참여함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6	6.0	30.8	48.4	14.1	100.0 (1,606)	3.7(0.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7	6.7	38.1	37.3	17.2	100.0 (134)	3.6(0.9)
차상위계층	0.4	5.9	32.7	46.1	15.0	100.0 (254)	3.7(0.8)
비수급가구	0.7	6.0	29.6	50.2	13.6	100.0 (1,218)	3.7(0.8)
χ^2 (df)/F	9.263(8)						0.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2-17〉 자녀에 대한 태도 3: 책을 읽어줌

단위: %(명), 점

구분	책을 읽어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6	10.8	32.9	38.2	16.4	100.0 (1,606)	3.6(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2	9.7	39.6	27.6	17.9	100.0 (134)	3.4(1.1)
차상위계층	1.6	13.4	37.0	32.7	15.4	100.0 (254)	3.5(1.0)
비수급가구	1.1	10.4	31.4	40.6	16.5	100.0 (1,218)	3.6(0.9)
χ^2 (df)/F	26.809(8)***						3.9*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2-18〉 자녀에 대한 태도 4: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함

단위: %(명), 점

구분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함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7	7.3	33.9	43.8	14.3	100.0 (1,606)	3.6(0.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0	7.5	42.5	31.3	15.7	100.0 (134)	3.5(0.9)
차상위계층	1.2	6.3	34.6	42.9	15.0	100.0 (254)	3.6(0.9)
비수급가구	0.4	7.5	32.8	45.4	14.0	100.0 (1,218)	3.7(0.8)
χ^2 (df)/F	21.188(8)**						2.1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표 V-2-19〉 자녀에 대한 태도 5: 노래 불러주거나 함께 노래함

단위: %(명), 점

구분	노래 불러주거나 함께 노래함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	6.4	28.6	43.3	20.7	100.0 (1,606)	3.8(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2	5.2	41.8	32.1	18.7	100.0 (134)	3.6(0.9)
차상위계층	2.0	6.7	31.1	38.6	21.7	100.0 (254)	3.7(0.9)
비수급가구	0.7	6.5	26.7	45.5	20.7	100.0 (1,218)	3.8(0.9)
χ^2 (df)/F	23.411(8)**						3.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3. 양육실태 및 애로사항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1) 자녀와의 놀이 시간, 2) 주양육자, 3) 기관 이용 현황, 4) 양육 시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바는 이하와 같다.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 및 애로사항이 비빈곤가구 대비 차별화된 지점이 있는지에 주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설정된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자녀를 방치하는 비율이 높고,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기관 입소 시기를 늦춘 비율이 높으며, 장시간 기관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양육 시 어려움에서 빈곤가구는 자녀를 맡길 데가 없고,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가. 자녀와의 놀이 시간

주중과 평일로 구분하여 하루에 자녀와 얼마나 놀아주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평일과 주말 모두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빈곤가구의 경우는 평일 기준으로 어머니는 5.5시간, 아버지는 2.2시간으로 나타난다.

〈표 V-3-1〉 어머니/아버지의 자녀와의 놀이 시간 비교: 빈곤가구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평일) 4.3	44.1	23.1	7.0	10.7	10.8	100.0 (814)	5.5(4.7)
	(주말) 2.8	28.4	26.2	10.6	18.8	13.3	100.0 (814)	7.0(4.7)
아버지	(평일) 23.9	59.9	11.1	1.7	2.9	0.4	100.0 (748)	2.2(2.3)
	(주말) 10.6	40.4	24.5	7.6	12.8	4.1	100.0 (748)	4.7(4.1)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빈곤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영유아를 둔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서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짧아지는 반면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시간은 짧게 나타난다. 평일과 주말 모두에서 맞벌이 가구 및 전일제노동 가구, 그리고 한부모가족에서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일과 주말 모두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유아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관련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시에 자녀 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V-3-2〉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45.2	24.1	7.0	9.3	8.9	100.0 (1,589)	5.1(4.4)
자녀수								
1명	3.2	39.6	25.4	8.3	12.0	11.7	100.0 (761)	5.9(4.7)
2명	8.0	48.8	23.7	5.8	7.1	6.6	100.0 (650)	4.5(4.1)
3명	5.7	55.3	21.4	5.7	6.3	5.7	100.0 (159)	4.1(3.9)
4명 이상	10.5	63.2	10.5	10.5	5.3	0.0	100.0 (19)	3.3(2.8)
$\chi^2(df)/F$			59.548(15)***					17.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9	54.8	22.6	4.3	6.4	4.0	100.0 (606)	3.9(3.6)
홀벌이 가구	3.6	38.2	25.1	9.5	11.8	11.8	100.0 (772)	6.0(4.7)
모두 근로안함	5.2	43.1	24.6	6.2	8.5	12.3	100.0 (211)	5.4(4.8)
$\chi^2(df)/F$			83.679(10)***					40.2***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8.5	56.5	21.0	4.3	5.4	4.3	100.0 (352)	3.8(3.6)
전일제+시간제	4.7	47.7	29.1	5.2	9.3	4.1	100.0 (172)	4.5(3.6)
시간제+시간제	0.0	36.4	36.4	9.1	13.6	4.5	100.0 (22)	5.3(4.1)
해당사항 없음	4.7	41.1	24.1	8.2	10.5	11.3	100.0 (1,043)	5.6(4.7)
$\chi^2(df)/F$			62.746(15)***					17.2***
가구특성								
부부+자녀	5.2	43.9	24.2	7.2	10.1	9.4	100.0 (1,388)	5.3(4.5)
한부모+자녀	9.2	61.8	21.1	0.0	2.6	5.3	100.0 (76)	3.3(3.6)
조부모+부부+자녀	4.0	44.4	30.3	12.1	4.0	5.1	100.0 (99)	4.7(3.5)
조부모+한부모+자녀	15.4	69.2	3.8	0.0	7.7	3.8	100.0 (26)	3.0(3.7)
$\chi^2(df)/F$			44.419(15)***					7.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7	48.8	22.8	3.9	7.1	12.6	100.0 (127)	5.2(4.9)
차상위계층	4.8	42.6	24.3	7.6	11.2	9.6	100.0 (251)	5.4(4.7)
비수급가구	5.7	45.3	24.2	7.3	9.2	8.3	100.0 (1,211)	5.0(4.3)
$\chi^2(df)/F$			7.344(10)					0.7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3-3〉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7	28.0	27.8	12.0	18.3	11.3	100.0 (1,589)	6.8(4.5)
자녀수								
1명	2.5	23.9	27.1	13.7	20.6	12.2	100.0 (761)	7.3(4.5)
2명	3.4	30.2	28.2	10.5	16.9	10.9	100.0 (650)	6.5(4.5)
3명	0.6	36.5	29.6	11.9	12.6	8.8	100.0 (159)	6.0(4.2)
4명 이상	5.3	47.4	26.3	0.0	15.8	5.3	100.0 (19)	5.2(4.0)
$\chi^2(df)/F$			30.141(15)*					5.7***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9	32.3	23.6	10.2	15.7	14.2	100.0 (127)	6.8(4.9)
차상위계층	2.4	27.5	24.3	10.4	22.3	13.1	100.0 (251)	7.3(4.7)
비수급가구	2.6	27.7	28.9	12.6	17.7	10.6	100.0 (1,211)	6.7(4.4)
$\chi^2(df)/F$			10.545(10)					1.5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3-4〉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7	60.6	9.6	1.1	1.7	0.3	100.0 (1,504)	1.9(2.0)
자녀수								
1명	20.2	64.2	11.6	1.4	2.3	0.4	100.0 (709)	2.2(2.2)
2명	31.9	58.4	7.6	0.6	1.3	0.2	100.0 (630)	1.7(1.8)
3명	33.8	53.4	9.5	2.0	1.4	0.0	100.0 (148)	1.7(2.0)
4명 이상	41.2	52.9	5.9	0.0	0.0	0.0	100.0 (17)	1.4(1.5)
$\chi^2(df)/F$			37.747(15)***					8.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8.0	57.0	8.4	0.9	4.7	0.9	100.0 (107)	2.2(2.7)
차상위계층	26.4	55.4	13.9	2.2	1.7	0.4	100.0 (231)	2.2(2.2)
비수급가구	26.6	61.9	8.9	0.9	1.5	0.2	100.0 (1,166)	1.8(1.9)
$\chi^2(df)/F$			17.596(10)					3.4*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3-5〉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단위: %(명),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7.5	38.9	27.3	10.2	11.9	4.1	100.0 (1,504)	5.0(3.9)
자녀수								
1명	5.8	32.6	30.2	12.8	14.4	4.2	100.0 (709)	5.5(3.9)
2명	8.1	44.4	25.1	8.3	10.0	4.1	100.0 (630)	4.6(3.9)
3명	11.5	44.6	24.3	7.4	8.8	3.4	100.0 (148)	4.2(3.8)
4명 이상	23.5	47.1	17.6	0.0	5.9	5.9	100.0 (17)	3.4(3.7)
$\chi^2(df)/F$			47.794(15)***					8.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2.1	47.7	14.0	9.3	15.0	1.9	100.0 (107)	4.3(4.1)
차상위계층	11.7	38.5	25.1	8.7	13.0	3.0	100.0 (231)	4.7(4.0)
비수급가구	6.3	38.2	29.0	10.6	11.4	4.5	100.0 (1,166)	5.1(3.9)
$\chi^2(df)/F$			26.290(10)**					2.7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나. 주양육자

1) 방치된 아동 실태

빈곤가구에서 영유아 자녀가 지난 1주일 동안 하루에 30분 이상 집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형제 및 자녀만 지낸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로 전체 영유아 가구에 13.9%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들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해당 비율은 각각 20.9%와 18.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가족(한부모+자녀)에서 아동이 방치된 비율이 각각 19.8%와 30.3%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히 법정 빈곤가구 중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가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표 V-3-6〉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아동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지낸 경우: 전체가구

단위: %(명),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3.9	86.1	100.0 (1,6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9.8	80.2	100.0 (620)
홀벌이 가구	8.7	91.3	100.0 (772)

구분	있음	없음	계(수)
모두 근로안함	15.9	84.1	100.0 (214)
χ^2 (df)	36.455(2)***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17.9	82.1	100.0 (352)
전일제+시간제	20.3	79.7	100.0 (172)
시간제+시간제	27.3	72.7	100.0 (22)
해당사항 없음	11.3	88.7	100.0 (1,060)
χ^2 (df)	19.797(3)***		
가구특성			
부부+자녀	13.0	87.0	100.0 (1,388)
한부모+자녀	30.3	69.7	100.0 (89)
조부모+부부+자녀	14.1	85.9	100.0 (99)
조부모+한부모+자녀	10.0	90.0	100.0 (30)
χ^2 (df)	21.420(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0.9	79.1	100.0 (134)
차상위계층	18.5	81.5	100.0 (254)
비수급가구	12.2	87.8	100.0 (1,218)
χ^2 (df)	12.766(2)**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표 V-3-7〉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아동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지낸 경우: 빈곤가구

단위: %(명),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4.6	85.4	100.0 (830)
빈곤가구 유형			
기초생활수급가구	20.9	79.1	100.0 (134)
차상위계층	18.5	81.5	100.0 (254)
일반빈곤가구	10.4	89.6	100.0 (442)
χ^2 (df)	13.612(2)**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2) 주양육자

주중 낮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기관 또는 사람으로는 어린이집이 43.9%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 34.7%, 유치원 13.1% 순으로 조사되었다. 0세아의 경우는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77.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에서 어린이집이 주양육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53.2%였다. 그러나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8〉 주종 낮 시간 돌보는 기관 혹은 사람

단위: %(명),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	조부모 및 친인척	기타	계(수)
전체	1.6	34.7	43.9	13.1	1.4	4.7	0.6	100.0 (1,606)
영유아구분								
영아	1.7	51.5	38.6	1.1	1.6	4.9	0.6	100.0 (823)
유아	1.5	17.0	49.4	25.8	1.1	4.5	0.6	100.0 (783)
χ^2 (df)	335.746(6)***							
아동연령								
0세	0.5	77.0	11.7	1.4	1.4	6.6	1.4	100.0 (213)
1세	1.8	55.6	35.8	1.1	0.4	4.7	0.7	100.0 (279)
2세	2.4	31.7	58.3	0.9	2.7	3.9	0.0	100.0 (331)
3세	0.9	14.9	74.6	6.6	0.9	2.2	0.0	100.0 (228)
4세	1.5	18.4	43.0	29.4	1.5	5.1	1.1	100.0 (272)
5세	2.1	17.3	35.3	37.8	1.1	5.7	0.7	100.0 (283)
χ^2 (df)	648.744(30)***							
자녀수								
1명	1.9	40.2	40.0	9.2	1.6	6.2	0.9	100.0 (772)
2명	1.7	29.0	47.9	17.4	1.1	2.7	0.3	100.0 (656)
3명	0.0	30.2	47.2	15.1	1.9	5.0	0.6	100.0 (159)
4명 이상	0.0	47.4	36.8	10.5	0.0	5.3	0.0	100.0 (19)
χ^2 (df)	54.929(18)***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6	17.7	53.2	16.1	2.4	8.4	0.5	100.0 (620)
홀벌이 가구	2.1	45.9	38.0	10.8	0.8	2.1	0.5	100.0 (772)
모두 근로안함	0.0	43.5	38.3	13.1	0.5	3.3	1.4	100.0 (214)
χ^2 (df)	156.920(12)***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2.0	20.5	50.6	14.2	3.4	8.8	0.6	100.0 (352)
전일제+시간제	0.6	12.8	62.2	17.4	0.6	5.8	0.6	100.0 (172)
시간제+시간제	0.0	45.5	36.4	13.6	0.0	4.5	0.0	100.0 (22)
해당사항 없음	1.7	42.7	38.9	12.1	0.8	3.1	0.7	100.0 (1,060)
χ^2 (df)	126.385(18)***							

구분	아버지	어머니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조부모 및 친인척	기타	계(수)
가구특성								
부부+자녀	1.7	37.0	42.9	12.9	1.3	3.5	0.7	100.0 (1,388)
한부모+자녀	1.1	19.1	49.4	18.0	3.4	9.0	0.0	100.0 (89)
조부모+부부+자녀	0.0	25.3	52.5	9.1	1.0	12.1	0.0	100.0 (99)
조부모+한부모+자녀	3.3	6.7	43.3	23.3	0.0	23.3	0.0	100.0 (30)
$\chi^2(df)$	74.664(1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5	42.5	35.8	10.4	1.5	6.7	1.5	100.0 (134)
차상위계층	2.0	36.2	45.3	8.7	2.0	4.7	1.2	100.0 (254)
비수급가구	1.6	33.5	44.5	14.4	1.2	4.4	0.4	100.0 (1,218)
$\chi^2(df)$	17.477(12)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다. 기관 이용 현황

1) 현재 이용기관

현재 이용 중인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52.4%로 가장 높고,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와 전일제+시간제, 시간제+시간제근로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관 미이용 가구는 28.5%로 조사되었으나, 아동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영아 자녀의 경우 49.8%, 0세 자녀의 경우는 82.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빈곤가구의 기관 미이용 비율이 높아기초생활수급 가구는 35.1%로 나타났다.

〈표 V-3-9〉 현재 이용 기관(반일제 이상)

단위: %(명),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52.4	17.2	0.6	1.3	28.5	100.0 (1,606)
영유아구분						
영아	47.6	0.0	0.2	2.3	49.8	100.0 (823)
유아	57.3	35.2	1.0	0.3	6.1	100.0 (783)
$\chi^2(df)$	582.713(4)***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미이용	계(수)
아동연령						
0세	15.0	0.0	0.0	2.8	82.2	100.0 (213)
1세	43.0	0.0	0.0	1.4	55.6	100.0 (279)
2세	72.5	0.0	0.6	2.7	24.2	100.0 (331)
3세	82.5	9.6	0.0	0.4	7.5	100.0 (228)
4세	52.9	40.8	1.5	0.0	4.8	100.0 (272)
5세	41.3	50.5	1.4	0.4	6.4	100.0 (283)
χ^2 (df)	1,006.082(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3.2	20.3	0.8	1.8	13.9	100.0 (620)
홀벌이 가구	45.1	14.5	0.5	1.2	38.7	100.0 (772)
모두 근로안함	47.2	17.8	0.5	0.5	34.1	100.0 (214)
χ^2 (df)	109.783(8)***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62.5	18.2	1.1	2.3	15.9	100.0 (352)
전일제+시간제	66.9	19.2	0.6	0.6	12.8	100.0 (172)
시간제+시간제	63.6	22.7	0.0	4.5	9.1	100.0 (22)
해당사항 없음	46.4	16.4	0.5	1.0	35.7	100.0 (1,060)
χ^2 (df)	86.861(12)***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5.5	17.2	1.5	0.7	35.1	100.0 (134)
차상위계층	55.9	11.0	1.2	2.8	29.1	100.0 (254)
비수급가구	52.4	18.5	0.4	1.1	27.7	100.0 (1,218)
χ^2 (df)	19.671(8)*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2) 최초 기관 이용 시기

영유아 자녀가 최초로 기관을 이용한 시기는 평균 25.1개월이며, 맞벌이 가구와 전일제근로 가구의 경우는 각각 23.7개월과 22.3개월로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최초 기관 이용 시기는 평균 28.5개월로 나타나며, 36개월 이후에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35.8%로 전체 평균 26.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양육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영아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3-10〉 최초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기: 전체가구

단위: %(명), 명

구분	12개월 미만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3	31.6	28.9	17.5	6.3	2.3	100.0 (1,117)	25.1(1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8.1	33.0	25.9	13.9	6.8	2.3	100.0 (518)	23.7(14.2)
홀벌이 가구	8.5	30.7	30.9	21.3	6.5	2.2	100.0 (460)	26.8(13.2)
모두 근로안함	11.5	29.5	33.8	18.7	3.6	2.9	100.0 (139)	25.2(13.4)
$\chi^2(df)/F$			31.336(10)***					6.1**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20.1	35.2	25.7	11.6	5.3	2.1	100.0 (284)	22.3(13.5)
전일제+시간제	17.6	31.1	29.7	14.9	6.1	0.7	100.0 (148)	23.4(13.1)
시간제+시간제	5.3	31.6	26.3	10.5	21.1	5.3	100.0 (19)	31.2(16.9)
해당사항 없음	9.8	30.2	30.2	20.9	6.3	2.7	100.0 (666)	26.6(13.7)
$\chi^2(df)/F$			43.021(15)***					8.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0.7	19.0	34.5	26.2	6.0	3.6	100.0 (84)	28.5(13.6)
차상위계층	16.5	35.3	26.5	11.8	5.3	4.7	100.0 (170)	24.2(14.5)
비수급가구	13.0	32.1	28.9	17.8	6.5	1.7	100.0 (863)	25.0(13.6)
$\chi^2(df)/F$			21.199(10)*					3.0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3-11〉 최초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기: 빈곤가구

단위: %(명), 명

구분	12개월 미만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	31.9	27.8	19.2	5.3	3.3	100.0 (543)	25.6(14.1)
빈곤가구 유형								
기초생활수급가구	10.7	19.0	34.5	26.2	6.0	3.6	100.0 (84)	28.5(13.6)
차상위계층	16.5	35.3	26.5	11.8	5.3	4.7	100.0 (170)	24.2(14.5)
일반빈곤가구	10.7	33.6	26.6	21.5	5.2	2.4	100.0 (289)	25.5(14.0)
$\chi^2(df)/F$				19.504(10)*				2.6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이와 관련하여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최초 기관 이용 시기를 늦춘 경험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가구의 8.1%에 불과하나, 해당 비율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21.4%,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 23.9%로 월등히 높아, 이들 가정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결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3-12〉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최초 기관 이용 시기 늦춘 경험 여부: 전체가구

단위: %(명),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8.1	91.9	100.0 (1,117)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1.4	78.6	100.0 (84)
차상위계층	8.8	91.2	100.0 (170)
비수급가구	6.7	93.3	100.0 (863)
$\chi^2(df)$	22.251(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3.9	76.1	100.0 (46)
101~150만원	11.5	88.5	100.0 (61)
151~200만원	10.4	89.6	100.0 (415)
201~250만원	3.9	96.1	100.0 (77)
251~300만원	10.9	89.1	100.0 (64)
301~350만원	7.4	92.6	100.0 (95)
351~400만원	4.9	95.1	100.0 (82)
401~500만원	4.5	95.5	100.0 (111)
501~600만원	2.5	97.5	100.0 (81)
601~700만원	0.0	100.0	100.0 (35)
701~800만원	5.6	94.4	100.0 (18)
801만원 이상	3.1	96.9	100.0 (32)
$\chi^2(df)$	32.478(11)***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3-13〉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최초 기관 이용 시기 늦춘 경험 여부: 빈곤가구

단위: %(명),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1.8	88.2	100.0 (543)
빈곤가구 유형			
기초생활수급가구	21.4	78.6	100.0 (84)
차상위계층	8.8	91.2	100.0 (170)
일반빈곤가구	10.7	89.3	100.0 (289)
$\chi^2(df)$	9.259(2)**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양육비용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부모 5는 병원 진료를 위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난 이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어, 기저귀 등 양육물품 구입 비용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큰애랑도 잠깐 시간 보내고 제가 물리치료 받고 애들 오기 전까지 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양육수당이 끊겨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무료이긴 했는데 그 외 나갈거 기저귀 이런 것들이 양육수당이 끊어지니까 부담되었어요. 그런 거 포기하고 보내야 되니까 (부모 5)

3) 서비스 이용시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중인 영유아 자녀의 등하원 시각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주중 등원시각은 오전 8시 31분부터 9시 30분까지가 63.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8시 이전의 등원은 맞벌이 가구에서 13.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한부모+자녀)은 36.2%,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는 13.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주중 하원시각은 오후 4시 이전이 절반을 차지하며, 오후 6시 이후는 6.9%에 불과하였다. 영아의 경우는 맞춤반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구분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6시 이후 하원하는 비율은 맞벌이 가구, 전일제근로 가구(전일제+전일제), 한부모가족(한부모+자녀)에서 각각 12.2%, 14.0%, 20.9%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오후 7시 이후 하원하는 비율도 13.9%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가구에게 종일제보육 및 시간연장형보육의 접근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임을 말해준다.

〈표 V-3-14〉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주중 등원 시각

단위: %(명), 명

구분	등원시각								계(수)
	7:00 까지	7:01 ~7:30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01 이후	
전체	0.6	1.1	6.5	14.7	36.3	26.9	12.4	1.4	100.0 (1,1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2	1.9	10.0	19.5	35.5	21.8	8.5	1.5	100.0 (518)
홀벌이 가구	0.2	0.4	3.5	10.2	36.1	30.9	17.6	1.1	100.0 (460)
모두 근로안함	0.0	0.0	3.6	11.5	39.6	33.1	10.1	2.2	100.0 (139)
$\chi^2(df)$	72.801(14)***								

구분	등원시간								계(수)
	7:00 까지	7:01 ~7:30	7:31 ~8:00	8:01 ~8:30	8:31 ~9:00	9:01 ~9:30	9:31 ~10:00	10:01 이후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0.4	2.1	10.9	23.2	35.6	19.0	7.0	1.8	100.0 (284)
전일제+시간제	0.7	0.7	6.8	14.2	34.5	28.4	13.5	1.4	100.0 (148)
시간제+시간제	0.0	0.0	10.5	0.0	36.8	31.6	15.8	5.3	100.0 (19)
해당사항 없음	0.8	0.8	4.5	11.6	36.9	29.9	14.4	1.2	100.0 (666)
χ^2 (df)	59.700(21)***								
가구특성									
부부+자녀	0.3	0.8	6.4	15.0	35.8	27.3	12.8	1.6	100.0 (943)
한부모+자녀	4.2	2.8	11.1	18.1	38.9	20.8	2.8	1.4	100.0 (72)
조부모+부부+자녀	0.0	1.3	2.6	5.2	41.6	32.5	16.9	0.0	100.0 (77)
조부모+한부모+자녀	4.0	4.0	12.0	24.0	28.0	16.0	12.0	0.0	100.0 (25)
χ^2 (df)	50.029(2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4	2.4	8.3	17.9	39.3	22.6	6.0	1.2	100.0 (84)
차상위계층	2.4	1.8	6.5	14.1	37.1	24.7	11.8	1.8	100.0 (170)
비수급가구	0.1	0.8	6.4	14.5	35.8	27.8	13.2	1.4	100.0 (863)
χ^2 (df)	24.456(14)*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3-15〉기관(유치원/어린이집) 주중 하원 시간

단위: %(명), 명

구분	하원시간								계(수)	
	16:00 까지	16:01~ 16:30	16:3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8:30	18:31~ 19:00	19:01 이후		
전체	50.0	15.8	15.7	5.7	5.8	3.0	1.8	2.1	100.0	(1,1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0.0	13.1	18.5	7.5	8.7	5.6	3.1	3.5	100.0	(518)
홀벌이 가구	61.7	18.5	12.4	3.3	2.4	0.7	0.4	0.7	100.0	(460)
모두 근로안함	48.2	17.3	15.8	7.2	6.5	1.4	1.4	2.2	100.0	(139)
χ^2 (df)	98.412(14)***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38.4	10.9	15.5	9.2	12.0	7.0	4.2	2.8	100.0	(284)
전일제+시간제	45.3	20.3	20.3	6.1	2.7	4.1	0.7	0.7	100.0	(148)
시간제+시간제	68.4	5.3	15.8	5.3	0.0	5.3	0.0	0.0	100.0	(19)
해당사항 없음	55.4	17.3	14.7	4.2	4.1	1.1	1.1	2.3	100.0	(666)
χ^2 (df)	98.210(21)***									

구분	하원시간								계(수)
	16:00 까지	16:01~ 16:30	16:3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8:30	18:31~ 19:00	19:01 이후	
가구특성									
부부+자녀	51.5	16.5	15.0	6.2	4.8	3.1	1.7	1.3	100.0 (943)
한부모+자녀	29.2	11.1	19.4	5.6	13.9	2.8	4.2	13.9	100.0 (72)
조부모+부부+자녀	58.4	14.3	11.7	2.6	7.8	2.6	1.3	1.3	100.0 (77)
조부모+한부모+자녀	24.0	8.0	44.0	0.0	16.0	4.0	0.0	4.0	100.0 (25)
$\chi^2(df)$	99.208(2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3.6	10.7	17.9	6.0	4.8	1.2	3.6	2.4	100.0 (84)
차상위계층	51.8	15.3	15.3	3.5	5.3	2.9	2.4	3.5	100.0 (170)
비수급가구	49.2	16.5	15.5	6.1	6.0	3.2	1.5	1.9	100.0 (863)
$\chi^2(df)$	9.459(14)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4)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 등 정규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해당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9%였으며,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가족에서 각각 17.9%와 34.0%로 높게 나타났다. 빈곤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V-3-16〉 정규 운영시간 초과 이용 경험

구분	있음	없음	단위: %(명), 명	
			계(수)	
전체	14.9	85.1	100.0	(8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7.9	82.1	100.0	(392)
홀벌이 가구	10.9	89.1	100.0	(348)
모두 근로안함	16.8	83.2	100.0	(101)
$\chi^2(df)$	7.363(2)*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15.5	84.5	100.0	(220)
전일제+시간제	13.0	87.0	100.0	(115)
시간제+시간제	42.9	57.1	100.0	(14)
해당사항 없음	14.2	85.8	100.0	(492)
$\chi^2(df)$	9.189(3)*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가구특성				
부부+자녀	13.6	86.4	100.0	(714)
한부모+자녀	34.0	66.0	100.0	(50)
조부모+부부+자녀	12.9	87.1	100.0	(62)
조부모+한부모+자녀	20.0	80.0	100.0	(15)
χ^2 (df)	15.893(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1.3	78.7	100.0	(61)
차상위계층	16.9	83.1	100.0	(142)
비수급가구	13.8	86.2	100.0	(638)
χ^2 (df)	3.048(2)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각 서비스 유형별로 빈곤가구의 이용률과 만족도, 그리고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보육서비스 유형별 이용율은 시간연장보육이 22.4% 전체 가구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며, 휴일보육 7.9%, 야간보육 6.6%, 24시간보육 3.9%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도움 정도는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간연장보육의 경우는 현재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즉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 전일제근로(전일제+전일제)가구에서 각각 30.0%, 29.4%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한부모가족(한부모+자녀/조부모+한부모+자녀)에서 각각 52.9%, 66.7%로 두드러지게 높은 이용율을 보였다.

〈표 V-3-17〉 보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여부: 빈곤가구

단위: %(명)

구분	이용 여부			
	이용중	과거 이용	없음	계(수)
시간연장보육	22.4	68.4	9.2	100.0 (76)
야간보육	6.6	15.8	77.6	100.0 (76)
24시간보육	3.9	14.5	81.6	100.0 (76)
휴일보육	7.9	17.1	75.0	100.0 (76)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3-18〉 보육서비스 유형별 이용 만족도: 빈곤가구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만족도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시간연장보육	4.3	5.8	34.8	27.5	27.5	100.0 (69)	3.7(1.1)
야간보육	5.9	11.8	58.8	17.6	5.9	100.0 (17)	3.1(0.9)
24시간보육	7.1	21.4	42.9	28.6	0.0	100.0 (14)	2.9(0.9)
휴일보육	0.0	5.3	47.4	10.5	36.8	100.0 (19)	3.8(1.0)

주: 5점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3-19〉 보육서비스 유형별 도움 정도: 빈곤가구

단위: %(명), 점

구분	도움 정도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시간연장보육	2.9	2.9	23.2	37.7	33.3	100.0 (69)	4.0(1.0)
야간보육	5.9	5.9	41.2	29.4	17.6	100.0 (17)	3.5(1.1)
24시간보육	7.1	0.0	42.9	28.6	21.4	100.0 (14)	3.6(1.1)
휴일보육	0.0	0.0	47.4	21.1	31.6	100.0 (19)	3.8(0.9)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3-20〉 시간연장보육의 이용 경험/빈도

단위: %(명), 명

구분	이용 여부				이용 빈도					
	이용 중	과거 이용	없음	계(수)	매일	주 2~3회	주 1회	한 달에 2회	한 달에 1회	계(수)
전체	20.8	67.2	12.0	100.0 (125)	14.5	9.1	12.7	10.9	52.7	100.0 (1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0.0	61.4	8.6	100.0 (70)	20.3	9.4	14.1	12.5	43.8	100.0 (64)
홀벌이 가구	5.3	81.6	13.2	100.0 (38)	3.0	6.1	12.1	12.1	66.7	100.0 (33)
모두 근로안함	17.6	58.8	23.5	100.0 (17)	15.4	15.4	7.7	0.0	61.5	100.0 (13)
$\chi^2(df)$	11.645(4)*				9.738(8)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29.4	61.8	8.8	100.0 (34)	12.9	12.9	22.6	16.1	35.5	100.0 (31)
전일제+시간제	13.3	86.7	0.0	100.0 (15)	0.0	6.7	6.7	13.3	73.3	100.0 (15)
시간제+시간제	16.7	66.7	16.7	100.0 (6)	0.0	0.0	0.0	20.0	80.0	100.0 (5)
해당사항 없음	18.6	65.7	15.7	100.0 (70)	20.3	8.5	10.2	6.8	54.2	100.0 (59)
$\chi^2(df)$	5.849(6)				14.980(12)					

구분	이용 여부				이용 빈도					
	이용 중	과거 이용	없음	계(수)	매일	주 2~3회	주 1회	한 달에 2회	한 달에 1회	계(수)
가구특성										
부부+자녀	14.4	73.2	12.4	100.0 (97)	7.1	8.2	15.3	10.6	58.8	100.0 (85)
한부모+자녀	52.9	35.3	11.8	100.0 (17)	60.0	20.0	6.7	0.0	13.3	100.0 (15)
조부모+부부+자녀	12.5	75.0	12.5	100.0 (8)	0.0	0.0	0.0	42.9	57.1	100.0 (7)
조부모+한부모+자녀	66.7	33.3	0.0	100.0 (3)	33.3	0.0	0.0	0.0	66.7	100.0 (3)
$\chi^2(df)$	17.685(6)**				45.087(12)***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3.1	69.2	7.7	100.0 (13)	8.3	0.0	25.0	0.0	66.7	100.0 (12)
차상위계층	29.2	58.3	12.5	100.0 (24)	19.0	19.0	9.5	19.0	33.3	100.0 (21)
비수급가구	18.2	69.3	12.5	100.0 (88)	14.3	7.8	11.7	10.4	55.8	100.0 (77)
$\chi^2(df)$	1.702(4)				10.478(8)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5) 보육서비스 충족 여부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3%였고,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2%로 조사되었다.

보육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 전일제근로 가구(전일제+전일제), 그리고 한부모가족(한부모+자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각 30.1%, 32.0%, 34.7%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법정 빈곤가구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V-3-21〉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의 충족 여부

단위: %(명), 명

구분	부족함	필요한 만큼 이용함	더 길게 이용함	계(수)
전체	28.3	68.2	3.5	100.0 (1,1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0.1	66.0	3.9	100.0 (518)
홀벌이 가구	25.0	72.8	2.2	100.0 (460)
모두 근로안함	32.4	61.2	6.5	100.0 (139)
$\chi^2(df)$	12.038(4)*			

구분	부족함	필요한 만큼 이용함	더 길게 이용함	계(수)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32.0	64.4	3.5	100.0 (284)
전일제+시간제	27.7	69.6	2.7	100.0 (148)
시간제+시간제	21.1	73.7	5.3	100.0 (19)
해당사항 없음	27.0	69.4	3.6	100.0 (666)
χ^2 (df)		3.467(6)		
가구특성				
부부+자녀	27.0	69.8	3.2	100.0 (943)
한부모+자녀	34.7	56.9	8.3	100.0 (72)
조부모+부부+자녀	37.7	61.0	1.3	100.0 (77)
조부모+한부모+자녀	28.0	64.0	8.0	100.0 (25)
χ^2 (df)		13.899(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2.1	65.5	2.4	100.0 (84)
차상위계층	24.7	68.8	6.5	100.0 (170)
비수급가구	28.6	68.4	3.0	100.0 (863)
χ^2 (df)		6.535(4)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1.3	50.0	8.7	100.0 (46)
101~150만원	24.6	70.5	4.9	100.0 (61)
151~200만원	26.3	69.6	4.1	100.0 (415)
201~250만원	31.2	64.9	3.9	100.0 (77)
251~300만원	29.7	68.8	1.6	100.0 (64)
301~350만원	26.3	73.7	0.0	100.0 (95)
351~400만원	32.9	62.2	4.9	100.0 (82)
401~500만원	29.7	67.6	2.7	100.0 (111)
501~600만원	23.5	74.1	2.5	100.0 (81)
601~700만원	31.4	65.7	2.9	100.0 (35)
701~800만원	22.2	72.2	5.6	100.0 (18)
801만원 이상	34.4	65.6	0.0	100.0 (32)
χ^2 (df)		20.766(22)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라. 돌봄지원 인력 여부

영유아 자녀를 양육을 위해 부모 또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외에 필요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와 전일제근로(전일제+전일제) 가구에서 각각 61.1%와 63.9%

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하 가구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자녀양육을 위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기관을 제외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는 조부모가 주를 이루어 외조부모 59.5%, 친조부모 45.0%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는 복지관 등 담당자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4.9%로 나타난다.

〈표 V-3-22〉 부모/기관 이외의 도움 여부

				단위: %(명),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50.1	49.9	100.0	(1,6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1.1	38.9	100.0	(620)
홀벌이 가구	44.3	55.7	100.0	(772)
모두 근로안함	39.3	60.7	100.0	(214)
$\chi^2(df)$	50.625(2)***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63.9	36.1	100.0	(352)
전일제+시간제	54.7	45.3	100.0	(172)
시간제+시간제	68.2	31.8	100.0	(22)
해당사항 없음	44.4	55.6	100.0	(1,060)
$\chi^2(df)$	44.808(3)***			
가구특성				
부부+자녀	48.8	51.2	100.0	(1,388)
한부모+자녀	46.1	53.9	100.0	(89)
조부모+부부+자녀	67.7	32.3	100.0	(99)
조부모+한부모+자녀	63.3	36.7	100.0	(30)
$\chi^2(df)$	15.786(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5.5	54.5	100.0	(134)
차상위계층	51.2	48.8	100.0	(254)
비수급가구	50.4	49.6	100.0	(1,218)
$\chi^2(df)$	1.289(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5.5	54.5	100.0	(77)
101~150만원	56.5	43.5	100.0	(85)
151~200만원	46.6	53.4	100.0	(641)
201~250만원	45.7	54.3	100.0	(127)
251~300만원	48.0	52.0	100.0	(100)

구분	있음	없음	계(수)
301~350만원	48.4	51.6	100.0 (122)
351~400만원	47.3	52.7	100.0 (110)
401~500만원	59.3	40.7	100.0 (140)
501~600만원	52.6	47.4	100.0 (97)
601~700만원	60.0	40.0	100.0 (45)
701~800만원	72.7	27.3	100.0 (22)
801만원 이상	72.5	27.5	100.0 (40)
χ^2 (df)	26.038(11)**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표 V-3-23〉 자녀 양육에 도움 주는 사람(중복응답)

단위: %(명), 명

구분	친조부모	외조부모	이웃	친인척	복지 담당 공무원	복지관 등 담당자	기타	(수)
전체	45.0	59.5	8.3	18.3	0.5	0.5	1.4	(805)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9.2	49.2	6.6	13.1	0.0	4.9	1.6	(61)
차상위계층	40.0	58.5	12.3	16.2	1.5	0.8	0.8	(130)
비수급가구	45.6	60.7	7.7	19.2	0.3	0.0	1.5	(614)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부모 5, 부모 10, 부모 11 등 빈곤가구는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으므로, 지역사회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모 11의 경우는 친인척을 멀리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우나, 지역내 이웃 주민의 일상적인 도움을 받아 긴급돌봄 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따라서 빈곤가구 밀집 지역의 돌봄공동체 기반 조성 노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친인척의 도움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거의 혼자 키웠어요. 남편이 직장이 가까우니까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그러면 눈치는 보이죠. 4년전인가? 아이들이 한명 빼고 다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일찍 출근도 못하고 같이 병원에 있고 한 명은 친정에 아이 보내버리고 (부모 5)

시댁 친정 다 멀리 있어서 안 되고요 급하게 맡겨야 하면 내가 데리고 가요 내가 감수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봐주면 거기 가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네시까지 무조건 달려가야 하는데 여기는 (오후) 일곱시 반까지니까 넉넉하고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부모 10)

친인척의 도움은 없어요. 다 멀리 사셔서. 저는 결혼해서 여기에 딱 왔거든요. 대신에 동네 주변 엄마들의 지원을 좀 받았어요. 아이가 아팠을 때 제가 해열제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했을 때는 그거를 보내줄 수 있는 이웃 주민이 있었어요. 한 동네에 오래 살았어요 (부모 11)

마.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을 기준으로 영화 및 공연 관람 37.5%로 가장 높고, 박물관 등 관람은 29.6%, 여행 18.3%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모든 항목에서 전혀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3-24〉 자녀와의 여가활동: 전체(빈곤가구)

단위: %(명)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수)
1. 산책/놀이	2.0	7.2	11.8	34.6	44.3	100.0 (830)
2. 여행	18.3	40.7	22.5	15.9	2.5	100.0 (830)
3. 영화/공연 관람	37.5	28.6	20.1	12.5	1.3	100.0 (830)
4.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관람	29.6	32.3	23.4	12.3	2.4	100.0 (830)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3-25〉 여가활동 1: 산책/놀이

단위: %(명)

구분	산책/놀이					계(수)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전체	1.6	5.1	10.1	32.5	50.7	100.0 (1,60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5	7.5	15.7	37.3	38.1	100.0 (134)
차상위계층	1.6	7.9	9.8	34.6	46.1	100.0 (254)
비수급가구	1.6	4.3	9.5	31.5	53.1	100.0 (1,218)
$\chi^2(df)$	19.854(8)*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3-26〉 여가활동 2: 여행(전체가구)

단위: %(명)

구분	여행					계(수)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전체	12.2	38.5	26.3	20.2	2.9	100.0 (1,60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6.9	33.6	25.4	13.4	0.7	100.0 (134)
차상위계층	15.0	42.9	20.1	20.1	2.0	100.0 (254)
비수급가구	10.0	38.1	27.7	20.9	3.3	100.0 (1,218)
χ^2 (df)	43.722(8)***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3-27〉 여가활동 2: 여행(빈곤가구)

단위: %(명)

구분	여행					계(수)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전체	18.3	40.7	22.5	15.9	2.5	100.0 (830)
빈곤가구 유형						
기초생활수급가구	26.9	33.6	25.4	13.4	0.7	100.0 (134)
차상위계층	15.0	42.9	20.1	20.1	2.0	100.0 (254)
일반빈곤가구	17.6	41.6	23.1	14.3	3.4	100.0 (442)
χ^2 (df)	17.661(8)*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3-28〉 여가활동 3: 영화/공연 관람

단위: %(명)

구분	영화/공연 관람					계(수)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전체	30.9	30.4	23.9	13.1	1.7	100.0 (1,60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5.8	29.9	23.9	9.7	0.7	100.0 (134)
차상위계층	36.6	28.3	21.3	12.2	1.6	100.0 (254)
비수급가구	29.2	30.9	24.5	13.6	1.8	100.0 (1,218)
χ^2 (df)	8.612(8)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3-29〉 여가활동 4: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관람

단위: %(명), 회

구분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관람					계(수)
	전혀 하지 않음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전체	23.8	32.1	27.6	14.3	2.1	100.0 (1,60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2.1	32.1	25.4	10.4	0.0	100.0 (134)
차상위계층	27.2	31.9	23.2	14.6	3.1	100.0 (254)
비수급가구	22.2	32.2	28.8	14.7	2.1	100.0 (1,218)
χ^2 (df)	14.751(8)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3-30〉 자녀와의 여가활동 월평균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0원	3만원 미만	3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9.9	3.8	3.7	12.7	22.7	14.4	22.8	100.0 (1,606)	18.7(29.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3.9	4.5	3.0	17.2	20.9	11.2	19.4	100.0 (134)	16.9(27.2)
차상위계층	22.8	3.9	5.9	11.4	19.3	13.0	23.6	100.0 (254)	18.9(37.6)
비수급가구	18.8	3.7	3.4	12.5	23.6	15.0	23.0	100.0 (1,218)	18.8(28.4)
χ^2 (df)/F	13.825(12)								0.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3.8	5.2	1.3	18.2	19.5	7.8	14.3	100.0 (77)	12.9(21.8)
101~150만원	25.9	5.9	4.7	14.1	20.0	8.2	21.2	100.0 (85)	20.4(57.1)
151~200만원	22.9	4.7	4.2	12.3	21.5	13.6	20.7	100.0 (641)	17.2(25.9)
201~250만원	26.8	1.6	5.5	14.2	21.3	9.4	21.3	100.0 (127)	16.2(28.5)
251~300만원	14.0	6.0	4.0	11.0	20.0	21.0	24.0	100.0 (100)	19.2(33.2)
301~350만원	19.7	2.5	7.4	14.8	21.3	13.1	21.3	100.0 (122)	18.4(26.1)
351~400만원	17.3	2.7	4.5	11.8	21.8	20.0	21.8	100.0 (110)	17.7(23.9)
401~500만원	11.4	0.7	1.4	12.1	32.9	17.1	24.3	100.0 (140)	21.1(31.9)
501~600만원	11.3	5.2	0.0	13.4	25.8	17.5	26.8	100.0 (97)	20.2(22.4)
601~700만원	6.7	4.4	2.2	11.1	28.9	17.8	28.9	100.0 (45)	27.7(44.5)
701~800만원	9.1	0.0	0.0	9.1	13.6	22.7	45.5	100.0 (22)	29.1(24.4)
801만원 이상	2.5	0.0	0.0	5.0	27.5	15.0	50.0	100.0 (40)	31.0(28.8)
χ^2 (df)/F	120.177(66)***								1.9*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한편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해 소요되는 월 평균 비용은 18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비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는 169,000원에 그쳤고,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129,000원에 불과하였으며, 25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V-3-30 참조).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은 단지 아동의 놀이권 보장 뿐만 아니라, 빈곤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의욕 등도 제고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지니므로 그 지원대상 및 수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부모 1, 3, 5).

저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시소와 그네)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 장난감도 갖다 주시고 그랬어요. 아이 봐드릴테니까 초 만들기 하는데 같이 하세요, 체험비도 안 내도 된다고 하면서 오셔서 아이는 놀게하고 엄마는 하세요. 이랬었거든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중략) 계속 엄마들 만나고. 거기 나가서 좀 듣고 사람마다 에너지가 있잖아요. 자기 에너지에 갇히면 답이 없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슬플 때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신체 반응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혼자 에너지에 갇혀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데 밝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저도 좀 나아지고 저도 지금 100프로 나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아지는 게 느껴져요 (부모 1)

다둥이 엄마들 저가 저 포함해서 셋 이상인 엄마들끼리 유치원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우크렐라 배운 계기가 있었어요 (중략) 그런 취미활동 무리가 되지 않는 처지가 비슷한 엄마들끼리 만나서 밥 먹는대거나 그래서 작년에 공동육아 했었어요.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올해 예산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백 지원 받았거든요 다다익선이라고 팀명도 애들이 많으니까 이름도 다다익선이라고 필수로 캠핑도 가고 예산이 나온걸로 잘 썼는데 올해는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없어서 (부모 5)

다둥이 엄마들은 영화 보는 거 부담스러워하는데 돈독해지긴 했어요 자조모임이 되긴 했어요. 아이들도 좋아했고 한 집에 모여서 엄마들이 책 읽어주는 거 하고 캠핑 한번 가고 당일로 엄마들은 힘들어했어요 다 아들 셋이고 해서 엄마들은 지쳐있는데 엄마들 비슷한 엄마들 모여서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부모 5)

바.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자녀양육 시의 어려움은 양육비용 부담이 평균 4.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음(평균 3.9점), 긴급할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음(평균 3.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인별로 양육비용 부담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크고, 근로시간에 자

녀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아 자녀, 특히 0~1세아를 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돌봄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맞벌이 가구와 전일제근로(전일제+전일제)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긴급할 시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는 한부모가족(한부모+자녀)에서 평균 4.0점(5점 만점)으로 평균에 비해 높았다. 아이 문제에 대한 의논이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는 인식은 한부모가족에서 평균 3.3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3-31〉 자녀양육의 어려움: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사항 없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빈곤 가구	전체 가구
1. 양육비용이 많이 듭니다	0.8	3.1	16.6	36.9	42.5	-	100.0 (830)	4.2(0.9)	4.1(0.9)
2. 아이를 맡길 시설 마땅치 않음	0.4	3.6	10.4	17.1	15.5	53.0	100.0 (830)	3.9(1.0)	3.9(1.0)
3. 직접 돌볼 시간 없음	0.8	5.8	15.2	13.6	11.6	53.0	100.0 (830)	3.6(1.0)	3.6(1.1)
4. 긴급할 때 아이 봐줄 사람 없음	4.0	12.9	19.9	27.3	35.9	-	100.0 (830)	3.8(1.2)	3.7(1.2)
5. 의논/조언 구할 사람 없음	6.6	22.3	33.5	23.9	13.7	-	100.0 (830)	3.2(1.1)	3.1(1.1)
6. 정부지원 잘 모름	4.0	17.7	34.5	26.4	17.5	-	100.0 (830)	3.4(1.1)	3.3(1.1)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3-32〉 자녀양육의 어려움 1: 양육비용 많이 듭니다

단위: %(명), 점

구분	양육비용 많이 듭니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1	3.7	16.9	39.9	38.4	100.0 (1,606)	4.1(0.9)
자녀수							
1명	1.7	2.6	19.3	40.5	35.9	100.0 (772)	4.1(0.9)
2명	0.5	5.3	15.9	39.9	38.4	100.0 (656)	4.1(0.9)
3명	0.6	3.1	11.9	37.7	46.5	100.0 (159)	4.3(0.8)
4명 이상	5.3	0.0	0.0	26.3	68.4	100.0 (19)	4.5(1.0)
$\chi^2(df)/F$	34.263(12)***						3.7*

구분	양육비용 많이 듦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5	1.5	19.4	37.3	40.3	100.0 (134)	4.1(0.9)
차상위계층	1.6	4.7	18.9	34.3	40.6	100.0 (254)	4.1(1.0)
비수급가구	1.0	3.8	16.3	41.3	37.7	100.0 (1,218)	4.1(0.9)
$\chi^2(df)/F$			8.146(8)				0.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3-33〉 자녀양육의 어려움 2: 아이를 맡길 시설 마땅치 않음

단위: %(명), 점

구분	아이를 맡길 시설 마땅치 않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사항 없음		
전체	0.8	4.5	12.3	20.1	18.6	43.6	100.0 (1,606)	3.9(1.0)
영유아구분								
영아	0.6	3.9	11.2	17.3	19.7	47.4	100.0 (823)	4.0(1.0)
유아	1.0	5.2	13.4	23.1	17.5	39.7	100.0 (783)	3.8(1.0)
$\chi^2(df)/t$			17.377(5)**					2.1*
아동연령								
0세	0.0	2.8	8.9	14.6	18.3	55.4	100.0 (213)	4.1(0.9)
1세	0.4	2.5	11.5	16.8	17.9	50.9	100.0 (279)	4.0(0.9)
2세	1.2	5.7	12.4	19.3	22.1	39.3	100.0 (331)	3.9(1.1)
3세	0.9	3.9	9.2	24.6	20.2	41.2	100.0 (228)	4.0(1.0)
4세	1.5	7.0	16.5	22.8	16.9	35.3	100.0 (272)	3.7(1.0)
5세	0.7	4.6	13.8	22.3	15.9	42.8	100.0 (283)	3.8(1.0)
$\chi^2(df)/F$			50.737(25)**					2.5*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7	2.2	9.0	12.7	15.7	59.7	100.0 (134)	4.0(1.0)
차상위계층	0.4	3.1	11.0	17.7	16.9	50.8	100.0 (254)	4.0(0.9)
비수급가구	0.9	5.1	12.9	21.4	19.3	40.4	100.0 (1,218)	3.9(1.0)
$\chi^2(df)/F$			26.631(10)**					0.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3-34〉 자녀양육의 어려움 3: 직접 돌볼 시간 없음

단위: %(명), 점

구분	직접 돌볼 시간 없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사항 없음		
전체	1.5	7.7	17.3	17.0	12.9	43.6	100.0 (1,606)	3.6(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1	13.5	28.9	31.0	23.5	0.0	100.0 (620)	3.6(1.1)
홀벌이 가구	0.6	5.1	12.8	10.5	7.9	63.1	100.0 (772)	3.5(1.0)
모두 근로안함	0.0	0.0	0.0	0.0	0.0	100.0	100.0 (214)	0.0(0.0)
χ^2 (df)/F	879.360(10)***							0.3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2.6	9.9	29.5	33.2	24.7	0.0	100.0 (352)	3.7(1.0)
전일제+시간제	3.5	19.8	34.3	24.4	18.0	0.0	100.0 (172)	3.3(1.1)
시간제+시간제	4.5	22.7	13.6	45.5	13.6	0.0	100.0 (22)	3.4(1.1)
해당사항 없음	0.8	4.6	10.6	9.8	8.1	66.1	100.0 (1,060)	3.6(1.1)
χ^2 (df)/F	678.690(15)***							4.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7	6.0	11.2	9.0	13.4	59.7	100.0 (134)	3.7(1.1)
차상위계층	0.8	7.1	16.1	15.4	9.8	50.8	100.0 (254)	3.5(1.0)
비수급가구	1.7	8.0	18.2	18.2	13.5	40.4	100.0 (1,218)	3.6(1.1)
χ^2 (df)/F	28.814(10)**							0.5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표 V-3-35〉 자녀양육의 어려움 4: 긴급할 때 아이 봐줄 사람 없음

단위: %(명), 점

구분	긴급할 때 아이 봐줄 사람 없음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5	12.9	20.9	28.0	33.7		100.0 (1,606)	3.7(1.2)
가구특성								
부부+자녀	4.0	12.4	20.4	28.9	34.3		100.0 (1,388)	3.8(1.2)
한부모+자녀	2.2	10.1	21.3	21.3	44.9		100.0 (89)	4.0(1.1)
조부모+부부+자녀	13.1	21.2	24.2	22.2	19.2		100.0 (99)	3.1(1.3)
조부모+한부모+자녀	6.7	16.7	30.0	23.3	23.3		100.0 (30)	3.4(1.2)
χ^2 (df)/F	40.362(12)***							11.1***

구분	긴급할 때 아이 봐줄 사람 없음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6.0	14.9	17.2	27.6	34.3	100.0 (134)	3.7(1.3)
차상위계층	4.3	13.8	23.6	25.6	32.7	100.0 (254)	3.7(1.2)
비수급가구	4.4	12.5	20.7	28.5	33.9	100.0 (1,218)	3.7(1.2)
$\chi^2(df)/F$			3.974(8)				0.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3-36〉 자녀양육의 어려움 5: 의논/조언 구할 사람 없음

단위: %(명), 점

구분	의논/조언 구할 사람 없음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7.5	23.0	33.3	24.2	12.0	100.0 (1,606)	3.1(1.1)
가구특성							
부부+자녀	7.0	23.1	33.6	24.8	11.5	100.0 (1,388)	3.1(1.1)
한부모+자녀	6.7	19.1	28.1	24.7	21.3	100.0 (89)	3.3(1.2)
조부모+부부+자녀	15.2	27.3	31.3	16.2	10.1	100.0 (99)	2.8(1.2)
조부모+한부모+자녀	10.0	13.3	40.0	23.3	13.3	100.0 (30)	3.2(1.1)
$\chi^2(df)/F$			22.437(12)*				4.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8.2	17.9	35.8	23.1	14.9	100.0 (134)	3.2(1.1)
차상위계층	5.9	20.9	39.4	20.5	13.4	100.0 (254)	3.1(1.1)
비수급가구	7.8	24.0	31.8	25.1	11.3	100.0 (1,218)	3.1(1.1)
$\chi^2(df)/F$			11.292(8)				0.8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표 V-3-37〉 자녀양육의 어려움 6: 정부지원 잘 모름

단위: %(명), 점

구분	정부지원 잘 모름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7	18.4	35.7	26.3	14.9	100.0 (1,606)	3.3(1.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2	18.7	35.1	25.4	18.7	100.0 (134)	3.4(1.1)
차상위계층	3.5	18.9	33.5	27.6	16.5	100.0 (254)	3.3(1.1)
비수급가구	5.2	18.2	36.3	26.1	14.2	100.0 (1,218)	3.3(1.1)
$\chi^2(df)/F$			5.917(8)				1.5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4. 육아지원의 도움 정도와 개선 요구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육아지원 도움 정도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1)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평가, 2) 육아지원 수요 즉 양육비용 투자 확대 영역, 맞벌이 가구의 선호 양육방식, 육아지원 항목별 필요도와 도움 정도 인식을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육아지원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현행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을 1) 보육 및 돌봄지원, 2) 건강 및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놀이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지원사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정도를 조사하였다.

1) 보육 및 돌봄지원 분야

보육 및 돌봄지원 분야에서는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교육보육비 지원의 수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출산전후휴가 30.3%, 배우자 출산휴가 24.9%, 육아휴직제도 24.6% 순으로 높은 유경험률을 나타냈다.

한편 이들 제도의 도움 정도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가 공히 평균 4.1점(5점

만점), 3~5세 보육교육비 지원은 평균 4.0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공동육아나눔터 평균 3.4점, 시간제보육과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공히 평균 3.5점에 그쳤다.

〈표 V-4-1〉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있음 비율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5점 평균 (표준 편차)
아동수당	89.3	100.0 (1,606)	1.3	6.6	30.8	40.0	21.3	100.0 (1,434)	3.7(0.9)
가정양육수당	64.6	100.0 (1,606)	1.2	7.2	32.6	39.3	19.7	100.0 (1,038)	3.7(0.9)
0~2세아 보육료	66.3	100.0 (1,606)	0.8	2.1	31.8	38.9	26.4	100.0 (1,064)	3.9(0.9)
3~5세아 보육/교육료	61.0	100.0 (1,606)	0.6	2.8	22.8	45.5	28.4	100.0 (979)	4.0(0.8)
시간연장형 보육료	17.3	100.0 (1,606)	1.4	7.6	37.8	32.4	20.9	100.0 (278)	3.6(0.9)
시간제보육	9.9	100.0 (1,606)	3.1	6.9	39.0	36.5	14.5	100.0 (159)	3.5(0.9)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11.3	100.0 (1,606)	1.7	7.7	38.7	34.8	17.1	100.0 (181)	3.6(0.9)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9.8	100.0 (1,606)	4.4	8.9	36.1	34.8	15.8	100.0 (158)	3.5(1.0)
공동육아나눔터	7.1	100.0 (1,606)	1.8	16.7	36.8	33.3	11.4	100.0 (114)	3.4(1.0)
육아종합지원센터	18.3	100.0 (1,606)	2.7	6.5	34.0	38.1	18.7	100.0 (294)	3.6(0.9)
출산전후휴가	30.3	100.0 (1,606)	1.9	2.3	16.9	38.1	40.9	100.0 (486)	4.1(0.9)
배우자 출산휴가	24.9	100.0 (1,606)	4.3	7.5	19.3	36.0	33.0	100.0 (400)	3.9(1.1)
육아휴직제도	24.6	100.0 (1,606)	2.8	3.8	18.0	34.4	41.0	100.0 (395)	4.1(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2.5	100.0 (1,606)	4.0	4.0	25.0	39.0	28.0	100.0 (200)	3.8(1.0)
시차출근제	11.0	100.0 (1,606)	2.8	5.6	27.1	35.0	29.4	100.0 (177)	3.8(1.0)

주: 1)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제도 이용/수혜 여부 '있음' 제외 비율에는 '없음', '모름', '해당사항 없음' 포함됨.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세부 항목별로 현금지원과 돌봄서비스 부문은 빈곤 여부에 따른 제도 이용 및 도움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돌봄 시간 부문에서는 법정 빈곤가구 및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영아와 0~1세아, 홀벌이 가구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홀벌이 가구에서 보다 도움이 된다고 평가된다. 또한 0~2세아 보육료 지원은 맞벌이 가구와 전일제근로 가구(전일제+전일제/전일제+시간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혜율을 보인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경우는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근로 가구에서 높은 수혜율을 나타냈으나, 도움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모두에

서 맞벌이 가구의 수혜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근로가구에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전일제근로가구에서 수혜률이 각각 27.3%와 1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영아를 둔 가구에서 이용률이 높고, 도움 정도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V-4-2〉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 가정양육수당

단위: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14.6	64.6	13.3	7.5	100.0 (1,606)	1.2	7.2	32.6	39.3	19.7	100.0 (1,038)	3.7(0.9)	
영유아구분													
영아	7.5	76.3	12.0	4.1	100.0 (823)	1.3	5.7	32.3	39.2	21.5	100.0 (628)	3.7(0.9)	
유아	22.0	52.4	14.7	11.0	100.0 (783)	1.0	9.5	32.9	39.5	17.1	100.0 (410)	3.6(0.9)	
$\chi^2(df)/t$	120.302(3)***					7.588(4)						2.0*	
아동연령													
0세	1.9	90.6	7.0	0.5	100.0 (213)	1.6	6.2	35.8	34.7	21.8	100.0 (193)	3.7(0.9)	
1세	7.9	77.1	10.0	5.0	100.0 (279)	1.4	6.0	28.8	40.5	23.3	100.0 (215)	3.8(0.9)	
2세	10.9	66.5	16.9	5.7	100.0 (331)	0.9	5.0	32.7	41.8	19.5	100.0 (220)	3.7(0.9)	
3세	17.1	62.7	11.0	9.2	100.0 (228)	2.8	7.0	30.8	45.5	14.0	100.0 (143)	3.6(0.9)	
4세	26.1	50.4	14.7	8.8	100.0 (272)	0.0	13.9	29.2	36.5	20.4	100.0 (137)	3.6(1.0)	
5세	21.9	45.9	17.7	14.5	100.0 (283)	0.0	7.7	39.2	36.2	16.9	100.0 (130)	3.6(0.9)	
$\chi^2(df)/F$	179.493(15)***					29.573(20)						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20.0	55.0	15.8	9.2	100.0 (620)	1.8	7.9	36.1	37.2	17.0	100.0 (341)	3.6(0.9)	
홀벌이 가구	10.4	70.7	12.3	6.6	100.0 (772)	0.5	6.8	29.7	41.6	21.4	100.0 (546)	3.8(0.9)	
모두 근로안함	14.0	70.6	9.8	5.6	100.0 (214)	2.0	7.3	35.1	35.8	19.9	100.0 (151)	3.6(0.9)	
$\chi^2(df)/F$	46.146(6)***					10.727(8)						3.9*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19.9	56.8	15.9	7.4	100.0 (352)	2.5	10.0	36.0	35.5	16.0	100.0 (200)	3.5(1.0)	
전일제+시간제	18.0	58.7	12.2	11.0	100.0 (172)	0.0	5.0	34.7	41.6	18.8	100.0 (101)	3.7(0.8)	
시간제+시간제	18.2	36.4	36.4	9.1	100.0 (22)	12.5	0.0	50.0	25.0	12.5	100.0 (8)	3.3(1.2)	
해당사항 없음	12.2	68.8	12.2	6.9	100.0 (1,060)	0.8	6.9	31.1	40.2	21.0	100.0 (729)	3.7(0.9)	
$\chi^2(df)/F$	37.669(9)***					23.207(12)*						3.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4.2	67.2	12.7	6.0	100.0 (134)	1.1	10.0	35.6	35.6	17.8	100.0 (90)	3.6(0.9)	
차상위계층	11.8	66.9	15.0	6.3	100.0 (254)	1.8	5.3	32.9	40.0	20.0	100.0 (170)	3.7(0.9)	
비수급가구	15.2	63.9	13.1	7.9	100.0 (1,218)	1.0	7.3	32.1	39.6	19.9	100.0 (778)	3.7(0.9)	
$\chi^2(df)/F$	3.873(6)					3.356(8)						0.7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4-3〉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2: 0~2세아 보육료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5.8	66.3	10.0	8.0	100.0 (1,606)	0.8	2.1	31.8	38.9	26.4	100.0 (1,064)	3.9(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9.0	73.7	12.1	5.2	100.0 (620)	0.7	1.8	29.3	40.0	28.2	100.0 (457)	3.9(0.8)
홀벌이 가구	20.6	61.1	9.3	8.9	100.0 (772)	0.8	2.5	32.4	39.0	25.2	100.0 (472)	3.9(0.9)
모두 근로안함	17.8	63.1	6.5	12.6	100.0 (214)	1.5	1.5	37.8	34.8	24.4	100.0 (135)	3.8(0.9)
$\chi^2(df)/F$	56.852(6)***					6.017(8)						1.9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9.4	74.1	11.9	4.5	100.0 (352)	1.1	2.3	29.1	41.0	26.4	100.0 (261)	3.9(0.9)
전일제+시간제	7.0	76.2	11.0	5.8	100.0 (172)	0.0	0.0	30.5	39.7	29.8	100.0 (131)	4.0(0.8)
시간제+시간제	4.5	68.2	27.3	0.0	100.0 (22)	0.0	0.0	33.3	40.0	26.7	100.0 (15)	3.9(0.8)
해당사항 없음	19.5	62.0	8.9	9.6	100.0 (1,060)	0.9	2.4	33.0	37.9	25.7	100.0 (657)	3.9(0.9)
$\chi^2(df)/F$	58.605(9)***					7.218(12)						1.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1.6	62.7	9.0	6.7	100.0 (134)	0.0	3.6	41.7	29.8	25.0	100.0 (84)	3.8(0.9)
차상위계층	15.7	66.9	9.8	7.5	100.0 (254)	1.2	1.2	32.9	32.9	31.8	100.0 (170)	3.9(0.9)
비수급가구	15.1	66.5	10.2	8.2	100.0 (1,218)	0.9	2.1	30.5	41.1	25.4	100.0 (810)	3.9(0.8)
$\chi^2(df)/F$	4.179(6)					12.161(8)						1.1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4〉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3: 3~5세아 보육/교육료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4.4	61.0	9.8	14.8	100.0 (1,606)	0.6	2.8	22.8	45.5	28.4	100.0 (979)	4.0(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9.4	66.8	11.9	11.9	100.0 (620)	0.2	2.4	23.2	46.4	27.8	100.0 (414)	4.0(0.8)
홀벌이 가구	16.8	56.7	9.2	17.2	100.0 (772)	0.7	3.2	20.8	46.1	29.2	100.0 (438)	4.0(0.8)
모두 근로안함	20.1	59.3	6.1	14.5	100.0 (214)	1.6	2.4	28.3	40.2	27.6	100.0 (127)	3.9(0.9)
$\chi^2(df)/F$	37.471(6)***					7.066(8)						0.8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11.4	64.8	11.4	12.5	100.0 (352)	0.0	2.6	24.1	46.5	26.8	100.0 (228)	4.0(0.8)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일제+시간제	6.4	66.9	12.8	14.0	100.0 (172)	0.0	1.7	19.1	48.7	30.4	100.0 (115)	4.1(0.8)	
시간제+시간제	4.5	72.7	18.2	4.5	100.0 (22)	6.3	0.0	25.0	50.0	18.8	100.0 (16)	3.8(1.0)	
해당사항 없음	16.9	58.5	8.7	15.9	100.0 (1,060)	0.8	3.1	22.9	44.4	28.9	100.0 (620)	4.0(0.8)	
χ^2 (df)/F	28.539(9)***					14.283(12)							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0.9	56.0	11.9	11.2	100.0 (134)	0.0	4.0	38.7	34.7	22.7	100.0 (75)	3.8(0.9)	
차상위계층	13.8	58.7	11.0	16.5	100.0 (254)	0.7	4.0	20.8	42.3	32.2	100.0 (149)	4.0(0.9)	
비수급가구	13.8	62.0	9.4	14.9	100.0 (1,218)	0.7	2.4	21.6	47.2	28.2	100.0 (755)	4.0(0.8)	
χ^2 (df)/F	8.231(6)					15.575(8)*							3.0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4-5〉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4: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48.2	17.3	14.8	19.7	100.0 (1,606)	1.4	7.6	37.8	32.4	20.9	100.0 (278)	3.6(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5.3	20.6	18.2	15.8	100.0 (620)	1.6	7.0	38.3	31.3	21.9	100.0 (128)	3.6(1.0)	
홀벌이 가구	49.7	14.2	13.2	22.8	100.0 (772)	0.9	6.4	39.1	33.6	20.0	100.0 (110)	3.7(0.9)	
모두 근로안함	50.9	18.7	10.3	20.1	100.0 (214)	2.5	12.5	32.5	32.5	20.0	100.0 (40)	3.6(1.0)	
$\chi^2(df)/F$	27.918(6)***					2.664(8)						0.2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44.9	19.9	18.8	16.5	100.0 (352)	1.4	4.3	41.4	28.6	24.3	100.0 (70)	3.7(0.9)	
전일제+시간제	51.2	16.3	16.9	15.7	100.0 (172)	3.6	7.1	42.9	32.1	14.3	100.0 (28)	3.5(1.0)	
시간제+시간제	22.7	31.8	36.4	9.1	100.0 (22)	0.0	28.6	28.6	28.6	14.3	100.0 (7)	3.3(1.1)	
해당사항 없음	49.3	16.3	12.6	21.7	100.0 (1,060)	1.2	8.1	35.8	34.1	20.8	100.0 (173)	3.7(0.9)	
$\chi^2(df)/F$	30.231(9)***					8.629(12)						0.8	
기초생활수급가구	44.0	23.1	14.9	17.9	100.0 (134)	0.0	12.9	48.4	25.8	12.9	100.0 (31)	3.4(0.9)	
차상위계층	47.6	22.0	15.0	15.4	100.0 (254)	0.0	8.9	26.8	32.1	32.1	100.0 (56)	3.9(1.0)	
비수급가구	48.8	15.7	14.7	20.9	100.0 (1,218)	2.1	6.3	39.3	33.5	18.8	100.0 (191)	3.6(0.9)	
$\chi^2(df)/F$	11.848(6)					11.590(8)						3.0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6〉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5: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단위: %(명),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57.5	11.3	13.1	18.1	100.0 (1,606)	1.7	7.7	38.7	34.8	17.1	100.0 (181)	3.6(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2.6	16.3	16.3	14.8	100.0 (620)	1.0	7.9	36.6	36.6	17.8	100.0 (101)	3.6(0.9)
홀벌이 가구	61.4	7.1	12.3	19.2	100.0 (772)	0.0	7.3	41.8	34.5	16.4	100.0 (55)	3.6(0.9)
모두 근로안함	57.9	11.7	6.5	23.8	100.0 (214)	8.0	8.0	40.0	28.0	16.0	100.0 (25)	3.4(1.1)
$\chi^2(df)/F$	50.569(6)***					8.030(8)						0.8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53.4	17.3	15.6	13.6	100.0 (352)	0.0	4.9	37.7	36.1	21.3	100.0 (61)	3.7(0.9)
전일제+시간제	51.2	12.2	16.9	19.8	100.0 (172)	4.8	9.5	28.6	33.3	23.8	100.0 (21)	3.6(1.1)
시간제+시간제	36.4	27.3	22.7	13.6	100.0 (22)	0.0	33.3	50.0	16.7	0.0	100.0 (6)	2.8(0.8)
해당사항 없음	60.4	8.8	11.4	19.4	100.0 (1,060)	2.2	7.5	40.9	35.5	14.0	100.0 (93)	3.5(0.9)
$\chi^2(df)/F$	40.774(9)***					12.509(12)						2.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3.0	15.7	14.9	16.4	100.0 (134)	4.8	9.5	47.6	19.0	19.0	100.0 (21)	3.4(1.1)
차상위계층	57.5	15.4	10.6	16.5	100.0 (254)	2.6	5.1	33.3	41.0	17.9	100.0 (39)	3.7(0.9)
비수급가구	58.0	9.9	13.4	18.6	100.0 (1,218)	0.8	8.3	38.8	35.5	16.5	100.0 (121)	3.6(0.9)
$\chi^2(df)/F$	10.875(6)					5.151(8)						0.7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7〉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6: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단위: %(명),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58.2	9.8	13.9	18.1	100.0 (1,606)	4.4	8.9	36.1	34.8	15.8	100.0 (158)	3.5(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5.5	12.7	16.6	15.2	100.0 (620)	5.1	8.9	32.9	38.0	15.2	100.0 (79)	3.5(1.0)
홀벌이 가구	61.0	7.1	13.2	18.7	100.0 (772)	1.8	5.5	45.5	30.9	16.4	100.0 (55)	3.5(0.9)
모두 근로안함	55.6	11.2	8.4	24.8	100.0 (214)	8.3	16.7	25.0	33.3	16.7	100.0 (24)	3.3(1.2)
$\chi^2(df)/F$	30.112(6)***					7.014(8)						0.4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57.1	14.8	14.5	13.6	100.0 (352)	1.9	9.6	32.7	36.5	19.2	100.0 (52)	3.6(1.0)
전일제+시간제	52.9	9.3	17.4	20.3	100.0 (172)	12.5	6.3	25.0	43.8	12.5	100.0 (16)	3.4(1.2)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시간제+시간제	31.8	13.6	36.4	18.2	100.0 (22)	33.3	0.0	33.3	33.3	0.0	100.0 (3)	2.7(1.5)	
해당사항 없음	59.9	8.2	12.6	19.2	100.0 (1,060)	3.4	9.2	40.2	32.2	14.9	100.0 (87)	3.5(1.0)	
$\chi^2(df)/F$	31.977(9)***					12.097(12)						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3.0	16.4	13.4	17.2	100.0 (134)	9.1	4.5	50.0	27.3	9.1	100.0 (22)	3.2(1.0)	
차상위계층	58.7	12.6	13.0	15.7	100.0 (254)	9.4	12.5	21.9	34.4	21.9	100.0 (32)	3.5(1.2)	
비수급가구	58.6	8.5	14.1	18.7	100.0 (1,218)	1.9	8.7	37.5	36.5	15.4	100.0 (104)	3.5(0.9)	
$\chi^2(df)/F$	11.939(6)					10.129(8)						0.9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4-8〉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7: 육아종합지원센터

단위: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51.9	18.3	15.1	14.7	100.0 (1,606)	2.7	6.5	34.0	38.1	18.7	100.0 (294)	3.6(0.9)	
영유아구분													
영아	50.2	20.0	15.9	13.9	100.0 (823)	1.2	5.5	32.7	39.4	21.2	100.0 (165)	3.7(0.9)	
유아	53.6	16.5	14.3	15.6	100.0 (783)	4.7	7.8	35.7	36.4	15.5	100.0 (129)	3.5(1.0)	
$\chi^2(df)/t$	5.231(3)					5.348(4)						2.1*	
아동연령													
0세	51.2	16.9	16.4	15.5	100.0 (213)	0.0	8.3	38.9	33.3	19.4	100.0 (36)	3.6(0.9)	
1세	49.1	25.8	13.3	11.8	100.0 (279)	0.0	2.8	27.8	43.1	26.4	100.0 (72)	3.9(0.8)	
2세	50.5	17.2	17.8	14.5	100.0 (331)	3.5	7.0	35.1	38.6	15.8	100.0 (57)	3.6(1.0)	
3세	52.2	23.7	13.2	11.0	100.0 (228)	1.9	5.6	35.2	38.9	18.5	100.0 (54)	3.7(0.9)	
4세	55.1	15.4	14.3	15.1	100.0 (272)	7.1	7.1	28.6	40.5	16.7	100.0 (42)	3.5(1.1)	
5세	53.4	11.7	15.2	19.8	100.0 (283)	6.1	12.1	45.5	27.3	9.1	100.0 (33)	3.2(1.0)	
$\chi^2(df)/F$	33.925(15)**					19.845(20)						3.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6.3	24.6	16.4	12.7	100.0 (134)	6.1	9.1	30.3	36.4	18.2	100.0 (33)	3.5(1.1)	
차상위계층	52.8	19.7	14.2	13.4	100.0 (254)	0.0	6.0	30.0	44.0	20.0	100.0 (50)	3.8(0.8)	
비수급가구	52.3	17.3	15.2	15.2	100.0 (1,218)	2.8	6.2	35.5	37.0	18.5	100.0 (211)	3.6(1.0)	
$\chi^2(df)/F$	5.892(6)					4.249(8)						0.9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내 돌봄공동체는 빈곤가구의 고립된 육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인식과 자아존중감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빈곤가구의 서비스 접근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부모 1과 같이 한부모가족인 경우는 자조모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여 부모 역량의 제고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간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엄마들 자조모임, 천연 화장품 만들기 했었거든요, 재료비 지원 받아서. 그런거 활동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거기에 참여해서 사회의 한 부분이 되는게. 그리고 자각을 할 수 있고. 내가 되게 우울하구나...(부모 1)

다음으로 출산전후휴가제도는 법정 빈곤가구의 유경험률이 평균 20%선에 머물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들 제도의 도움 정도는 비수급가구와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되었다. 육아휴직제도는 전일제근로 가구와 비수급가구에서 높은 제도 수혜률을 나타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시차출근제도는 전일제 근로가구에서 수혜률이 높고,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도 높았다.

〈표 V-4-9〉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8: 출산전후휴가

단위: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44.8	30.3	7.5	17.4	100.0 (1,606)	1.9	2.3	16.9	38.1	40.9	100.0 (486)	4.1(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9.3	22.4	13.4	14.9	100.0 (134)	10.0	3.3	40.0	30.0	16.7	100.0 (30)	3.4(1.1)
차상위계층	56.3	18.9	7.5	17.3	100.0 (254)	4.2	2.1	18.8	45.8	29.2	100.0 (48)	3.9(1.0)
비수급가구	42.0	33.5	6.9	17.7	100.0 (1,218)	1.0	2.2	15.0	37.7	44.1	100.0 (408)	4.2(0.8)
$\chi^2(df)/F$	35.447(6)***					32.718(8)***						13.4***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10〉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9: 배우자 출산휴가

단위: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2.0	24.9	6.9	16.2	100.0 (1,606)	4.3	7.5	19.3	36.0	33.0	100.0 (400)	3.9(1.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0.0	19.4	12.7	17.9	100.0 (134)	3.8	11.5	46.2	19.2	19.2	100.0 (26)	3.4(1.1)
차상위계층	54.3	20.9	8.3	16.5	100.0 (254)	7.5	1.9	18.9	45.3	26.4	100.0 (53)	3.8(1.1)
비수급가구	51.7	26.4	6.0	15.9	100.0 (1,218)	3.7	8.1	17.1	35.8	35.2	100.0 (321)	3.9(1.1)
$\chi^2(df)/F$	13.649(6)*					21.001(8)**						2.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표 V-4-11〉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0: 육아휴직제도

단위: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0.7	24.6	7.9	16.7	100.0 (1,606)	2.8	3.8	18.0	34.4	41.0	100.0 (395)	4.1(1.0)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37.8	44.9	10.2	7.1	100.0 (352)	1.9	1.9	14.6	36.1	45.6	100.0 (158)	4.2(0.9)
전일제+시간제	52.9	24.4	9.9	12.8	100.0 (172)	2.4	0.0	11.9	31.0	54.8	100.0 (42)	4.4(0.9)
시간제+시간제	36.4	31.8	18.2	13.6	100.0 (22)	0.0	0.0	57.1	14.3	28.6	100.0 (7)	3.7(1.0)
해당사항 없음	55.0	17.7	6.6	20.7	100.0 (1,060)	3.7	6.4	20.7	34.6	34.6	100.0 (188)	3.9(1.1)
$\chi^2(df)/F$	135.596(9)***					22.593(12)*						4.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0.0	22.4	10.4	17.2	100.0 (134)	6.7	6.7	43.3	20.0	23.3	100.0 (30)	3.5(1.1)
차상위계층	53.9	18.5	9.8	17.7	100.0 (254)	4.3	10.6	17.0	27.7	40.4	100.0 (47)	3.9(1.2)
비수급가구	50.2	26.1	7.2	16.5	100.0 (1,218)	2.2	2.5	15.7	36.8	42.8	100.0 (318)	4.2(0.9)
$\chi^2(df)/F$	9.050(6)					27.333(8)***						7.6***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4-12〉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위: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9.0	12.5	9.6	18.9	100.0 (1,606)	4.0	4.0	25.0	39.0	28.0	100.0 (200)	3.8(1.0)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55.1	21.0	13.4	10.5	100.0 (352)	2.7	5.4	14.9	43.2	33.8	100.0 (74)	4.0(1.0)
전일제+시간제	52.3	18.6	11.0	18.0	100.0 (172)	9.4	0.0	21.9	28.1	40.6	100.0 (32)	3.9(1.2)
시간제+시간제	40.9	13.6	27.3	18.2	100.0 (22)	0.0	0.0	0.0	100.0	0.0	100.0 (3)	4.0(0.0)
해당사항 없음	61.8	8.6	7.7	21.9	100.0 (1,060)	3.3	4.4	35.2	37.4	19.8	100.0 (91)	3.7(1.0)
$\chi^2(df)/F$	78.271(9)***					22.311(12)*						1.7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3.0	11.9	17.9	17.2	100.0 (134)	6.3	12.5	43.8	25.0	12.5	100.0 (16)	3.3(1.1)
차상위계층	58.3	12.2	9.8	19.7	100.0 (254)	6.5	6.5	29.0	32.3	25.8	100.0 (31)	3.6(1.1)
비수급가구	59.9	12.6	8.6	19.0	100.0 (1,218)	3.3	2.6	22.2	41.8	30.1	100.0 (153)	3.9(1.0)
$\chi^2(df)/F$	12.229(6)					11.026(8)						4.0*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4-13〉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2: 시차출근제

단위: %(명), 명, 점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5점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9.0	11.0	10.5	19.4	100.0 (1,606)	2.8	5.6	27.1	35.0	29.4	100.0 (177)	3.8(1.0)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56.3	18.5	13.6	11.6	100.0 (352)	1.5	3.1	27.7	35.4	32.3	100.0 (65)	3.9(0.9)
전일제+시간제	55.8	13.4	13.4	17.4	100.0 (172)	4.3	4.3	17.4	39.1	34.8	100.0 (23)	4.0(1.1)
시간제+시간제	40.9	18.2	22.7	18.2	100.0 (22)	25.0	0.0	25.0	50.0	0.0	100.0 (4)	3.0(1.4)
해당사항 없음	60.8	8.0	8.8	22.4	100.0 (1,060)	2.4	8.2	29.4	32.9	27.1	100.0 (85)	3.7(1.0)
$\chi^2(df)/F$	57.624(9)***					12.868(12)						1.5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2.2	12.7	16.4	18.7	100.0 (134)	11.8	11.8	41.2	17.6	17.6	100.0 (17)	3.2(1.2)
차상위계층	59.1	10.2	11.4	19.3	100.0 (254)	0.0	7.7	30.8	38.5	23.1	100.0 (26)	3.8(0.9)
비수급가구	59.8	11.0	9.7	19.5	100.0 (1,218)	2.2	4.5	24.6	36.6	32.1	100.0 (134)	3.9(1.0)
$\chi^2(df)/F$	7.116(6)					12.151(8)						4.3*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2) 건강 및 의료지원 분야

건강 및 의료지원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수혜률은 영유아 건강검진 90.8%,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83.7%, 의료급여 33.7%,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3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제도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41.4%,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의료급여가 30%를 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각 제도별 수혜율과 도움 정도를 종합하여 차상위계층 또는 비수급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항목은 입원진료비, 선천성 대사 환아관리,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로 파악된다.

〈표 V-4-14〉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전체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있음 비율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영유아 건강검진	90.8	100.0 (1,606)	0.9	4.1	25.5	44.7	24.8	100.0 (1,458)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7.6	100.0 (1,606)	1.4	2.5	29.3	48.4	18.4	100.0 (283)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3.8	100.0 (1,606)	1.4	2.3	24.4	50.2	21.7	100.0 (22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83.7	100.0 (1,606)	0.2	0.7	12.8	44.9	41.4	100.0 (1,34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10.3	100.0 (1,606)	1.2	4.8	35.8	37.6	20.6	100.0 (165)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	8.5	100.0 (1,606)	0.0	5.1	39.7	39.0	16.2	100.0 (136)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29.4	100.0 (1,606)	0.2	2.5	22.9	44.3	30.1	100.0 (472)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	8.4	100.0 (1,606)	0.7	5.9	37.0	43.7	12.6	100.0 (135)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5.1	100.0 (1,606)	1.2	8.5	41.5	40.2	8.5	100.0 (82)
의료급여	33.7	100.0 (1,606)	0.6	2.0	18.1	47.7	31.6	100.0 (54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5	100.0 (1,606)	0.0	6.5	31.4	34.6	27.5	100.0 (153)
발달재활서비스	7.3	100.0 (1,606)	1.7	9.3	34.7	35.6	18.6	100.0 (11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4.1	100.0 (1,606)	0.0	2.6	28.2	43.2	26.0	100.0 (227)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7.7	100.0 (1,606)	2.4	8.1	32.5	40.7	16.3	100.0 (123)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13.4	100.0 (1,606)	1.4	5.1	22.3	36.7	34.4	100.0 (215)
영양 플러스 사업	19.4	100.0 (1,606)	0.0	2.3	19.3	41.8	36.7	100.0 (311)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30.1	100.0 (1,606)	0.6	2.9	18.4	39.3	38.7	100.0 (483)

주: 1)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제도 이용/수혜 여부 '있음' 제외 비율에는 '없음', '모름', '해당사항 없음' 포함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15〉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 영유아 건강검진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4.2	90.8	4.0	1.0	100.0 (1,606)	0.9	4.1	25.5	44.7	24.8	100.0 (1,45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6.0	87.3	4.5	2.2	100.0 (134)	1.7	6.8	31.6	39.3	20.5	100.0 (117)
차상위계층	4.7	89.4	5.1	0.8	100.0 (254)	0.4	4.8	26.0	37.4	31.3	100.0 (227)
비수급가구	3.9	91.5	3.7	0.9	100.0 (1,218)	0.9	3.7	24.8	46.8	23.9	100.0 (1,114)
$\chi^2(df)$	5.092(6)					15.872(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4-16〉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45.4	17.6	24.7	12.3	100.0 (1,606)	1.4	2.5	29.3	48.4	18.4	100.0 (28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5.5	16.4	29.1	9.0	100.0 (134)	0.0	0.0	45.5	45.5	9.1	100.0 (22)
차상위계층	47.6	19.7	22.4	10.2	100.0 (254)	4.0	6.0	26.0	36.0	28.0	100.0 (50)
비수급가구	44.9	17.3	24.6	13.1	100.0 (1,218)	0.9	1.9	28.4	51.7	17.1	100.0 (211)
$\chi^2(df)$	5.495(6)					14.382(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17〉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3: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46.0	13.8	31.9	8.4	100.0 (1,606)	1.4	2.3	24.4	50.2	21.7	100.0 (22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4.8	17.2	28.4	9.7	100.0 (134)	4.3	0.0	34.8	52.2	8.7	100.0 (23)
차상위계층	47.6	16.9	28.3	7.1	100.0 (254)	0.0	7.0	14.0	44.2	34.9	100.0 (43)
비수급가구	45.7	12.7	33.0	8.5	100.0 (1,218)	1.3	1.3	25.8	51.6	20.0	100.0 (155)
$\chi^2(df)$	6.958(6)					16.384(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4-18〉 건강 및 의료지원 경험의 수혜 및 도움 정도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6.2	83.7	8.4	1.7	100.0 (1,606)	0.2	0.7	12.8	44.9	41.4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8.2	75.4	14.2	2.2	100.0 (134)	1.0	1.0	21.8	41.6	34.7
차상위계층	8.3	77.2	13.0	1.6	100.0 (254)	0.0	1.5	15.8	34.7	48.0
비수급가구	5.6	86.0	6.8	1.6	100.0 (1,218)	0.2	0.5	11.4	47.2	40.8
$\chi^2(df)$	22.120(6)**					24.741(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표 V-4-19〉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37.6	10.3	31.3	20.8	100.0 (1,606)	1.2	4.8	35.8	37.6	20.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1.0	17.2	26.1	15.7	100.0 (134)	4.3	4.3	43.5	13.0	34.8
차상위계층	0.0	22.0	78.0	0.0	100.0 (254)	0.0	1.8	28.6	41.1	28.6
비수급가구	45.1	7.1	22.2	25.7	100.0 (1,218)	1.2	7.0	38.4	41.9	11.6
$\chi^2(df)$	445.369(6)***					17.419(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4-20〉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6: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33.1	29.4	27.0	10.5	100.0 (1,606)	0.2	2.5	22.9	44.3	30.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9.1	38.1	25.4	7.5	100.0 (134)	0.0	2.0	33.3	41.2	23.5
차상위계층	36.2	30.3	26.0	7.5	100.0 (254)	0.0	3.9	20.8	39.0	36.4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비수급가구	32.8	28.2	27.4	11.5	100.0 (1,218)	0.3	2.3	21.8	45.9	29.7
$\chi^2(df)$	10.293(6)					6.391(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21〉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7: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44.1	8.4	28.5	19.0	100.0 (1,606)	0.7	5.9	37.0	43.7	12.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2.5	13.4	29.1	14.9	100.0 (134)	5.6	0.0	61.1	22.2	11.1
차상위계층	48.0	8.7	28.3	15.0	100.0 (254)	0.0	9.1	22.7	36.4	31.8
비수급가구	43.4	7.8	28.5	20.3	100.0 (1,218)	0.0	6.3	35.8	49.5	8.4
$\chi^2(df)$	10.091(6)					22.733(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4-22〉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8: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46.4	5.1	24.2	24.3	100.0 (1,606)	1.2	8.5	41.5	40.2	8.5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4.8	9.7	24.6	20.9	100.0 (134)	0.0	0.0	61.5	23.1	15.4
차상위계층	50.0	5.5	24.0	20.5	100.0 (254)	0.0	7.1	35.7	42.9	14.3
비수급가구	45.8	4.5	24.2	25.5	100.0 (1,218)	1.8	10.9	38.2	43.6	5.5
$\chi^2(df)$	10.183(6)					6.514(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23〉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9: 의료급여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전체	29.5	33.7	28.0	8.8	100.0 (1,606)	0.6	2.0	18.1	47.7	31.6	100.0 (54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0	44.0	56.0	0.0	100.0 (134)	1.7	3.4	22.0	33.9	39.0	100.0 (59)
차상위계층	34.6	34.6	22.4	8.3	100.0 (254)	2.3	3.4	21.6	40.9	31.8	100.0 (88)
비수급가구	31.7	32.3	26.1	9.9	100.0 (1,218)	0.0	1.5	16.8	51.3	30.5	100.0 (394)
$\chi^2(df)$	103.950(6)***					17.045(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4-24〉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45.0	9.5	21.5	23.9	100.0 (1,606)	0.0	6.5	31.4	34.6	27.5	100.0 (15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3.3	14.2	25.4	17.2	100.0 (134)	0.0	0.0	31.6	52.6	15.8	100.0 (19)
차상위계층	46.5	10.6	22.8	20.1	100.0 (254)	0.0	7.4	25.9	29.6	37.0	100.0 (27)
비수급가구	44.9	8.8	20.9	25.5	100.0 (1,218)	0.0	7.5	32.7	32.7	27.1	100.0 (107)
$\chi^2(df)$	10.980(6)					5.671(6)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25〉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1: 발달재활서비스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45.7	7.3	23.2	23.8	100.0 (1,606)	1.7	9.3	34.7	35.6	18.6	100.0 (11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5.5	12.7	25.4	16.4	100.0 (134)	0.0	0.0	52.9	29.4	17.6	100.0 (17)
차상위계층	45.7	10.2	24.8	19.3	100.0 (254)	3.8	23.1	11.5	23.1	38.5	100.0 (26)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비수급가구	45.7	6.2	22.6	25.5	100.0 (1,218)	1.3	6.7	38.7	41.3	12.0
$\chi^2(df)$	17.969(6)**					23.749(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표 V-4-26〉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42.8	14.1	21.4	21.7	100.0 (1,606)	0.0	2.6	28.2	43.2	26.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8.1	20.9	25.4	15.7	100.0 (134)	0.0	3.6	32.1	32.1	32.1
차상위계층	46.5	17.3	19.3	16.9	100.0 (254)	0.0	6.8	31.8	31.8	29.5
비수급가구	42.6	12.7	21.3	23.3	100.0 (1,218)	0.0	1.3	26.5	48.4	23.9
$\chi^2(df)$	17.279(6)**					8.562(6)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표 V-4-27〉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3: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48.3	7.7	17.7	26.3	100.0 (1,606)	2.4	8.1	32.5	40.7	16.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5.5	15.7	18.7	20.1	100.0 (134)	9.5	0.0	38.1	38.1	14.3
차상위계층	51.2	10.6	17.7	20.5	100.0 (254)	3.7	11.1	22.2	40.7	22.2
비수급가구	47.9	6.2	17.7	28.2	100.0 (1,218)	0.0	9.3	34.7	41.3	14.7
$\chi^2(df)$	25.440(6)***					10.452(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28〉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4: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45.8	13.4	16.2	24.6	100.0 (1,606)	1.4	5.1	22.3	36.7	34.4	100.0 (215)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9.6	26.1	16.4	17.9	100.0 (134)	2.9	5.7	11.4	42.9	37.1	100.0 (35)
차상위계층	46.9	18.1	15.4	19.7	100.0 (254)	0.0	8.7	19.6	39.1	32.6	100.0 (46)
비수급가구	46.3	11.0	16.3	26.4	100.0 (1,218)	1.5	3.7	26.1	34.3	34.3	100.0 (134)
$\chi^2(df)$	33.494(6)***					6.508(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29〉 건강 및 의료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5: 영양플러스 사업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42.6	19.4	21.5	16.5	100.0 (1,606)	0.0	2.3	19.3	41.8	36.7	100.0 (31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8.1	26.9	20.9	14.2	100.0 (134)	0.0	0.0	27.8	30.6	41.7	100.0 (36)
차상위계층	43.3	21.3	20.9	14.6	100.0 (254)	0.0	7.4	14.8	42.6	35.2	100.0 (54)
비수급가구	42.9	18.1	21.8	17.2	100.0 (1,218)	0.0	1.4	19.0	43.4	36.2	100.0 (221)
$\chi^2(df)$	7.452(6)					11.418(6)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30〉 건강 및 의료지원 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6: 산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40.8	30.1	16.5	12.6	100.0 (1,606)	0.6	2.9	18.4	39.3	38.7	100.0 (48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0.3	26.9	18.7	14.2	100.0 (134)	2.8	2.8	25.0	36.1	33.3	100.0 (36)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차상위계층	40.9	32.3	17.3	9.4	100.0 (254)	0.0	4.9	22.0	30.5	42.7	100.0 (82)
비수급가구	40.8	30.0	16.1	13.1	100.0 (1,218)	0.5	2.5	17.0	41.6	38.4	100.0 (365)
$\chi^2(df)$	4.025(6)					9.227(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3) 주거지원 분야

주거지원 분야 수혜를 받은 비율은 에너지바우처 17.4%,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15.8%, 국민임대주택 1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우 도움됨 응답률을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 30.1%,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24.5%, 국민임대주택 24%로 순으로 평가되었다.

차상위계층 또는 비수급가구의 수혜율이 낮으나, 이들 가구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수준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게 나타나서 현행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항목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에너지바우처로 파악된다.

〈표 V-4-31〉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전체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있음 비율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국민임대주택 공급	10.9	100.0 (1,606)	1.7	6.9	32.0	35.4	24.0	100.0 (175)	
영구임대주택	4.2	100.0 (1,606)	2.9	8.8	42.6	38.2	7.4	100.0 (68)	
장기전세주택	4.7	100.0 (1,606)	2.6	5.3	32.9	39.5	19.7	100.0 (76)	
에너지바우처	17.4	100.0 (1,606)	1.1	5.7	24.7	38.4	30.1	100.0 (27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4.2	100.0 (1,606)	0.0	4.5	44.8	32.8	17.9	100.0 (67)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15.8	100.0 (1,606)	0.4	3.6	25.3	46.2	24.5	100.0 (253)	

주: 1)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제도 이용/수혜 여부 '있음' 제외 비율에는 '없음', '모름', '해당사항 없음' 포함

자료: 영유아 자녀 양 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32〉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1: 국민임대주택 공급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68.9	10.9	7.0	13.2	100.0 (1,606)	1.7	6.9	32.0	35.4	24.0	100.0 (175)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6.7	17.2	18.7	7.5	100.0 (134)	4.3	4.3	43.5	34.8	13.0	100.0 (23)
차상위계층	63.4	16.5	9.4	10.6	100.0 (254)	0.0	4.8	31.0	35.7	28.6	100.0 (42)
비수급가구	71.3	9.0	5.3	14.4	100.0 (1,218)	1.8	8.2	30.0	35.5	24.5	100.0 (110)
$\chi^2(df)$	60.384(6)***					5.051(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33〉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2: 영구임대주택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72.3	4.2	8.5	15.0	100.0 (1,606)	2.9	8.8	42.6	38.2	7.4	100.0 (6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63.4	11.2	15.7	9.7	100.0 (134)	6.7	13.3	53.3	20.0	6.7	100.0 (15)
차상위계층	68.1	4.3	13.0	14.6	100.0 (254)	0.0	9.1	54.5	27.3	9.1	100.0 (11)
비수급가구	74.1	3.4	6.7	15.7	100.0 (1,218)	2.4	7.1	35.7	47.6	7.1	100.0 (42)
$\chi^2(df)$	41.355(6)***					5.472(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34〉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3: 장기전세주택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70.8	4.7	8.7	15.8	100.0 (1,606)	2.6	5.3	32.9	39.5	19.7	100.0 (7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64.9	9.0	14.9	11.2	100.0 (134)	8.3	0.0	25.0	33.3	33.3	100.0 (12)
차상위계층	66.9	3.9	14.2	15.0	100.0 (254)	10.0	20.0	40.0	30.0	0.0	100.0 (10)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비수급가구	72.2	4.4	6.9	16.4	100.0 (1,218)	0.0	3.7	33.3	42.6	20.4	100.0 (54)
χ^2 (df)	28.614(6)***					13.942(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35〉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4: 에너지바우처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59.4	17.4	10.4	12.8	100.0 (1,606)	1.1	5.7	24.7	38.4	30.1	100.0 (27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5.5	30.6	15.7	8.2	100.0 (134)	0.0	12.2	34.1	26.8	26.8	100.0 (41)
차상위계층	57.5	21.3	10.2	11.0	100.0 (254)	1.9	5.6	27.8	40.7	24.1	100.0 (54)
비수급가구	61.3	15.1	9.9	13.7	100.0 (1,218)	1.1	4.3	21.7	40.2	32.6	100.0 (184)
χ^2 (df)	32.118(6)***					9.535(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36〉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67.0	4.2	11.2	17.6	100.0 (1,606)	0.0	4.5	44.8	32.8	17.9	100.0 (67)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6.0	9.0	22.4	12.7	100.0 (134)	0.0	0.0	25.0	33.3	41.7	100.0 (12)
차상위계층	64.6	9.1	13.0	13.4	100.0 (254)	0.0	8.7	47.8	30.4	13.0	100.0 (23)
비수급가구	68.7	2.6	9.6	19.0	100.0 (1,218)	0.0	3.1	50.0	34.4	12.5	100.0 (32)
χ^2 (df)	56.327(6)***					7.546(6)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37〉 주거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6: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57.5	15.8	11.6	15.1	100.0 (1,606)	0.4	3.6	25.3	46.2	24.5	100.0 (25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7.0	22.4	20.9	9.7	100.0 (134)	0.0	3.3	26.7	40.0	30.0	100.0 (30)
차상위계층	53.5	22.4	11.4	12.6	100.0 (254)	1.8	3.5	28.1	43.9	22.8	100.0 (57)
비수급가구	59.5	13.6	10.7	16.2	100.0 (1,218)	0.0	3.6	24.1	48.2	24.1	100.0 (166)
$\chi^2(df)$	33.988(6)***					4.642(8)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자녀와의 주거공간은 놀이공간의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크기와 물리적 여건이 요구된다. 부모 1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주거지원 대상은 저출산에 따른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가구로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10은 개보수 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해당 비용을 목돈이 요구되므로 주택 공급 이외에도 개보수 비용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반지하라서 지상, 좋는데 아니어도 지상으로 가고 싶는데 안되더라고요. 그게 안되서 저도 임대아파트를 고민했는데 저랑 만약에 아이 아빠랑 신혼부부 하는거랑 어른과 아이가 사는 것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2인으로 묶어버리니까. 13평, 14평 임대아파트를 가야되는 상황인데, 아이랑 살기에는 좁거든요. 또 하나는 임대아파트를 갈 때 1명이 되게 많은데 1명을 요새 치지도 않는 거예요 (부모 1)

쾌적한 거주, 저희 집이 첫째 백일에 이사왔는데 집이 집이 아니예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애들이다 보니까 낙서도 되어 있고 오래 되니까 벽지도 찢기고 바닥도 찢기고 비가 많이 오면 집에 비가 들어와서 곰팡이 들어오고 나라에서 집을 해 주잖아요. 신혼과 청년에게 자녀가 많은 가정도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두 번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애들이 있는 집이라서 좋은거 혜택 받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거기 1,2 순위가 있는데 차상위는 3순위라서 떨어지더라구요 그런거 신청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먼저 들어가니까 (중략) 애들이 아빠 닮아서 비염 때문에 코가 약해서 감기를 매일 같이 달고 사는데 이사는 가고 싶는데 여기서거 알아봐도 다 안 된다고 하고 차상위는 3순위에 속해서 다 안 된다고 하고 (부모 10)

4) 놀이 및 여가지원 분야

놀이 및 여가지원을 경험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이 13.1%로 가장 높고, '매

우 도움됨' 응답률이 25.7%로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또는 비수급가구(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200~300만원 이하선)의 수혜율이 낮으나, 이들 가구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수준이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게 나타나서 현행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항목은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파악된다.

〈표 V-4-38〉 놀이 및 여가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전체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있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통합문화이용권	13.1	100.0 (1,606)	1.4	6.7	26.2	40.0	25.7	100.0 (210)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3	100.0 (1,606)	5.4	18.9	37.8	27.0	10.8	100.0 (37)
아동통합서비스지원	5.8	100.0 (1,606)	0.0	7.5	34.4	40.9	17.2	100.0 (93)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100.0 (1,606)	4.9	9.8	39.0	36.6	9.8	100.0 (41)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39〉 놀이 및 여가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통합문화이용권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61.5	13.1	15.4	10.0	100.0 (1,606)	1.4	6.7	26.2	40.0	25.7	100.0 (2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6.3	32.1	16.4	5.2	100.0 (134)	2.3	7.0	20.9	34.9	34.9	100.0 (43)
차상위계층	52.8	24.0	14.2	9.1	100.0 (254)	1.6	6.6	27.9	29.5	34.4	100.0 (61)
비수급가구	64.9	8.7	15.6	10.8	100.0 (1,218)	0.9	6.6	27.4	48.1	17.0	100.0 (106)
$\chi^2(df)$	93.010(6)***					11.074(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40〉 놀이 및 여가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66.2	2.3	20.4	11.1	100.0 (1,606)	5.4	18.9	37.8	27.0	10.8	100.0 (37)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61.9	5.2	24.6	8.2	100.0 (134)	0.0	28.6	14.3	42.9	14.3	100.0 (7)
차상위계층	61.0	4.3	23.2	11.4	100.0 (254)	0.0	18.2	36.4	36.4	9.1	100.0 (11)
비수급가구	67.7	1.6	19.3	11.4	100.0 (1,218)	10.5	15.8	47.4	15.8	10.5	100.0 (19)
$\chi^2(df)$	18.279(6)**					5.831(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표 V-4-41〉 놀이 및 여가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65.2	5.8	18.3	10.7	100.0 (1,606)	0.0	7.5	34.4	40.9	17.2	100.0 (93)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9.7	14.2	20.1	6.0	100.0 (134)	0.0	5.3	21.1	47.4	26.3	100.0 (19)
차상위계층	60.2	10.6	17.7	11.4	100.0 (254)	0.0	3.7	37.0	37.0	22.2	100.0 (27)
비수급가구	66.8	3.9	18.2	11.1	100.0 (1,218)	0.0	10.6	38.3	40.4	10.6	100.0 (47)
$\chi^2(df)$	39.873(6)***					5.290(6)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표 V-4-42〉 놀이 및 여가지원의 수혜 경험 및 도움 정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단위: %(명), 명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전체	65.1	2.6	21.1	11.3	100.0 (1,606)	4.9	9.8	39.0	36.6	9.8	100.0 (4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59.0	5.2	27.6	8.2	100.0 (134)	0.0	28.6	57.1	14.3	0.0	100.0 (7)
차상위계층	60.2	4.7	23.2	11.8	100.0 (254)	8.3	8.3	0.0	58.3	25.0	100.0 (12)

구분	제도 이용/수혜 여부					도움 정도					
	없음	있음	모름	해당 사항 없음	계(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비수급가구	66.7	1.8	20.0	11.5	100.0 (1,218)	4.5	4.5	54.5	31.8	4.5	100.0 (22)
$\chi^2(df)$	18.539(6)**					17.240(8)*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한편 놀이 및 여가지원에서 자녀 수는 특히 주요한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부모 2는 자녀가 4명여서 모든 자녀를 동반한 활동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놀이권이 간과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원수준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다수의 자녀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부모 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활용처의 제약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가 많아서 일일이 데리고 다니지 못해요. 지금 생각은 나눠서 아이들이랑 나눠서 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큰 애랑 둘째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으면 영화보여주기 편하고 그대신에 초등부 애들을 학교에다 보내놓고 셋째는 친구랑 데리고 영화보여주기도 쉬운데 막내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데리고 갈 것은 없고 총 애들 데리고 가게 되면 애기 아빠 손이 필요하긴 하죠. 놀러를 가던지 잠깐이라도 외식을 한다던지 (부모 2)

문화놀이 카드 있어요. 근데 갈만한 데가 없던데요. (가고 싶은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놀이카드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으니까. 제가 보러 가고 싶어도 (중략) 이게 금액이 제한이 되어있잖아요. 저는 애기랑 어린이뮤지컬 같은데 그런 것 알아봐도 인당 오만 얼마씩 해요. 근데 문화놀이 카드는 일년에 칠만원인가? 일인 기준 육만원인데 애기 것만 살 수는 없고. (중략) 키즈 카페가 되면 좋을텐데 저도 활동적이라서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수영장을 갔다왔는데 그게 너무 좋았나봐요. 애기도 수영장을 처음 가봤는데 좋아라 해서. 애기들이 갈만한 수영장도 되었으면 좋겠고. 키즈 카페가 제일 만만하긴 하죠 (부모 3)

나. 양육비용 투자 확대 요구 영역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문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여가 및 문화생활이 48.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사 19.5%, 학원 및 특별활동 11.0%, 발달검사/전문상담서비스 9.3%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인 여가 및 문화생활의 경우는 자녀가 2명 이상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 및 특별활동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 20.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표 V-4-43〉 자녀양육을 위한 희망 투자 부문

단위: %(명)

구분	학원/ 특별활동	이사	학습관련 용품 구입	발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	여가/ 문화생활	주택 개보수	기타	계(수)
전체	11.0	19.5	5.4	9.3	48.1	6.1	0.7	100.0 (1,606)
자녀수								
1명	9.6	25.0	5.8	10.9	42.7	5.2	0.8	100.0 (772)
2명	12.2	14.6	5.5	6.7	53.2	7.0	0.8	100.0 (656)
3명	11.9	15.1	2.5	11.9	52.2	6.3	0.0	100.0 (159)
4명 이상	15.8	0.0	5.3	15.8	52.6	10.5	0.0	100.0 (19)
$\chi^2(df)$	52.354(18)***							
지역규모								
대도시	11.7	21.9	5.8	9.3	43.2	7.2	0.8	100.0 (718)
중소도시	10.2	18.5	5.0	9.2	51.5	5.1	0.5	100.0 (802)
읍면지역	11.6	9.3	4.7	10.5	57.0	5.8	1.2	100.0 (86)
$\chi^2(df)$	19.344(12)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1.9	25.4	3.7	7.5	43.3	8.2	0.0	100.0 (134)
차상위계층	8.3	15.7	7.5	11.4	51.6	5.5	0.0	100.0 (254)
비수급가구	11.4	19.6	5.1	9.1	47.9	6.0	0.9	100.0 (1,218)
$\chi^2(df)$	16.894(12)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연령별 선호 양육방식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가장 적합한 주양육자에 대해서는 1순위 및 1, 2순위를 합한 응답률을 기준으로 아동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0~2세아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순위 기준으로 60%, 1, 2순위를 합하면 70%를 육박하며, 특히 0세아의 해당 비율은 79.9%와 86.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비율은 법정 빈곤가구와 월 평균 가구소득이 150만원 이하에서는 평균보다 낮고 어린이집 선호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취학 전 5세아의 경우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30.4%로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반면에 법정 수급가구와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가구에 사는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 대조를 이룬다.

〈표 V-4-44〉 부모 모두 일할 경우 연령별 자녀 돌보기 적합한 사람: 1순위

단위: %(명), 명

구분	1순위						계(수)
	부모 직접 돌봄	혈연 돌봄	비혈연 인력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기타	
만 0세	79.9	7.2	0.7	10.5	1.7	0.0	100.0 (1,606)
만 1세	72.5	11.1	1.6	13.6	1.1	0.0	100.0 (1,606)
만 2세	61.8	11.8	1.7	23.2	1.4	0.0	100.0 (1,606)
만 3세	47.3	10.4	1.6	35.1	5.6	0.0	100.0 (1,606)
만 4세	35.4	9.8	1.5	37.0	16.3	0.0	100.0 (1,606)
만 5세	30.7	8.6	1.1	29.2	30.4	0.0	100.0 (1,606)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45〉 부모 모두 일할 경우 연령별 자녀 돌보기 적합한 사람: 1+2순위

단위: %(명), 명

구분	1+2순위						(수)
	부모 직접 돌봄	혈연 돌봄	비혈연 인력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기타	
만 0세	86.2	60.0	6.8	39.6	7.3	0.1	(1,606)
만 1세	80.5	61.3	8.6	43.6	5.9	0.1	(1,606)
만 2세	72.4	52.5	9.9	58.2	7.0	0.1	(1,606)
만 3세	59.7	41.2	7.8	69.6	21.7	0.0	(1,606)
만 4세	48.9	32.2	7.4	70.5	40.8	0.1	(1,606)
만 5세	43.5	28.0	7.5	61.6	59.0	0.4	(1,606)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46〉 부모 모두 일할 경우 자녀 돌보기 적합한 사람(1, 1+2순위): 만 0세

단위: %(명), 명

구분	1순위						계(수)
	부모 직접 돌봄	혈연 돌봄	비혈연 인력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기타	
전체(1순위)	79.9	7.2	0.7	10.5	1.7	0.0	100.0 (1,606)
전체(1+2순위)	86.2	60.0	6.8	39.6	7.3	0.1	(1,60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76.1	8.2	2.2	10.4	3.0	0.0	100.0 (134)

구분	1순위						계(수)
	부모 직접 돌봄	혈연 돌봄	비혈연 인력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기타	
차상위계층	73.6	7.9	1.2	15.7	1.6	0.0	100.0 (254)
비수급가구	81.6	6.9	0.5	9.4	1.6	0.0	100.0 (1,218)
$\chi^2(df)$	17.552(8)*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58.4	13.0	1.3	20.8	6.5	0.0	100.0 (77)
101~150만원	71.8	11.8	3.5	10.6	2.4	0.0	100.0 (85)
151~200만원	80.0	4.8	0.8	12.6	1.7	0.0	100.0 (641)
201~250만원	79.5	7.1	0.8	11.0	1.6	0.0	100.0 (127)
251~300만원	83.0	9.0	0.0	6.0	2.0	0.0	100.0 (100)
301~350만원	80.3	7.4	0.0	9.0	3.3	0.0	100.0 (122)
351~400만원	86.4	7.3	0.9	4.5	0.9	0.0	100.0 (110)
401~500만원	82.1	7.1	0.0	10.7	0.0	0.0	100.0 (140)
501~600만원	89.7	4.1	0.0	6.2	0.0	0.0	100.0 (97)
601~700만원	84.4	8.9	2.2	4.4	0.0	0.0	100.0 (45)
701~800만원	86.4	13.6	0.0	0.0	0.0	0.0	100.0 (22)
801만원 이상	70.0	20.0	0.0	10.0	0.0	0.0	100.0 (40)
$\chi^2(df)$	86.581(44)***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4-47〉 부모 모두 일할 경우 자녀 돌보기 적합한 사람(1, 1+2순위): 만 5세

단위: %(명), 명

구분	1순위						계(수)
	부모 직접 돌봄	혈연 돌봄	비혈연 인력	어린이 집이용	유치원 이용	기타	
전체(1순위)	30.7	8.6	1.1	29.2	30.4	0.0	100.0 (1,606)
전체(1+2순위)	43.5	28.0	7.5	61.6	59.0	0.4	(1,606)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5.1	13.4	0.7	30.6	20.1	0.0	100.0 (134)
차상위계층	28.7	7.9	0.4	36.2	26.8	0.0	100.0 (254)
비수급가구	30.6	8.2	1.3	27.6	32.3	0.0	100.0 (1,218)
$\chi^2(df)$	19.531(8)*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3.8	15.6	0.0	23.4	27.3	0.0	100.0 (77)
101~150만원	32.9	8.2	1.2	32.9	24.7	0.0	100.0 (85)
151~200만원	30.9	8.0	1.7	33.1	26.4	0.0	100.0 (641)
201~250만원	29.9	9.4	2.4	24.4	33.9	0.0	100.0 (127)

구분	1순위						계(수)	
	부모 직접 돌봄	혈연 돌봄	비혈연 인력	어린이 집아용	유치원 이용	기타		
251~300만원	24.0	7.0	1.0	34.0	34.0	0.0	100.0	(100)
301~350만원	41.0	9.0	0.0	21.3	28.7	0.0	100.0	(122)
351~400만원	30.9	3.6	0.0	32.7	32.7	0.0	100.0	(110)
401~500만원	21.4	12.1	0.7	30.7	35.0	0.0	100.0	(140)
501~600만원	29.9	5.2	0.0	20.6	44.3	0.0	100.0	(97)
601~700만원	24.4	13.3	2.2	20.0	40.0	0.0	100.0	(45)
701~800만원	45.5	13.6	0.0	13.6	27.3	0.0	100.0	(22)
801만원 이상	37.5	7.5	0.0	22.5	32.5	0.0	100.0	(40)
$\chi^2(df)$	66.261(44)*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라. 육아지원 필요도 및 도움 정도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과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이하와 같다.

1) 육아지원 부문별 필요도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평균 4.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조정 및 단축제도, 주거공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 공히 평균 4.5점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와 비교하여 문화생활 및 놀이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4-48〉 육아지원 필요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함	매우 필요함	계(수)	5점 평균(표준편차)	
							빈곤가구	전체
1. 양육비 지원	0.4	0.7	10.8	24.8	63.3	100.0 (830)	4.5(0.7)	4.5(0.7)
2. 보육시설	0.4	1.2	8.7	20.8	68.9	100.0 (830)	4.6(0.7)	4.6(0.7)
3. 아이돌봄서비스	0.8	1.3	16.3	34.3	47.2	100.0 (830)	4.3(0.8)	4.2(0.8)
4. 육아휴직제도	0.4	1.0	10.8	23.9	64.0	100.0 (830)	4.5(0.8)	4.6(0.7)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함	매우 필요함	계(수)	5점 평균(표준편차)	
							빈곤가구	전체
5. 근로시간 조정/단축제도	0.4	1.0	11.0	25.3	62.4	100.0 (830)	4.5(0.8)	4.5(0.7)
6. 주거공간	0.5	0.7	10.0	25.1	63.7	100.0 (830)	4.5(0.7)	4.5(0.7)
7. 건강관리/의료비 지원	0.2	0.8	9.3	23.1	66.5	100.0 (830)	4.5(0.7)	4.6(0.7)
8. 문화생활/놀이 지원	0.4	0.5	11.4	27.1	60.6	100.0 (830)	4.5(0.7)	4.4(0.7)

주: 5점 평균은 '전혀 필요 없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대부분 항목에서 빈곤 여부에 따른 욕구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 변인별로는 양육비 지원의 경우는 영아 특히 0~1세 아에서 더 높은 수요를 보이며,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 이하의 요구를 나타냈다. 또한 영아와 0~1세아의 경우는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고, 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높게 나타나, 이들 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0~1세아의 경우는 부모 직접 돌봄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단, 육아휴직제도의 경우는 법정 빈곤가구와 월 가구소득이 250만원 이하 가구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빈곤가구의 영아보육에 대한 접근성에 보다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밖에도 주거공간, 의료비 지원, 문화생활 및 여가지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편적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V-4-49〉 육아지원 필요도 1: 양육비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양육비 지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0.4	1.2	8.7	28.5	61.2	100.0 (1,606)		4.5(0.7)
영유아 구분								
영아	0.2	1.0	6.4	24.9	67.4	100.0 (823)		4.6(0.7)
유아	0.5	1.5	11.1	32.2	54.7	100.0 (783)		4.4(0.8)
$\chi^2(df)/t$			29.988(4)***					5.3***
아동연령								
0세	0.5	0.5	8.0	20.7	70.4	100.0 (213)		4.6(0.7)
1세	0.4	1.1	4.7	24.4	69.5	100.0 (279)		4.6(0.7)

구분	양육비 지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2세	0.0	1.2	6.9	28.1	63.7	100.0 (331)	4.5(0.7)
3세	0.0	0.0	10.1	35.5	54.4	100.0 (228)	4.4(0.7)
4세	0.7	1.8	8.8	34.9	53.7	100.0 (272)	4.4(0.8)
5세	0.7	2.5	14.1	26.9	55.8	100.0 (283)	4.3(0.9)
$\chi^2(df)/F$			55.198(20)***				6.4***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0.6	1.6	10.3	33.1	54.4	100.0 (620)	4.4(0.8)
홀벌이 가구	0.3	0.9	7.0	26.8	65.0	100.0 (772)	4.6(0.7)
모두 근로안함	0.0	1.4	10.3	21.0	67.3	100.0 (214)	4.5(0.7)
$\chi^2(df)/F$			26.178(8)***				9.4***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0.9	2.0	10.8	37.5	48.9	100.0 (352)	4.3(0.8)
전일제+시간제	0.6	0.6	9.9	23.8	65.1	100.0 (172)	4.5(0.7)
시간제+시간제	0.0	0.0	13.6	31.8	54.5	100.0 (22)	4.4(0.7)
해당사항 없음	0.2	1.1	7.7	26.1	64.8	100.0 (1,060)	4.5(0.7)
$\chi^2(df)/F$			34.865(12)***				8.7***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0	1.5	13.4	26.9	58.2	100.0 (134)	4.4(0.8)
차상위계층	0.8	0.8	11.4	26.0	61.0	100.0 (254)	4.5(0.8)
비수급가구	0.3	1.3	7.6	29.1	61.6	100.0 (1,218)	4.5(0.7)
$\chi^2(df)/F$			10.542(8)				1.1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0.0	1.3	14.3	22.1	62.3	100.0 (77)	4.5(0.8)
101~150만원	1.2	1.2	7.1	35.3	55.3	100.0 (85)	4.4(0.8)
151~200만원	0.3	0.6	11.1	23.2	64.7	100.0 (641)	4.5(0.7)
201~250만원	0.8	1.6	6.3	26.0	65.4	100.0 (127)	4.5(0.8)
251~300만원	0.0	1.0	10.0	25.0	64.0	100.0 (100)	4.5(0.7)
301~350만원	0.0	0.0	5.7	32.8	61.5	100.0 (122)	4.6(0.6)
351~400만원	0.0	0.9	2.7	31.8	64.5	100.0 (110)	4.6(0.6)
401~500만원	0.7	1.4	5.7	31.4	60.7	100.0 (140)	4.5(0.7)
501~600만원	0.0	5.2	7.2	39.2	48.5	100.0 (97)	4.3(0.8)
601~700만원	2.2	2.2	6.7	44.4	44.4	100.0 (45)	4.3(0.9)
701~800만원	0.0	0.0	9.1	50.0	40.9	100.0 (22)	4.3(0.6)
801만원 이상	0.0	5.0	10.0	37.5	47.5	100.0 (40)	4.3(0.8)
$\chi^2(df)/F$			79.086(44)***				1.9*

주: 5점 평균은 '전혀 필요 없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4-50〉 육아지원 필요도 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단위: %(명), 점

구분	보육시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0.3	0.9	6.7	21.2	70.8	100.0 (1,606)	4.6(0.7)
영유아 구분							
영아	0.4	0.7	5.8	18.8	74.2	100.0 (823)	4.7(0.7)
유아	0.3	1.1	7.7	23.8	67.2	100.0 (783)	4.6(0.7)
$\chi^2(df)/t$			10.316(4)*				2.8**
아동연령							
0세	0.5	0.0	7.0	16.0	76.5	100.0 (213)	4.7(0.6)
1세	0.4	0.7	5.0	19.4	74.6	100.0 (279)	4.7(0.6)
2세	0.3	1.2	5.7	20.2	72.5	100.0 (331)	4.6(0.7)
3세	0.0	0.4	7.0	25.9	66.7	100.0 (228)	4.6(0.6)
4세	0.0	2.2	5.9	24.3	67.6	100.0 (272)	4.6(0.7)
5세	0.7	0.7	9.9	21.6	67.1	100.0 (283)	4.5(0.8)
$\chi^2(df)/F$			27.351(20)				1.8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0.3	0.8	7.6	24.0	67.3	100.0 (620)	4.6(0.7)
홀벌이 가구	0.4	1.0	6.3	19.4	72.8	100.0 (772)	4.6(0.7)
모두 근로안함	0.0	0.9	5.6	19.6	73.8	100.0 (214)	4.7(0.6)
$\chi^2(df)/F$			7.790(8)				2.1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0.3	0.3	8.0	26.1	65.3	100.0 (352)	4.6(0.7)
전일제+시간제	0.0	0.6	5.2	19.8	74.4	100.0 (172)	4.7(0.6)
시간제+시간제	0.0	9.1	9.1	22.7	59.1	100.0 (22)	4.3(1.0)
해당사항 없음	0.4	1.0	6.5	19.8	72.3	100.0 (1,060)	4.6(0.7)
$\chi^2(df)/F$			27.732(12)**				2.8*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0	1.5	9.0	24.6	64.9	100.0 (134)	4.5(0.7)
차상위계층	0.4	2.4	8.7	22.8	65.7	100.0 (254)	4.5(0.8)
비수급가구	0.3	0.6	6.1	20.5	72.5	100.0 (1,218)	4.6(0.7)
$\chi^2(df)/F$			14.718(8)				5.0**

주: 5점 평균은 '전혀 필요 없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표 V-4-51〉 육아지원 필요도 3: 아이돌봄서비스

단위: %(명), 점

구분	아이돌봄서비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0.7	1.9	16.5	35.3	45.6	100.0 (1,606)	4.2(0.8)
영유아 구분							
영아	0.5	1.8	16.0	30.4	51.3	100.0 (823)	4.3(0.8)
유아	0.9	1.9	17.0	40.5	39.7	100.0 (783)	4.2(0.8)
$\chi^2(df)/t$			24.567(4)***				3.3***
아동연령							
0세	0.5	0.9	15.5	29.6	53.5	100.0 (213)	4.3(0.8)
1세	0.4	3.2	14.7	29.7	52.0	100.0 (279)	4.3(0.9)
2세	0.6	1.2	17.5	31.4	49.2	100.0 (331)	4.3(0.8)
3세	0.9	1.3	16.2	42.1	39.5	100.0 (228)	4.2(0.8)
4세	0.4	1.8	18.4	39.3	40.1	100.0 (272)	4.2(0.8)
5세	1.4	2.5	16.3	40.3	39.6	100.0 (283)	4.1(0.9)
$\chi^2(df)/F$			34.636(20)*				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0	2.1	15.3	36.8	44.8	100.0 (620)	4.2(0.9)
홀벌이 가구	0.4	1.9	18.1	35.2	44.3	100.0 (772)	4.2(0.8)
모두 근로안함	0.9	0.9	14.0	31.3	52.8	100.0 (214)	4.3(0.8)
$\chi^2(df)/F$			9.819(8)				2.1
가구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0.3	2.3	16.5	37.8	43.2	100.0 (352)	4.2(0.8)
전일제+시간제	1.2	0.6	14.5	35.5	48.3	100.0 (172)	4.3(0.8)
시간제+시간제	4.5	9.1	9.1	36.4	40.9	100.0 (22)	4.0(1.2)
해당사항 없음	0.7	1.8	17.0	34.4	46.1	100.0 (1,060)	4.2(0.8)
$\chi^2(df)/F$			17.225(12)			0.9	
가구특성							
부부+자녀	0.6	1.9	16.6	35.6	45.4	100.0 (1,388)	4.2(0.8)
한부모+자녀	2.2	2.2	15.7	29.2	50.6	100.0 (89)	4.2(1.0)
조부모+부부+자녀	0.0	2.0	15.2	37.4	45.5	100.0 (99)	4.3(0.8)
조부모+한부모+자녀	3.3	0.0	20.0	33.3	43.3	100.0 (30)	4.1(1.0)
$\chi^2(df)/F$			9.818(12)				0.2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5	1.5	17.9	33.6	45.5	100.0 (134)	4.2(0.9)
차상위계층	0.8	2.0	16.9	37.0	43.3	100.0 (254)	4.2(0.8)
비수급가구	0.6	1.9	16.3	35.1	46.1	100.0 (1,218)	4.2(0.8)
$\chi^2(df)/F$			2.583(8)				0.4

주: 5점 평균은 '전혀 필요 없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표 V-4-52〉 육아지원 필요도 4: 육아휴직제도

단위: %(명), 점

구분	육아휴직제도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0.2	1.0	8.3	24.2	66.3	100.0 (1,606)	4.6(0.7)
영유아 구분							
영아	0.1	1.5	6.6	21.9	70.0	100.0 (823)	4.6(0.7)
유아	0.4	0.5	10.2	26.6	62.3	100.0 (783)	4.5(0.7)
$\chi^2(df)/t$			18.359(4)**				2.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0	0.7	11.2	31.3	56.7	100.0 (134)	4.4(0.7)
차상위계층	0.4	1.2	11.0	26.8	60.6	100.0 (254)	4.5(0.8)
비수급가구	0.2	1.0	7.5	22.8	68.5	100.0 (1,218)	4.6(0.7)
$\chi^2(df)/F$			13.759(8)				4.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6	2.6	16.9	24.7	53.2	100.0 (77)	4.2(1.0)
101~150만원	0.0	1.2	8.2	38.8	51.8	100.0 (85)	4.4(0.7)
151~200만원	0.2	0.8	10.8	21.4	66.9	100.0 (641)	4.5(0.7)
201~250만원	0.0	2.4	9.4	21.3	66.9	100.0 (127)	4.5(0.8)
251~300만원	0.0	0.0	8.0	24.0	68.0	100.0 (100)	4.6(0.6)
301~350만원	0.0	0.0	4.9	25.4	69.7	100.0 (122)	4.6(0.6)
351~400만원	0.0	1.8	3.6	22.7	71.8	100.0 (110)	4.6(0.6)
401~500만원	0.0	0.0	4.3	30.0	65.7	100.0 (140)	4.6(0.6)
501~600만원	1.0	1.0	3.1	23.7	71.1	100.0 (97)	4.6(0.7)
601~700만원	0.0	2.2	6.7	26.7	64.4	100.0 (45)	4.5(0.7)
701~800만원	0.0	0.0	4.5	27.3	68.2	100.0 (22)	4.6(0.6)
801만원 이상	0.0	2.5	5.0	22.5	70.0	100.0 (40)	4.6(0.7)
$\chi^2(df)/F$			74.024(44)**				2.4**

주: 5점 평균은 '전혀 필요 없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표 V-4-53〉육아지원 필요도 5: 근로시간 조정/단축제도

단위: %(명), 점

구분	근로시간 조정/단축제도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0.4	0.8	9.1	25.2	64.5	100.0 (1,606)	4.5(0.7)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0	1.5	11.2	28.4	59.0	100.0 (134)	4.4(0.8)
차상위계층	0.4	0.4	12.6	28.7	57.9	100.0 (254)	4.4(0.8)

구분	근로시간 조정/단축제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비수급가구	0.4	0.8	8.1	24.1	66.5	100.0 (1,218)	4.6(0.7)
$\chi^2(df)/F$			12.657(8)				3.9*

주: 5점 평균은 '전혀 필요 없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4-54〉 육아지원 필요도 6: 주거공간

단위: %(명), 점

구분	주거공간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전체	0.3	0.6	8.7	26.7	63.8	100.0 (1,606)	4.5(0.7)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7	0.0	8.2	32.1	59.0	100.0 (134)	4.5(0.7)
차상위계층	0.4	2.0	10.6	26.8	60.2	100.0 (254)	4.4(0.8)
비수급가구	0.2	0.3	8.3	26.1	65.0	100.0 (1,218)	4.6(0.7)
$\chi^2(df)/F$			16.206(8)*				2.8

주: 5점 평균은 '전혀 필요 없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4-55〉 육아지원 필요도 7: 건강관리/의료비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건강관리/의료비 지원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전체	0.2	0.9	8.0	24.5	66.4	100.0 (1,606)	4.6(0.7)
영유아 구분							
영아	0.1	1.1	7.4	21.7	69.6	100.0 (823)	4.6(0.7)
유아	0.3	0.6	8.7	27.3	63.1	100.0 (783)	4.5(0.7)
$\chi^2(df)/t$			9.832(4)*				2.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0	0.7	12.7	23.9	62.7	100.0 (134)	4.5(0.7)
차상위계층	0.4	1.6	9.1	25.6	63.4	100.0 (254)	4.5(0.8)
비수급가구	0.2	0.7	7.3	24.3	67.5	100.0 (1,218)	4.6(0.7)
$\chi^2(df)/F$			8.324(8)				2.3

주: 5점 평균은 '전혀 필요 없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4-56〉 육아지원 필요도 8: 문화생활/놀이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문화생활/놀이 지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0.2	0.6	11.6	29.3	58.3	100.0 (1,606)	4.4(0.7)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0.0	0.7	14.2	29.1	56.0	100.0 (134)	4.4(0.8)
차상위계층	0.4	0.4	14.2	25.6	59.4	100.0 (254)	4.4(0.8)
비수급가구	0.2	0.6	10.8	30.0	58.4	100.0 (1,218)	4.5(0.7)
χ^2 (df)/F			5.344(8)				0.4

주: 5점 평균은 '전혀 필요 없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아동수당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 보다는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보다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4는 아동수당이 자녀의 교육비 등에 투자되므로 일시금 방식 보다는 오랫동안 지급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한 번에 많이 주는 거 보다 오래 주는 것. 5만원이라도 5년 주면 쌓이는데 저희는 10만원
은 아이들 어린이집 9만원 특별비 그거에 써요 (부모 4)

2) 육아지원 도움 정도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에 자녀양육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각 항목별로 질문한 결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전문건강센터 운영이 평균 공히 4.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학습비 지원,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자녀 등하원서비스 제공이 평균 4.0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가구와 비교하여 빈곤가구는 유모차, 장난감, 도서 대여 등 현물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모차 대여와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빈곤 여부 및 가구소득에 따른 도움 정도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모차 대여와 도서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의 경우는 각각 월가구소득 500만원 이하와 40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해당 지원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만 하다.

〈표 V-4-57〉 육아지원 도움 정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5점 평균(표준편차)	
							빈곤가구	전체
1.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2.0	5.3	26.5	31.3	34.8	100.0 (830)	3.9(1.0)	3.9(1.0)
2.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3	3.6	21.4	31.1	42.5	100.0 (830)	4.1(0.9)	4.1(0.9)
3. 유모차 대여	2.9	6.4	29.3	28.2	33.3	100.0 (830)	3.8(1.1)	3.7(1.1)
4. 장난감 대여	2.5	5.4	26.7	31.0	34.3	100.0 (830)	3.9(1.0)	3.8(1.0)
5. 영유아 학습비 지원	1.9	3.9	21.9	33.3	39.0	100.0 (830)	4.0(1.0)	4.0(1.0)
6. 도서 대여/독서 프로그램	1.9	4.6	23.5	32.7	37.3	100.0 (830)	4.0(1.0)	3.9(1.0)
7. 전문 건강센터 운영	1.7	4.2	18.8	32.3	43.0	100.0 (830)	4.1(1.0)	4.1(0.9)
8.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2.4	4.3	22.9	30.8	39.5	100.0 (830)	4.0(1.0)	4.0(1.0)
9. 자녀 등하원서비스 제공	2.2	3.4	24.3	29.6	40.5	100.0 (830)	4.0(1.0)	4.0(0.9)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58〉육아지원 도움 정도 1: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되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2.2	5.4	25.8	33.6	33.0	100.0 (1,606)	3.9(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2	3.7	32.1	29.9	32.1	100.0 (134)	3.9(1.0)
차상위계층	1.2	6.7	30.7	27.2	34.3	100.0 (254)	3.9(1.0)
비수급가구	2.4	5.3	24.1	35.4	32.8	100.0 (1,218)	3.9(1.0)
$\chi^2(df)/F$			13.650(8)				0.3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59〉육아지원 도움 정도 2: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되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1.1	3.4	20.7	33.9	41.0	100.0 (1,606)	4.1(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2	4.5	23.1	28.4	41.8	100.0 (134)	4.0(1.0)
차상위계층	0.4	5.1	26.0	29.9	38.6	100.0 (254)	4.0(0.9)
비수급가구	1.1	2.9	19.3	35.3	41.4	100.0 (1,218)	4.1(0.9)

구분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chi^2(df)/F$	14.906(8)	2.2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60〉 육아지원 도움 정도 3: 유모차 대여

단위: %(명), 점

구분	유모차 대여						5점 평균 (표준편차)
	계(수)						
전체	3.4	8.0	30.2	29.2	29.3	100.0 (1,606)	3.7(1.1)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0	3.7	29.9	24.6	38.8	100.0 (134)	3.9(1.1)
차상위계층	3.1	7.1	28.7	29.5	31.5	100.0 (254)	3.8(1.1)
비수급가구	3.4	8.6	30.5	29.6	27.8	100.0 (1,218)	3.7(1.1)
$\chi^2(df)/F$	10.870(8)						3.3*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3	5.2	32.5	27.3	33.8	100.0 (77)	3.9(1.0)
101~150만원	1.2	3.5	27.1	32.9	35.3	100.0 (85)	4.0(0.9)
151~200만원	3.1	6.6	29.8	27.6	32.9	100.0 (641)	3.8(1.1)
201~250만원	6.3	10.2	26.0	26.0	31.5	100.0 (127)	3.7(1.2)
251~300만원	1.0	7.0	37.0	25.0	30.0	100.0 (100)	3.8(1.0)
301~350만원	3.3	5.7	32.8	34.4	23.8	100.0 (122)	3.7(1.0)
351~400만원	0.9	9.1	31.8	35.5	22.7	100.0 (110)	3.7(1.0)
401~500만원	2.9	11.4	24.3	35.0	26.4	100.0 (140)	3.7(1.1)
501~600만원	8.2	12.4	30.9	35.1	13.4	100.0 (97)	3.3(1.1)
601~700만원	4.4	6.7	33.3	22.2	33.3	100.0 (45)	3.7(1.1)
701~800만원	4.5	18.2	40.9	22.7	13.6	100.0 (22)	3.2(1.1)
801만원 이상	7.5	17.5	32.5	15.0	27.5	100.0 (40)	3.4(1.3)
$\chi^2(df)/F$	72.338(44)**						3.0***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4-61〉 육아지원 도움 정도 4: 장난감 대여

단위: %(명), 점

구분	장난감 대여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	6.2	26.3	34.4	30.6	100.0	(1,606)	3.8(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3.0	5.2	24.6	27.6	39.6	100.0	(134)	4.0(1.1)
차상위계층	2.8	6.7	26.4	31.5	32.7	100.0	(254)	3.8(1.0)
비수급가구	2.4	6.2	26.5	35.7	29.2	100.0	(1,218)	3.8(1.0)
χ^2 (df)/F			8.376(8)					0.9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62〉육아지원 도움 정도 5: 영유아 학습비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영유아 학습비 지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1.9	4.2	22.6	36.1	35.2	100.0	(1,606)	4.0(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5	5.2	23.9	29.9	39.6	100.0	(134)	4.0(1.0)
차상위계층	2.8	3.5	24.0	32.3	37.4	100.0	(254)	4.0(1.0)
비수급가구	1.7	4.3	22.2	37.6	34.2	100.0	(1,218)	4.0(0.9)
χ^2 (df)/F			6.959(8)					0.0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63〉육아지원 도움 정도 6: 도서 대여/독서 프로그램

단위: %(명), 점

구분	도서 대여/독서 프로그램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	4.9	25.7	34.9	33.0	100.0	(1,606)	3.9(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5	5.2	24.6	35.1	33.6	100.0	(134)	3.9(1.0)
차상위계층	2.4	4.3	24.4	31.9	37.0	100.0	(254)	4.0(1.0)
비수급가구	1.4	4.9	26.1	35.5	32.1	100.0	(1,218)	3.9(0.9)
χ^2 (df)/F			4.084(8)					0.3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구분	도서 대여/독서 프로그램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3	6.5	33.8	24.7	33.8	100.0 (77)	3.8(1.0)	
101~150만원	1.2	4.7	23.5	36.5	34.1	100.0 (85)	4.0(0.9)	
151~200만원	1.9	4.4	22.5	33.4	37.9	100.0 (641)	4.0(1.0)	
201~250만원	2.4	6.3	27.6	27.6	36.2	100.0 (127)	3.9(1.0)	
251~300만원	1.0	3.0	24.0	36.0	36.0	100.0 (100)	4.0(0.9)	
301~350만원	2.5	1.6	28.7	39.3	27.9	100.0 (122)	3.9(0.9)	
351~400만원	0.0	3.6	25.5	38.2	32.7	100.0 (110)	4.0(0.9)	
401~500만원	0.0	7.9	27.1	42.1	22.9	100.0 (140)	3.8(0.9)	
501~600만원	3.1	6.2	26.8	43.3	20.6	100.0 (97)	3.7(1.0)	
601~700만원	0.0	6.7	24.4	40.0	28.9	100.0 (45)	3.9(0.9)	
701~800만원	0.0	9.1	22.7	36.4	31.8	100.0 (22)	3.9(1.0)	
801만원 이상	2.5	5.0	52.5	20.0	20.0	100.0 (40)	3.5(1.0)	
χ ² (df)/F	64.695(44)*						2.1*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표 V-4-64〉 육아지원 도움 정도 7: 전문 건강센터 운영

단위: %(명), 점

구분	전문 건강센터 운영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	4.3	20.9	34.7	39.1	100.0	(1,606)	4.1(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2	2.2	23.1	35.1	37.3	100.0	(134)	4.0(0.9)
차상위계층	1.6	6.7	20.5	28.7	42.5	100.0	(254)	4.0(1.0)
비수급가구	0.7	4.0	20.8	35.9	38.6	100.0	(1,218)	4.1(0.9)
$\chi^2(df)/F$	13.064(8)							0.3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65〉 육아지원 도움 정도 8: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단위: %(명), 점

구분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1.6	5.0	25.3	32.6	35.5	100.0		
전체	1.6	5.0	25.3	32.6	35.5	100.0	(1,606)	4.0(1.0)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2.2	3.0	25.4	30.6	38.8	100.0	(134)	4.0(1.0)
차상위계층	2.0	5.5	23.2	31.5	37.8	100.0	(254)	4.0(1.0)
비수급가구	1.5	5.1	25.8	33.0	34.6	100.0	(1,218)	3.9(1.0)
$\chi^2(df)/F$			3.804(8)					0.4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4-66〉육아지원 도움 여부 9: 자녀 등하원서비스 제공

단위: %(명), 점

구분	자녀 등하원서비스 제공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1.6	3.1	23.7	34.1	37.5	100.0		
전체	1.6	3.1	23.7	34.1	37.5	100.0	(1,606)	4.0(0.9)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1.5	2.2	34.3	24.6	37.3	100.0	(134)	3.9(1.0)
차상위계층	1.6	3.9	25.6	32.3	36.6	100.0	(254)	4.0(1.0)
비수급가구	1.6	3.0	22.1	35.6	37.7	100.0	(1,218)	4.0(0.9)
$\chi^2(df)/F$			13.633(8)					1.1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빈곤가구에서 더 높은 수요를 보이는 도서 또는 장난감 대여의 경우는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모 2와 4는 공통적으로 대여 서비스가 필요하나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너무 멀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빈곤가구는 차량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분소 등의 확충을 통해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도서대여나 장난감 대여) 제가 알고는 있는데 막 구역이 가까운데가 아니어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구요 차가 없으면 가기 힘들어요 (부모 2)

(육아지원센터)첫째 때 장난감 대여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별로였어요. 굳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부지런은 해야 하잖아요 차 타고 한 10분은 가야 하고 애들이 갖고 놀다가 망가뜨릴 수도 있고 낙서도 할 수 있어서 맘편히 놀게 못할거 같아서 한번 이용하고 말았던거 같아요 (부모 4)

3) 육아정보 제공 방법

자녀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육아지원 정보의 제공 방식으로는 관련 책자를 자택으로 송부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여 해당 응답율이 평균 51.7%로 조사되었으며, 영아 특히 0~1세아를 둔 가구에서 해당 선호는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은 기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2세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검색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법정 빈곤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전화를 통한 문의를 선호하는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4-67〉 육아정책 정보 제공 방법

단위: %(명), 명

구분	책자를 자택으로 보내줌	온라인 사이트 검색	전화문의	보건소 등 안내 책자 비치	기관을 통해 전달받음	기타	계(수)
전체	51.7	18.2	3.4	5.2	19.7	1.7	100.0 (1,606)
영유아구분							
영아	56.1	18.0	3.6	5.6	14.9	1.7	100.0 (823)
유아	47.1	18.5	3.1	4.7	24.8	1.8	100.0 (783)
$\chi^2(df)$			27.004(5)***				
아동연령							
0세	66.2	15.5	3.3	6.6	6.1	2.3	100.0 (213)
1세	60.2	19.0	3.2	3.6	12.5	1.4	100.0 (279)
2세	46.2	18.7	4.2	6.6	22.7	1.5	100.0 (331)
3세	50.4	17.5	2.6	3.5	25.4	0.4	100.0 (228)
4세	45.2	18.4	5.1	4.0	26.1	1.1	100.0 (272)
5세	46.3	19.4	1.4	6.4	23.0	3.5	100.0 (283)
$\chi^2(df)$			81.183(25)***				

구분	책자를 자택으로 보내줌	온라인 사이트 검색	전화문의	보건소 등 안내 책자 비치	기관을 통해 전달받음	기타	계(수)
법정 빈곤가구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47.8	17.9	4.5	5.2	21.6	3.0	100.0 (134)
차상위계층	47.6	17.7	4.3	7.5	21.3	1.6	100.0 (254)
비수급가구	53.0	18.4	3.0	4.7	19.2	1.6	100.0 (1,218)
$\chi^2(df)$			8.483(10)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심층면담 조사에 의하면, 빈곤가구는 전반적으로 육아정보에 취약하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 3인 온라인 정보 제공, 부모 5와 8은 육아지원정책 책자를 가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이트에 내가 궁금한 것을 입력해서 알아볼 수 있게. 주민센터 방문해서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전화도 한계가 있고 언제든지 내가 궁금한게 있을 때 확인할 수 있고 (중략) 병원도 있고 지하철도 있을 거고 지하철도 광고하잖아요. 아님 주민센터에 이렇게 책자를 놔둘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하나라도 더 지원받고 싶고 알고싶은데 정확히 뭐가 있고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부모 3)

(복지관련 정보들)구청에서 나오는 소식지예요 구마다 한달에 한번씩 오는거 있거든요 거기에 주로 공공서비스 혜택을 올리더라고요. 그거만 잘 봐도 혜택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얻은 건 별로 없는거 같아요 (부모 5)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우편으로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연결해주겠다는 거 보다는 한번에 얘기할 수 있으면 편하고 책자에 다 써 있으면 편할 듯 해요 (부모 8)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빈곤가구는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비율이 높고, 가족관

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으며, 가정내 교육환경 구비 수준도 낮게 평가된다.

우선 영유아 보육교육비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비용을 지출하지 못한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 가구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준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교재교구비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경우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못한 가구의 비율이 평균배 비례 높게 나타나므로 법정 수급가구에 한정하여 지원되는 아동통합지원서비스와 통합 문화이용권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우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결핍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현금지원 확대 시에 자녀수를 반영한 급여체계를 모색할만하다.

다음으로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에 대한 인식과 결혼만족도가 낮으므로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자녀 돌봄 시에 가족이나 이웃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므로 이들이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용이한 주거환경의 측면은 특히 읍면지역에서 거주하는 빈곤가구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의 진단 시에 읍면지역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내의 도서와 교재교구 등의 구비는 수급가구 이외에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250만원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므로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월 가구소득이 15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자녀를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기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부모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빈곤가구의 아동은 방치되는 비율이 높고,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기관 이용 시기를 늦추는 등으로 기관 미이용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원인력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시간연장형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더 높게 나타나므로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어린이

집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해당 수요는 맞벌이 가구와 한 부모가족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은 보편적인 수요를 보이나,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관련 경험이 전무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빈곤가구 영유아의 놀이권 강화 방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빈곤가구의 육아지원 요구는 돌봄시간 지원에 비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나므로 해당 서비스의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빈곤가구 영유아는 전(全)연령에 걸쳐 어린이집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아인 경우는 휴식제도, 4세 이후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현상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0~1세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에 대한 수요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빈곤가구는 유모차 대여와 도서 대여 및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도움 정도를 비빈곤가구에 비해 높게 인식되므로 해당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문은 전반적으로는 여가 및 문화생활이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그 수요는 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통합문화이용권 등의 지원대상을 상향 조정하되, 자녀 수가 많을 경우 부모와 놀이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충분한 양육의 제공에 대한 평가도 낮으므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모색할 만하다.

그 밖에도 전반적으로 취약한 육아정보 접근성의 제고 방안으로 관련 책자를 자택으로 송부하는 것이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빈곤가구의 경우는 온라인 사이트 이외에도 전화 문의에 대한 수요도 존재하므로, 온-오프 방식의 다양한 육아정보서비스 채널을 운영하는 등으로 육아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VI

정책 방안

- 01 종합: 빈곤가구 영유아의
결핍과 양육지원 수요 특성
- 02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
- 03 세부 영역별 양육지원
강화 방안

VI. 정책 방안

제6장에서는 앞서 다른 빈곤가구 영유아의 양육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결과와 빈곤가구 영유아에 대한 통합지원 운영 사례를 종합하여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 그리고 다차원적 영역별 양육지원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빈곤가구 영유아의 결핍과 비빈곤가구 대비 양육특성 및 수요를 제시하였다.

1. 종합: 빈곤가구 영유아의 결핍과 양육지원 수요 특성

보편적 비용지원 하에서 빈곤가구 영유아의 결핍과 수준을 진단하고, 빈곤가구의 양육 특성과 수요를 비빈곤가구와 비교하여 주목할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빈곤가구 영유아의 결핍 수준 진단

지난 10여년 이상의 영유아에 집중된 재정투자로 영유아의 빈곤율은 이외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해당 재정투자는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에 집중되어 빈곤가구에 속한 아동의 다차원적 빈곤이 온전히 해소되었는지는 의문시된다.

아동수당제도 도입 이전인 2017년에 출산 및 양육지원(초등방과후 돌봄 포함)에 투입된 재정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국고지원 예산 기준으로 0~5세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각각 51.6%와 20.2%로 약 7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유해미·최효미·강신혜, 2017: 98). 또한 같은 연구에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의 예산 중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투자 비중은 공통사업의 경우는 66.8%(유해미·최효미·강신혜, 2017: 116), 자체사업에서는 6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유해미·최효미·강신혜, 2017: 121).⁴³⁾ 뿐만아니라 2019년 국고지원 보육예산 중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차지하

43) 해당 자료는 2016년 기준 지방정부 예산은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재분석한 결과(유해미·최효미·강신혜, 2017: 121)를 재인용함.

는 비중은 각각 60.1%와 15.7%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보건복지부, 2018).

이 같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와 가정양육수당의 보편적 지원은 그 방향성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되나, 사회적 격차 해소 측면에서 빈곤가구 영유아의 결핍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빈곤한 아동의 사회적 배제 및 박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외에도 주거, 영양관리 및 건강, 놀이체험 및 문화생활 등 놀이권 보장, 그리고 가정환경(부모와의 관계, 교육환경 조성 등)과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제적 여건으로 일상적인 박탈을 경험하는 빈곤가구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지원되는 아동수당 급여가 곧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투입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이 연구의 양육환경의 충족도(표 V-1-36 참조)는 전(全) 부문에 걸쳐 법정빈곤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며, 특히 주거공간 및 실내외 환경과 놀이 체험 및 문화활동의 경우는 평균 각각 3.2점과 3.0점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2013년부터 재정투자가 집중된 0~5세아 보편적 보육·교육서비스 부문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1년간 보육·교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는 23.1%로, 비수급가구 12.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표 V-1-5 참조).

그러므로 보편적 비용지원 하에서도 결핍을 경험하는 법정수급가구의 영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각 빈곤요소별로 결핍을 경험하는 비수급가구를 지원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나. 빈곤가구 영유아의 양육 및 수요 특성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그 수요도 높게 나타나며, 가정양육수당 수급을 위해 어린이집의 입소 시기가 늦추고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영아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긴급보육 시 돌봄지원에의 요구가 높고, 양육비 지원과 유모차 대여 등 현물지원에의 수요가 비빈곤가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1) 양육 특성

빈곤가구는 돌봄지원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제한된 서비스 이용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는 주로 어린이집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그 수요도 비 빈곤가구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단적으로 아동연령별 수요에서 0세아와 5세아 모두에서 어린이집 선호가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수요와는 차이를 보였다. 즉 영유아 가구 일반은 0~1세아의 경우 부모직접 돌봄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고, 4세아 이후로는 유치원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이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빈곤가구의 경우 기관 미이용 비율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즉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기관 미이용률은 35.1%로 전체가구 28.5%에 비해 높고, 영아 자녀의 경우 49.8%, 0세 자녀의 경우는 82.2%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는 36개월 이후에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35.8%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 26.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연동하여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최초 기관 이용 시기를 늦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가구의 8.1%에 불과하나, 해당 비율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21.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 23.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에서 양육되는 빈곤가구 영아들의 결핍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법정빈곤가구인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가 지난 1주일 동안 하루에 30분 이상 집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형제 및 자녀만 지낸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0.9%와 18.5%로, 전체 영유아 가구 13.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가족(한부모+자녀)에서 아동이 방치된 비율이 각각 19.8%와 30.3%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가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그 밖에도 돌봄 공백의 해소 측면에서 긴급 시 자녀 봐주기 등의 도움은 받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월평균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23.4%에 불과하므로 긴급돌봄 시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도 추가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수요 특성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자녀양육 시의 어려움은 양육비용 부담이 평균 4.2점(5

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음(3.9점), 긴급할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음(3.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에 자녀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아 자녀, 특히 0~1세아를 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빈곤가구의 육아지원 요구는 돌봄시간 지원에 비해 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나며, 영유아 전(全)연령에 걸쳐 어린이집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아는 휴직제도, 4세 이후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 밖에도 빈곤가구는 유모차 대여와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 정도를 비빈곤가구에 비해 높게 인식하므로, 이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문은 전반적으로는 여가 및 문화생활이나, 빈곤가구의 경우는 비수급가구에 비해 이사 및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놀이 및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아동빈곤 실태를 진단하여 빈곤가구의 고유한 고충을 파악함은 물론, 빈곤가구의 수요가 비빈곤가구와 차별화된 지점을 포착하고,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결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가. 기본 방향

1)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영역 확장 1: 주거지원과 문화지원의 포괄

빈곤가구 영유아 대상의 양육지원 내용으로 주거지원과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지원으로는 범위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돌봄서비스, 육아휴

직제도 등 자녀돌봄 시간지원이나, 빈곤가구 영유아의 경우는 다양한 차원의 결핍을 경험하므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양육지원의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은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일차적으로 포괄될 필요가 있다. 빈곤가구의 특성상 월세 등 거주비에 소요되는 지출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곧 아동의 성장에 요구되는 이외 영역들에 결핍을 초래할 우려를 내포하므로 주거지원은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이때 주거지원에는 안정된 주택 공급 이외에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적합한 주거공간 및 실내외 환경 조성이 포괄한다.

이에 더하여 적절한 영양 섭취를 포함한 영양 및 건강관리와 안전하고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문화적 지원(놀이 체험 및 문화생활 등 지원)’도 빈곤가구의 양육지원에 포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환경 측면에서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양육친화적인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문으로는 여가 및 문화생활이 전반적으로는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해당 비율도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영화 및 공연 관람 37.5%로 가장 높고, 박물관 등 관람은 29.6%, 여행 18.3%에 달하였다. 뿐만아니라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해 소요되는 월 평균 비용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는 169,000원에 그쳤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129,000원에 불과하였으며, 25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적 지원의 경우는 법정 빈곤가구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상향 조정도 요구된다.

2)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영역 확장 2: 가족관계 등 양육환경 개선 포괄

빈곤가구 영유아 대상의 양육지원 내용으로 가족관계 증진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평등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

하고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고 응답한 비율(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이 월 평균 가구소득이 801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47.5%였으나,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 해당 비율은 22.1%에 그쳤다.

이러한 인식은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빈곤가구에 대한 평등한 부부관계를 추구하고,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을 종전 가족형태별 즉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위주에서 일반 빈곤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취약계층 가족지원 대상으로 빈곤가구를 명시하여 부모교육과 가족관계 증진 관련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를 둔 가구에서 이용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가족관계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을 통합서비스 지원에 명시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하다. 즉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내용은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교육, 건강증진서비스, 2) 아동의 기초 학습 및 사회성 정서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지도 등으로 제시되는데, 이에 더하여 ‘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관계 증진’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3)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대상: 빈곤요소별 대응을 위한 비수급 빈곤가구로의 지원 확대

빈곤가구 영유아의 범위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법정 빈곤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의 측면에서 각 요소별로 평균 대비 낮은 충족도를 보이는 비수급 가구로 그 지원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세부지원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교재교구비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경우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못한 가구의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유모차 대여와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의 경우는 각각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하와 40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해당 지원의

상향조정을 검토할만하다.

나아가 빈곤아동의 적용기준은 현행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에 한정하지 말고,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이 조화롭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4)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 수준: 다자녀가족 + 한부모가족 + 맞벌이가구 + 읍면지역 거주 가구의 우선 또는 추가지원

영유아 빈곤가구 중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구, 그리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빈곤에 의한 양육시의 어려움 이외에도 가구특성으로 인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최상의 양육을 제공한다는 평가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은 평가를 보이며, 긴급 시 돌봄의 어려움은 한부모가족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돌봄시간 부족 등은 맞벌이 가구와 전일제근로 가구에서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문화시설 및 체험시설과 의료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빈곤가구의 양육실태를 파악할 때 이들 변수에 주목하고,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우선지원과 추가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히 자녀수가 많고, 한부모가족인 경우에서 자녀양육 시에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인되므로, 자녀수가 반영된 비용지원 체계의 마련과 한부모가족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내용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와 전일제 근로가구의 경우는 돌봄 수요의 측면에서 어린이집 의존도 및 선호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한 통합지원 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보육과 시간연장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고, 긴급돌봄을 위한 지원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5)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 방식: 현금 + 서비스 지원의 균형

영유아기의 양육지원 방식은 일반적으로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균형을 이루며, 이때 현금지원에는 아동수당 이외에도 휴직급여가 포함되나, 빈곤가구의 경우는 휴직제도 등 자녀돌봄 시간지원에 비해 서비스 지원 수요가 두드러지며, 현금과 현물지원에의 요구도 비빈곤가구에 비해 높으므로 서비스와 현금지원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우선 OECD 국가들에서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 재정투자 비중은 대체로 서비스와 현금지원이 절반 정도의 비중으로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금지원을 점차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빈곤가구의 경우는 양육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비빈곤가구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향후 아동수당은 지원대상 연령 확대에 이어 보편적 수당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수당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는 가정양육수당이 빈곤가구에서 해당 수급을 위해 자녀의 기관이용을 늦추는 현상이 일부 확인되므로, 적절한 기관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를 폐지하고 아동수당제도와 통합하여 소득기준이 적용된 부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육아지원 수요에서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현물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므로 유모차 등 고가에 해당하는 육아용품 대여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 등의 지원기준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지원방식에서 영아의 특성과 거주지역 등을 감안하여 기관서비스 이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사례에 의하면, 읍면지역의 경우는 대상아동 규모가 적으나, 거주지역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거점기관만으로는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여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기본 원칙 및 기반 조성

1) 빈곤가구 양육실태 조사 실시와 양육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빈곤가구 영유아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그 실태 및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2011년에 제정된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빈곤아동 대상의 실태조사는 실시된 바가 없으며, 기본계획도 아직 미수립 되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한 빈곤아동에 대한 부가조사가 실시된 바가 없다. 결국 영유아 대상의 양육지원이 보편적 비용지원에 주력하는 동안, 빈곤아동이 처한 상대적 결핍의 문제는 간과된 셈이다. 이는 현 정부 들어 보완 및 수정된 양육지원 관련 각종 기본 계획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동 계획들은 그 기조로서 사회적 배제와 격차 해소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나, 세부 정책과제의 대상으로 빈곤가구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올해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도 보편적 아동복지의 확장을 강조하고, 모든 아동이 배제되지 않고,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고자 건강 및 의료지원의 보편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아동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아동의 놀이권이 강조되는 듯 진일보한 측면이 확인되나, 빈곤아동 등 박탈을 경험하는 아동에 대한 세부과제는 미흡하다. 또한 2018년 8월에 발표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판’에서는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에서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을 추구하나,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주목하여 그 정책 대상으로 빈곤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관계부처 합동, 2018: 5).

한편 일본에서는 아동빈곤을 감소와 아동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에 「아동의 빈곤대책을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아동의 빈곤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의 빈곤대책에 관한 대강의 제정 의무⁴⁴⁾가 부여되었고, 도도부현에는 아동의 빈곤대책 계획 책정 노력의무가 부과되었다(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5%AD%90%E3%81%A9%E3%82%82%E3%81%AE%E8%B2%A7%E5%9B%B0>, 2019. 11. 10. 인출).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모든 광역단체에서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일본 내각부, https://www8.cao.go.jp/kodomonohinkon/keikaku/sakutei_city.html, 2019. 11. 10. 인출). 또한 동법 제7조에 의하면, 매년 아동의 빈곤 실태 및 아동의 빈곤대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4)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러므로 실질적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이외에도 빈곤가구의 양육실태를 점검하여 빈곤아동이 처한 결핍을 진단하고, 빈곤가구의 특성별 욕구에 대응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유관 주요계획의 주요 대상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의 주된 대상으로 포함하여 세부 개선과제를 마련하거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맞벌이 가구와 더불어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와 같이 아동의 빈곤 실태와 해당 대책의 추진 상황을 매년 공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서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등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실태조사에는 빈곤아동의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의 실시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통합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지원으로는 아동에 보다 집중하는 아동통합지원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이외에도 가족을 포괄하는 취약위기가족돌봄 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그 취지가 일부 상이하고, 핵심 대상도 아동과 가족 전반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앞서 기본 방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빈곤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이 양육환경 전반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족을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다차원적 결핍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중복과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이들 사업간의 총괄 및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와 관할부서가 모두 상이하므로 이들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그리고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취약위기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가

족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에 의거한다. 따라서 그 취지와 목적도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나,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약위기돌봄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긴급 및 위기가족이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의 경우는 자활이 필요한 가구이므로 그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원내용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등이 공통적으로 제공되며, 취약위기돌봄 지원사업의 경우는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학습도우미 및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2. 인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1가구당 생활지원비, 의료비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최대 50만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도 지원된다. 이들 지원은 앞서 확인된 빈곤가구의 다양한 결핍과 관련이 있으므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경우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유관 사업들과의 연계 및 협력을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필요시 사업 평가 등에서도 반영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들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협의기구의 내실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빈곤아동의 다양한 결핍을 해소하고, 지원대상으로 비수급 일반 빈곤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에 사각지대에 처한 아동에 대한 발굴과 활용 가능한 아동 및 가족관련 서비스 기관(공공/민간)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연계 및 협력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기구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위 분과 방식으로 운영하여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전국 지역에 분포된 드림스타트 센터에 기반하여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기구의 운영 방식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지역내

아동 및 가족 관련 자원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는 서비스 기관들간의 협력기구 이외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간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아동복지협의가구에 지역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민관의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강화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아동빈곤의 요소를 문화적 영역까지 확장하고 통합적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에서는 아동빈곤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의 연계 및 협력 프로젝트로서 ‘아동의 미래응원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그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지원과 정보 홍보, 지원활동 단체와 기업 등과의 매칭 추진, 그리고 민간 자금을 활용한 ‘아동의 미래응원 기금’에 의한 풀뿌리 지원을 하는 NPO 지원이 포함된다(일본 내각부,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r01honpen/s3_2.html, 2019, 11. 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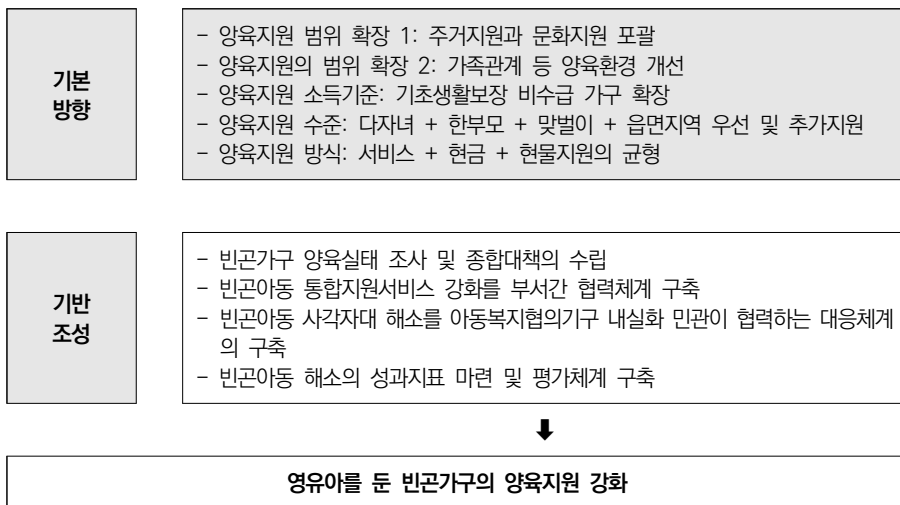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4년에 출범한 사단법인 위스타트 등과의 연계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여 비수급 빈곤가구에 대한 통합적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지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협력 사업 등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민간 부문의 사업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민간 부문에서 그 성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는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공공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한다.

5)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의 성과 진단 체계 구축

빈곤가정 영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결핍의 해소는 지속적인 진단을 요하므로 이를 매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빈곤아동의 결핍은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하나, 가족관계 등이 포괄한 양육환경 전반의 개선은 그 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우나,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그 영향이 지대하므

로 빈곤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성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 빈곤 지표의 개선 정도는 물론, 가구특성별로 상대적으로 결핍된 항목을 파악하여 그 개선 효과를 파악하는 등 아동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그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 체계로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실효성 제고가 요구된다.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구의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3항에서와 같이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2-1]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 양육지원 강화의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



자료: 본 연구진 작성

3. 세부 영역별 양육지원 강화 방안

앞서 제시한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방향을 토대로 양육지원 영역별 세부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돌봄서비스

빈곤가구의 어린이집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때 특히 영아와 0~1세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1) 영아보육의 접근성 제고: 어린이집 우선순위 배점 상향 조정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평균 4.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빈곤가구는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부족하며, 8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과 6시 이후에 하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관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다.

이처럼 빈곤가구는 어린이집을 통한 자녀돌봄이 주를 이루므로, 이들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어린이집 우선순위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은 모두 1순위자로 규정되나, 맞벌이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는 200점을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우선입소가 가능하므로, 3자녀 이상 가구 대신에 저소득층가구에게 200점을 부여하여,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와 더불어 영아를 둔 빈곤가구가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특별활동비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 부담이 야기되므로 빈곤가구의 필요경비 완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보편적 지원으로 관련 지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유아 보육·교육비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비빈곤가구에 비해 관련 지출의 어려움이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표 V-1-6 참조).

따라서 법정수급가구의 경우는 특별활동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

안이 요구된다.

3) 임대주택 단지내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시간연장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빈곤가구는 비정형적인 근로시간대에 일하는 부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간연장형보육의 이용율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높고, 그 도움 정도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연장형보육 어린이집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경우는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이 야기될 우려가 높다. 빈곤가구에서 영유아 자녀가 지난 1주일 동안 하루에 30분 이상 집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형제 및 자녀만 지낸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로 전체 영유아가구에 13.9%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시간연장형 보육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는 육아와 주거 안전망으로 양육친화적 환경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적 육아 및 돌봄 서비스 시설 도입 프로세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즉 건설형 장기공공임대단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설을 설치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협업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도입 시에 후보지 선정 시과 사업 승인 과정에 돌봄서비스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협의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즉 후보지 선정 시에 관련 기관의 협의 내용을 한국토지공사에 전달하고, 사업 승인시에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협의한 사항을 한국토지공사에 전달하여 착공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을 마련한다. 또한 이때 해당 단지의 시간연장형 국공립어린이집 등 돌봄서비스 기관의 설치에 공사비의 상승과 입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에 시간연장형보육 국공립어린이집 등 돌봄서비스 기관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되, 이때 시간연장형보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긴급돌봄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빈곤가구는 전반적으로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 정도가 낮은 가운데, 긴급 시의 자녀돌봄도 평균 2.9점에 그쳤다. 긴급 시 자녀 봐주기 등의 도움은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여, 도움을 받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23.4%에 불과하며, 35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에 비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되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할 시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는 한부모가족(한부모+자녀)에서 평균 4.0점(5점 만점)으로 평균에 비해 높았다.

현재 긴급돌봄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내 초등방과후 돌봄기관의 경우에도 긴급 시에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기관 미이용 아동의 양육실태 점검 및 지역사회 육아지원 접근성 제고

빈곤가구에서는 36개월 이후에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35.8%로 전체 평균 26.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자녀의 기관 이용 시기를 늦추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므로 특히 이들 가구의 영아들이 잘 양육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내 양육하는 빈곤가구의 경우는 지원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고립된 육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되므로 가정내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내에서 양육되는 영아를 위주로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아직 접근성이 낮은 수준이므로, 시간제보육과 부모 카페 등은 분소를 설치하여 접근성이 제고하되, 문화센터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빈곤가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나. 영양 및 건강관리

1) 영유아 건강검진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취학전 아동의 건강증진과 조기개입 등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지원대상 가구이나 고립된 육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해당 가구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식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은 그 활용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급여 수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식품들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의 확대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은 보편적 수요를 보이므로 그 지원대상 기준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의 경우도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에 머물고 있으므로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한다.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한하므로 소득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은 중위소득 80%로 그 포괄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수준을 점차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 주거지원

주거지원에 대한 수요는 영유아를 둔 가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지 않은 빈곤가구의 경우는 가장 시급한 요구로 파악되며, 자녀 수가 많은 경우 그 욕구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전반에서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자녀 수를 반영한 입주자격의 개선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빈곤가구에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지원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이나, 그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만하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양육에 적절한 주거공간 및 위생적인 실내외환경에서 평균보다 낮은 충족도를 보였다. 따라서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인 중위소득 4분위 이하 기준은 상향 조정한다.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격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 밖에도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나, 행목주택이나 장기전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금리우대 조치를 도입한다.

다른 한편 빈곤가구의 경우 안정적인 거주가 확보된 경우에도 개보수 비용 등에는 목돈이 필요하므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간 부문과 연계하여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때 자녀 수가 많은 경우는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거공간의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모색한다. 2004년에 출범한 사단법인 위스타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해당 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하여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만하다.

라. 놀이 및 문화생활 지원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은 단지 아동의 놀이권 보장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부모 1, 3, 5의 경험에서와 같이 빈곤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의욕 등도 제고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그 지원대상 및 수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는 여행과 문화활동 등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문으로는 여가 및 문화생활이 43.1%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자녀에게 제공되므로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만 3세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인

당 지원되는 8만원도 상향 조정하되, 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연령을 반영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아동 연령에 맞게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여 활용처의 제약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 정되나, 그 결핍의 수준이 월가구소득 5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포괄되므로 그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한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전국적으로 109개소에 그치므로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 드림스타드 사업의 영유아 중점지원과 지방정부 사업 연계 모색

1) 영유아 통합지원사업의 확대

빈곤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강화를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유아기는 부모 및 가족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가족을 포괄한 육아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행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지원서비스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그 비중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학령기 아동이며, 영아는 2.2%(3,375명), 유아는 14.9%(22,352명)에 그치므로 지원대상으로 영유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영아에 대한 통합지원은 미국이나 영국 사례에서와 같이 조기개입의 효과 측면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드림스타트는 직접 서비스 지원보다는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으로 가정방문 등 서비스 지원이 강조되는 영유아 대상의 사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을 고안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만하다. 즉 영아기 또는 영유아기에 집중하는 영유아 통합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지원 수준 등을 학령기 아동과 구분하여 사업을 설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특히 내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의 재원이 국고와 지방비로 구성되고,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별도 사업의 추진없이 영유아 대상의 통합지원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2) 지역 및 아동 특성을 고려한 운영비 차등지원

지역특성과 대상아동 구성 비중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요구된다. 특히 즉영유아가 밀집된 지역에서 분소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소별로 추가 운영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운영비 지원규모의 지역적 형평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분소 설치 가능 개소의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대상아동 규모가 적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로 운영하는 경우는 운영비를 추가로 책정하며, 읍면지역에서는 차량운행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사업과의 역할 분담과 연계

지원대상은 법정 빈곤가구 이외에도 비수급 일반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다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정 빈곤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25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보육교육비, 300만원 이하에서는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못한 경험을 지닌 가구의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드림스타트의 지원대상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 한정하지 말고 아동통합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을 보다 확장하여 비수급 일반가구를 포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청주시의 경우와 같이 지방정부의 영유아 대상 통합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드림스타트 사업과의 차별화를 기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4) 어린이집과의 서비스 연계 강화

빈곤가구는 유치원의 선호도가 낮아 영유아 전연령대에 걸쳐 어린이집의 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영유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빈곤아동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전반에서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복지협의가구에 어린이집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기구에서 어린이집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되, 대상아동 발굴 등을 위해 해당 교육은 연초에 실시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 기관에 드림스타트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의 재교육 내용에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과 협력사항에 관한 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린이집을 통한 통합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빈곤아동에 대한 낙인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아동발달 진단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아 평가를 통해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드림스타트 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각 어린이집에 공지한다.

바. 기타

1) 육아용품 대여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법정빈곤가구의 경우는 가정내 환경으로 교재교구 구비 수준에 대해 아이 연령 및 발달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항목에서 모두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은 평가를 나타냈다. 또한 유모차 대여와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의 경우는 각각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하와 400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요를 보였다.

따라서 특히 고가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대여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부모 2와 4는 공통적으로 대여 서비스가 필요하나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너무 멀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빈곤가구는 차량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분소 등의 확충을 통해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고

빈곤가구는 양육환경 전반에서 비빈곤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

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가구는 비 빈곤가구에 비해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고, 가족간에 상호 존중하고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격려하며,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가구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부모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평등한 부부관계 등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양육지원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이 반드시 포괄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의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빈곤가구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자녀양육 시에 상대방 배우자는 물론 친인척 등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보다 크고, 자녀 출산 과정에 이르기 까지 겪은 상처 등으로 정신적 우울감도 지니고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등이 요구된다.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고 응답한 비율(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18.2%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가구가 드림스타드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육아정보의 접근성 제고

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육아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육아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육아지원 정보의 제공 방식으로는 관련 책자를 자택으로 송부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이는 특히 0~1세아를 둔 가구에서 더욱 높은 수요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2세아 이상에서는 어린이집 등 기관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것을 선호하였었다. 그 밖에도 법정 빈곤가구와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전화를 통한 문의를 선호하는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내 출생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당해연도 기준의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필요시는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법정 빈곤가구는 주민센터의 공무원에서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 등에게 해당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강화

빈곤가구는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특히 미혼모 등은 자녀출산 과정에서 경험한 우울감 등으로 이웃 및 지역사회와 고립된 상태에 처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양육 시 어려움이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 가구는 지역사회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 부모 11에서와 같이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는 이들 가구에서 취약한 긴급돌봄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부모 1과 같이 한부모가족인 경우는 자조모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여 부모 역량의 제고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특히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등으로 빈곤가구의 고립된 육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녀돌봄의 지원 인력이 부족한 빈곤가구에 이웃간 품앗이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판’에서는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을 위해 읍면동 마을 생활권 단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유휴공간을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21). 공동육아나눔터가 일반 아파트 단지 위주로 설치되지 않고, 임대아파트와 빈곤가구가 밀집한 연립주택 단지 등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유휴공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취업부모를 위한 긴급돌봄과 저녁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후 6시 이후에 운영할 시는 추가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참고문헌

- 강한나·박혜원(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6), 613-622.
- 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센터(2019. 8. 13). 수원지역 담당인력 면담자료.
-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 관계부처합동(2018).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
- 관계부처합동(2019a).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2016~2020) 2019년 시행계획.
- 관계부처합동(2019b). 포용국가 아동정책.
-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예산서.
- 김미숙·배화옥(2006). 빈곤아동을 위한 미국 Head Start와 영국 Sure Start 고찰. 국제사회보장동향, 1(4), 129-137.
- 김미숙·조애저·배화옥·김효진·홍미(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정익중(2017).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사회복지학, 69(3), 9-33.
- 김은주(2015). 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아동빈곤: 새로운 지표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사회정책, 22(3), 105-137.
- 김효진(2008).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분석. 보건복지포럼, 139, 33-42.
- 대한민국정부(2019). 2019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 류정희·이상정·전진아·박세경·여유진·이주연·김지민·송현중·유민상·이봉주(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함영진·전진아·이주연·김은지(2017). 행정자료를 활용한 빈곤아동통계 개발방안 연구.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9a).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보건복지부(2019b).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
- 보건복지부(2019c).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2019d). 보도자료: 아이들이 차별없는 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보고대회 개최한다(2019. 6. 4).
- 보건복지부(2019e).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f).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9g). 2019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h).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i).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
- 보건복지부(2019j).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k). 2019년 건강검진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l). 201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m). 2019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 보건복지부(2019n).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2018).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2019).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4권, 에너지 자원실).
-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2019).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2019. 5. 27). 사업담당자 면담자료.
-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2018). 사업성과 보고서.
-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2019. 6. 5). 사업담당자 면담자료.
- 여성가족부(2018). 내부자료: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 여성가족부(2019a).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여성가족부(2019b).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9c). 2019년 가족사업안내_2권.
- 여유진·김미곤·정은희·이주미·정희선·권지성·김광혁·김은지·조준용·황정미

- (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김미곤·류정희·정은희·강지원·정희선·김명중·우명숙·이원익·조준용
(2017).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2018).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9, 25-39.
- 오정운(2016). 빈곤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육서비스 질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영(2016). 빈곤아동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아동빈곤예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7(1), 3-25.
- 이봉주(2013). 시소와그네 사업의 성과와 영유아 복지의 발전 방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1-134.
- 이봉주·홍현미라·장혜림(2010).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상균(2017). 드림스타트, 지난 10년의 성장과 향후 10년을 위한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59, 115-150.
- 이상록·조은미(2016). 아동 보육 지원의 확충과 소득계층간 양육 불평등: 2009년도 아이사랑 플랜 도입 전후에의 아동양육비 결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1), 141-169.
- 이연정·반건호·이소영·김봉석·방수영·손석한·양재원·이소희·정운선·정유숙·홍민하·황준원(2015). 영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및 한국의 유사정책 현황: Sure Start Children's Centres와 Dream Start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1), 12-21.
- 이현주·정은희·이병희·주영선(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화진(2013).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사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35-159.
- 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센터(2019. 9. 16). 사업담당자 면담자료.

- 정은희(2014).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37호. 1-8.
- 정익중·민성혜·박은미·신혜원·전혜정(2013). 빈곤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서울: 집문당.
- 청주시(2019). 제4기(2019-2022년) 청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요약본.
- 통계청(2019).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따른 마이크로데이터 변경사항.
- 통계청(각 년도). 가계동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 허선(2016).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기초보장 사각지대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33, 19-30.
- 한국보육진흥원(2015). 2015년도 드림스타트 국외연수결과보고서.
- 한국보육진흥원(2018). 2018년도 드림스타트 국외연수결과보고서.
- Audit Commission (2010). Giving Children a Healthy Start: Health Report, London: Audit Commission.
- Bailey, M. J., Sun, S., & Timpe, B. (2018). Prep School for Poor Kids: The Long-Run Impacts of Head Start on Human Capital and Economic Self-Sufficiency. MI: University of Michigan.
- Bate, A., & Foster, D. (2017). Sure Start (England) Briefing Paper Number 7257. London: House of Commons Library.
- BMAS (2019). Soziale Sicherung im Überblick 2019. Bonn: BMAS.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6). Best Start Policy and Guidelines. Melbourne: Author.
- Barnett, W. S. (1995).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hood programs on cognitive and school outcomes, *The Future of Children*, 5(3), 25~50.
- Devaney, B. L., Ellwood, M. R., & Love, J. M. (1997). Programs that mitigate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88~112.
- Garces, E., Thomas, D., & Currie, J. (2002). Longer-Term Effects of

- Head Star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999~1012.
- HM Government (2012). Measuring Child Poverty: A consultation on better measures of child poverty. London: TSO.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0). Head Start Impact Study. Final Report. Washington, DC.
- Reynolds, A. J., Temple, J. A., Ou, S. R., Robertson, D. L., Mersky, J. P., Topitzes, J. W., & Niles, M. D. (2007). Effects of a school-based,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on adult health and well-being: A 19-year follow-up of low-income familie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1(8), 730-739.
- Reynolds, A. J., Temple, J. A., Robertson, D. L., & Mann, E. A. (2001). Long-term effects of a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on educational achievement and juvenile arrest: A 15-year follow-up of low-income children in public school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18), 2339-2346.
- Smith, G., Sylva, K., Smith, T., Sammons, P. & Omonigho, A. (2018). Stop Start: Survival, decline or closure? Children's centres in England, 2018. London: The Sutton Trust.
-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spectorate (2018). Sure Start Evaluation Report. Bangor: Author.
- UNICEF (2007). Global study on child poverty and disparities 2007~2008 guide. New York: UNICEF Global Policy Section, Division of Policy and Planning.

【참고 사이트】

- 교육부 홈페이지, 우리아이와 함께 잘 사는 2019 교육예산 인포그래픽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7625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201&opType=N> (2019. 4. 22. 인출)
- 경기 수원시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suwon/contents/sub01_01_01.asp,
(2019. 10. 13. 인출).

https://www.dreamstart.go.kr/suwon/contents/sub01_01_03.asp,
(2019. 10. 13. 인출).

https://www.dreamstart.go.kr/suwon/contents/sub01_02_01.asp,
(2019. 10. 13.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2019. 6. 15. 인출).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go.kr> (2019. 4. 30 인출).

http://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1_01.asp (2019. 4. 30. 인출).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3_01.asp (2019. 5. 1. 인출).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5_05.asp (2019. 10. 13.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8. 11. 22 기사). 아동수당 3개월간 221만명 혜택…신청아동 92%에 지급.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730&call_from=naver_news%C2%A0 (2019. 4. 8. 인출).

문화누리, <http://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 (2019. 4. 22. 인출).

미국 기획평가차관실 홈페이지(사이트명: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https://aspe.hhs.gov/2019-poverty-guidelines> (2019. 10. 6. 인출).

미국 아동가족국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about/offices> (2019. 10. 4. 인출).

미국 아동 복지·다양성·기회 및 평등 상태 모니터링 통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사이트명: diversitydatakids.org),

<http://www.diversitydatakids.org/files/Policy/Head%20Start/Logic/Head%20Start%20Basic%20Definitions.pdf> (2019. 9. 30.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3. 9. 인출, 2019. 6. 14. 인출).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41 (2019. 4. 22. 인출).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https://www.forestcard.or.kr/intro/useUtilize.do?menuId=1110100>
 (2019. 4. 22. 인출).
-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대표 블로그,
https://blog.naver.com/sb7c_ (2019. 6. 6. 인출).
-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 홈페이지,
<http://www.cjssw.co.kr> (2019. 6. 15. 인출).
- 여성가족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양육 분야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43.do (2019. 6. 5. 인출).
-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5%AD%90%E3%81%A9%E3%82%82%E3%81%AE%E8%B2%A7%E5%9B%B0> (2019. 11. 10. 인출).
- 일본 내각부,
https://www8.cao.go.jp/kodomonohinkon/keikaku/sakutei_city.html,
 (2019. 11. 10. 인출).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r01honpen/s3_2.html
 (2019. 11. 10. 인출).
- 전북 완주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1_01.asp,
 (2019. 10. 10. 인출).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1_02.asp,
 (2019. 10. 10. 인출).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2_01.asp,
 (2019. 10. 10. 인출).
https://www.dreamstart.go.kr/wanju/contents/sub01_03_03.asp,
 (2019. 10. 10. 인출).
-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http://www.cjwelfare.net> (2019. 7. 4. 인출).
- 통계청.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http://kosis.kr> (2019. 5. 10. 인출).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http://kosis.kr> (2019. 5. 10. 인출).

헤드 스타트 ECLKC 홈페이지(사이트명: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

<https://eclkc.ohs.acf.hhs.gov/policy/45-cfr-chap-xiii/1302-14-selection-process> (2019. 9. 30. 인출).

<https://eclkc.ohs.acf.hhs.gov/about-us/article/about-office-head-start> (2019. 10. 5. 인출).

Office of Head Start 홈페이지,

<https://www.acf.hhs.gov/ohs/about/history-of-head-start> (2019. 6. 27. 인출).

<https://www.acf.hhs.gov/ohs/about/head-start> (2019. 9. 30. 인출)

<https://www.acf.hhs.gov/about/offices> (2019. 10. 4. 인출)

Office of Head Start (2015).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5.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head-start-fact-sheet-fy-2015.pdf> (2019. 7. 27. 인출).

Office of Head Start (2017).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7.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hs-program-fact-sheet-2017_0.pdf (2019. 6. 27. 인출).

Office of Head Start (2018). Head Start Program Facts: Fiscal Year 2018.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hs-program-fact-sheet-2018.pdf> (2019. 6. 27. 인출).

Prowse, M. (2008). The Experience of Sure Start in England.

<https://www.odi.org/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4553.pdf> (2019. 7. 29. 인출).

The Guardian (2019. 6. 4 기사). Sure Start programme saved the NHS millions of pounds, study find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un/04/sure-start-saved-nhs-millions> (2019. 7. 29. 인출).

【참고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4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너지법」

「의료급여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Support for Infants in Poverty Households to narrow the Social Gap(I) : analysis about parenting status of infants in poverty households

Haemi Yoo, Eun Jung Park, Eun Hee Joung, Jiwon Eom

Although universal welfare seeks to guarantee the equal development and growth opportunities regardless of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child grows, additional support needs to be sought for the multidimensional deficit of infants in poor households. This research surveyed the rearing status of infants and toddlers in poor families, diagnosed the deficiency level of these children and sought ways to strengthen parenting support to reduce the social gap.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surveyed the parenting status and needs of 1,606 cases of poor and non-poor households with infants. This research also analyzed sev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to strengthen the integrated suppor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main result is that for poor households, they have an average of 3.2 points and 3.0 points, respectively, especially in 'residential&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and 'playing experiences and cultural activities.' in terms of satisfying the nurturing environment, Moreover, poor households have higher parenting stress than non-poor households.

In terms of the difficulty in raising children for poor households, the average cost of raising children is the highest at 4.2 points (out of 5 points), followed by the absence of facility to leave the child (Mean 3.9 points) and the absence of supporter to see the child in an emergency

(average 3.8 points). Generally, Poor households have a high dependency on daycare center and demand for this is also high. At the same time, the proportion of infants raised in the home is also high, delaying the entry of daycare centers for taking domestic childcare benefit. In terms of the desired sectors to invest in raising children when economic conditions improve, leisure and cultural life sector were the highest with 48.1 percent, followed by the house movement sector with 19.5 percent.

The basic way of childcare support for infants and poor households includes the residential support, cultural support and the improvement of the parenting environment like family relations. As the basis for these, conducting a survey on the upbringing situation of poor households and establishing detailed plans for child support are required. As the detailed tasks, increasing the portion of infants and children in the Dream Start project, providing differential support considering regio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dividing and linking roles with local government projects to resolve blind spots and strengthening the service link among daycare centers are required. In addition, the age limit for integrated culture usage ticket should be lowered to three years old. The benefit of 80,000 won per person should also be raised. In terms of the care service sector, this research proposed making installation of time-extended state-run children's homes in rental housing complexes Mandatory and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of services for emergency care.

Keyword: Child poverty, Parenting Status, Infant Care Support



부록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모용

영유아를 둔 가구의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영유아를 둔 가구의 양육실태 및 애로사항과 육아지원의 만족도 및 요구를 조사하여, 모든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선문1~선문7)

선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
☐ ② 여

선문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1. 만 ()세

선문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1. ()시/도
2. ()시/구
3. ()군

선문4.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 조사중단

선문4-1. 귀하의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1. 총 자녀 수 ()명

선문4-2. 귀하는 **영유아 자녀(만 0~5세아 / 취학전 아동)를 1명 이상** 두고 있습니까?

- ☐ ① 예 ☞ 선문5
☐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선문4-3. 귀하의 막내자녀는 만으로 몇세입니까?

- ☐ ① 만 0세(0~12개월 미만)
☐ ② 만 1세(12개월~24개월 미만)
☐ ③ 만 2세(24개월~36개월 미만)
☐ ④ 만 3세
☐ ⑤ 만 4세
☐ ⑥ 만 5세

선문5.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 ① 100만원 이하
- ☐ ② 101~150만원
- ☐ ③ 151~200만원
- ☐ ④ 201~250만원
- ☐ ⑤ 251~300만원
- ☐ ⑥ 301~350만원
- ☐ ⑦ 351~400만원
- ☐ ⑧ 401~500만원
- ☐ ⑨ 501~600만원
- ☐ ⑩ 601~700만원
- ☐ ⑪ 701~800만원
- ☐ ⑫ 801만원 이상

선문6. 귀하의 가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까?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해당
- ☐ ② 차상위계층에 해당
-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아님

선문7. 귀 댁의 **가족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 ① 부부+자녀
- ☐ ② 한부모+자녀
- ☐ ③ 조부모+부부+자녀
- ☐ ④ 조부모+한부모+자녀
- ☐ ⑤ 기타(적어주세요:)

선문8. 귀하는 현재 취업 중이십니까?

- ☐ ① 예 (휴직 중 포함)
- ☐ ② 아니오

※ 다음 질문에 대해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I.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1.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감정이나 느낌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2. 나는 장점이 많다					
3.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4.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2. 다음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가족 특성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한다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한다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준다					
5. 우리 가족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3. 다음은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⑨ 해당 사항 없음
1.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2.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3. 우리 부부는 전반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다						
4. 우리 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						
5. 우리 부부는 평소 시에 다툼없이 잘 소통하는 편이다						

4. 귀하는 배우자 이외에 **다른 가족이나 이웃 등으로부터** 다음 항목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구분	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② 도움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	④ 도움 받는 편이다	⑤ 매우 도움을 받는다
1.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					
2. 대화 및 소통 등 정서적 도움					
3. 긴급 시 자녀 봐주기 등 돌봄지원					
4. 육아 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					

II.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 효능감

5. 다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인식**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					
2. 나는 아이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고 있다					
3. 나는 부모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4. 나는 좋은 부모로서 필요한 양육기술을 갖추고 있다					
5. 나는 아이를 일관되게 훈육할 수 있다					
6. 나는 아이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5-1. 귀하는 **부모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5-2번

☐ ② 아니오 ☞ 문 6번

5-2. 귀하가 수강한 **부모교육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어린이집
- ☐ ② 유치원
- ☐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 ☐ ④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⑤ 사회복지관
- ☐ ⑥ 문화센터
-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 다음은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2.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3. 자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4. 부모가 되는 것은 생각한 것 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5.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					

7. 다음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아이와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아이가 하는 놀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3.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4. 나는 자녀와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한다					
5. 나는 자녀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른다					

Ⅲ. 자녀 돌봄 실태 및 애로사항

8. 귀하와 배우자는 **주중과 주말**에 각각 자녀와 하루에 얼마나 놀아 줍니까? (없는 경우 “0”로 기입)

※ 한부모 가족인 경우는 본인 란에만 응답합니다.

구분	어머니	아버지
주중(월~금)	()시간 ()분	()시간 ()분
주말(또는 휴일)	()시간 ()분	()시간 ()분

9. 이 자녀는 지난 1주일 동안 하루에 30분 이상 집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형제 및 자매끼리만 지낸 경우가 있습니까?

- ☐ ① 예
- ☐ ② 아니오

10. 주중 낮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기관 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아버지
- ☐ ② 어머니
- ☐ ③ 어린이집
- ☐ ④ 유치원
- ☐ ⑤ 아이돌봄서비스
- ☐ ⑥ 조부모 및 친인척
-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0-1. 이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반일제 이상 기관)은 무엇입니까?

- ☐ ① 어린이집 ☞ 문 10-2, 10-3, 10-4번
- ☐ ② 유치원 ☞ 문 10-2, 10-3번
- ☐ ③ 학원(반일제 이상) ☞ 문 11번
- ☐ ④ 아이돌봄서비스 ☞ 문 10-5번
- ☐ ⑤ 현재 기관 이용하지 않음 ☞ 문 11번

10-2. 귀 자녀가 **최초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아니라, **최초기관 이용 시의 자녀 연령을 만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최초 기관이용 시 자녀 연령	만 () 세 () 개월 ※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개월로 응답합니다.
-----------------	---

10-2-1.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최초 기관 이용 시기를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 ☐ ② 아니오

10-3. 귀 자녀의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주중과 주말을 각각 표기하되, 주말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용 안함’을 선택합니다.

※ (예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는 7:30 ~ 19:30으로 표기합니다.

※ 등원은 집에서 출발한 시각, 하원은 집에 도착한 시각을 표기합니다.

구분	이용 여부	등원 시각	하원 시각
주중(월~금)		() 시 () 분	() 시 () 분
주말(또는 휴일)	① 주말 이용 ② 주말 이용 안함 → 문 10-3-1	() 시 () 분	() 시 () 분

10-3-1. 현재 서비스 이용시간은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되고 있습니까?

- ☐ ①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게 이용하고 있다
- ☐ ②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고 있다
- ☐ ③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더 길게 이용하고 있다

10-4. 귀 자녀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이나 휴일보육 등 정규 운영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 30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 문 10-4-1, 10-4-2, 10-4-3, 10-4-4번으로
- ☐ ② 아니오 ☞ 문 10-5번으로

- 10-4-1. 자녀는 각 서비스별로 현재 또는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0-4-2.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빈도는 어떠합니까?
 10-4-3.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10-4-4.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자녀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
 십니까?

구분		10-4-1. 이용 여부	10-4-2. 이용 빈도	10-4-3. 이용 만족도	10-4-4. 도움 정도
		① 현재 이용 중 ② 과거 이용 ☞ 10-4-2번 으로 ③ 이용한 적 없음 ☞ 11번으로	① 매일(주5일)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한 달에 2회 ⑤ 한 달에 1회 ☞ 10-4-3번 으로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10-4-4번 으로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 11번으로
1	시간연장보육 (19:30~24:00)				
2	야간보육 (19:30~다음날 7:30)				
3	24시간보육 (7:30~다음날 7:30)				
4	휴일보육 (토요일 제외 휴일)				

10-5. 귀하가 **현재 이용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 ☐ ①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② 시간제(일반형) 아이돌봄서비스
☐ ③ 시간제(종합형: 가사 추가) 돌봄서비스
☐ ④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⑤ 잘 모름

10-5-1. 귀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평일과 주말을 기준으로 각각 표기합니다.

주말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주중만 표기합니다.

※ (예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는 7:30 ~ 19:30으로 표기합니다.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주중	()시 ()분	()시 ()분
주말	()시 ()분	()시 ()분

11. 현재 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 또는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이외에 필요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예 문 11-1번으로

☐ ② 아니오 문 12번으로

11-1. 부모 또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외에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도움을 받는 사람을 모두 표기합니다(중복응답).

☐ ① 친조부모

☐ ② 외조부모

☐ ③ 이웃(주민)

☐ ④ 친인척(또는 형제/자매)

☐ ⑤ 복지 담당 공무원(동주민센터/시군구청 근무)

☐ ⑥ 복지관 등 담당자(사례관리사 등)

☐ ⑦ 기타(구체적으로:)

12.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다음의 어려움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5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해당 사항 없음
1. 양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2. 근로시간에 맞게 아이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						
3.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다						
4. 긴급할 때(자녀가 아픈 경우 등)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5. 아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						
6. 아이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IV. 경제활동과 소득 및 지출

13. 귀하의 **가정 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되십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지난 1년간** 귀댁에서는 다음 항목에서 돈을 빌려서 지출하거나 돈이 없어 지출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전세 보증금 등 주거용 목돈 지출					
2.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등 정기적인 지출					
3. 식료품비(식비/간식비) 총당					
4.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료)					
5. 자녀의 교재교구 및 놀이감 등 지출					
6. 자녀의 의료비 총당					
7. 여가 또는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					

15. 귀하는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 문 15-1, 15-2번으로
- ☐ ② 아니오

※ 다음 질문에 대해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15-1. 일을 그만둔 시기는 이 자녀가 몇 살 때였습니까?

※ 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직장을 2년 이상 그만둔 경우는 해당 시기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막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때의 자녀연령 ※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개월로 응답합니다.	첫 번째	만 () 세 () 개월
	두 번째	만 () 세 () 개월
	세 번째	만 () 세 () 개월

15-2. 경력단절 이후 현재 다시 일하고 계십니까?

※ 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2번 이상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장 최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 ① 이전 직장에 재취업함
- ☐ ② 이전과는 다른 직장에 취직함
- ☐ ③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음

V. 주거 및 지역 내 환경

16. 다음은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아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2. 실내에서 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17. 다음은 **귀하의 거주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하여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⑨ 잘 모름
1. 문화 및 체험시설(어린이도서관, 박물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2. 육아관련 관련 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3. 아동을 위한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4. 자녀와의 여가 및 놀이활동을 위한 놀이터와 공원 등이 집에서 도보로 2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5. 이용가능한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 도보 또는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VI. 놀이 및 문화생활

18. 귀하는 **자녀와 함께 다음의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5~6회	④ 한달에 1~2회	⑤ 한달에 3~4회 이상
1. 산책 및 놀이(놀이공원, 동네 공원 등)					
2. 여행					
3. 영화 또는 공연 관람					
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관람					

19. 귀 닉은 **자녀와의 여가 및 문화생활(영화, 공연, 박물관, 여행 등)을 위해 월 평균으
로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 해당 빈도가 한 달에 1회 미만인 경우는 “0” 원으로 표기합니다.

월 평균 ()만원

VII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개선 요구

20. 귀 닉은 다음의 항목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양육에 적절한 주거공간과 위생적인 실내외 환경					
2. 적절한 영양 섭취와 건강관리					
3. 아이와 보내는 시간(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					
4. 양육하기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5. 아이와의 놀이체험 또는 문화활동					

21. 귀댁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문은 무엇입니까?**

- ☐ ① 학원 또는 특별활동 수강
- ☐ ② 안전하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으로 이사
- ☐ ③ 교재교구와 도서 등 학습관련 용품 구입
- ☐ ④ 자녀 대상 발달검사 및 전문상담서비스
- ☐ ⑤ 자녀와의 여가(여행 등) 및 문화생활
- ☐ ⑥ 주택 개보수
-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이하는 **영유아를 둔 가구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들**입니다.

각 사업 및 제도의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지원을 받은 경우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 영유아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22. 귀하는 다음의 **보육 및 돌봄 분야의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를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22-1. 해당 사업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 도움 정도를 5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22. 제도 이용/수혜 여부	22-1. 도움 정도
	① 없음 ② 있음 22-1번 ③ 모름 ④ 해당사항 없음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1 아동수당		
2 가정양육수당(기관 미이용가구)		
3 0~2세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비용 지원)		
4 3~5세아 보육·교육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지원)		
5 시간연장형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오후 7시반 이후 어린이집 이용)		
6 시간제보육(기관 미이용가구)		
7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8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구분		22. 제도 이용/수혜 여부	22-1. 도움 정도
		① 없음 ② 있음 22-1번 ③ 모름 ④ 해당사항 없음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9	공동육아나눔터		
10	육아종합지원센터		
11	출산전후휴가		
12	배우자(남성) 출산휴가		
13	육아휴직제도		
1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5	시차출근제(탄력근로제)		

23. 귀하는 다음의 **건강 및 의료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23-1. 해당 사업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 도움 정도를 5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23. 제도 이용/수혜 여부	23-1. 도움 정도
		① 없음 ② 있음 23-1번으로 ③ 모름 ④ 해당사항 없음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1	영유아 건강검진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6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		
7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8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		
9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10	의료급여		
1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생후 6개월 이하 입원/수술의료비 지원)		
12	발달재활서비스		
1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4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15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바우처)		
16	영양 플러스 사업		
17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24. 귀하는 다음의 **주거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24-1. 해당 사업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 도움 정도를 5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24. 제도 이용/수혜 여부		24-1. 도움 정도
	① 없음 ② 있음 ☞ 24-1번으로 ③ 모름 ④ 해당사항 없음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1	국민임대주택 공급		
2	영구임대주택(생계/의료급여)		
3	장기전세주택(서울/국민임대주택)		
4	에너지바우처(난방비)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6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25. 귀하는 다음의 **놀이 및 여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25-1. 해당 사업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 도움 정도를 5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25. 제도 이용/수혜 여부		25-1. 도움 정도
	① 없음 ② 있음 ☞ 23-1번으로 ③ 모름 ④ 해당사항 없음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3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귀하는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자녀를 누가 돌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아동 연령별로 아래 <보기>에서 1,2순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보기 >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 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유치원 이용	⑥ 기타(구체적으로:)

연령	1순위	2순위
만 0세 (12개월 미만)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27. 영유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이하 육아지원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각 항목별로 자녀양육 시 필요도를 5점 척도로 표기해주시시오.

구분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1.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3. 가정내 보육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4.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제도					
5.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근로시간의 조정 및 단축제도					
6.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7. 아동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8. 문화생활 및 놀이 지원					

28. 다음의 육아지원이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신생아 안심보육료(상해보험료) 지원					
2.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4. 장난감 대여					
5. 영유아 학습비 지원					
6. 북스타트: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					
7. 전문 건강센터 운영: 종합건강관리 제공, 발달 단계별 건강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8.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육아정보 제공, 육아 고민 및 경험 공유					
9. 자녀 등하원서비스 제공(1:1)					

29. 귀하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육아정책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 ① 육아정책 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자택에 보내줌
- ☐ ② 온라인 사이트(인터넷)를 통해 검색함
- ☐ ③ 전화로 문의함
- ☐ ④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육아정책 안내 책자를 비치함
- ☐ ⑤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전달받음
- ☐ ⑥ 기타(구체적으로:)

VII.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 응답 가구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질문입니다.

배문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고졸 이하
- ☐ ② 전문(2, 3년제) 대학 졸
- ☐ ③ 4년제대학 이상
- ☐ ④ 대학원 이상

배문2. (선문8=① 취업자)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주당 평균 () 시간

배문3. 귀하의 근로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전일제: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

- ☐ ① 전일제
- ☐ ② 시간제

배문4.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배문4-1
- ☐ ② 아니다 → 조사 종료

배문4-1. 그렇다면, 배우자의 근로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전일제: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

☐ ① 전일제

☐ ② 시간제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_심층면담 질문지(부모용)

- 조사내용: 자녀 양육실태 및 애로사항, 양육지원제도 인지 및 필요도, 개선 요구
- 심층면담 진행 방식: 취지/주요 질문내용/소요 시간(최대 90분) 등
- ※ 개인정보/음성녹음: 사전협조 요청

1. 아동 및 가구특성/양육실태 전반

1) 자녀 및 가구 특성은 어떠한가요?

- 자녀 특성: 총 자녀수, 자녀 연령(막내자녀 연령 및 출생순위), 장애아 여부, 기관(어린이집 등) 이용 현황 등
- 가구 특성: 다양한 가족 여부(한부모가족 등), 부모의 취업 여부/근로특성(교대제/야간근로 등 포함)/평균 근로시간, 모의 경력단절 경험 및 사유, 취업 의향

2) 영유아 자녀의 양육실태는 어떠한가요?

- 주양육자: 기관(어린이집 등) 이용 현황(기관유형 등)
- 기관 이용 시: 최초 이용 시기 및 사유, 서비스 이용시간 및 비용, 현재 이용기관의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가정과의 연계 어려움 정도, 개선 요구(체험활동, 바깥놀이, 특별활동 요구, 교사와의 소통 등) 전반
- 기관 미이용 시: 미이용 사유, 희망기관 이용 시기(자녀 연령) 및 기관 유형, 입소 대기 현황
- 자녀돌봄 시 지원 인력 여부: 긴급 보육 시 대응방안(조부모, 이웃 등 도움 정도)

3) 추가 출산 의향이 있습니까?

- 추가출산 의향 여부 및 추가출산 포기 사유, 희망자녀수
- 출산 연기 또는 포기 경험 여부 및 그 사유

2.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및 가구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어려움)

- 1) 자녀연령별 양육 특성 및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자녀연령별(임신/출산/신생아기/영아/유아) 애로사항
 - 자녀돌봄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또는 향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및 그 사유
 - 자녀 돌봄이 어려운 부문/양육 시기별 부문의 변화
(예시) 과도한 양육비용(사교육비), 육아정보 및 양육기술 부족,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기관 부족(국공립어린이집 등), 알가정 양립 어려움(돌봄시간 부족) 등
 - 현재 경험 중인 자녀 돌봄 시 주된 어려움
- 2) 귀하의 가구특성 및 근로특성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가구특성 일반: 가구소득/자녀 수에 따른 돌봄 시 애로사항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 한부모 가족 등
 - 근로특성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 맞벌이 가구 및 아버지의 근로특성 등
 - 자녀에게 결핍된 것으로 우려되는 부문/순위: 건강관리 및 의료, 식생활(영양), 쾌적한 주거환경, 조기교육(특별활동 등), 화목한 가족관계, 안전한 가정내 보호, 문화생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등
 - 경제적 여건에 개선될 경우 자녀에게 보다 투자하고 싶은 부문 및 내용

3. 부모효능감/가족관계/자아존중감과 부모 역할간의 관계

- 1)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 자녀 출산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
 - 부모 역할 및 역량에 대한 인식: 부모 역량 강화의 필요성 인식 및 노력 정도(부모교육 참여 경험 등)
 - 자녀와 보내는 시간(주중/주말): 부/모,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한 이유
 - 부모-자녀와의 관계 인식 및 양육 가치관(좋은 부모란?): 아동권리 인식 수준 등
 - 양육스트레스 수준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아이와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아이가 하는 놀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3.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4. 나는 자녀와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한다					
5. 나는 자녀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른다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					
2. 나는 아이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고 있다					
3. 부모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4. 나는 좋은 부모로서 필요한 양육기술을 갖추고 있다					
5. 나는 아이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6. 나는 아이 발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 가족관계 인식 및 결혼만족도

- 가족관계 인식: 긍정/부정
- 결혼만족도, 부부관계와 자녀양육간의 관계 인식: 성별역할 분화
- 이웃/친인척과의 관계 인식 및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 인식, 단절 정도 인식

구분	① 전혀 받지 않는다	② 별로 받지 않는다	③ 보통 이다	④ 도움 받는 편이다	⑤ 매우 도움을 받는다
1. 생활비와 양육비용 등 경제적 도움					
2. 의논과 소통 등 정서적 도움					
3. 긴급 시 자녀 봐주기 등 돌봄지원					
4. 육아 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					

4. 양육지원제도 인지/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인식/필요도

1) 귀하는 이하 양육지원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경우) 수혜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하 각 제도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적정급여액 및 도움정도 인식

구분		인지/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필요도		
지원영역	지원내용	제도 인지 여부	수혜 여부/ 도움 정도(5점) (전혀 도움안됨 ~매우 도움됨)	필요도(5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매우 필요함)
보육· 돌봄지원	•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기관미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장애아동수당			

구분		인지/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필요도		
지원영역	지원내용	제도 인지 여부	수혜 여부/ 도움 정도(5점) (전혀 도움안됨 ~매우 도움됨)	필요도(5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매우 필요함)
보육· 돌봄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만 0-5세 보육료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야간, 24시간, 시간연장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시간제보육 지원(기관미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육아종합지원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 언어발달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힐링캠프, 테마여행)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한국어교육 서비스 - 부모교육 서비스 - 자녀생활 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바우처)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취약전 아동 실명예방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관리 지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구분		인지/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필요도		
지원영역	지원내용	제도 인지 여부	수혜 여부/ 도움 정도(5점) (전혀 도움안됨 ~매우 도움됨)	필요도(5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매우 필요함)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생후 6개월 이하 입원/수술 의료비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놀이 및 여가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 현재까지 이용해본 양육지원제도 중 출산 및 자녀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제도 및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3) 이하는 현행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이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향후 이용 의향이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참고자료 1: 출산양육 지원 세부내용		
제도 및 사업명		지원내용
1	임산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임산이 확인된 자에게 임산출산 진료비의 일부 지원
2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출산한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지원
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만 3개월~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 및 비용지원
5	일시돌봄(시간제 돌봄) 지원	기관(어린이집) 미이용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40시간~월 80시간 이용단가의 일부 지원
6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 월 10~20만원의 현금 지원
7	양육비 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 등)	자녀수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8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 대상 각 월령별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장애 진단 및 정밀검사, 입원 시 본인 부담 면제,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등
9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0~5세아에 보육료 지원

4) 귀하는 이하 **육아지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육아지원 제도 및 정책	자녀 양육에의 도움 정도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도움됨
1	신생아 안심보육료(상해보험료) 지원							
2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	맞벌이 가구 대상 가사관리사(도우미: 세탁, 청소 등) 파견							
4	영유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5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6	장난감 대여							
7	영유아 학습비 지원							
8	북스타트: 도서 대여 및 독서 프로그램							
9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만 12세 아동 중 합건강관리 제공, 발달 단계별 건강증진 교 육 및 정보 제공							
10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육아정보 제공, 육 아 고민 및 경험 공유							
11	아동 등하원서비스 제공(1:1)							
12	다자녀 진료비 감면: 셋째 자녀대상							

5)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해 양육 시기별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구분	일차적으로 필요한 지원	추가 요구내용
1	출산 및 신생아기		
2	영아(만0~2세)		
3	유아(만3~5세)		

5. 통합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인식, 개선 요구

- 1) 드림스타트/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어떻게 이용하게 되셨습니까?
도움을 받은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쉽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부모용〉
 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련번호: 부모 () 번

D1.	연령	만 () 세			
D2.	성별	☐ ① 남		☐ ② 여	
D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③ 4년제 대학 이상		② 전문(3년제)대학 졸 ④ 대학원 이상	
D4.	직업	☐ ① 사무직 ☐ ③ 전문직 ☐ ⑤ 전업주부 ☐ ⑦ 기타		☐ ② 생산직 ☐ ④ 서비스 및 판매직 ☐ ⑥ 무직	
D5.	취업 여부 ※ part-time 등 포함	☐ ① 예		☐ ② 아니오 ※ D6. 가구 특성으로	
D5-1	취업상태	☐ ① 자영업자(혼자 운영) ☐ ③ 상용근로자(정규 출퇴근) ☐ ⑤ 일용근로자 ☐ ⑦ 기타()		☐ ② 고용주(종업원 등) ☐ ④ 임시근로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D5-2.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당 평균 () 시간			
D6.	가구 특성 (해당 항목 모두 표기)	구분		해당 여부 ☐ ① 예 ☐ ② 아니오	
		다문화가정		① ②	
		한부모/조손가정		① ②	
		장애부모 가정		① ②	
		장애아 자녀를 둔 가정		①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① ②	
		차상위계층 가구		① ②	
		북한이탈주민 가구		① ②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1일 8시간 이상 근로)		① ②	
D7.	자녀 특성	구분	연령(만)	기관 이용 여부 ① 미이용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기타	재학 ① 초등 ② 중등 ③ 고등 ④ 대학
		첫째 자녀	() 세		
		둘째 자녀	() 세		
		셋째 자녀	() 세		
		넷째 자녀	() 세		
		총 자녀수 () 명			
D8.	거주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D9.	월평균 가구소득	☐ ① 149만원 이하 ☐ ③ 200~249만원 ☐ ⑤ 300~349만원 ☐ ⑦ 400~499만원 ☐ ⑨ 600만원 이상		☐ ② 150~199만원 ☐ ④ 250~299만원 ☐ ⑥ 350~399만원 ☐ ⑧ 500~599만원	

부록 3. 사례조사 질문지

드림스타트 사례조사 질문지

1. 드림스타트 운영 방식 및 재원

- 주요 사업 연혁
- 아동연령별 선정규모의 적정성: 영유아 지원대상 비중 등
- 아동별 사례관리 운영체계 및 사후관리 등
- 지역사회투자사업 우선 연계,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대상발굴 체계,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 및 영유아 빈곤가구(학령기 아동대비) 특성
- 필수서비스 제공 시 유관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활용 방식
- 맞춤형서비스 어려운 경우(지역내 연계 어려운 경우) 직접서비스 등 제공 방식
- 제공서비스 유형별 한도 및 제한 횟수: 현금/현물/프로그램별 지원기간 및 규모 등
- 지역내 자원관리 방식(행복 e음(복지자원통합시스템) 운영), 서비스 연계기관 협력체계
- 지역별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이 있는지

2. 지역의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및 효과성

- 자체예산 투입 비중 및 내용
- 우수사례 주요 내용 및 효과성

경기 수원시	전북 완주군
1) 지역(및 아동빈곤) 특성 및 사업운영의 차별성 • 지원대상 규모 및 특성, 추이 등 포함	1) 지역(및 아동빈곤) 특성 및 사업운영의 차별성 • 지원대상 규모 및 특성, 추이 등 포함 • 아동연령별 주요 효과(아동의 인지 및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아동의 건강 및 보건, 부모 양육태도 및 역량 강화 등)
2) 수원시 통합 맞춤형서비스 주요내용 및 차별성: 주요 사업내용 및 운영방식, ※ 아동연령별 주요 효과(아동의 인지 및 사회성, 정서발달 등, 아동의 건강 및 보건, 부모 양육태도 및 역량 강화 등)	2) 완주군 서비스 주요내용 및 차별성 • 예방적·능동적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세부내용: 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사항 ※ 취약계층 아동 1,361명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정방문, 전화 등 초기상담 진행 (총 500여명* 사례관리) / 취약계층 전수조사(1,500명)로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서비스 주요내용 ※ 1:1 방문기초 학습, 홀스쿨링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1,329명 지원)

경기 수원시	전북 완주군
3) 사업예산 규모 및 구성 • 자체예산(구비 추가 투입) 투입의 함의 및 사업비 지출내용: 2019년 지침 자체예산 확대 사유 포함	3) 사업예산 규모 및 구성 • 자체예산(구비 추가 투입) 투입 규모
4) 인력구성 및 관리: 전문사례사 증원의 배경 등	4) 인력구성 및 관리
5) 사업운영체계: 분소 설치 및 거점지역 운영사항	5) 민관협력 사업 추진체계 및 활성화 요소
6) 민관협력 사업 추진체계 및 활성화 요소	

3.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 대상발굴,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자원관리 등

4. 드림스타트 사업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 정부지원사업과의 관계: 중복 해소 방안
- 우선 및 의무할당 대상 지정: 장애아, 아동양육시설 거주, 기관 미이용, 보호자 없는 아동 등
- 영유아 및 영아 대상 사업규모 확장의 필요성 및 함의
- 사례관리 미선정 시 민관서비스와의 연계 및 협력
- 센터별 대상아동 연령 차별화: 영유아/학령기(←민간위탁사업과의 중복해소, 전문성 제고 등)
- 자원봉사자 연계체계 구축 및 활성화 필요성 인식
- 아동센터 설치 운영의 필요성 인식
- 이사 등에 따른 아동연계 개선
- 드림스타트 사업 추이 및 규모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

부록 4. 부표

〈부표 1〉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1: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9	6.8	35.3	44.9	11.0	100.0	(1,606)	3.6(0.8)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5	15.6	41.6	31.2	5.2	100.0	(77)	3.1(1.0)
101~150만원	10.6	12.9	41.2	22.4	12.9	100.0	(85)	3.1(1.1)
151~200만원	1.4	7.3	38.4	42.9	10.0	100.0	(641)	3.5(0.8)
201~250만원	1.6	7.1	40.2	37.8	13.4	100.0	(127)	3.5(0.9)
251~300만원	0.0	9.0	28.0	48.0	15.0	100.0	(100)	3.7(0.8)
301~350만원	0.8	2.5	29.5	58.2	9.0	100.0	(122)	3.7(0.7)
351~400만원	0.9	10.0	31.8	47.3	10.0	100.0	(110)	3.6(0.8)
401~500만원	1.4	2.9	31.4	51.4	12.9	100.0	(140)	3.7(0.8)
501~600만원	1.0	1.0	34.0	52.6	11.3	100.0	(97)	3.7(0.7)
601~700만원	2.2	6.7	20.0	57.8	13.3	100.0	(45)	3.7(0.9)
701~800만원	0.0	0.0	40.9	40.9	18.2	100.0	(22)	3.8(0.8)
801만원 이상	0.0	0.0	22.5	65.0	12.5	100.0	(40)	3.9(0.6)
χ^2 (df)/F	127.445(44)***							6.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부표 2〉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2: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한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4	7.8	33.8	43.1	13.9	100.0	(1,606)	3.6(0.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5.2	16.9	39.0	28.6	10.4	100.0	(77)	3.2(1.0)
101~150만원	4.7	16.5	41.2	27.1	10.6	100.0	(85)	3.2(1.0)
151~200만원	1.1	7.5	35.9	42.6	12.9	100.0	(641)	3.6(0.8)

구분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한다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201~250만원	0.8	9.4	35.4	40.2	14.2	100.0 (127)	3.6(0.9)
251~300만원	0.0	8.0	33.0	44.0	15.0	100.0 (100)	3.7(0.8)
301~350만원	0.8	2.5	29.5	55.7	11.5	100.0 (122)	3.7(0.7)
351~400만원	0.9	9.1	33.6	44.5	11.8	100.0 (110)	3.6(0.9)
401~500만원	1.4	2.9	35.7	42.9	17.1	100.0 (140)	3.7(0.8)
501~600만원	1.0	6.2	28.9	47.4	16.5	100.0 (97)	3.7(0.9)
601~700만원	2.2	4.4	24.4	55.6	13.3	100.0 (45)	3.7(0.8)
701~800만원	0.0	18.2	9.1	40.9	31.8	100.0 (22)	3.9(1.1)
801만원 이상	0.0	5.0	15.0	55.0	25.0	100.0 (40)	4.0(0.8)
$\chi^2(df)/F$	92.741(44)***						4.7***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부표 3〉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 표현한다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1.3	7.5	28.8	45.1	17.4	100.0 (1,606)	3.7(0.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5.2	13.0	36.4	35.1	10.4	100.0 (77)	3.3(1.0)
101~150만원	8.2	7.1	42.4	28.2	14.1	100.0 (85)	3.3(1.1)
151~200만원	0.6	8.0	30.7	44.6	16.1	100.0 (641)	3.7(0.9)
201~250만원	0.8	10.2	30.7	41.7	16.5	100.0 (127)	3.6(0.9)
251~300만원	0.0	6.0	29.0	44.0	21.0	100.0 (100)	3.8(0.8)
301~350만원	0.8	4.1	17.2	59.0	18.9	100.0 (122)	3.9(0.8)
351~400만원	0.9	7.3	25.5	51.8	14.5	100.0 (110)	3.7(0.8)
401~500만원	1.4	5.0	25.0	50.7	17.9	100.0 (140)	3.8(0.8)
501~600만원	1.0	8.2	21.6	48.5	20.6	100.0 (97)	3.8(0.9)
601~700만원	0.0	11.1	24.4	40.0	24.4	100.0 (45)	3.8(1.0)
701~800만원	0.0	0.0	40.9	22.7	36.4	100.0 (22)	4.0(0.9)
801만원 이상	0.0	2.5	20.0	50.0	27.5	100.0 (40)	4.0(0.8)
$\chi^2(df)/F$	108.124(44)***						4.5***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부표 4〉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격려해준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준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7	7.7	30.3	44.9	15.4	100.0	(1,606)	3.6(0.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7.8	14.3	33.8	31.2	13.0	100.0	(77)	3.3(1.1)
101~150만원	5.9	10.6	45.9	27.1	10.6	100.0	(85)	3.3(1.0)
151~200만원	1.2	8.6	30.9	44.9	14.4	100.0	(641)	3.6(0.9)
201~250만원	1.6	7.9	29.9	46.5	14.2	100.0	(127)	3.6(0.9)
251~300만원	0.0	7.0	32.0	42.0	19.0	100.0	(100)	3.7(0.9)
301~350만원	1.6	4.9	26.2	53.3	13.9	100.0	(122)	3.7(0.8)
351~400만원	0.9	4.5	32.7	42.7	19.1	100.0	(110)	3.7(0.9)
401~500만원	1.4	6.4	30.7	46.4	15.0	100.0	(140)	3.7(0.9)
501~600만원	1.0	6.2	18.6	54.6	19.6	100.0	(97)	3.9(0.8)
601~700만원	2.2	8.9	17.8	53.3	17.8	100.0	(45)	3.8(0.9)
701~800만원	0.0	0.0	27.3	45.5	27.3	100.0	(22)	4.0(0.8)
801만원 이상	0.0	2.5	25.0	52.5	20.0	100.0	(40)	3.9(0.7)
$\chi^2(df)/F$	79.803(44)***							4.3***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부표 5〉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5: 우리 가족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가족은 힘든 일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4	4.2	26.3	49.4	18.7	100.0	(1,606)	3.8(0.8)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5	9.1	37.7	32.5	14.3	100.0	(77)	3.4(1.1)
101~150만원	7.1	7.1	38.8	36.5	10.6	100.0	(85)	3.4(1.0)
151~200만원	0.9	4.4	28.2	49.0	17.5	100.0	(641)	3.8(0.8)
201~250만원	2.4	3.9	29.1	48.0	16.5	100.0	(127)	3.7(0.9)
251~300만원	0.0	4.0	26.0	51.0	19.0	100.0	(100)	3.9(0.8)
301~350만원	0.8	2.5	20.5	55.7	20.5	100.0	(122)	3.9(0.8)

구분	우리 가족은 힘든 일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351~400만원	0.0	3.6	28.2	48.2	20.0	100.0 (110)	3.8(0.8)
401~500만원	0.0	2.1	20.7	53.6	23.6	100.0 (140)	4.0(0.7)
501~600만원	0.0	3.1	15.5	62.9	18.6	100.0 (97)	4.0(0.7)
601~700만원	0.0	6.7	17.8	53.3	22.2	100.0 (45)	3.9(0.8)
701~800만원	0.0	0.0	18.2	50.0	31.8	100.0 (22)	4.1(0.7)
801만원 이상	2.5	2.5	12.5	50.0	32.5	100.0 (40)	4.1(0.9)
$\chi^2(df)/F$	103.343(44)***						6.2***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부표 6〉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1: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단위: %(명), 점

구분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5.3	11.1	31.5	39.4	12.7	100.0 (1,487)	3.4(1.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9.3	14.8	40.7	29.6	5.6	100.0 (54)	3.1(1.0)
101~150만원	19.0	12.7	30.2	25.4	12.7	100.0 (63)	3.0(1.3)
151~200만원	4.9	11.2	34.6	37.0	12.2	100.0 (589)	3.4(1.0)
201~250만원	5.0	12.6	31.1	36.1	15.1	100.0 (119)	3.4(1.1)
251~300만원	3.1	13.4	23.7	44.3	15.5	100.0 (97)	3.6(1.0)
301~350만원	2.5	11.6	29.8	44.6	11.6	100.0 (121)	3.5(0.9)
351~400만원	4.7	10.3	41.1	30.8	13.1	100.0 (107)	3.4(1.0)
401~500만원	4.3	10.7	27.9	45.0	12.1	100.0 (140)	3.5(1.0)
501~600만원	5.3	6.4	23.4	53.2	11.7	100.0 (94)	3.6(1.0)
601~700만원	7.0	2.3	20.9	60.5	9.3	100.0 (43)	3.6(1.0)
701~800만원	0.0	23.8	23.8	19.0	33.3	100.0 (21)	3.6(1.2)
801만원 이상	5.1	7.7	20.5	51.3	15.4	100.0 (39)	3.6(1.0)
$\chi^2(df)/F$	212.451(55)***						2.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부표 7〉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2: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단위: %(명), 점

구분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6.1	11.8	29.4	38.5	14.3	100.0	(1,487)	3.4(1.1)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7.4	20.4	33.3	35.2	3.7	100.0	(54)	3.1(1.0)
101~150만원	15.9	19.0	28.6	22.2	14.3	100.0	(63)	3.0(1.3)
151~200만원	5.8	12.2	32.4	35.5	14.1	100.0	(589)	3.4(1.1)
201~250만원	6.7	10.9	26.1	42.0	14.3	100.0	(119)	3.5(1.1)
251~300만원	3.1	13.4	25.8	43.3	14.4	100.0	(97)	3.5(1.0)
301~350만원	4.1	9.9	28.1	45.5	12.4	100.0	(121)	3.5(1.0)
351~400만원	4.7	15.9	29.9	36.4	13.1	100.0	(107)	3.4(1.1)
401~500만원	5.7	7.1	31.4	40.0	15.7	100.0	(140)	3.5(1.0)
501~600만원	6.4	6.4	21.3	50.0	16.0	100.0	(94)	3.6(1.0)
601~700만원	7.0	7.0	30.2	44.2	11.6	100.0	(43)	3.5(1.0)
701~800만원	4.8	19.0	19.0	23.8	33.3	100.0	(21)	3.6(1.3)
801만원 이상	7.7	7.7	17.9	43.6	23.1	100.0	(39)	3.7(1.2)
$\chi^2(df)/F$	189.018(55)***							2.4**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부표 8〉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3: 우리 부부는 전반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부부는 전반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9	10.6	28.4	39.1	16.9	100.0	(1,487)	3.5(1.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7	14.8	50.0	22.2	9.3	100.0	(54)	3.2(0.9)
101~150만원	12.7	12.7	34.9	28.6	11.1	100.0	(63)	3.1(1.2)
151~200만원	4.8	10.2	31.1	38.4	15.6	100.0	(589)	3.5(1.0)
201~250만원	6.7	12.6	31.9	32.8	16.0	100.0	(119)	3.4(1.1)
251~300만원	2.1	8.2	26.8	41.2	21.6	100.0	(97)	3.7(1.0)

구분	우리 부부는 전반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1~350만원	4.1	9.9	23.1	50.4	12.4	100.0	(121)	3.6(1.0)
351~400만원	3.7	9.3	28.0	40.2	18.7	100.0	(107)	3.6(1.0)
401~500만원	4.3	11.4	23.6	42.9	17.9	100.0	(140)	3.6(1.0)
501~600만원	3.2	10.6	12.8	51.1	22.3	100.0	(94)	3.8(1.0)
601~700만원	4.7	7.0	32.6	32.6	23.3	100.0	(43)	3.6(1.1)
701~800만원	14.3	19.0	9.5	23.8	33.3	100.0	(21)	3.4(1.5)
801만원 이상	5.1	10.3	17.9	41.0	25.6	100.0	(39)	3.7(1.1)
$\chi^2(df)/F$	203.448(55)***							2.7**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부표 9〉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4: 우리 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한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2	14.3	28.5	35.8	17.2	100.0	(1,487)	3.5(1.1)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7.4	20.4	50.0	11.1	11.1	100.0	(54)	3.0(1.0)
101~150만원	9.5	11.1	31.7	36.5	11.1	100.0	(63)	3.3(1.1)
151~200만원	4.9	14.3	29.0	34.8	17.0	100.0	(589)	3.4(1.1)
201~250만원	5.0	13.4	32.8	31.9	16.8	100.0	(119)	3.4(1.1)
251~300만원	3.1	16.5	26.8	36.1	17.5	100.0	(97)	3.5(1.1)
301~350만원	2.5	18.2	28.9	39.7	10.7	100.0	(121)	3.4(1.0)
351~400만원	2.8	15.9	27.1	35.5	18.7	100.0	(107)	3.5(1.1)
401~500만원	2.1	11.4	23.6	42.9	20.0	100.0	(140)	3.7(1.0)
501~600만원	4.3	10.6	20.2	38.3	26.6	100.0	(94)	3.7(1.1)
601~700만원	2.3	9.3	25.6	46.5	16.3	100.0	(43)	3.7(0.9)
701~800만원	0.0	28.6	19.0	28.6	23.8	100.0	(21)	3.5(1.2)
801만원 이상	0.0	10.3	25.6	43.6	20.5	100.0	(39)	3.7(0.9)
$\chi^2(df)/F$	188.062(55)***							2.7**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부표 10〉 부부관계 및 결혼만족도 5: 우리 부부는 평상시에 다름없이 잘 소통하는 편이다

단위: %(명), 점

구분	우리 부부는 평상시에 다름없이 소통한다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6.1	14.5	33.2	33.8	12.4	100.0 (1,487)	3.3(1.1)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9.3	24.1	38.9	22.2	5.6	100.0 (54)	2.9(1.0)
101~150만원	14.3	12.7	33.3	27.0	12.7	100.0 (63)	3.1(1.2)
151~200만원	6.3	15.3	35.7	31.9	10.9	100.0 (589)	3.3(1.0)
201~250만원	5.9	10.9	41.2	28.6	13.4	100.0 (119)	3.3(1.0)
251~300만원	2.1	17.5	30.9	30.9	18.6	100.0 (97)	3.5(1.1)
301~350만원	4.1	8.3	34.7	38.8	14.0	100.0 (121)	3.5(1.0)
351~400만원	6.5	20.6	26.2	39.3	7.5	100.0 (107)	3.2(1.1)
401~500만원	5.7	11.4	29.3	39.3	14.3	100.0 (140)	3.5(1.1)
501~600만원	6.4	9.6	25.5	44.7	13.8	100.0 (94)	3.5(1.1)
601~700만원	2.3	23.3	32.6	30.2	11.6	100.0 (43)	3.3(1.0)
701~800만원	4.8	28.6	14.3	33.3	19.0	100.0 (21)	3.3(1.2)
801만원 이상	5.1	5.1	28.2	41.0	20.5	100.0 (39)	3.7(1.0)
$\chi^2(df)/F$	196.605(55)***						2.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부표 11〉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1: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

단위: %(명), 점

구분	경제적 도움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 받지 못함	도움 받지 못하는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전체	25.3	23.3	28.6	19.7	3.1	100.0 (1,606)	2.5(1.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8.2	23.4	37.7	16.9	3.9	100.0 (77)	2.6(1.1)
101~150만원	21.2	16.5	27.1	28.2	7.1	100.0 (85)	2.8(1.3)
151~200만원	21.7	24.6	31.7	19.3	2.7	100.0 (641)	2.6(1.1)
201~250만원	26.0	19.7	30.7	21.3	2.4	100.0 (127)	2.5(1.2)
251~300만원	27.0	24.0	28.0	18.0	3.0	100.0 (100)	2.5(1.2)
301~350만원	26.2	25.4	27.9	18.0	2.5	100.0 (122)	2.5(1.1)

구분	경제적 도움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못함	도움 도움 받지 못하는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351~400만원	24.5	30.9	25.5	16.4	2.7	100.0 (110)	2.4(1.1)
401~500만원	35.7	20.0	21.4	22.1	0.7	100.0 (140)	2.3(1.2)
501~600만원	30.9	21.6	24.7	20.6	2.1	100.0 (97)	2.4(1.2)
601~700만원	42.2	20.0	17.8	13.3	6.7	100.0 (45)	2.2(1.3)
701~800만원	31.8	18.2	22.7	22.7	4.5	100.0 (22)	2.5(1.3)
801만원 이상	27.5	22.5	20.0	20.0	10.0	100.0 (40)	2.6(1.4)
$\chi^2(df)/F$	59.349(44)						1.7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1점 ~ '매우 도움을 받는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부표 12〉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2: 대화 및 소통 등 정서적 도움

단위: %(명), 점

구분	정서적 도움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못함	도움 도움 받지 못하는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전체	5.3	15.4	41.0	32.4	5.9	100.0 (1,606)	3.2(0.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7	15.6	37.7	33.8	1.3	100.0 (77)	3.0(1.0)
101~150만원	10.6	14.1	43.5	24.7	7.1	100.0 (85)	3.0(1.1)
151~200만원	5.0	16.2	43.1	30.3	5.5	100.0 (641)	3.1(0.9)
201~250만원	4.7	10.2	48.0	32.3	4.7	100.0 (127)	3.2(0.9)
251~300만원	7.0	16.0	41.0	29.0	7.0	100.0 (100)	3.1(1.0)
301~350만원	4.9	20.5	36.1	36.1	2.5	100.0 (122)	3.1(0.9)
351~400만원	3.6	14.5	44.5	31.8	5.5	100.0 (110)	3.2(0.9)
401~500만원	2.9	15.7	40.7	33.6	7.1	100.0 (140)	3.3(0.9)
501~600만원	5.2	17.5	27.8	43.3	6.2	100.0 (97)	3.3(1.0)
601~700만원	4.4	6.7	44.4	37.8	6.7	100.0 (45)	3.4(0.9)
701~800만원	0.0	22.7	27.3	40.9	9.1	100.0 (22)	3.4(1.0)
801만원 이상	2.5	7.5	27.5	40.0	22.5	100.0 (40)	3.7(1.0)
$\chi^2(df)/F$	69.820(44)**						2.3**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1점 ~ '매우 도움을 받는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부표 13〉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3: 긴급시 자녀 봐주기 등 돌봄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돌봄지원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못함	도움 받은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전체	16.7	19.8	26.1	27.6	9.8	100.0 (1,606)	2.9(1.2)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6.0	19.5	31.2	19.5	3.9	100.0 (77)	2.6(1.2)
101~150만원	20.0	14.1	34.1	21.2	10.6	100.0 (85)	2.9(1.3)
151~200만원	16.7	21.7	27.9	26.7	7.0	100.0 (641)	2.9(1.2)
201~250만원	16.5	22.0	22.8	31.5	7.1	100.0 (127)	2.9(1.2)
251~300만원	20.0	22.0	28.0	23.0	7.0	100.0 (100)	2.8(1.2)
301~350만원	19.7	20.5	25.4	24.6	9.8	100.0 (122)	2.8(1.3)
351~400만원	12.7	26.4	29.1	24.5	7.3	100.0 (110)	2.9(1.1)
401~500만원	17.1	12.1	20.0	35.7	15.0	100.0 (140)	3.2(1.3)
501~600만원	16.5	18.6	18.6	30.9	15.5	100.0 (97)	3.1(1.3)
601~700만원	6.7	13.3	22.2	42.2	15.6	100.0 (45)	3.5(1.1)
701~800만원	9.1	13.6	13.6	36.4	27.3	100.0 (22)	3.6(1.3)
801만원 이상	2.5	10.0	20.0	30.0	37.5	100.0 (40)	3.9(1.1)
$\chi^2(df)/F$	109.833(44)***						5.6***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1점 ~ '매우 도움을 받는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부표 14〉 다른 가족 및 이웃의 도움 4: 육아정보와 양육기술에 대한 조언

단위: %(명), 점

구분	육아정보/양육기술 조언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못함	도움 받은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전체	8.1	19.1	41.8	26.4	4.5	100.0 (1,606)	3.0(1.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1.7	16.9	48.1	19.5	3.9	100.0 (77)	2.9(1.0)
101~150만원	12.9	16.5	43.5	21.2	5.9	100.0 (85)	2.9(1.1)
151~200만원	8.9	20.3	42.1	25.0	3.7	100.0 (641)	2.9(1.0)
201~250만원	4.7	20.5	43.3	26.0	5.5	100.0 (127)	3.1(0.9)
251~300만원	13.0	17.0	38.0	28.0	4.0	100.0 (100)	2.9(1.1)
301~350만원	8.2	15.6	50.0	23.8	2.5	100.0 (122)	3.0(0.9)

구분	육아정보/양육기술 조언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받지 못함	도움 받은 편	보통	도움 받는 편	매우 도움 받는 편	계(수)	
351~400만원	5.5	22.7	42.7	25.5	3.6	100.0 (110)	3.0(0.9)
401~500만원	5.7	20.0	40.7	30.0	3.6	100.0 (140)	3.1(0.9)
501~600만원	6.2	18.6	39.2	30.9	5.2	100.0 (97)	3.1(1.0)
601~700만원	4.4	13.3	40.0	31.1	11.1	100.0 (45)	3.3(1.0)
701~800만원	4.5	22.7	22.7	40.9	9.1	100.0 (22)	3.3(1.1)
801만원 이상	2.5	15.0	22.5	45.0	15.0	100.0 (40)	3.6(1.0)
$\chi^2(df)/F$	57.406(44)						2.4**

주: 5점 평균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1점 ~ '매우 도움을 받는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부표 15〉 자녀의 생활환경 1: 아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책 보유

단위: %(명), 점

구분	아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책 보유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7	13.1	38.5	36.7	7.9	100.0 (1,606)	3.3(0.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0.4	11.7	53.2	20.8	3.9	100.0 (77)	3.0(1.0)
101~150만원	8.2	11.8	49.4	25.9	4.7	100.0 (85)	3.1(0.9)
151~200만원	4.4	15.3	41.7	30.9	7.8	100.0 (641)	3.2(0.9)
201~250만원	3.9	18.1	37.0	37.8	3.1	100.0 (127)	3.2(0.9)
251~300만원	4.0	12.0	37.0	36.0	11.0	100.0 (100)	3.4(1.0)
301~350만원	1.6	10.7	33.6	45.9	8.2	100.0 (122)	3.5(0.9)
351~400만원	1.8	11.8	40.9	40.9	4.5	100.0 (110)	3.3(0.8)
401~500만원	2.1	11.4	29.3	49.3	7.9	100.0 (140)	3.5(0.9)
501~600만원	0.0	10.3	32.0	44.3	13.4	100.0 (97)	3.6(0.8)
601~700만원	0.0	6.7	24.4	62.2	6.7	100.0 (45)	3.7(0.7)
701~800만원	0.0	0.0	36.4	40.9	22.7	100.0 (22)	3.9(0.8)
801만원 이상	0.0	10.0	20.0	50.0	20.0	100.0 (40)	3.8(0.9)
$\chi^2(df)/F$	118.213(44)***						6.7***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부표 16〉 자녀의 생활환경 2: 실내 놀이 장난감/기구 보유

단위: %(명), 점

구분	실내 놀이 장난감/기구 보유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3	7.7	33.2	44.0	13.8	100.0	(1,606)	3.6(0.9)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3	7.8	49.4	32.5	9.1	100.0	(77)	3.4(0.8)
101~150만원	2.4	11.8	44.7	30.6	10.6	100.0	(85)	3.4(0.9)
151~200만원	2.2	9.7	35.1	41.7	11.4	100.0	(641)	3.5(0.9)
201~250만원	0.0	12.6	40.2	35.4	11.8	100.0	(127)	3.5(0.9)
251~300만원	1.0	6.0	32.0	46.0	15.0	100.0	(100)	3.7(0.8)
301~350만원	0.0	5.7	25.4	50.0	18.9	100.0	(122)	3.8(0.8)
351~400만원	1.8	5.5	30.0	51.8	10.9	100.0	(110)	3.6(0.8)
401~500만원	0.7	3.6	23.6	58.6	13.6	100.0	(140)	3.8(0.7)
501~600만원	0.0	5.2	25.8	50.5	18.6	100.0	(97)	3.8(0.8)
601~700만원	0.0	0.0	22.2	53.3	24.4	100.0	(45)	4.0(0.7)
701~800만원	0.0	0.0	31.8	40.9	27.3	100.0	(22)	4.0(0.8)
801만원 이상	0.0	2.5	25.0	40.0	32.5	100.0	(40)	4.0(0.8)
$\chi^2(df)/F$			101.265(44)***					6.6***

주: 5점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